
**2020년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

2021. 05



인천광역시 서구

2020년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

2021.05



인천광역시 서구

제 출 문

인천 서구청장 귀중

본 보고서를 『2020년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의 최종 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21년 5월

주식회사 원엔지니어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242, 4층(학익동)

대 표 이 사 최 원 일

목 차

제1장 서론	3
1.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3
1.2 과업의 범위	3
1.2.1 시간적 범위	3
1.2.2 공간적 범위	4
1.2.3 내용적 범위	5
1.3 과업의 수행과정	5
1.4 관련법규 검토	6
1.4.1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관련 법규	6
1.4.2 주차장 설치기준	7
1.4.3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12
1.4.4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16
1.4.5 인천광역시 서구 공영주차장 요금표	18
제2장 서구일반현황	21
2.1 도시일반현황	21
2.1.1 도시일반현황	21
2.1.2 행정구역 현황	21
2.1.3 서구 용도지역 현황	22
2.2 인구 및 세대수현황	23
2.2.1 연도별 인구 및 세대수 추이	23
2.2.2 행정동별 인구 및 세대수 분포	24
2.2.3 행정동별 인구밀도	25
2.3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	26
2.3.1 연도별 자동차 등록대수 추이	26
2.3.2 차종별 자동차 등록대수 추이	27
2.4 주차시설 현황	28
2.4.1 연도별 주차시설 추이	28
2.4.2 주차장 유형별 증감 추이	29
2.4.3 전기충전시설 설치현황	30

제3장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33
3.1 조사개요	33
3.1.1 추진경위	33
3.1.2 조사단계	33
3.1.3 조사원 교육 및 조사 수행	37
3.2 조사구역 설정	38
3.2.1 조사구역 설정기준 검토	38
3.2.2 조사구역 선정결과	39
3.3 주차시설 조사결과	41
3.3.1 조사구역내 주차시설 현황	41
3.3.2 행정동별 주차시설 현황	41
3.3.3 조사블럭별 주차시설 현황	44
3.4 주차이용실태조사	53
3.4.1 조사개요	53
3.4.2 조사결과	53
제4장 주차장 수급실태 분석	59
4.1 주차지표의 정의	59
4.1.1 주차장 확보율	59
4.1.2 주차장 수급률	59
4.2 주차장 수급률 분석	60
제5장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	79
5.1 기수행과업 성과분석	79
5.1.1 기수행과업 주차정책의 기본방향	79
5.1.2 기수행과업 주차정책의 목표	80
5.1.3 기수행과업 주차시설공급 수행내역	81
5.1.4 기수행과업 검토결과	87
5.2 문제점 검토	88
5.2.1 주차시설 공급부족 및 기타 문제점	88
5.2.2 서구 주차환경문제점 종합	97
5.3 서구 주차환경개선 목표설정	97
5.3.1 부문별 개선방안 설정	98
5.3.2 주차환경개선의 부문별 역할정립	98

5.4 주차시설 공급방안	99
5.4.1 노외주차시설의 확충	99
5.4.2 주차시설의 효율성 증대 방안	106
가. 학교주차장 공유사업 확대	106
5.4.3 불합리한 노상주차면 안전강화방안	114
5.5 주차수요 관리방안	116
5.5.1 주차요금제도 개선	116
5.6 제도개선 방안	119
5.6.1 서구 주차관련 법제도의 미흡	119
5.6.2 주차수급실태조사 관련 제도 정비	119
5.6.3 주차환경개선지구 관련 제도 정비	121
5.6.4 주차장 건설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	122
5.6.5 공영주차장 건설 촉진 및 공유를 위한 제도 정비	123
5.6.6 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제도 정비	123
제6장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관리계획	129
6.1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목적 및 지정절차	129
6.1.1 지정목적	129
6.1.2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절차	130
6.1.3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기준	131
6.1.4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우선순위 평가인자	132
6.2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132
6.2.1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선정	132
6.2.2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시행 시기	141
6.2.3 주차환경개선지구의 관리계획	142
부 록	145
■ 조사결과 보고회 자료	145
■ 주차관련 법령	169
■ 주차공유사업 대상 건축물	188

표 목 차

【표 1-1】 과업의 내용적 범위	5
【표 1-2】 별표 1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10
【표 1-3】 공영주차장 요금표(제4조제1항 관련)	18
【표 2-1】 도시일반현황	21
【표 2-2】 행정구역현황	21
【표 2-3】 행정동별 면적	21
【표 2-4】 서구 용도지역 현황	22
【표 2-5】 연도별 인구 및 세대수 추이	23
【표 2-6】 행정동별 인구 및 세대수 분포	24
【표 2-7】 서구 행정동별 인구밀도	25
【표 2-8】 연도별 인구 및 세대수 추이	26
【표 2-9】 연도별 자동차 등록대수 추이	27
【표 2-10】 연도별 주차시설 추이	28
【표 2-11】 주차장 유형별 증감 추이	29
【표 2-12】 전기충전시설 설치현황	30
【표 3-1】 주차수급실태 조사개요	34
【표 3-2】 조사블럭 비교	39
【표 3-3】 2020년 행정동별 조사블럭 선정결과	39
【표 3-4】 2020년 서구 주차시설 현황조사 결과	41
【표 3-5】 행정동별 주차시설현황 조사결과 - 부설주차장제외	42
【표 3-6】 블럭별 주차시설 공급 현황	44
【표 3-7】 주차시설 공급 규모	52
【표 3-8】 블럭별 평균 주차시설 공급면수	52
【표 3-9】 주차이용실태조사 개요	53
【표 3-10】 주·야간 노상 주정차 조사결과	54
【표 3-11】 행정동별 불법주차율 분석	55
【표 4-1】 주·야간 주차수급률 분석결과	60
【표 4-2】 행정동별 주차수급률 분석	61
【표 4-3】 주간 분석지표별 우선순위 상세분석 - 1	63
【표 4-4】 주간 분석지표별 우선순위 상세분석 - 2	64
【표 4-5】 야간 분석지표별 우선순위 상세분석 - 1	65
【표 4-6】 야간 분석지표별 우선순위 상세분석 - 2	66
【표 4-7】 블럭별 주차시설 공급 현황	67
【표 5-1】 서구 주차정책목표 설정	79
【표 5-2】 주차정책의 목표	80
【표 5-3】 인천시 주차정책의 목표	80
【표 5-4】 주차환경개선 기본방안	80
【표 5-5】 기계화 수행내역 검토	81
【표 5-6】 기계화 노외주차장 확충 계획 수행내역 검토	82

【표 5-7】	기계획 노상주차장 확충 수행내역 검토	83
【표 5-8】	기계획 시간제 주차허용 구간 수행내역 검토	85
【표 5-9】	기계획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수행내역 검토	86
【표 5-10】	그린파크 추진성과	87
【표 5-11】	그린파크 수행내역 검토	87
【표 5-12】	동별 주차수급률	89
【표 5-13】	동별 불법주차율	91
【표 5-14】	블럭별 주차면 공급 검토	92
【표 5-15】	동별 주차면 미확보 건물	93
【표 5-16】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조사	94
【표 5-17】	서구 그린파크 시행현황	96
【표 5-18】	2019년 세부 추진실적	96
【표 5-19】	서구 주차환경 문제점 종합	97
【표 5-20】	주차환경개선의 부문별 역할 정립	98
【표 5-21】	개발계획별 노외주차장 확보 가능면수 검토(미반영)	100
【표 5-22】	노외주차장 확보 가능면수 검토(목표연도 내)	102
【표 5-23】	주차시설 현황 유지 시 주차수급률 분석(2026년)	103
【표 5-24】	주차시설 공급 시 주차수급률 분석(2026년)	104
【표 5-25】	주차시설 공급 시 주차수급 분석결과 비교	105
【표 5-26】	조사대상 블럭내 학교시설 현황	106
【표 5-27】	조사대상 블럭내 동별 학교시설 현황	106
【표 5-28】	타지자체 학교주차장 개방사업 사례	108
【표 5-29】	학교주차장 개방사업 지원조례(안)	109
【표 5-30】	민간위탁 주차공유사업의 개요	110
【표 5-31】	민간업체 정보제공 사례	111
【표 5-32】	서구 주차장 설치 보조 관련 법규	112
【표 5-33】	타지자체 그린파크 참여율 증대 방안 제시	113
【표 5-3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114
【표 5-35】	서구 경사진[노상]주차장 안전강화 계획 개요	115
【표 5-36】	서울시 요금인상에 따른 주차수요 저감효과	117
【표 5-37】	주차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관련 규정 신설(안)	120
【표 5-38】	주차환경개선지구 관련규정 신설(안)	121
【표 5-39】	주차장 설치 보조 변경(안)	122
【표 5-40】	공영주차장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신설(안)	123
【표 5-41】	인천시 조례 현황 - 주거시설	124
【표 5-42】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변경(안)	125
【표 5-43】	단지조성사업 노외주차장 확보기준 변경(안)	126
【표 6-1】	주차환경개선지구관련 규정 신설(안)	129
【표 6-2】	주간 분석지표별 우선순위	134
【표 6-3】	야간 분석지표별 우선순위	134
【표 6-4】	시범사업 시행시기 검토	141
【표 6-5】	주차환경개선지구의 관리계획	142

그림 목 차

【그림 1-1】 공간적 범위	4
【그림 1-2】 공간적 범위	5
【그림 2-1】 서구 행정구역도	22
【그림 2-2】 서구 인구 및 세대수 증감 추이	23
【그림 2-3】 공간적 범위	24
【그림 2-4】 서구 행정동별 인구밀도	25
【그림 2-5】 인천시/서구 자동차 등록대수 증감 추이	26
【그림 2-6】 인천시/서구 자동차 등록대수 증감 추이	28
【그림 2-7】 주차장 유형별 증감 추이	29
【그림 3-1】 주차시설조사 어플리케이션 입력예시	35
【그림 3-2】 주차시설조사 어플리케이션 입력예시	36
【그림 3-3】 조사구역 설정 예시	39
【그림 3-4】 공간적 범위	40
【그림 3-5】 행정동별 주차시설현황 조사결과	43
【그림 3-6】 주야간 불법 주차율	56
【그림 4-1】 주·야간 주차수급률	62
【그림 4-2】 행정동별-조사블럭별 주차수급률 - 주간	75
【그림 4-3】 행정동별-조사블럭별 주차수급률 - 야간	76
【그림 5-1】 노외주차장 확충 현황 조사결과	82
【그림 5-2】 노상주차장 확충계획 수행내역 조사결과	84
【그림 5-3】 야간박차 허용구간 현황 조사결과	85
【그림 5-4】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수행성과(신현교회)	86
【그림 5-5】 서구 관내 주차수급률 저하지역	90
【그림 5-6】 서구 관내 불합리한 주차면 설치 현황	95
【그림 5-7】 서구 개발계획 위치도	101
【그림 5-8】 서구 관내 학교시설 위치도	107
【그림 6-1】 주차환경개선지구 대상 블럭 선정	133
【그림 6-2】 동별 주차시설 공급 검토안 - 검암경서동, 가좌1동	135
【그림 6-3】 동별 주차시설 공급 검토안 - 가좌3동, 검단동	136
【그림 6-4】 동별 주차시설 공급 검토안 - 가정1동, 석남1동	137
【그림 6-5】 동별 주차시설 공급 검토안 - 가좌4동, 신현원창동	138
【그림 6-6】 동별 주차시설 공급 검토안 - 석남3동, 석남2동	139
【그림 6-7】 동별 주차시설 공급 검토안 - 연희동	140

제 1 장 서론

1.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2 과업의 범위

1.3 과업의 수행과정

1.4 관련법규 검토

제1장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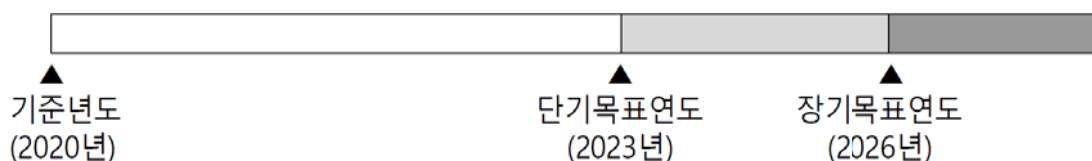
1.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주차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자동차의 증가와 활발한 경제활동 등으로 통행단에서 발생하는 주차수요와 주차공급의 불균형이 도심과 주거지의 주차문제를 심화시키고 있고, 불법 주차와 교통혼잡 등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장법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3년마다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0년 현재 인천시 8개구, 2개군에서 수급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인천 서구에서는 「2017년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금회 차기계획의 수립년도가 도래하여 본 과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 본 과업의 목적은 인천 서구의 주차실태(주차시설현황 및 주차이용실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확하고 실증적인 자료를 확보하며,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조사결과를 주차환경 개선수립 및 구민들에게 다양한 주차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주차관리 전산시스템 등록 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1.2 과업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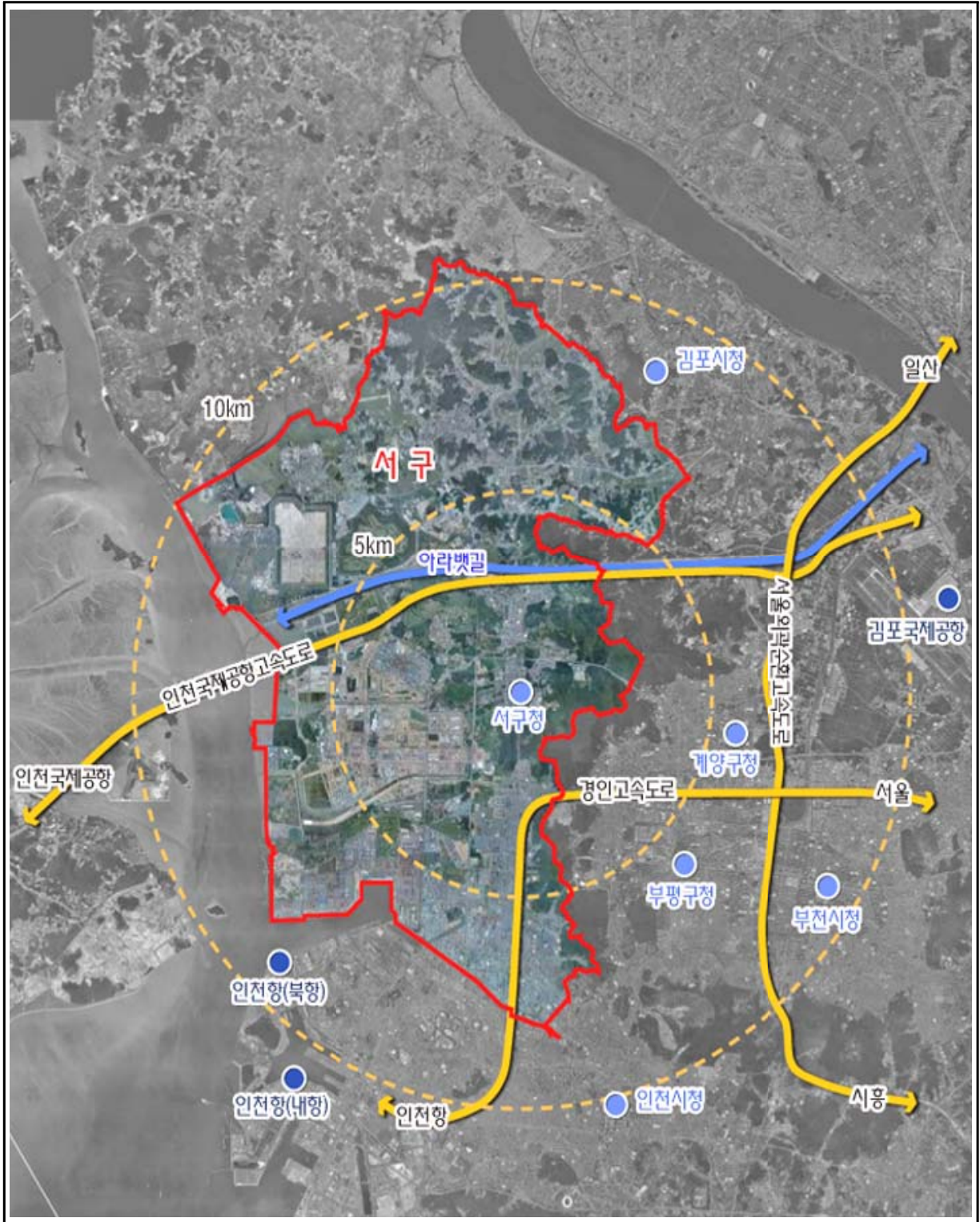
1.2.1 시간적 범위

- 조사 기준년도 : 2020년
- 통계자료 기준년도 : 2018년/2020년
- 목표연도 : 2023년(기준년도 +3년), 2026년(기준년도 +6년)



1.2.2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구역 전체
 - 면적 117.1km² / 행정구역, 22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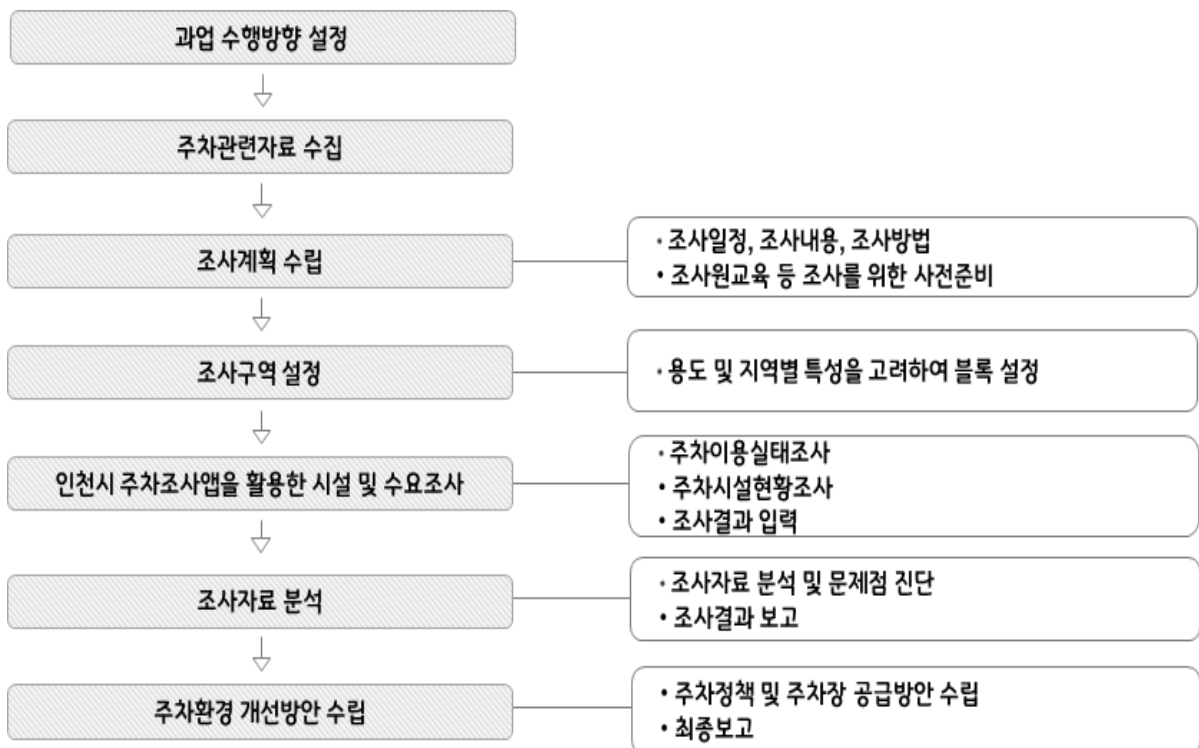
[그림 1-1] 공간적 범위

1.2.3 내용적 범위

【표 1-1】 과업의 내용적 범위

구분	내용
주차실태조사	✓ 조사구역 설정 ✓ 노상·노외·부설주차장 시설현황조사 ✓ 경사진도로 노상주차면 조사 ✓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는 모든 차량(적·불법) 조사
조사자료입력	✓ 인천시 주차실태 조사 입력 프로그램 현장조사 자료 입력
조사자료분석	✓ 도시 일반현황 및 주차시설 현황 분석 -행정구역, 토지이용, 인구 및 세대수,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 -주차시설 현황, 주차수급률, 과부족면수, 불법주차율
기수행과업의 수행평가	✓ 전차수 수행과업의 수행성과 분석
주차환경개선계획 방향제시	✓ 서구 주차환경개선계획의 기본방향제시 ✓ 주차환경개선지구 구역 선정(안) 제시

1.3 과업의 수행과정



【그림 1-2】 공간적 범위

1.4 관련법규 검토

1.4.1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관련 법규

주차장법 제3조(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p>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용도지역·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이하 "조사구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需給) 실태를 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p> <p>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p> <p>③ 수급실태조사와 안전관리실태조사의 방법·주기 및 조사구역 설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p>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p>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구역 설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p> <p>가. 사각형 또는 삼각형 형태로 조사구역을 설정하되 조사구역 바깥 경계선의 최대거리가 300미터를 넘지 않도록 할 것</p> <p>나. 각 조사구역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경계로 구분할 것</p> <p>다. 아파트단지 및 단독주택단지가 섞여 있는 지역 또는 주거기능과 상업·업무기능이 섞여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시설 수급의 적정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같은 특성을 가진 지역별로 조사구역을 설정할 것</p> <p>2.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실태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 출입도로를 포함하여 주차장 전체를 조사구역으로 할 것</p> <p>② 수급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6조제3항 및 이 규칙 제6조제11호 및 제15호의 준수사항은 매년 한번 이상 점검하고 조사해야 한다.</p> <p>③ 수급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수급실태조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정된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조사와 주차시설 현황조사로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p> <p>2. 안전관리실태조사: 조사대상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p> <p>가. 법 제6조제1항·제19조 및 제19조의5에 따른 설치기준의 준수 여부</p> <p>나.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여부</p> <p>다. 법 제19조의9 및 제19조의23에 따른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이행 여부</p> <p>라. 법 제19조의2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여부</p> <p>마. 법 제19조의22제7항에 따른 권고의 이행 여부</p> <p>바. 그 밖에 주차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각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와 주차시설 현황을 대조·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에 기록(전산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입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관리한다.</p>

1.4.2 주차장 설치기준

가. 주차장의 정의

- 근거 : 주차장법 제2조
- 주차장 :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함
 - 노상주차장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 (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노외주차장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부설주차장 :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밖의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상주차장

- 근거 : 주차장법시행규칙 제4조
- 노상주차장 설치관련 기준
 -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의 주차수요와 노외주차장 또는 그 밖에 자동차의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분포되어야 함
 - 주간선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분리대나 그 밖에 도로의 부분으로서 도로교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 너비 6m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됨. 다만,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종단경사도(자동차 진행방향의 기울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4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가 구별되어 있고, 그 차도의 너비가 13미터 이상인 도로에 설치하는 경우
 -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도로로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로에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가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
 - 「도로교통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 및 같은 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

-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함
-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함
-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음

다. 노외주차장

1) 노외주차장 설치기준

- 근거 : 주차장법시행규칙 제5조
- 노외주차장의 유치권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의 토지이용 현황,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보행거리 및 보행자를 위한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함
-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유치권 안에서의 전반적인 주차수요와 이미 설치되었거나 장래에 설치할 계획인 자동차 주차에 사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로 하여야 함
-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지역은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이어야 함. 다만,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으로서 주차장이 설치되어도 해당 하천 및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지역
 -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지역
 - 주차장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지역
 -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히 주차장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은 주차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될 수 있으면 공원·광장·큰길가·도시철도역 및 상가인접지역 등에 접하여 배치하여야 함
-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노외주차장의 차로의 노면이 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부분을 말함. 이하 같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

- 「도로교통법」 제3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5호(건널목의 가장자리만 해당함) 및 같은 법 제3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
- 횡단보도(육교 및 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로부터 5미터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
- 너비 4미터 미만의 도로(주차대수 200대 이상인 경우에는 너비 10미터 미만의 도로)와 종단 기울기가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
-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전용시설 등의 출입구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
- 노외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교통에 미치는 지장이 적은 도로에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설치하여야 함. 다만, 보행자의 교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각각 따로 설치하여야 함. 다만, 출입구의 너비의 합이 5.5미터 이상으로서 출구와 입구가 차선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함께 설치할 수 있음
-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함

2) 노외주차장 설치제한

- 근거 : 주차장법 제12조, 주차장법시행규칙 제7조의 2
- 노외주차장 설치제한 기준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시시 또는 시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음.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법 제12조제6항 또는 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주택 및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함
- 자동차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

라. 부설주차장

- 근거 : 주차장법 제19조,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음.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오지·벽지·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 단독주택·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 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표 1-2】 별표 1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 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 원·요양 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 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 식당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표 계속】

시설물	설치기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 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1.4.3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주차장 설치관련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p> <p>제7조의2 (하역주차구간의 지정) ①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은 노상주차장 중에서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을 참작하여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p> <p style="padding-left: 20px;">② 제1항의 하역주차구간에서는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p> <p style="padding-left: 20px;">③ 제2항에 따라 하역을 위한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별표4의 주차장이 용안내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간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제한구역·제한시간·제한사유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p> <p>제12조 (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7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p> <p style="padding-left: 20px;">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국토교통부령"이라 한다) 제3조를 준용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p> <p>제12조의2(임산부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임산부의 주차 편의를 위해 임산부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p> <p style="padding-left: 20px;">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일반형, 그 밖의 형식의 경우는 확장형으로 한다.</p> <p>제12조의3(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시장은 국토교통부령 제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에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서 규정하는 승차정원이 16인 이상인 승합자동차가 주차되도록 하여야 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② 제1항에 따른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에는 제7조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식별이 용이하도록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p> <p>제12조의4 (영유아 및 쌍둥이 자녀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쌍둥이 등 2명 이상의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자녀를 동승한 보호자의 주차편의를 위해 전용주차구획을 설치 할 수 있다.</p> <p style="padding-left: 20px;">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일반형, 그 밖의 형식의 경우는 확장형으로 한다.</p> <p>제14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p> <p style="padding-left: 40px;">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p> <p style="padding-left: 40px;">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p> <p style="padding-left: 20px;">② 시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4퍼센트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 및 기준은 제20조를 준용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p>

주차장 설치관련

제14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 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km)/8)
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14조의3(단지조성사업 등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공급 및 설치·관리) ① 법 제12조의3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등에 설치되는 노외주차장 부지의 경우 실시계획(사업시행)인가 이전에 무상귀속 및 조성원가 공급 등에 대하여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단지조성사업 등의 개발사업시행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에 따라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시설유지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단지조성사업 등의 교통처리계획 수립시 블록별 장래 주차수급분석 결과를 예측하여 주차시설 공급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블록 설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구역을 준용한다.

제15조 (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건설교통부령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 제6조제4항에서 정한 시설로 하고, 주차장 총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40퍼센트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의 주차수요 및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5퍼센트의 비율의 범위 내에서 군·구·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임산부 전용주차구획에 대하여는 제12조의2를 준용한다.

④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라 지정된 관리지역을 말한다.

제20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등) 영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설치장소 및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를 준용한다.

제21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보조) 시장은 군수·구청장이 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려는 자에게 설치 또는 시설개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고자 할 경우 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부터 그 보조금액을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군수·구청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주차장 설치관련

제21조의2 (용자 등) ① 시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요건을 갖추어 용자를 신청할 경우 자격을 심사하여 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용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용자의 범위, 신청자의 자격, 용자의 방법 및 상환조건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의3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 ① 인천광역시청 및 소속기관의 청사(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서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범위 안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주차요금, 이용시간, 이용대상차량, 기타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자가 별도로 정한다.

제22조(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 법 제21조의2제2항제8호에 따른 비율은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의 범위내로 하며, 보통세 징수액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목적재원으로 운영되는 것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23조 (권한의 위임) ① 법 제7조제1항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위임내용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은 제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폭 20미터 초과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 제7조·제8조·제8조의2·제9조·제10조·제12조·제13조·제14조에 따른 시장의 권한 중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사무에 관한 권한은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

[별표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5조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지역
1. 위락시설	시설면적 70㎡당 1대	시설면적 100㎡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시설면적 100㎡당 1대	시설면적 150㎡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34㎡당 1대 다만, 생활숙박시설은 호실당 1대로 한다.	시설면적 200㎡당 1대
3의2.「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내 신축하는 제3호 시설물(숙박시설 제외)에 한한다.	시설면적 100㎡당 1대	시설면적 100㎡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는 1대, 시설면적 150㎡ 초과인 경우는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 당 1대를 더한 대수[1 + {(시설면적 - 150㎡)/100㎡}]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는 1대, 시설면적 150㎡ 초과인 경우는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 당 1대를 더한 대수[1 + {(시설면적 - 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은 포함하고, 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1대 이상). 이 경우 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르며, 다가구 및 오피스텔의 경우 1가구(호실)를 1세대로 본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1대 이상). 이 경우 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르며, 다가구 및 오피스텔의 경우 1가구(호실)를 1세대로 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15대 골프연습장: 0.7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정원 10명당 1대 관람장: 정원 70명당 1대	골프장: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 공장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	시설면적 350㎡당 1대
8.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	시설면적 400㎡당 1대
9. 학생용 기숙사	시설면적 350㎡당 1대	시설면적 400㎡당 1대
10.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당 1대	시설면적 300㎡당 1대

1.4.4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주차장 설치관련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p> <p>제9조(하역주차구간의 지정)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은 노상주차장 중에서 해당지역의 교통여건을 참작하여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p> <p style="padding-left: 20px;">② 제1항의 하역주차구간에서는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p> <p style="padding-left: 20px;">③ 제2항에 따라 하역을 위한 자동차 외의 자동차 주차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간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제한구역·제한시간·제한사유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p> <p>제12조(노상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는 노상주차장은 도로폭 20미터 미만의 도로로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로폭 20미터 초과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제12조의2(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국토교통부령"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가 도로에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설치 시 주차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차구획별로 월 단위 또는 분기 단위로 주차대상 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 style="padding-left: 20px;">②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 대상차량, 운영시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③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 설치구간에는 별표 4의 주차장이용안내 표지판에 준한 전용주차장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④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에서의 주차요금은 별표 1의 급지 구분에 따른 4급지 해당요금을 적용한다.</p> <p>제14조(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종류 등) 국토교통부령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 제6조제4항에서 정한 시설로 하고, 주차장 총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35퍼센트로 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p> <p>제15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7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p> <p style="padding-left: 20px;">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국토교통부령 제3조를 준용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p> <p style="padding-left: 20px;">④ 너비 6미터 미만 도로에도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써 구청장이 교통정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p> <p>제16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주차장 설치관련

②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4퍼센트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④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할 것
2. 주차장 바닥면에는 교통약자 전용표시를 할 것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제17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등의 전용주차의 설치기준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0조를 준용하고, 전용 표지는 별표 10과 같다.

제18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2. 해당 시설물이 소재하는 동(행정동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와 같다) 및 해당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인천광역시 관할 동

제19조의3(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 생활숙박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을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을 법정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22조(용자 등)

①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요건을 갖추어 용자를 신청할 경우 자격을 심사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의 범위에서 주차장설치비용의 일부를 용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용자의 범위, 신청자의 자격, 용자의 방법 및 상환조건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의2(보조의 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자가 기존의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또는 연립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2.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변경·보안시설 등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
3. 학교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변경·보안시설 등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 (단, 20면 이상)
4.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제22조의3(보조금의 지원방법) ①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절차, 보조한도 및 그 밖의 보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보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또는 그 밖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4.5 인천광역시 서구 공영주차장 요금표

- 서구 관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아래와 같다.

【표 1-3】 공영주차장 요금표(제4조제1항 관련)

구분	1회주차권		전일	월정기		
	최초30분	이후 15분		주간	야간	주·야간
1급지	1,000원	500원	10,000원			100,000원
2급지	600원	300원	6,000원	60,000원	30,000원	70,000원
3급지	400원	200원	4,000원			40,000원
4급지	300원	150원	3,000원			30,000원

- 주차요금표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 주차장 운영에 따른 적용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되 주차장별 이용자 특성 등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주간 : 09:00부터 19:00까지
 - 야간 : 1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 전일주차권 및 월정기주차권은 노외주차장에 한하되,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지역실정 및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위임, 위탁 시)가 따로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급지 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난을 참작하여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위임, 위탁 시)가 정한다.
- 노외주차장과 전일주차가 허용되는 노상주차장에 한하여 5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에는 전일요금으로 징수한다.
- 1구획은 국토교통부령 제3조에 따른 표준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 구획수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 주차요금의 특례
 -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위임, 위탁 시)는 인근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기요금을 기준으로 할증 또는 할인할 수 있으며, 할증 및 할인 요금은 각 기준요금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월정기주차권의 경우, 박차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차장 인근 거주자로 확인된 경우와 월 10대 이상의 다수 계약업소 등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3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급지를 구분하지 않고 1급지 전일주차권 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회당 정액요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 노외주차장의 야간시간 이용요금은 50퍼센트 할인 금액으로 한다.
 - 주차요금을 서구지역화폐로 징수할 경우에는 5퍼센트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서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구청사의 월 정기주차를 제한함으로써 인근 공영주차장을 대체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다.

제 2 장 서구일반현황

2.1 도시일반현황

2.2 인구 및 세대수현황

2.3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

2.4 주차시설 현황

제2장 서구일반현황

2.1 도시일반현황

2.1.1 도시일반현황

- 통계연보 기준 서구의 총 면적은 117.1km²이며, 인천시 전체 면적의 11.0%임.
- 인구는 55.1만명으로, 인천시 전체의 18.8%임.
- 자동차 등록대수는 23.9만대로 인천시 전체의 15.2%임.

【표 2-1】 도시일반현황

구분		면적	인구	세대수	자동차 등록대수	세대당 자동차등록대수
인천광역시	8개구, 2개군	1,063.1km ²	2,930,164인	1,213,201세대	1,577,607대	1.30대/세대
서구	22개동	117.1km ²	551,311인	211,847세대	239,617대	1.13대/세대
서구 비율		11.0%	18.8%	17.5%	15.2%	-

2.1.2 행정구역 현황

- 인천서구는 21개 법정동/22개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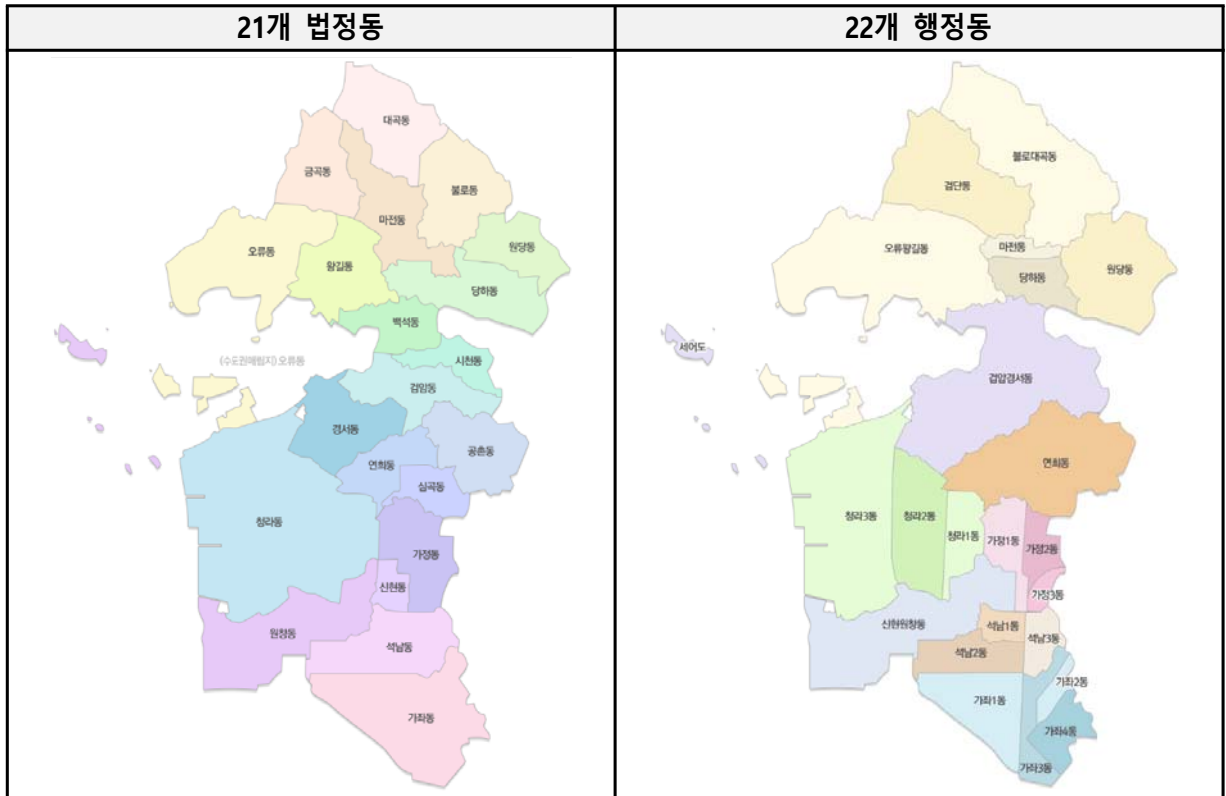
【표 2-2】 행정구역현황

구분	동명칭	개소
행정동	✓ 불로대곡동, 검단동, 오류왕길동, 마전동, 당하동, 원당동, 검암경서동, 청라1~3동, 가정1~3동, 신현원창동, 석남1~3동, 가좌1~4동	22개
법정동	✓ 대곡동, 금곡동, 마전동, 불로동, 오류동, 왕길동, 백석동, 당하동, 원당동, 경서동, 검암동, 시천동, 연희동, 심곡동, 공촌동, 청라동, 원창동, 신현동, 가정동, 석남동, 가좌동	21개

- 검암경서동이 16.7km²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오류왕길동, 불로대곡동, 청라3동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2-3】 행정동별 면적

행정동	면적	행정동	면적	행정동	면적	행정동	면적
가정3동	0.6km ²	가좌4동	1.9km ²	가좌1동	4.3km ²	청라3동	10.5km ²
가좌2동	0.7km ²	가좌3동	1.9km ²	청라2동	4.9km ²	불로대곡동	10.8km ²
석남1동	1.1km ²	청라1동	2.3km ²	원당동	6.6km ²	오류왕길동	15.7km ²
마전동	1.1km ²	당하동	2.4km ²	검단동	8.1km ²	검암경서동	16.7km ²
가정2동	1.3km ²	가정1동	2.6km ²	연희동	9.5km ²	합계	117.1km ²
석남3동	1.5km ²	석남2동	2.7km ²	신현원창동	9.8km 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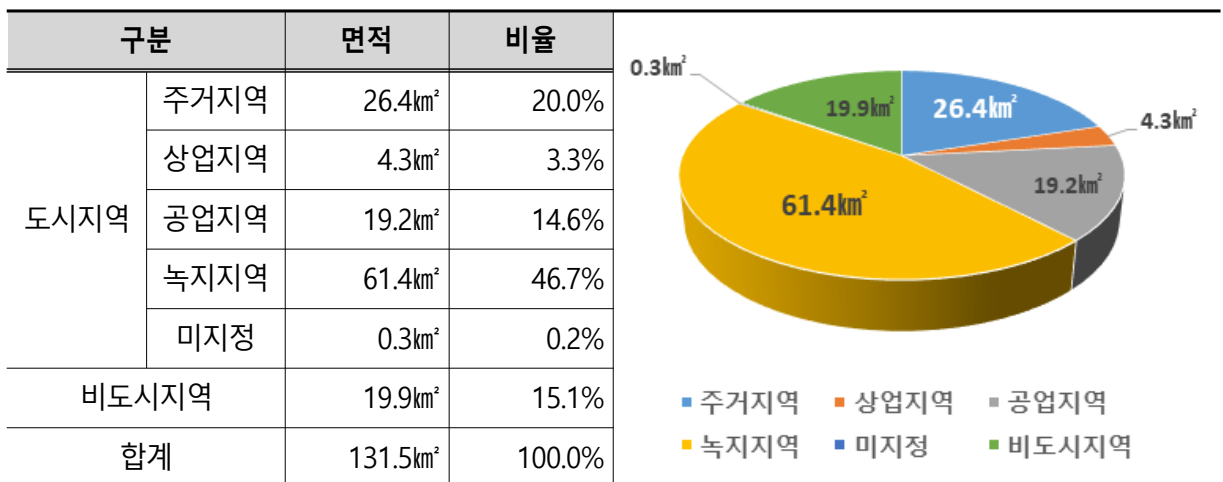


【그림 2-1】 서구 행정구역도

2.1.3 서구 용도지역 현황

- 서구의 용도지역현황을 살펴보면 녹지지역 61.4km²(46.7%), 주거지역 26.4km²(20.0%), 공업지역 19.2km²(14.6%)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 서구는 주거·공업지역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녹지지역과 비도시 지역의 면적이 넓어 개발 가능용지는 충분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표 2-4】 서구 용도지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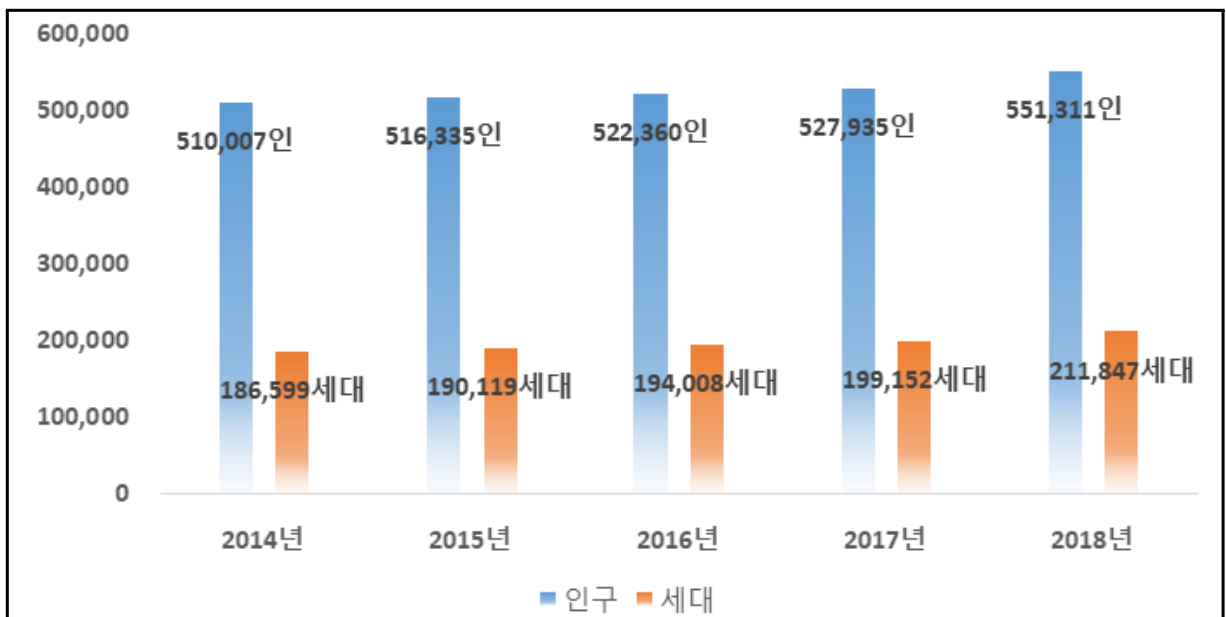
2.2 인구 및 세대수현황

2.2.1 연도별 인구 및 세대수 추이

- 통계연보 기준(2018년) 서구의 인구수는 55.1만인이며, 세대수는 21.1만세대로 각각 연평균 1.97%, 3.22%의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 이는 동기간 인천시 인구 및 세대수의 증가율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표 2-5】 연도별 인구 및 세대수 추이

구분	인구	세대	세대당 인구	
인천시	2014년	2,957,931인	1,136,280세대	2.60인/세대
	2015년	2,983,484인	1,154,004세대	2.59인/세대
	2016년	3,002,172인	1,171,399세대	2.56인/세대
	2017년	3,011,138인	1,188,917세대	2.53인/세대
	2018년	2,930,164인	1,213,201세대	2.42인/세대
	증가율	-0.24%	1.65%	-1.86%
서구	2014년	510,007인	186,599세대	2.73인/세대
	2015년	516,335인	190,119세대	2.72인/세대
	2016년	522,360인	194,008세대	2.69인/세대
	2017년	527,935인	199,152세대	2.65인/세대
	2018년	551,311인	211,847세대	2.60인/세대
	증가율	1.97%	3.22%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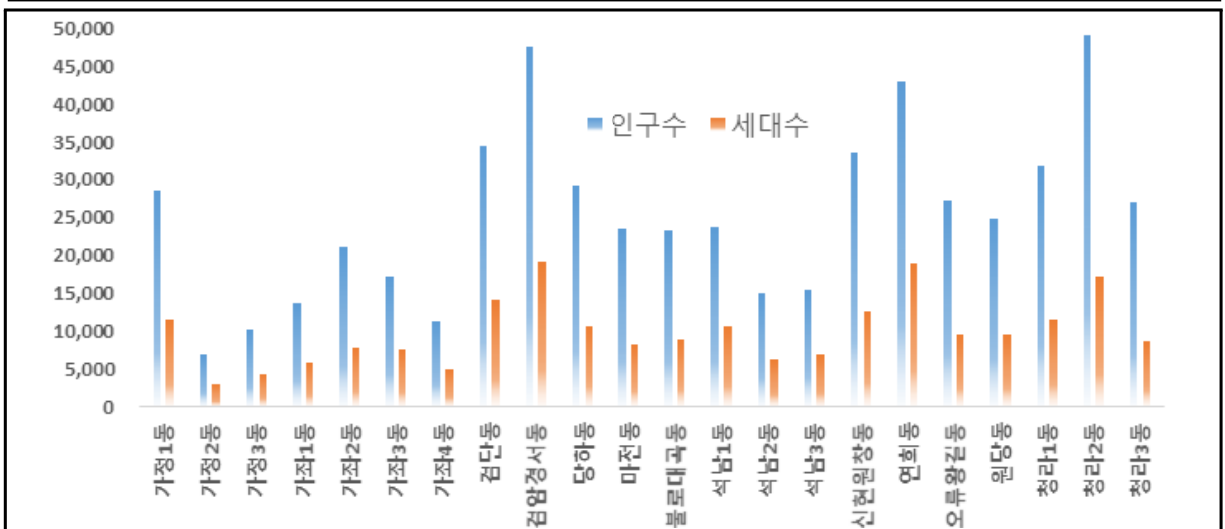
【그림 2-2】 서구 인구 및 세대수 증감 추이

2.2.2 행정동별 인구 및 세대수 분포

- 서구 행정동별 인구 및 세대수 분포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6】 행정동별 인구 및 세대수 분포

행정동	인구수	비율	세대수	비율	세대당인구수
가정1동	28,591인	5.1%	11,525세대	5.3%	2.48인/세대
가정2동	6,832인	1.2%	2,975세대	1.4%	2.30인/세대
가정3동	10,223인	1.8%	4,327세대	2.0%	2.36인/세대
가좌1동	13,605인	2.4%	5,696세대	2.6%	2.39인/세대
가좌2동	21,144인	3.8%	7,772세대	3.6%	2.72인/세대
가좌3동	17,085인	3.1%	7,527세대	3.5%	2.27인/세대
가좌4동	11,280인	2.0%	4,966세대	2.3%	2.27인/세대
검단동	34,471인	6.2%	14,182세대	6.5%	2.43인/세대
검암경서동	47,610인	8.5%	19,178세대	8.8%	2.48인/세대
당하동	29,100인	5.2%	10,685세대	4.9%	2.72인/세대
마전동	23,473인	4.2%	8,252세대	3.8%	2.84인/세대
블로대곡동	23,348인	4.2%	8,830세대	4.1%	2.64인/세대
석남1동	23,671인	4.2%	10,717세대	4.9%	2.21인/세대
석남2동	14,897인	2.7%	6,337세대	2.9%	2.35인/세대
석남3동	15,446인	2.8%	6,830세대	3.1%	2.26인/세대
신현원창동	33,538인	6.0%	12,681세대	5.8%	2.64인/세대
연희동	43,031인	7.7%	18,912세대	8.7%	2.28인/세대
오류왕길동	27,221인	4.9%	9,573세대	4.4%	2.84인/세대
원당동	24,879인	4.5%	9,562세대	4.4%	2.60인/세대
청라1동	31,765인	5.7%	11,420세대	5.2%	2.78인/세대
청라2동	49,150인	8.8%	17,234세대	7.9%	2.85인/세대
청라3동	27,055인	4.9%	8,706세대	4.0%	3.11인/세대
합계	557,415인	100.0%	217,887세대	100.0%	2.56인/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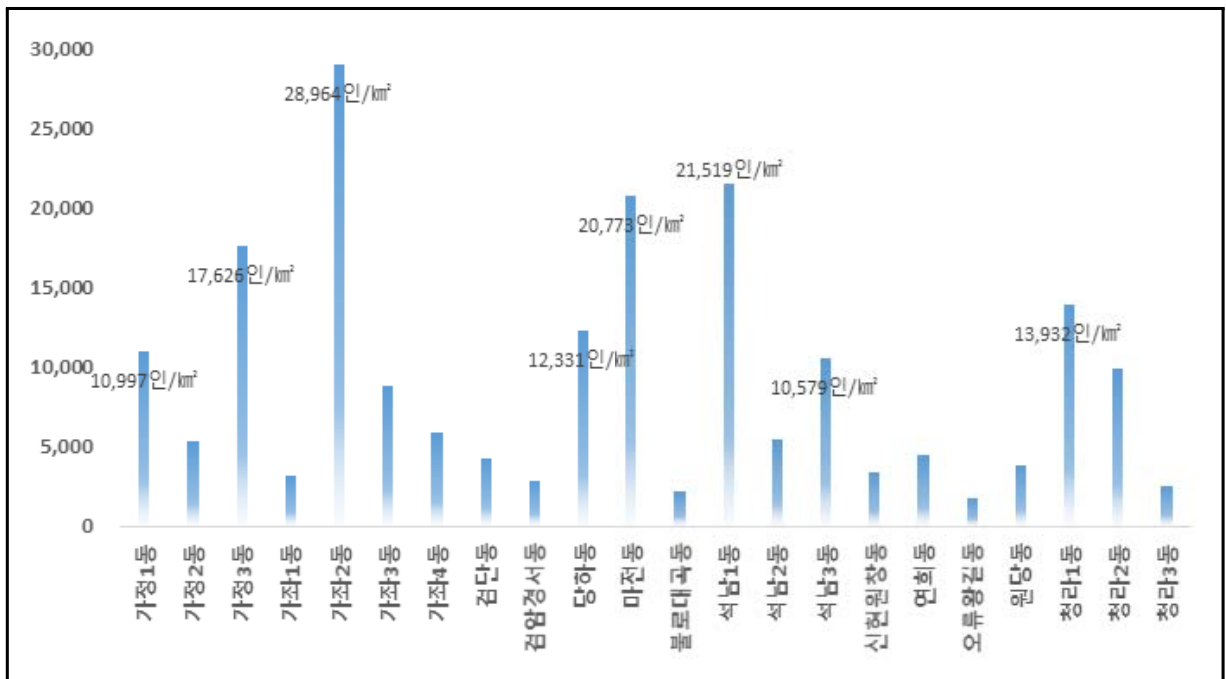
【그림 2-3】 공간적 범위

2.2.3 행정동별 인구밀도

- 서구 행정동별 인구밀도는 다음과 같다.

【표 2-7】 서구 행정동별 인구밀도

행정동	인구수	면적	밀도	행정동	인구수	면적	밀도
가정1동	28,591인	2.6km ²	10,997인/km ²	불로대곡동	23,348인	10.8km ²	2,164인/km ²
가정2동	6,832인	1.3km ²	5,296인/km ²	석남1동	23,671인	1.1km ²	21,519인/km ²
가정3동	10,223인	0.6km ²	17,626인/km ²	석남2동	14,897인	2.7km ²	5,497인/km ²
가좌1동	13,605인	4.3km ²	3,135인/km ²	석남3동	15,446인	1.5km ²	10,579인/km ²
가좌2동	21,144인	0.7km ²	28,964인/km ²	신현원창동	33,538인	9.8km ²	3,415인/km ²
가좌3동	17,085인	1.9km ²	8,807인/km ²	연희동	43,031인	9.5km ²	4,530인/km ²
가좌4동	11,280인	1.9km ²	5,906인/km ²	오류왕길동	27,221인	15.7km ²	1,729인/km ²
검단동	34,471인	8.1km ²	4,261인/km ²	원당동	24,879인	6.6km ²	3,775인/km ²
검암경서동	47,610인	16.7km ²	2,853인/km ²	청라1동	31,765인	2.3km ²	13,932인/km ²
당하동	29,100인	2.4km ²	12,331인/km ²	청라2동	49,150인	4.9km ²	9,949인/km ²
마전동	23,473인	1.1km ²	20,773인/km ²	청라3동	27,055인	10.5km ²	2,579인/km ²



【그림 2-4】 서구 행정동별 인구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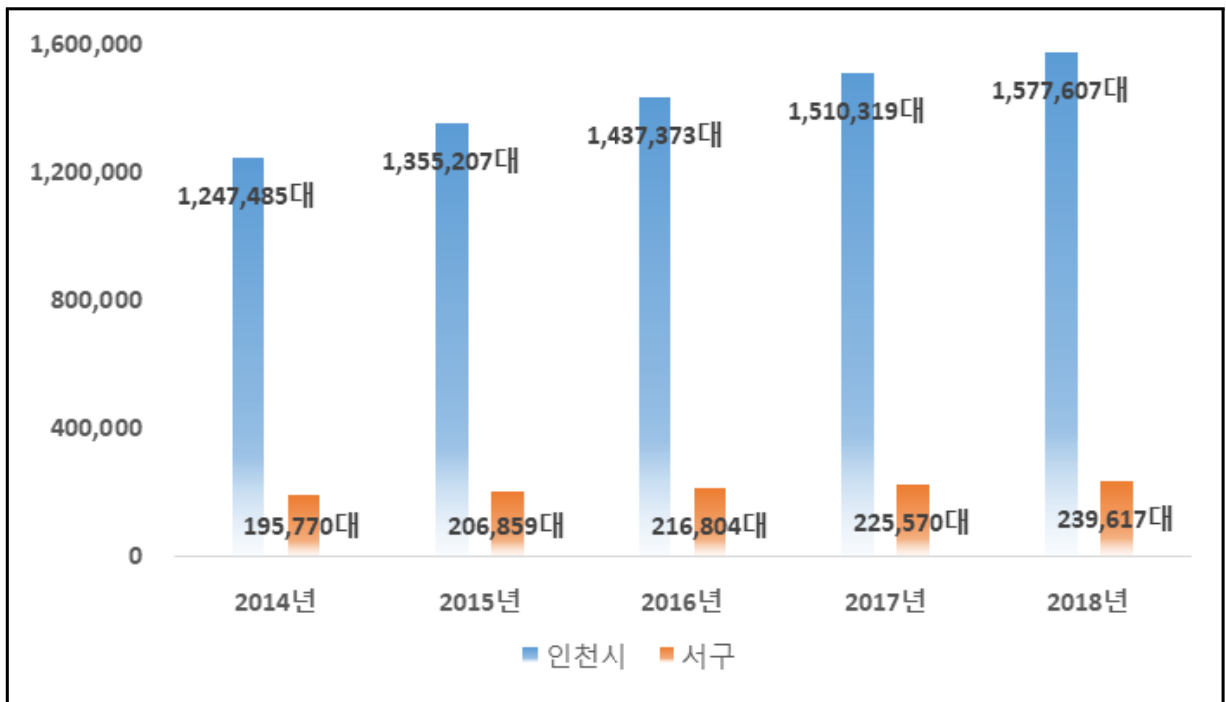
2.3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

2.3.1 연도별 자동차 등록대수 추이

- 서구의 자동차등록대수는 23.9만대로 연평균 5.18%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세대당 자동차 등록대수는 1.13대로 이는 동기간 인천시 전체의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율 및 세대당 자동차 보유대수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표 2-8】 연도별 인구 및 세대수 추이

구분	인천시			서구		
	자동차 등록대수	세대수	세대당 자동차등록	자동차 등록대수	세대수	세대당 자동차등록
2014년	1,247,485대	1,136,280세대	1.10대/세대	195,770대	186,599세대	1.05대/세대
2015년	1,355,207대	1,154,004세대	1.17대/세대	206,859대	190,119세대	1.09대/세대
2016년	1,437,373대	1,171,399세대	1.23대/세대	216,804대	194,008세대	1.12대/세대
2017년	1,510,319대	1,188,917세대	1.27대/세대	225,570대	199,152세대	1.13대/세대
2018년	1,577,607대	1,213,201세대	1.30대/세대	239,617대	211,847세대	1.13대/세대
증가율	6.05%	1.65%	4.32%	5.18%	3.22%	1.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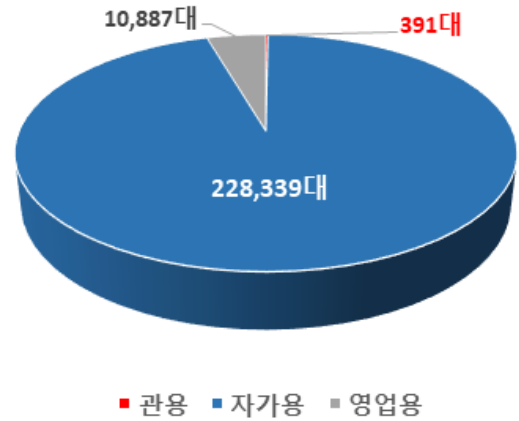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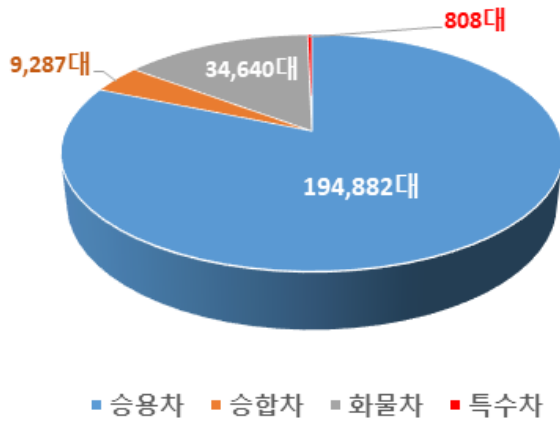
【그림 2-5】 인천시/서구 자동차 등록대수 증감 추이

2.3.2 차종별 자동차 등록대수 추이

- 서구의 자동차등록대수는 23.9만대로 연평균 5.18%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세대당 자동차 등록대수는 1.13대로 이는 동기간 인천시 전체의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율 및 세대당 자동차 보유대수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표 2-9】 연도별 자동차 등록대수 추이

구분	차종별				계	용도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관용	자가용	영업용	계
2014년	154,462대	9,828대	30,870대	610대	195,770대	334대	185,476대	9,960대	195,770대
2015년	164,592대	9,721대	31,849대	697대	206,859대	342대	195,920대	10,597대	206,859대
2016년	174,088대	9,604대	32,390대	722대	216,804대	345대	205,931대	10,528대	216,804대
2017년	180,903대	9,419대	34,479대	769대	225,570대	378대	214,307대	10,885대	225,570대
2018년	194,882대	9,287대	34,640대	808대	239,617대	391대	228,339대	10,887대	239,617대
증가율	5.98%	-1.41%	2.92%	7.28%	5.18%	4.02%	5.34%	2.25%	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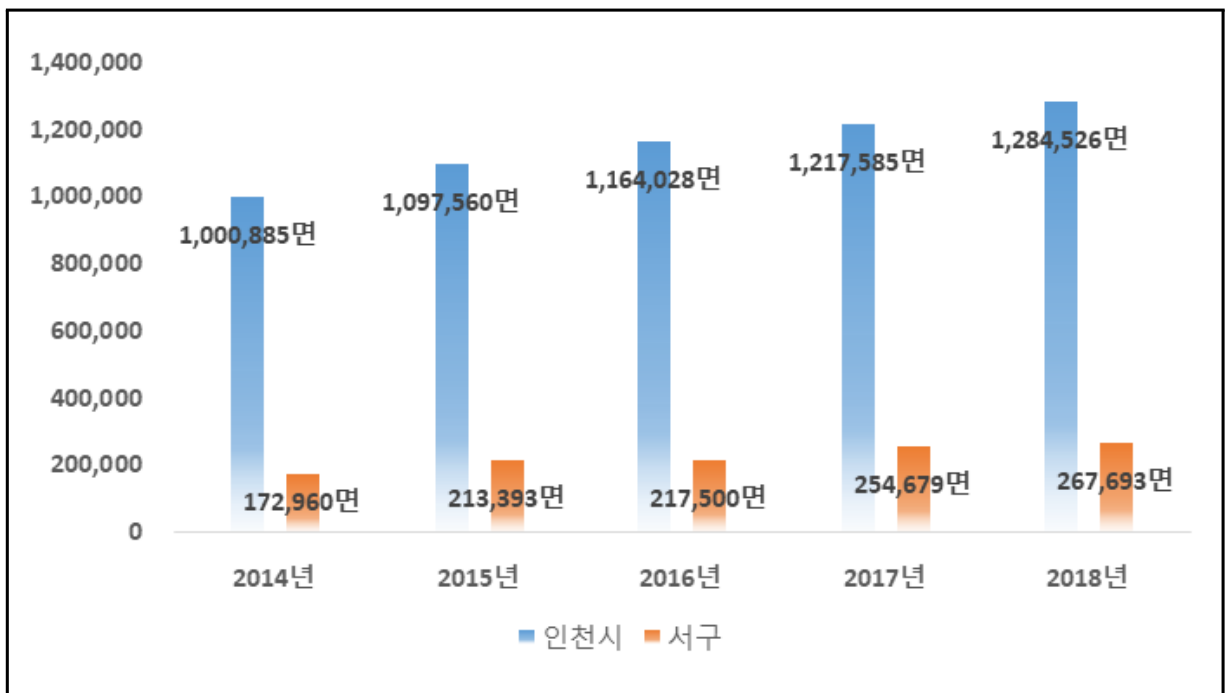
2.4 주차시설 현황

2.4.1 연도별 주차시설 추이

- 통계연보 기준 최근 5년간 서구의 주차면수는 2014년 17.3만면 → 2018년 26.8만면으로 연평균 증가율 11.5%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이는 동기간 인천시 전체 주차면 증가율 6.4%를 상회하고 있다.

【표 2-10】 연도별 주차시설 추이

구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합계
인천시	2014년	66,194면	48,764면	885,927면	1,000,885면
	2015년	61,993면	48,563면	987,004면	1,097,560면
	2016년	63,619면	42,915면	1,057,494면	1,164,028면
	2017년	64,234면	45,259면	1,108,092면	1,217,585면
	2018년	63,686면	47,130면	1,173,710면	1,284,526면
	증가율	-1.0%	-0.8%	7.3%	6.4%
서구	2014년	8,735면	9,993면	154,232면	172,960면
	2015년	9,392면	9,821면	194,180면	213,393면
	2016년	9,392면	10,201면	197,907면	217,500면
	2017년	6,982면	10,717면	236,980면	254,679면
	2018년	7,942면	6,327면	253,424면	267,693면
	증가율	-2.4%	-10.8%	13.2%	11.5%



【그림 2-6】 인천시/서구 자동차 등록대수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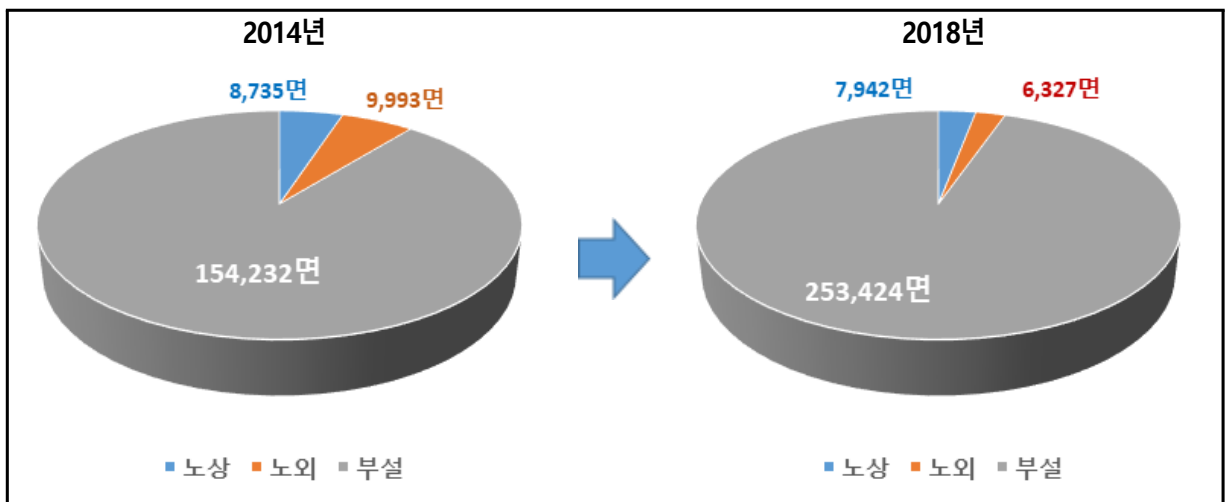
2.4.2 주차장 유형별 증감 추이

- 통계연보 기준 서구의 주차장 유형별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주차면수는 2014년 17.3만면 → 2018년 26.8만면으로 증가하였다.
- 노상주차장은 8,735면 → 7,942면으로, 비율은 5.1% → 3.0%로 감소하였다.
- 노외주차장은 9,993면 → 6,327면, 비율은 5.8% → 2.4%로 감소 하였다.
- 부설주차장은 154,232면 → 253,424면, 비율은 89.2% → 94.7%로 증가하였다.

-노상주차 및 노외주차의 감소는 구도심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삭제 및 폐지

【표 2-11】 주차장 유형별 증감 추이

구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합계	
	면수	비율	면수	비율	면수	비율	면수	비율
2014년	8,735면	5.1%	9,993면	5.8%	154,232면	89.2%	172,960면	100.0%
2015년	9,392면	4.4%	9,821면	4.6%	194,180면	91.0%	213,393면	100.0%
2016년	9,392면	4.3%	10,201면	4.7%	197,907면	91.0%	217,500면	100.0%
2017년	6,982면	2.7%	10,717면	4.2%	236,980면	93.1%	254,679면	100.0%
2018년	7,942면	3.0%	6,327면	2.4%	253,424면	94.7%	267,693면	100.0%



【그림 2-7】 주차장 유형별 증감 추이

2.4.3 전기충전시설 설치현황

- 주차장법에 의거, 주차시설 조사 시 전기충전시설 및 전기차 전용주차면을 조사
- 서구 관내 전체 건축물별 전기차 충전면수와 충전시설은 조사블럭 대상내 개수보다 더 많을 수 있으나, 본 용역에서는 조사대상 블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급속충전시설의 경우 기기가 설치되어 확인이 가능하나, 콘센트를 이용한 완속충전시설은 실제적으로 조사의 어려움이 있음
- 설치 현황 조사결과, 서구 조사대상 블록내 전기차 전용 주차면수 설치 주차장은 총 39개소, 전기차 전용 주차면 157면, 충전시설 2개소 3면으로 충전시설의 설치현황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됨

【표 2-12】 전기충전시설 설치현황

건물명	전기 주차면	충전 시설	건물명	전기 주차면	충전 시설
가정3동사무소	1	N	홈플러스 인천청라점	2	N
가좌1동 주민센터	1	N	청라동 157-21	2	N
보광빌라	1	N	청라 롯데캐슬	5	N
승학로480	1	N	청라동 159-3	5	N
풍림아이원2차	2	N	청라29블럭호반베르디움	10	N
석남1동사무소	1	N	청라한양수자인	8	N
석남3동사무소	1	N	청라동문굿모닝힐	8	N
루원시티 대성베르힐	2	N	청라골드클래스	2	N
루원시티센트럴타운	2	N	청라우미린	2	N
신현동사무소	1	N	청라동 청라한내로 40	4	N
서구청제1공영주차장	2	Y	청라 동양엔파트	4	N
탁옥로50	1	N	청라반도유보라2.0	5	N
왕길동 692-5	2	N	청라 SK VIEW	4	N
호반베르디움 앤 영무예다음	11	N	청라파크자이더테라스1블럭	5	N
청라 한라비발디	6	N	청라파크자이더테라스2블럭	4	N
인천청라영종지구 홍보관	4	N	청라모아미래도	5	N
청라제일풍경채	5	N	청라센텀 대광로제비양	7	N
청라 한화 꿈에그린	5	N	청라한양수자인레이크블루	10	N
청라제일풍경채2차에듀엔파크	5	N	당하동1097-5공영주차장	1	Y
청라센트럴에일린의뜰	10	N	합계	157	3

제 3 장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3.1 조사개요

3.2 조사구역 설정

3.3 주차시설 조사결과

3.4 주차이용실태조사

제3장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3.1 조사개요

3.1.1 추진경위

- ✓ 2020.03 용역 계약 및 과업착수
- ✓ 2020.04 관련자료 수집 및 조사구역 설정
- ✓ 2020.05 인천시 주차조사업 구축관련 간담회(1차)
- ✓ 2020.06 인천시 주차조사업 구축관련 간담회(2차)
- ✓ 2020.08 조사원 모집 및 교육
- ✓ 2020.11 현장조사 완료
- ✓ 2020.12 스마트주차조사 시스템 검토
- ✓ 2021.03 조사결과 보고
- ✓ 2021.04 최종보고서 제출 및 준공예정

3.1.2 조사단계

가. 조사 관련자료 수집

- 주차장 관련자료 수집
 - 부설주차장 관리카드와 건축물 관리대장 비교를 통해 조사대상 중복 및 누락확인
 - 조사구역 설정용 도면자료 수집
 - 공영주차장 관리자료 수집

나. 조사어플리케이션 개발

- 현재까지의 주차실태조사는 조사원들에 의한 방문조사를 기본으로 하여 주차시설의 공급현황과 주간 및 야간의 주차 이용수요를 조사하는 것으로써, 조사원은 수치지형도 인쇄물 및 그와 유사한 지도인쇄물, 건축물부설주차장,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조사표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수기로 기입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 기존의 조사방식은 조사자의 기입오류, 조사항목의 누락, 일부 조사누락, 조사 후 자료코딩 오류등과 함께 분석단계까지 과도한 시간 소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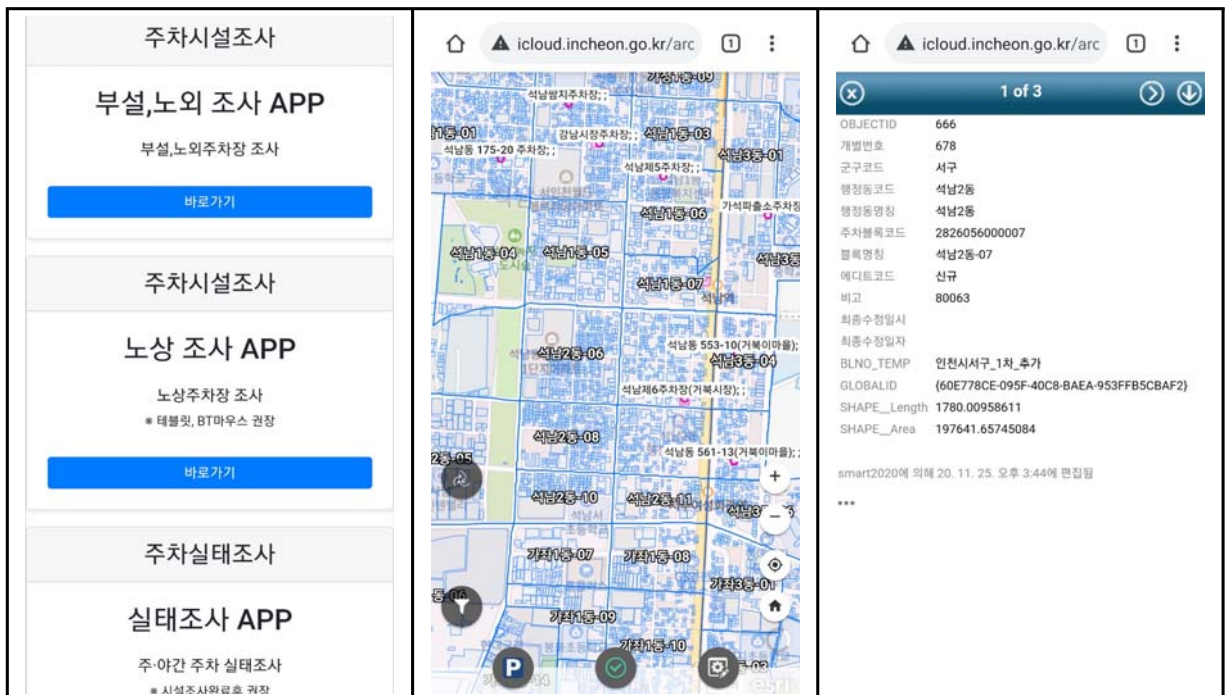
- 기존 조사방식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개선 및 보완을 위해 인천시(스마트도시과)에서는 GIS정보 기반으로 스마트폰 및 태블릿을 이용하여 주차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 우선 서구 관내 부설주차장 관리카드와 건축물 관리대장을 비교하여 부설주차장의 DB와 노외주차장의 DB를 어플리케이션에 표출하였다.
- 만약, 어플리케이션에 건축물부설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정보가 없을 경우, 현장에서 즉시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추가 조사한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은 관리자 및 조사원이 즉시 확인 가능토록 하였다.
- 주차시설 전용 어플리케이션은 건축물부설 및 노외 주차시설현황과 노상주차장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건축물부설 및 노외주차시설 현황에는 주차시설 건물명칭, 주차시설 위치(주소 및 GPS좌표), 주차 차단기 유무, 주차관리부스 유무, 주차장 개방유무, 주차요금, 관리주체, 사용주차면수, 자주식 및 기계식 주차현황정보 등이 입력가능토록 하였다.
- 노상주차실태조사는 GPS좌표, 주차요금, 관리주체, 급지, 노상주차 합법/불법 등의 항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3-1】 주차수급실태 조사개요

구분	주차시설조사	주차실태조사
조사대상	✓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	✓ 도로상에 주차된 모든 차량
조사시간	✓ 주간시간대(10:00~17:00)	✓ 평일 주·야간 2회조사 -주간 10시~17시 / 야간 23시~익일06시
조사항목	✓ 소재지, 규모, 요금제 등	✓ 지정차위치, 적·불법, 차종
조사방법	✓ 조사원 현장조사 시 앱을 이용한 입력	✓ 조사원 현장조사 시 앱을 이용한 입력

다. 주차시설 현황조사

- 조사대상 :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
- 조사시간대 : 주간시간대 (10:00 ~ 17:00)
- 조사기간 : 2020년 08월 ~ 11월
- 조사항목 :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으로 구분
 - 주차장법에서 규정한 주차실태조사 항목을 모두 충족하도록 설정
 - 주차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포함
 - 향후 주차정보제공을 위한 기초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있는 항목 포함
 - 소재지, 주차장 규모, 주차요금, 시간대별 주차대수, 운영 및 관리실태 등
- 조사방법
 - 전수조사 시행
 - 조사원이 조사구역내 주차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확인조사
 -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사전 준비하여 현장에서 대조확인하고, 누락분 추가 입력
- 조사자료 입력방법
 - 노상주차장 : 어플리케이션 입력
 - 건축물부설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 어플리케이션 입력



【그림 3-1】 주차시설조사 어플리케이션 입력예시

라. 주차이용실태조사

- 조사대상 : 평일기준으로 도로상에 주·정차되어 있는 모든 차량(이륜자동차 제외)
- 조사기간 : 2020년 8월 ~ 11월(하계휴가 및 방학기간 조사제외)
- 조사시간
 - 주간시간대 : 10:00 ~ 17:00 / 야간시간대 : 23:00 ~ 익일 06:00
- 조사항목
 - 주차장법에서 규정한 주차실태조사 항목을 모두 충족하도록 설정
 - 주차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을 포함
 - 정차 위치, 적법 및 불법 여부, GPS위치정보/시간정보
- 조사방법 : 어플리케이션 입력
 - 전수조사 시행
 - 도로상에 차량이 실제 주·정차되어 있는 위치입력



【그림 3-2】 주차시설조사 어플리케이션 입력예시

3.1.3 조사원 교육 및 조사 수행

가. 조사원이 지켜야 할 사항

- 조사기간 중에는 조사업무에만 전념해야 하며 판매 및 영업활동 등을 하면 안 된다.
- 조사는 반드시 교육받은 사람이 조사해야 하며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대리 조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 특별한 사유(질병 등)로 조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사관리자나 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담당 조사관리자 및 총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매일 조사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 조사된 조사자료의 실시간 전송여부 및 조사내용을 확인받아야 한다.

나. 조사원 안전수칙

-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관리자, 담당공무원, 파출소 등 비상연락처를 메모해둔다.
- 조사당일 일정을 가족에게 알린다.
- 야간에 조사할 경우 조사원 2인이 함께 다니거나 가족, 친구, 조사관리자 등에게 수시로 연락하도록 한다.
- 조사 중 불의의 사고로 다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한다.

다. 조사원 투입계획

- 조사팀 구성
 - 조사팀은 조사책임자 1명을 지정하고 현장조사원으로 구성
 - 주차시설현황조사 및 주차이용실태조사로 구분하여 조사를 시행
 - 조사팀장은 가능한 해당 조사구역의 지리에 익숙하며, 조사전반에 대해 조사원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자로 선임하고 서로 비상연락체계 구성
- 조사팀장 역할
 - 조사원들이 조사수행 전 조사방법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였는지 확인

- 조사원들의 조사수행 전 현장조사 준비물을 모두 지참하였는지 확인
- 조사원들의 일일조사물량을 확인하고, 조사 마감 일자에 지장이 없도록 조사량을 조절
- 조사원 역할
 - 조사원은 현장조사를 수행하기 전에 조사지침서를 필히 숙지
 - 조사항목별 구분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는지 확인하고 조사팀장에게 확인
 - 조사원은 본인이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구역에 대해 지도를 확인하고 조사구역 위치, 도로망, 조사구역 특성(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인지 등)을 사전에 숙지
 - 조사원은 현장조사 수행 전 현장조사를 위한 준비물(조사원증, 조사구역 현장도면, 협조공문, 조사용 스마트폰, 조사용 참고자료 등) 지참

3.2 조사구역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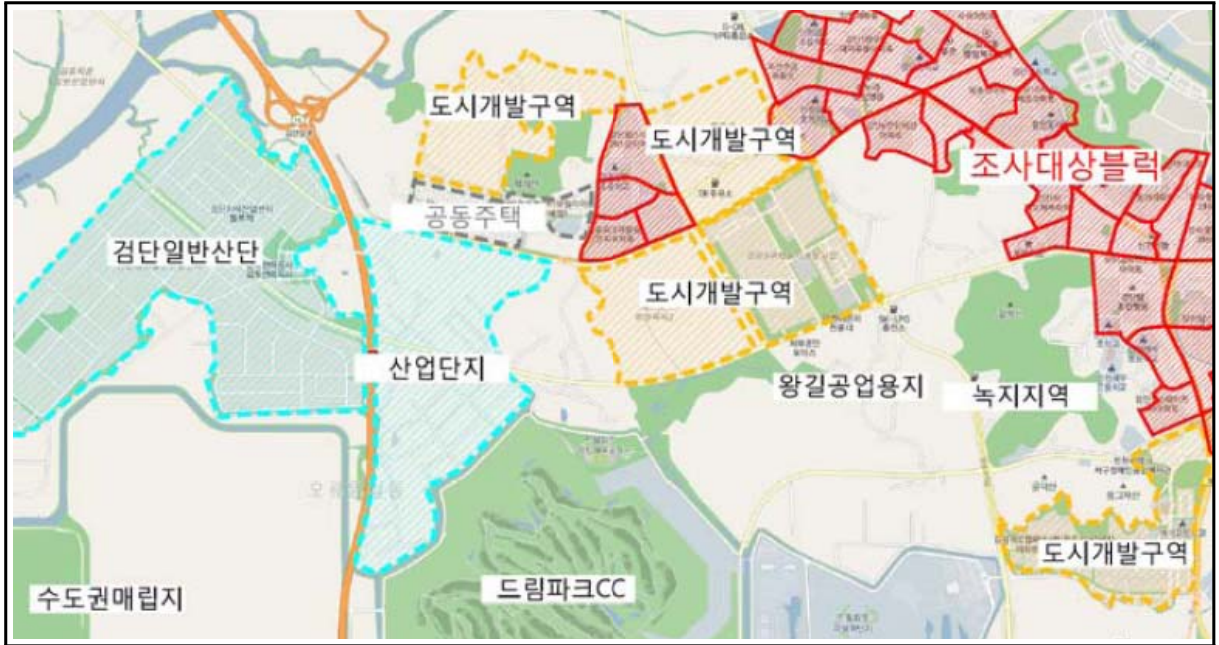
3.2.1 조사구역 설정기준 검토

가. 주차장법 시행규칙

- 사각형 또는 삼각형 형태로 조사구역을 설정하되 조사구역 바깥 경계선의 최대 거리가 300m을 넘지 않도록 함
- 각 조사구역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경계로 구분
-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단지가 혼재된 지역 또는 주거기능과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시설수급의 적정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특성을 가진 지역별로 조사구역을 설정

나. 조사구역 선정기준 정립

- 조사구역 적정규모 : 바깥 경계선의 최대거리를 300~500m 범위 내에서 설정
- 기완료된 전차수 수급실태조사의 블록구분 반영 및 추가 선정(신규택지 등)
- 인천시 스마트 주차조사 시스템과의 호환을 위한 동명칭 및 블록번호 재설정
- 산업단지 및 녹지지역, 개발예정구역 제외
- 검토내용
 - 조사지역이 중복 및 누락설정 확인
 - 조사구역 경계가 도로 중심선, 하천, 산지 등을 경계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그림 3-3】 조사구역 설정 예시

3.2.2 조사구역 선정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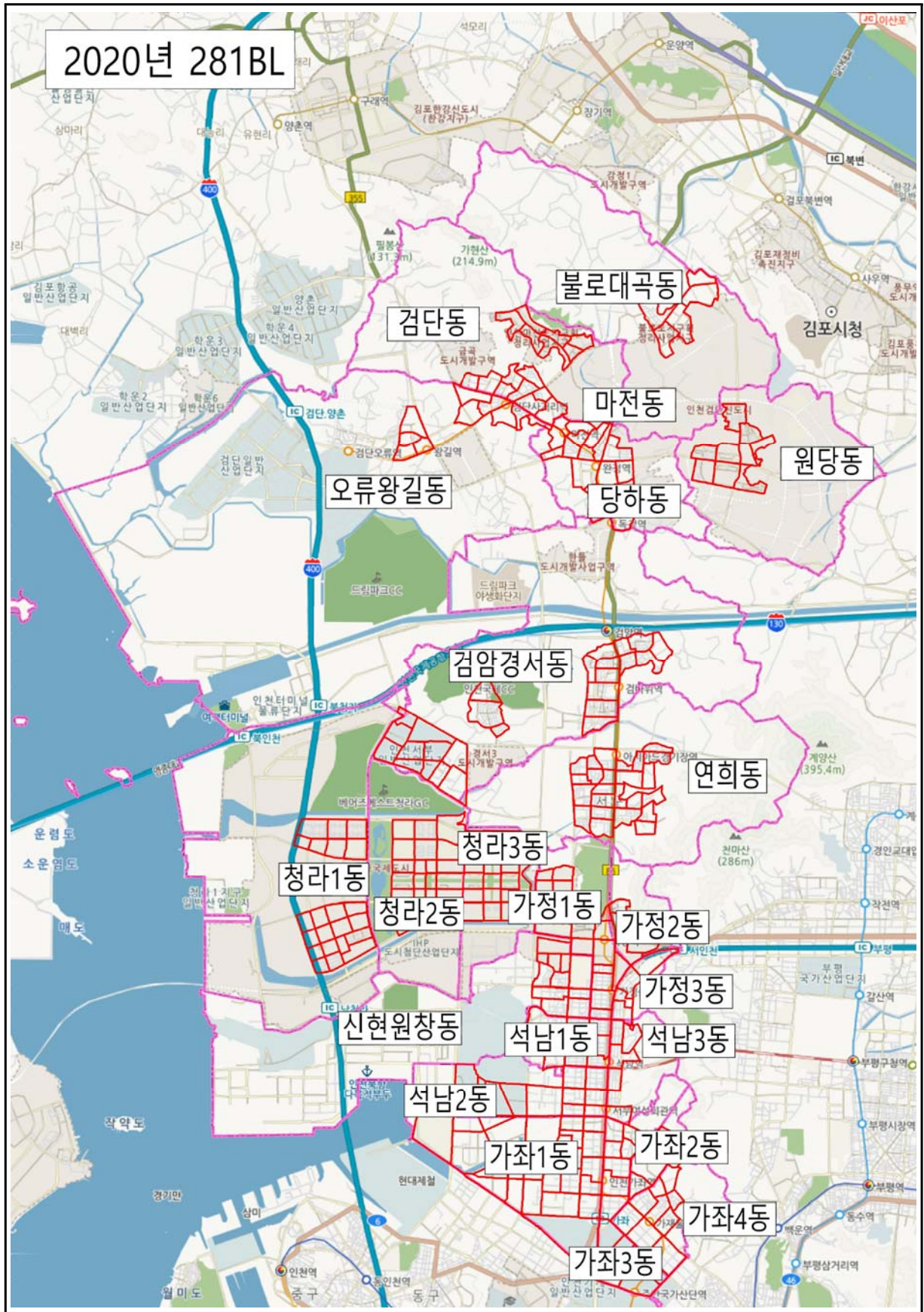
- 조사블럭 수 : 서구 전체 22개동 281개 블럭 선정

【표 3-2】 조사블럭 비교

구분	2017년	2020년	증감
조사블럭 수	249개 블럭	281개 블럭	+32개 블럭

【표 3-3】 2020년 행정동별 조사블럭 선정결과

행정동	조사블럭 수	행정동	조사블럭 수
가정1동	18개 블럭	블로대곡동	5개 블럭
가정2동	4개 블럭	석남1동	7개 블럭
가정3동	개 블럭	석남2동	11개 블럭
가좌1동	25개 블럭	석남3동	6개 블럭
가좌2동	5개 블럭	신현원창동	11개 블럭
가좌3동	12개 블럭	연희동	24개 블럭
가좌4동	10개 블럭	오류왕길동	10개 블럭
검단동	16개 블럭	원당동	9개 블럭
검암경서동	26개 블럭	청라1동	19개 블럭
마전동	10개 블럭	청라2동	21개 블럭
당하동	8개 블럭	청라3동	20개 블럭
합계		22개동 281개 블럭	



[그림 3-4] 공간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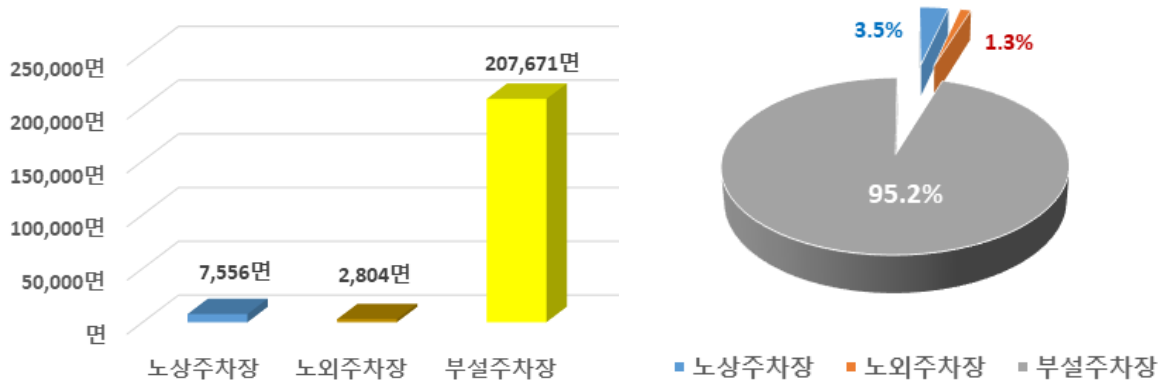
3.3 주차시설 조사결과

3.3.1 조사구역내 주차시설 현황

- 2020년 주차시설현황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4】 2020년 서구 주차시설 현황조사 결과

구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합계
주차면수	7,556면	2,804면	207,671면	218,031면
비율	3.5%	1.3%	95.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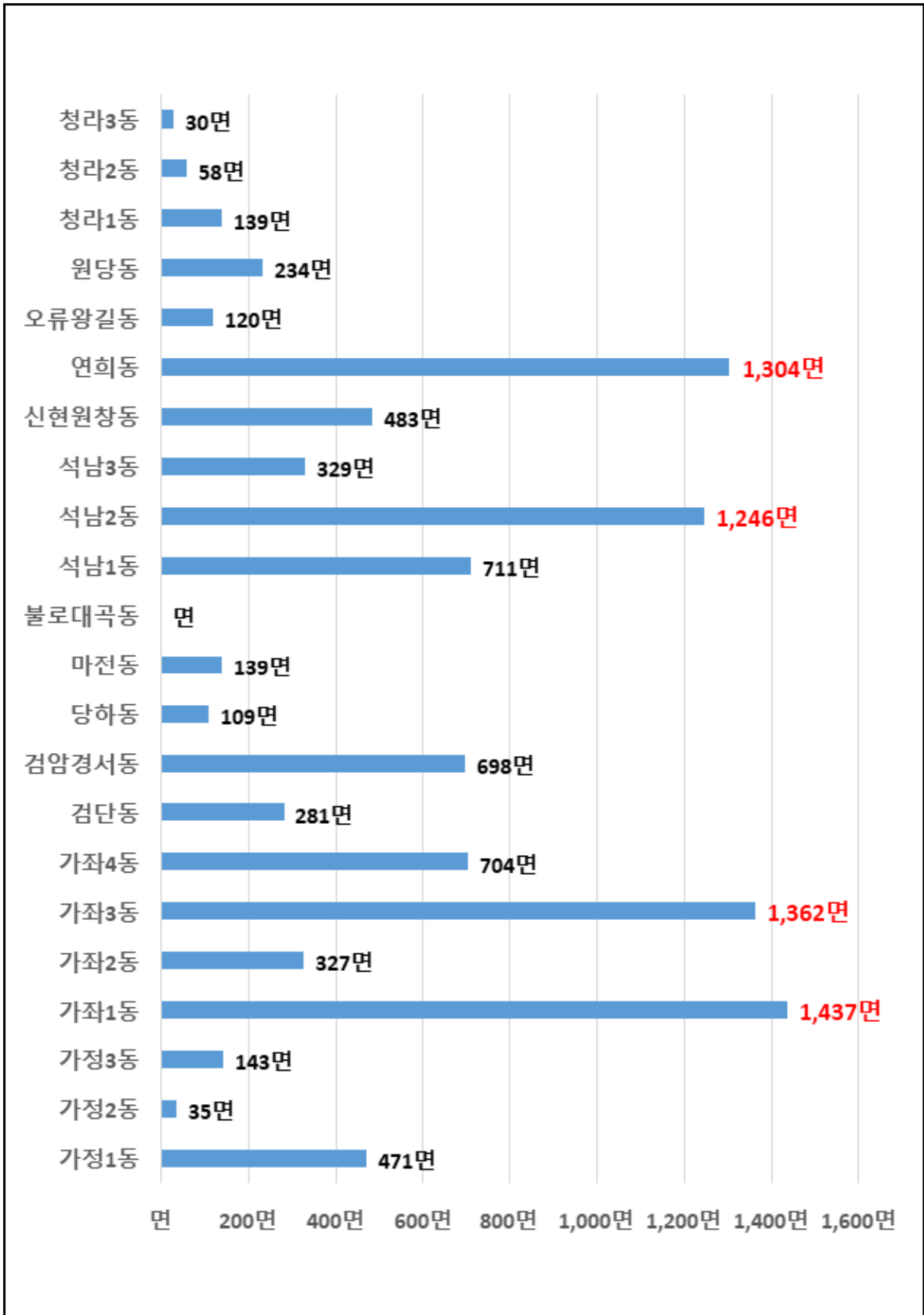


3.3.2 행정동별 주차시설 현황

- 인천시에서는 2020년 주차수급실태조사 분석 시, 불특정 다수를 위한 주차시설이 아닌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제외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주차시설 공급면수로 지정하여 수급률을 분석하도록 하였다.
- 차량통행 및 보행안전,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주차문제 야기하는 노상주차수요를 적법/불법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 이에 따라 노상주차 차량이 이용가능한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수급률 분석을 위한 주차시설 공급물량으로 설정하였다.
- 행정동별 주차수급률 분석을 위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행정동별 공급현황 조사 결과, 가좌1동이 1,437면으로 조사블럭 전체의 약 1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가좌3동>연희동>석남2동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불로대곡동 및 가정동과 현재 개발중인 청라동 등은 공급면수 매우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5】 행정동별 주차시설현황 조사결과 - 부설주차장제외

구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합계	비율
가정1동	352면	119면	471면	4.5%
가정2동	35면	-면	35면	0.3%
가정3동	118면	25면	143면	1.4%
가좌1동	1,437면	면	1,437면	13.9%
가좌2동	327면	면	327면	3.2%
가좌3동	1,268면	94면	1,362면	13.1%
가좌4동	636면	68면	704면	6.8%
검단동	-면	281면	281면	2.7%
검암경서동	280면	418면	698면	6.7%
당하동	-면	109면	109면	1.1%
마전동	-면	139면	139면	1.3%
불로대곡동	-면	-면	-면	0.0%
석남1동	433면	278면	711면	6.9%
석남2동	1,140면	106면	1,246면	12.0%
석남3동	270면	59면	329면	3.2%
신현원창동	466면	17면	483면	4.7%
연희동	702면	602면	1,304면	12.6%
오류왕길동	85면	35면	120면	1.2%
원당동	-면	234면	234면	2.3%
청라1동	7면	132면	139면	1.3%
청라2동	-면	58면	58면	0.6%
청라3동	-면	30면	30면	0.3%
합계	7,556면	2,804면	10,360면	100.0%



[그림 3-5] 행정동별 주차시설현황 조사결과

3.3.3 조사블럭별 주차시설 현황

- 2020년 주차시설 공급현황을 조사블럭별로 구분해 보면, 석남2동-03블럭이 308면으로 서구 전체 281개 블럭 중 가장 높은 주차공급비율(2.97%)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석남1동-02블럭, 가좌4동-09블럭>연희동-14블럭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3-6】 블럭별 주차시설 공급 현황

구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합계	비율
가정1동-01	-	-	-	-
가정1동-02	-	-	-	-
가정1동-03	-	-	-	-
가정1동-04	-	-	-	-
가정1동-05	-	-	-	-
가정1동-06	45면	-	45면	0.4%
가정1동-07	60면	102면	162면	1.6%
가정1동-08	169면	17면	186면	1.8%
가정1동-09	78면	-	78면	0.8%
가정1동-10	-	-	-	-
가정1동-11	-	-	-	-
가정1동-12	-	-	-	-
가정1동-13	-	-	-	-
가정1동-14	-	-	-	-
가정1동-15	-	-	-	-
가정1동-16	-	-	-	-
가정1동-17	-	-	-	-
가정1동-18	-	-	-	-
소계	352면	119면	471면	4.5%
가정2동-01	-	-	-	-
가정2동-02	-	-	-	-
가정2동-03	35면	-	35면	0.3%
가정2동-04	-	-	-	-
소계	35면	-	35면	0.3%
가정3동-01	-	-	-	-
가정3동-02	18면	25면	43면	0.4%
가정3동-03	11면	면	11면	0.1%
가정3동-04	89면	면	89면	0.9%
소계	118면	25면	143면	1.4%

【표 계 속】

구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합계	비율
가좌1동-01	135면	-	135면	1.3%
가좌1동-02	162면	-	162면	1.6%
가좌1동-03	28면	-	28면	0.3%
가좌1동-04	137면	-	137면	1.3%
가좌1동-05	-	-	-	-
가좌1동-06	-	-	-	-
가좌1동-07	13면	-	13면	0.1%
가좌1동-08	121면	-	121면	1.2%
가좌1동-09	8면	-	8면	0.1%
가좌1동-10	107면	-	107면	1.0%
가좌1동-11	36면	-	36면	0.3%
가좌1동-12	27면	-	27면	0.3%
가좌1동-13	-	-	-	-
가좌1동-14	37면	-	37면	0.4%
가좌1동-15	25면	-	25면	0.2%
가좌1동-16	93면	-	93면	0.9%
가좌1동-17	71면	-	71면	0.7%
가좌1동-18	119면	-	119면	1.1%
가좌1동-19	84면	-	84면	0.8%
가좌1동-20	42면	-	42면	0.4%
가좌1동-21	21면	-	21면	0.2%
가좌1동-22	-	-	-	-
가좌1동-23	75면	-	75면	0.7%
가좌1동-24	2면	-	2면	0.0%
가좌1동-25	94면	-	94면	0.9%
소계	1,437면	-	1,437면	13.9%
가좌2동-01	59면	-	59면	0.6%
가좌2동-02	90면	-	90면	0.9%
가좌2동-03	29면	-	29면	0.3%
가좌2동-04	113면	-	113면	1.1%
가좌2동-05	36면	-	36면	0.3%
소계	327면	-	327면	3.2%

【표 계 속】

구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합계	비율
가좌3동-01	180면	-	180면	1.7%
가좌3동-02	68면	-	68면	0.7%
가좌3동-03	112면	-	112면	1.1%
가좌3동-04	68면	30면	98면	0.9%
가좌3동-05	155면	16면	171면	1.7%
가좌3동-06	176면	48면	224면	2.2%
가좌3동-07	31면	-	31면	0.3%
가좌3동-08	106면	-	106면	1.0%
가좌3동-09	72면	-	72면	0.7%
가좌3동-10	81면	-	81면	0.8%
가좌3동-11	129면	-	129면	1.2%
가좌3동-12	90면	-	90면	0.9%
소계	1,268면	94면	1,362면	13.1%
가좌4동-01	16면	면	16면	0.2%
가좌4동-02	-	-	-	-
가좌4동-03	-	-	-	-
가좌4동-04	54면	-	54면	0.5%
가좌4동-05	-	-	-	-
가좌4동-06	55면	10면	65면	0.6%
가좌4동-07	41면	면	41면	0.4%
가좌4동-08	49면	면	49면	0.5%
가좌4동-09	191면	58면	249면	2.4%
가좌4동-10	230면	면	230면	2.2%
소계	636면	68면	704면	6.8%
검단동-01	-	-	-	-
검단동-02	-	-	-	-
검단동-03	-	71면	71면	0.7%
검단동-04	-	-	-	-
검단동-05	-	33면	33면	0.3%
검단동-06	-	-	-	-
검단동-07	-	53면	53면	0.5%
검단동-08	-	-	-	-
검단동-09	-	-	-	-
검단동-10	-	-	-	-
검단동-11	-	-	-	-
검단동-12	-	-	-	-
검단동-13	-	-	-	-
검단동-14	-	-	-	-
검단동-15	-	124면	124면	1.2%
검단동-16	-	-	-	-
소계	-	281면	281면	2.7%

【표 계 속】

구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합계	비율
검암경서동-01	11면	60면	71면	0.7%
검암경서동-02	34면	-	34면	0.3%
검암경서동-03	4면	-	4면	0.0%
검암경서동-04	74면	-	74면	0.7%
검암경서동-05	6면	-	6면	0.1%
검암경서동-06	23면	-	23면	0.2%
검암경서동-07	16면	-	16면	0.2%
검암경서동-08	-	-	-	-
검암경서동-09	35면	-	35면	0.3%
검암경서동-10	77면	-	77면	0.7%
검암경서동-11	-	-	-	-
검암경서동-12	-	-	-	-
검암경서동-13	-	61면	61면	0.6%
검암경서동-14	-	-	-	-
검암경서동-15	-	-	-	-
검암경서동-16	-	101면	101면	1.0%
검암경서동-17	-	-	-	-
검암경서동-18	-	-	-	-
검암경서동-19	-	-	-	-
검암경서동-20	-	94면	94면	0.9%
검암경서동-21	-	-	-	-
검암경서동-22	-	-	-	-
검암경서동-23	-	-	-	-
검암경서동-24	-	55면	55면	0.5%
검암경서동-25	-	47면	47면	0.5%
검암경서동-26	-	-	-	-
소계	280면	418면	698면	6.7%
마전동-01	-	-	-	-
마전동-02	-	-	-	-
마전동-03	-	-	-	-
마전동-04	-	-	-	-
마전동-05	-	-	-	-
마전동-06	-	-	-	-
마전동-07	-	-	-	-
마전동-08	-	54면	54면	0.5%
마전동-09	-	35면	35면	0.3%
마전동-10	-	50면	50면	0.5%
소계	-	139면	139면	1.3%

【표 계 속】

구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합계	비율
당하동-01	-	-	-	-
당하동-02	-	69면	69면	0.7%
당하동-03	-	-	-	-
당하동-04	-	-	-	-
당하동-05	-	40면	40면	0.4%
당하동-06	-	-	-	-
당하동-07	-	-	-	-
당하동-08	-	-	-	-
소계	-	109면	109면	1.1%
블로대곡동-01	-	-	-	-
블로대곡동-02	-	-	-	-
블로대곡동-03	-	-	-	-
블로대곡동-04	-	-	-	-
블로대곡동-05	-	-	-	-
소계	-	-	-	-
석남1동-01	98면	4면	102면	1.0%
석남1동-02	81면	168면	249면	2.4%
석남1동-03	97면	-	97면	0.9%
석남1동-04	-	-	-	-
석남1동-05	51면	-	51면	0.5%
석남1동-06	97면	106면	203면	2.0%
석남1동-07	9면	-	9면	0.1%
소계	433면	278면	711면	6.9%
석남2동-01	165면	-	165면	1.6%
석남2동-02	-	-	-	-
석남2동-03	308면	-	308면	3.0%
석남2동-04	98면	-	98면	0.9%
석남2동-05	115면	-	115면	1.1%
석남2동-06	172면	-	172면	1.7%
석남2동-07	86면	71면	157면	1.5%
석남2동-08	133면	-	133면	1.3%
석남2동-09	3면	-	3면	0.0%
석남2동-10	33면	-	33면	0.3%
석남2동-11	27면	35면	62면	0.6%
소계	1,140면	106면	1,246면	12.0%
석남3동-01	27면	-	27면	0.3%
석남3동-02	33면	-	33면	0.3%
석남3동-03	180면	12면	192면	1.9%
석남3동-04	30면	5면	35면	0.3%
석남3동-05	-	35면	35면	0.3%
석남3동-06	-	7면	7면	0.1%
소계	270면	59면	329면	3.2%

【표 계 속】

구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합계	비율
신현원창동-01	-	-	-	-
신현원창동-02	-	-	-	-
신현원창동-03	-	-	-	-
신현원창동-04	27면	-	27면	0.3%
신현원창동-05	-	-	-	-
신현원창동-06	11면	8면	19면	0.2%
신현원창동-07	91면	-	91면	0.9%
신현원창동-08	68면	9면	77면	0.7%
신현원창동-09	45면	-	45면	0.4%
신현원창동-10	126면	-	126면	1.2%
신현원창동-11	98면	-	98면	0.9%
소계	466면	17면	483면	4.7%
연희동-01	55면	6면	61면	0.6%
연희동-02	16면	7면	23면	0.2%
연희동-03	1면	-	1면	0.0%
연희동-04	24면	42면	66면	0.6%
연희동-05	45면	-	45면	0.4%
연희동-06	-	-	-	-
연희동-07	70면	-	70면	0.7%
연희동-08	16면	-	16면	0.2%
연희동-09	3면	-	3면	0.0%
연희동-10	-	13면	13면	0.1%
연희동-11	29면	204면	233면	2.2%
연희동-12	16면	-	16면	0.2%
연희동-13	41면	68면	109면	1.1%
연희동-14	-	248면	248면	2.4%
연희동-15	10면	-	10면	0.1%
연희동-16	77면	-	77면	0.7%
연희동-17	63면	-	63면	0.6%
연희동-18	60면	-	60면	0.6%
연희동-19	35면	-	35면	0.3%
연희동-20	25면	-	25면	0.2%
연희동-21	53면	14면	67면	0.6%
연희동-22	57면	-	57면	0.6%
연희동-23	6면	-	6면	0.1%
연희동-24	-	-	-	-
소계	702면	602면	1,304면	12.6%

【표 계 속】

구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합계	비율
오류왕길동-01	-	-	-	-
오류왕길동-02	-	-	-	-
오류왕길동-03	-	-	-	-
오류왕길동-04	-	-	-	-
오류왕길동-05	-	-	-	-
오류왕길동-06	-	-	-	-
오류왕길동-07	85면	면	85면	0.8%
오류왕길동-08	-	35면	35면	0.3%
오류왕길동-09	-	-	-	-
오류왕길동-10	-	-	-	-
소계	85면	35면	120면	1.2%
원당동-01	-	-	-	-
원당동-02	-	-	-	-
원당동-03	-	-	-	-
원당동-04	-	116면	116면	1.1%
원당동-05	-	-	-	-
원당동-06	-	-	-	-
원당동-07	-	-	-	-
원당동-08	-	118면	118면	1.1%
원당동-09	-	-	-	-
소계	-	234면	234면	2.3%
청라1동-01	-	-	-	-
청라1동-02	-	88면	88면	0.8%
청라1동-03	-	-	-	-
청라1동-04	-	-	-	-
청라1동-05	-	-	-	-
청라1동-06	-	-	-	-
청라1동-07	7면	21면	28면	0.3%
청라1동-08	-	-	-	-
청라1동-09	-	-	-	-
청라1동-10	-	-	-	-
청라1동-11	-	-	-	-
청라1동-12	-	-	-	-
청라1동-13	-	-	-	-
청라1동-14	-	-	-	-
청라1동-15	-	-	-	-
청라1동-16	-	-	-	-
청라1동-17	-	-	-	-
청라1동-18	-	23면	23면	0.2%
청라1동-19	-	-	-	-
소계	7면	132면	139면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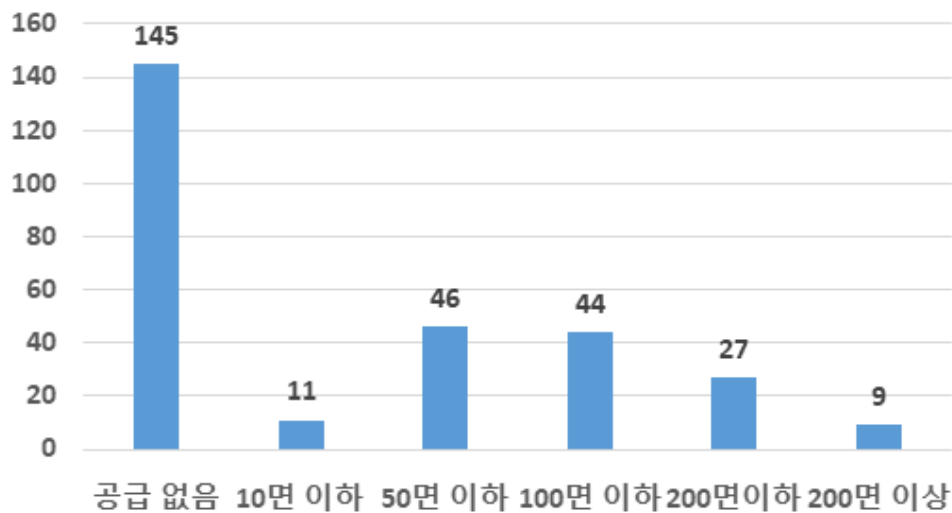
【표 계 속】

구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합계	비율
청라2동-01	-	-	-	-
청라2동-02	-	-	-	-
청라2동-03	-	-	-	-
청라2동-04	-	-	-	-
청라2동-05	-	58면	58면	0.6%
청라2동-06	-	-	-	-
청라2동-07	-	-	-	-
청라2동-08	-	-	-	-
청라2동-09	-	-	-	-
청라2동-10	-	-	-	-
청라2동-11	-	-	-	-
청라2동-12	-	-	-	-
청라2동-13	-	-	-	-
청라2동-14	-	-	-	-
청라2동-15	-	-	-	-
청라2동-16	-	-	-	-
청라2동-17	-	-	-	-
청라2동-18	-	-	-	-
청라2동-19	-	-	-	-
청라2동-20	-	-	-	-
청라2동-21	-	-	-	-
소계	-	58면	58면	0.6%
청라3동-01	-	-	-	-
청라3동-02	-	-	-	-
청라3동-03	-	-	-	-
청라3동-04	-	-	-	-
청라3동-05	-	-	-	-
청라3동-06	-	-	-	-
청라3동-07	-	-	-	-
청라3동-08	-	-	-	-
청라3동-09	-	-	-	-
청라3동-10	-	-	-	-
청라3동-11	-	-	-	-
청라3동-12	-	-	-	-
청라3동-13	-	-	-	-
청라3동-14	-	-	-	-
청라3동-15	-	30면	30면	0.3%
청라3동-16	-	-	-	-
청라3동-17	-	-	-	-
청라3동-18	-	-	-	-
청라3동-19	-	-	-	-
청라3동-20	-	-	-	-
소계	-	30면	30면	0.3%
합계	7,556면	2,804면	10,360면	100.0%

- 서구 전체 281개 블록 중 주차시설 145개 블록은 노상 및 노외주차시설의 공급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블록의 51.6% 수준으로 서구 조사블록의 절반 이상은 부설주차장을 제외한 주차시설의 공급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전체 조사대상 블록의 주차시설 규모별 분포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7】 주차시설 공급 규모

구분	블록수	비율	구분	블록수	비율
주차시설 없음	145개 블록	51.6%	200면 이하	27개 블록	9.6%
10면 이하	11개 블록	3.9%	200면 이상	8개 블록	2.8%
50면 이하	46개 블록	16.4%	합계	281개 블록	100.0%
100면 이하	44개 블록	15.7%			



- 전체 조사대상 블록중 주차시설의 공급이 있는 블록의 평균 주차면수는 76.2면이며, 11개 블록은 10면 이하(5.4면)의 공급으로 서구 지역별 주차시설의 공급은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8】 블록별 평균 주차시설 공급면수

구분	블록수	공급면수	평균공급면수
10면 이하	11개 블록	59면	5.4면
50면 이하	46개 블록	1,421면	30.9면
100면 이하	44개 블록	3,266면	74.2면
200면 이하	27개 블록	3,670면	135.9면
200면 이상	9개 블록	1,944면	243.0면
합계	136개 블록	10,360면	76.2면

3.4 주차이용실태조사

3.4.1 조사개요

【표 3-9】 주차이용실태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구 관내 조사대상 블록내 도로상에 주·정차하고 있는 모든 차량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규정에 의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기타)를 대상으로 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조사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정차 위치, 적법 및 불법 여부, 차종(승용, 승합, 화물, 기타),
조사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간시간대 : 10:00 ~ 17:00(점심시간 제외) ✓ 야간시간대 : 23:00 ~ 익일 05:00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일은 토요일·공휴일, 징검다리 휴일 등을 제외한 요일 중 주차이용행태가 가장 평이한 평일 조사 ✓ 지역별(주택가, 도심지)로 주차행태가 상이하여 주차문제 유형이 다양하므로 지역별 주차특성을 고려한 적정 주차정책수립을 위해 주간시간대와 야간시간대로 구분하여 조사를 2회 시행한다 ✓ 조사원은 주·정차 차량을 주간 및 야간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차종을 적법과 불법으로 구분하여 조사 ✓ 조사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주차차량 정보 실시간 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법차량 : 도로상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되어 있는 경우 차량이 주차구획선 1/2 이상(차체 기준) 걸쳐져 있는 경우 -불법차량 : 주차구획선 이외의 공간 주차 / 보도 위 주차 건축물 후퇴선 주차 / 기타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 주차

3.4.2 조사결과

- 도로상에 주차된 차량의 불법주차율을 주야간별 조사결과, 주간시간대 경우 전체 노상 주·정차 차량 29,131대 중 78.6%인 22,893대가 불법주차 차량으로 조사되었으며, 야간시간대는 31,422대 중 불법주차 차량은 26,063대로 불법주차율은 82.9%로 조사되었다.
 - 주간시간대 불법주차율 : 78.6%
 - 야간시간대 불법주차율 : 82.9%
- 서구의 주차이용실태는 주거지역의 일반적 특성인 야간시간대의 불법주차율이 약간높은 성향을 나타냈으나, 주간과 야간의 불법주차율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노상의 불법주차는 유고시 비상차량의 통행장애를 발생시키고, 보행공간을 잠식하거나 차량의 교행을 방해하여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 또한, 불법주차는 주차시설 부족의 정보를 알리는 지표로 사용되기도 한다.
- 불법주차율은 도로상에 주차구획이 그어지지 않은 곳에 어느 정도의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로서, 노상의 주차수요(적법주차+불법주차)에 대한 불법주차대수 비율이다.

불법주차율 = 불법주차수요대수(주차대수) / 주차수요대수(합법주차+불법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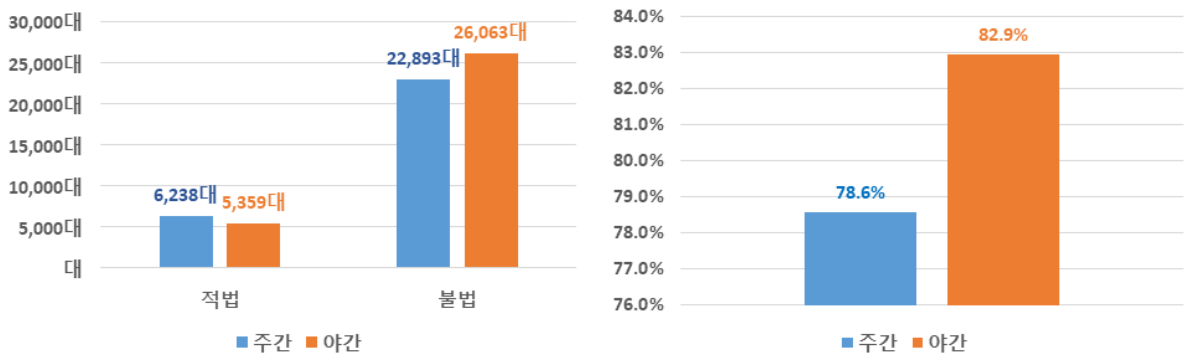
✓ = 1.0일 경우 : 합법주차가 없는 경우 ⇨ 모든 차량 불법주차

✓ < 1.0일 경우 : 불법주차대수가 적을수록 "0"에 수렴

- 서구 전체적으로 주야간 모두 불법주차율이 75% 이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서구전체 주차공급시설이 매우 부족함을 나타내고 있다.
- 주차장의 부족과 함께 주차시설의 이용률은 60% 수준으로, 기 공급된 주차시설의 이용효율 역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10】 주야간 노상 주정차 조사결과

구분	공급면수	적법주차	불법주차	합계	불법주차율	주차시설 이용률
주간	10,360면	6,238대	22,893대	29,131대	78.6%	60.2%
야간	10,360면	5,359대	26,063대	31,422대	82.9%	5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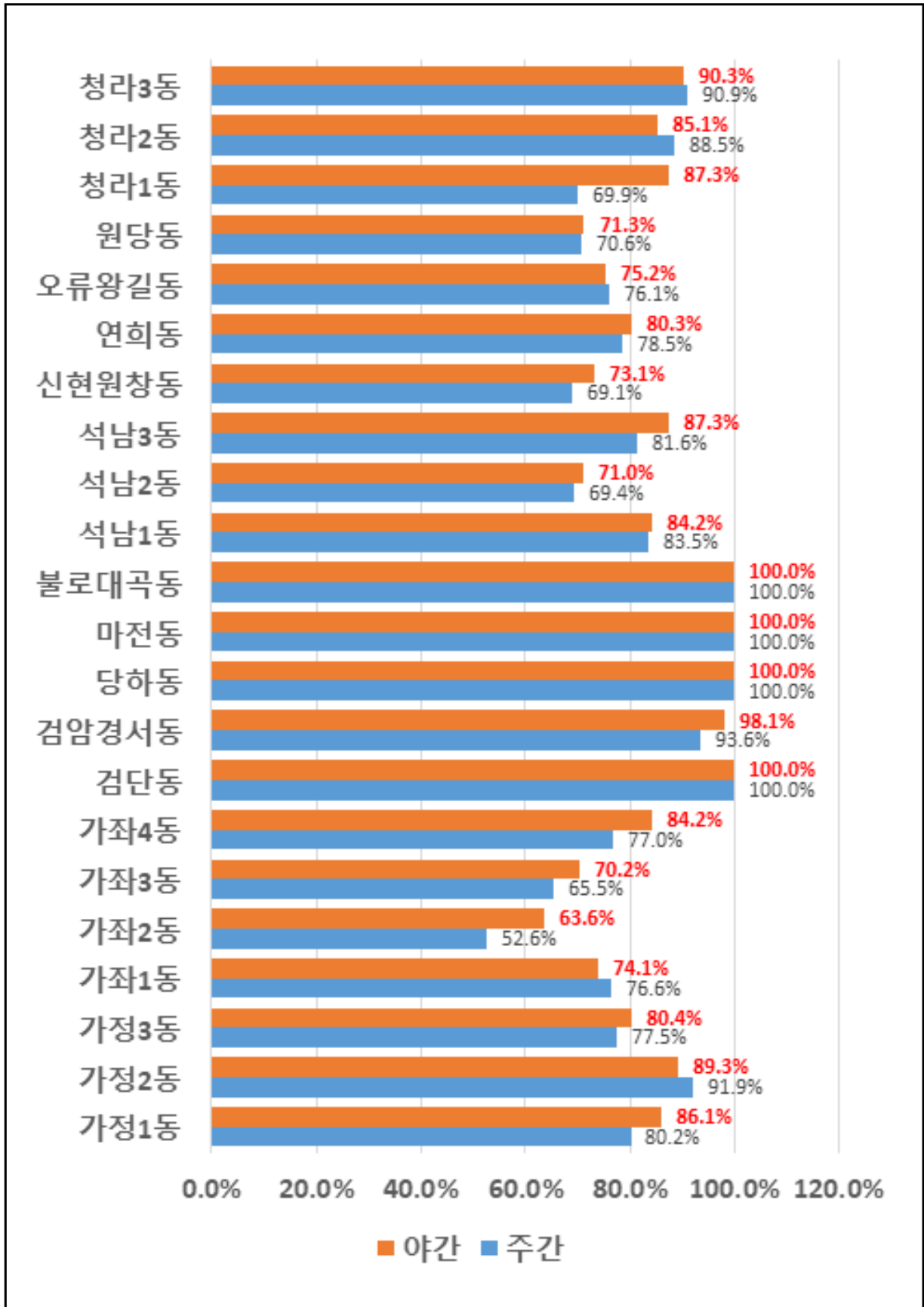


가. 행정동별 주차이용실태 현황

- 도로상 주정차 차량의 불법주차율을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주간시간대는 78.6%이고, 야간시간대는 82.9%로 야간시간대가 주간시간대보다 불법주차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불법주차율을 행정동별로 살펴보면 노상주차장이 없는 행정동을 제외하고 주간시간대의 경우 검암경서동이 93.6%로 가장 높고 가좌2동이 52.6%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야간시간대는 주간과 마찬가지로 검암경서동이 98.1%로 가장 높고, 가장 낮은 행정동은 63.6%인 가좌2동으로 조사되었다.

【표 3-11】 행정동별 불법주차율 분석

구분	주간			야간		
	전체주차대수	불법주차대수	불법주차율	전체주차대수	불법주차대수	불법주차율
가정1동	1,428대	1,145대	80.2%	2,113대	1,819대	86.1%
가정2동	211대	194대	91.9%	309대	276대	89.3%
가정3동	325대	252대	77.5%	557대	448대	80.4%
가좌1동	5,081대	3,892대	76.6%	3,755대	2,781대	74.1%
가좌2동	458대	241대	52.6%	778대	495대	63.6%
가좌3동	2,955대	1,935대	65.5%	3,310대	2,325대	70.2%
가좌4동	2,139대	1,646대	77.0%	2,244대	1,890대	84.2%
검단동	887대	887대	100.0%	2,013대	2,013대	100.0%
검암경서동	3,650대	3,417대	93.6%	4,148대	4,068대	98.1%
당하동	184대	184대	100.0%	420대	420대	100.0%
마전동	361대	361대	100.0%	567대	567대	100.0%
불로대곡동	201대	201대	100.0%	402대	402대	100.0%
석남1동	1,753대	1,463대	83.5%	2,260대	1,902대	84.2%
석남2동	3,114대	2,160대	69.4%	1,949대	1,384대	71.0%
석남3동	836대	682대	81.6%	1,213대	1,059대	87.3%
신현원창동	1,106대	764대	69.1%	1,595대	1,166대	73.1%
연희동	2,579대	2,024대	78.5%	1,966대	1,578대	80.3%
오류왕길동	305대	232대	76.1%	307대	231대	75.2%
원당동	616대	435대	70.6%	543대	387대	71.3%
청라1동	342대	239대	69.9%	362대	316대	87.3%
청라2동	269대	238대	88.5%	303대	258대	85.1%
청라3동	331대	301대	90.9%	308대	278대	90.3%
합계	29,131대	22,893대	78.6%	31,422대	26,063대	82.9%



【그림 3-6】 주야간 불법 주차율

제 4 장 주차장 수급실태 분석

4.1 주차지표의 정의

4.2 주차장 수급률 분석

제4장 주차장 수급실태 분석

4.1 주차지표의 정의

4.1.1 주차장 확보율

- 주차장 확보율은 주차장이 확보된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자동차등록대수에 대한 주차시설공급(주차면수) 비율이다.
- 이는 서구 거주자(자동차등록대수)에 대한 주차시설의 확보비율을 뜻한다.
- 주차장 확보율이 1.0 보다 클 경우 주차장 공급에 여유가 있음을 의미하며, 1.0 보다 작을 경우 주차장 공급 부족상황을 의미하고, 1.0인 경우 주차장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text{주차장 확보율} = \text{주차시설(주차면수)} / \text{자동차 등록대수}$$

- ✓ > 1.0일 경우 : 주차장 공급이 충분한 경우 ⇨ 주차여건 양호
- ✓ = 1.0일 경우 : 주차장 공급과 수요가 균형인 경우
- ✓ < 1.0일 경우 : 주차장 공급이 부족한 경우 ⇨ 주차여건 열악

4.1.2 주차장 수급률

- 주차장 수급률은 주차수요대비 주차장이 확보된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주차수요대수(주차대수)에 대한 주차시설공급(주차면수) 비율이다.
- 서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통행(내부통행, 유출입통행, 통과통행)의 통행단에서 발생하는 주차수요에 대한 주차시설의 수급비율을 뜻한다.
- 주차장 수급률이 1.0 보다 클 경우 주차장 공급에 여유가 있음을 의미하며, 1.0 보다 작을 경우 주차장 공급 부족상황을 의미하고, 1.0인 경우 주차장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text{주차장 수급률} = \text{주차시설(주차면수)} / \text{주차수요대수(주차대수)}$$

- ✓ > 1.0일 경우 : 주차장 공급이 충분한 경우 ⇨ 주차여건 양호
- ✓ = 1.0일 경우 : 주차장 공급과 수요가 균형인 경우
- ✓ < 1.0일 경우 : 주차장 공급이 부족한 경우 ⇨ 주차여건 열악

4.2 주차장 수급률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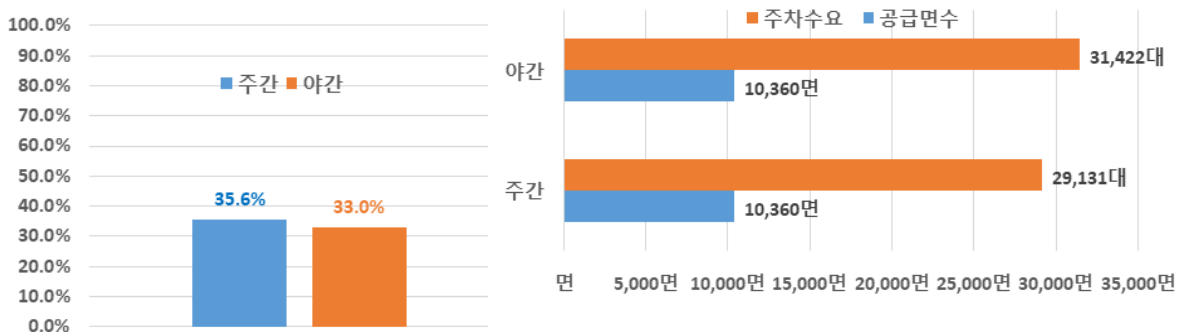
- 본 조사용역에서는 노상에 주·정차 된 차량의 주차수요 대비 주차장이 확보된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인 주차수급률을 통해 서구의 주차현황을 분석하였다.
- 실제 구민이 느끼는 주차문제(통행장애, 보행안전 문제 등)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에서 발생하므로, 본 용역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수요와 주차공급시설을 제외하고 수급률 분석을 진행하였다.

가. 행정동별 주차수급률 분석

- 서구 관내 조사블럭을 전체 주차수급률은 주간 35.6%, 야간 33.0%로 분석되어, 서구의 주차수급률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행정동별 주차수급률 분석결과, 주차시설의 공급이 없는 행정동을 제외한 조사구역 중 청라3동의 수급률이 주야간 9.1~9.7%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간 가좌2동의 수급률 71.4%, 야간 연희동 66.3%로 수급률이 높은 구역으로 분석되었다.
- 그러나, 주차수요 및 공급시설의 규모가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주차수요 대비 주차시설의 과부족 대수를 추가로 분석한 결과, 검암경서동이 주야간 2,952면~3,450면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어 주차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검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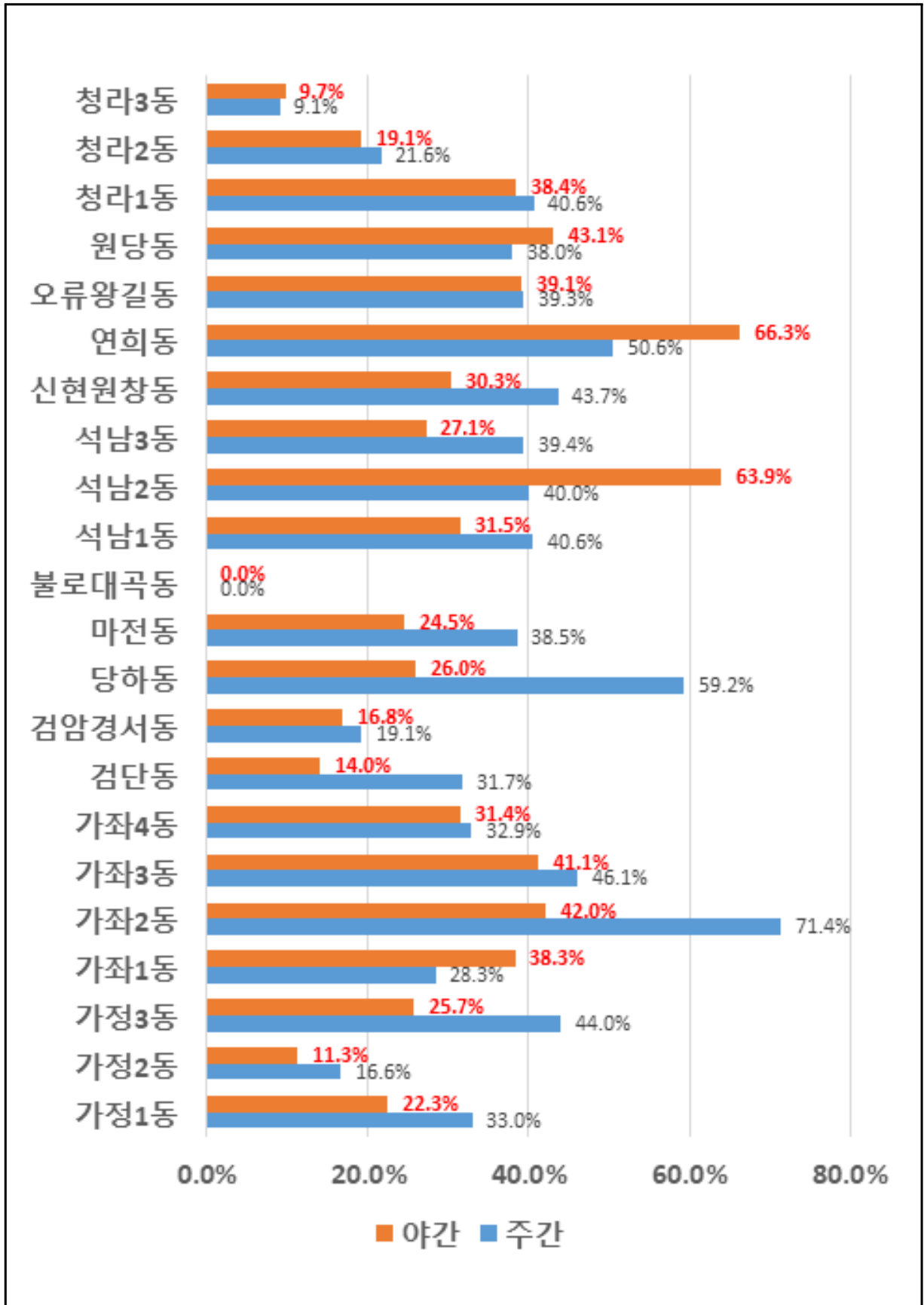
【표 4-1】 주·야간 주차수급률 분석결과

공급면수	주차수요		주차수급률		과부족면수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10,360면	29,131대	31,422대	35.6%	33.0%	-18,771면	-21,062면



【표 4-2】 행정동별 주차수급률 분석

구분	공급면수	주차수요		주차수급률		과부족면수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가정1동	471면	1,428대	2,113대	33.0%	22.3%	-957면	-1,642면
가정2동	35면	211대	309대	16.6%	11.3%	-176면	-274면
가정3동	143면	325대	557대	44.0%	25.7%	-182면	-414면
가좌1동	1,437면	5,081대	3,755대	28.3%	38.3%	-3,644면	-2,318면
가좌2동	327면	458대	778대	71.4%	42.0%	-131면	-451면
가좌3동	1,362면	2,955대	3,310대	46.1%	41.1%	-1,593면	-1,948면
가좌4동	704면	2,139대	2,244대	32.9%	31.4%	-1,435면	-1,540면
검단동	281면	887대	2,013대	31.7%	14.0%	-606면	-1,732면
검암경서동	698면	3,650대	4,148대	19.1%	16.8%	-2,952면	-3,450면
당하동	109면	184대	420대	59.2%	26.0%	-75면	-311면
마전동	139면	361대	567대	38.5%	24.5%	-222면	-428면
블로대곡동	-	201대	402대	-	-	-201면	-402면
석남1동	711면	1,753대	2,260대	40.6%	31.5%	-1,042면	-1,549면
석남2동	1,246면	3,114대	1,949대	40.0%	63.9%	-1,868면	-703면
석남3동	329면	836대	1,213대	39.4%	27.1%	-507면	-884면
신현원창동	483면	1,106대	1,595대	43.7%	30.3%	-623면	-1,112면
연희동	1,304면	2,579대	1,966대	50.6%	66.3%	-1,275면	-662면
오류왕길동	120면	305대	307대	39.3%	39.1%	-185면	-187면
원당동	234면	616대	543대	38.0%	43.1%	-382면	-309면
청라1동	139면	342대	362대	40.6%	38.4%	-203면	-223면
청라2동	58면	269대	303대	21.6%	19.1%	-211면	-245면
청라3동	30면	331대	308대	9.1%	9.7%	-301면	-278면
합계	10,360면	29,131대	31,422대	35.6%	33.0%	-18,771면	-21,062면



【그림 4-1】 주·야간 주차수급률

나. 행정동별 주차수급률 상세

- 서구 관내 행정동별 주차환경개선 우선지구 선정을 위하여, 주·야간 주차이용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주차수급률, 불법주차율, 과부족면수 등을 순위별로 정리한 상세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간 주차수요는 가좌1동 > 검암경서동 > 석남2동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불법주차대수 또한 가좌1동 > 검암경서동 > 석남2동 순으로, 8개동은 불법주차대수가 약 1천대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3】 주간 분석지표별 우선순위 상세분석 - 1

행정동	공급면수	행정동	주차수요	행정동	불법주차대수
불로대곡동	-	가좌1동	5,081대	가좌1동	3,892대
청라3동	30면	검암경서동	3,650대	검암경서동	3,417대
가정2동	35면	석남2동	3,114대	석남2동	2,160대
청라2동	58면	가좌3동	2,955대	연희동	2,024대
당하동	109면	연희동	2,579대	가좌3동	1,935대
오류왕길동	120면	가좌4동	2,139대	가좌4동	1,646대
마전동	139면	석남1동	1,753대	석남1동	1,463대
청라1동	139면	가정1동	1,428대	가정1동	1,145대
가정3동	143면	신현원창동	1,106대	검단동	887대
원당동	234면	검단동	887대	신현원창동	764대
검단동	281면	석남3동	836대	석남3동	682대
가좌2동	327면	원당동	616대	원당동	435대
석남3동	329면	가좌2동	458대	마전동	361대
가정1동	471면	마전동	361대	청라3동	301대
신현원창동	483면	청라1동	342대	가정3동	252대
검암경서동	698면	청라3동	331대	가좌2동	241대
가좌4동	704면	가정3동	325대	청라1동	239대
석남1동	711면	오류왕길동	305대	청라2동	238대
석남2동	1,246면	청라2동	269대	오류왕길동	232대
연희동	1,304면	가정2동	211대	불로대곡동	201대
가좌3동	1,362면	불로대곡동	201대	가정2동	194대
가좌1동	1,437면	당하동	184대	당하동	184대

- 서구 관내 22개동의 불법주차율은 모두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주차수급률 또한 가좌2동을 제외하고 모두 70% 이하로 분석되었다.
- 주차 과부족면수 분석결과, 7개동은 1천면 이상의 주차면이 부족하며, 가좌1동 및 검암경서동의 경우 약3천대 수준의 주차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4】 주간 분석지표별 우선순위 상세분석 - 2

행정동	불법주차율	행정동	주차수급률	행정동	과부족면수
검단동	100.0%	불로대곡동	-	가좌1동	-3,644면
당하동	100.0%	청라3동	9.1%	검암경서동	-2,952면
마전동	100.0%	가정2동	16.6%	석남2동	-1,868면
불로대곡동	100.0%	검암경서동	19.1%	가좌3동	-1,593면
검암경서동	92.5%	청라2동	21.6%	가좌4동	-1,435면
가정2동	91.9%	가좌1동	28.3%	연희동	-1,275면
청라2동	88.5%	검단동	31.7%	석남1동	-1,042면
석남1동	83.5%	가좌4동	32.9%	가정1동	-957면
석남3동	81.6%	가정1동	33.0%	신현원창동	-623면
가정1동	80.2%	원당동	38.0%	검단동	-606면
연희동	78.0%	마전동	38.5%	석남3동	-507면
가정3동	77.5%	오류왕길동	39.3%	원당동	-382면
가좌4동	77.0%	석남3동	39.4%	청라3동	-301면
오류왕길동	76.1%	석남2동	40.0%	마전동	-222면
가좌1동	75.1%	석남1동	40.6%	청라2동	-211면
청라3동	69.8%	청라1동	40.6%	청라1동	-203면
석남2동	69.4%	신현원창동	43.7%	불로대곡동	-201면
원당동	69.3%	가정3동	44.0%	오류왕길동	-185면
청라1동	69.3%	가좌3동	46.1%	가정3동	-182면
신현원창동	67.8%	연희동	50.6%	가정2동	-176면
가좌3동	64.2%	당하동	59.2%	가좌2동	-131면
가좌2동	52.6%	가좌2동	71.4%	당하동	-75면

- 야간 주차수요는 검암경서동 > 가좌1동 > 가좌3동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불법 주차대수는 검암경서동 > 가좌1동 > 가좌3동 순으로 11개동은 불법주차대수가 약 1천대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5】 야간 분석지표별 우선순위 상세분석 - 1

행정동	공급면수	행정동	주차수요	행정동	불법주차대수
불로대곡동	-	검암경서동	4,148대	검암경서동	4,068대
청라3동	30면	가좌1동	3,755대	가좌1동	2,781대
가정2동	35면	가좌3동	3,310대	가좌3동	2,325대
청라2동	58면	석남1동	2,260대	검단동	2,013대
당하동	109면	가좌4동	2,244대	석남1동	1,902대
오류왕길동	120면	가정1동	2,113대	가좌4동	1,890대
마전동	139면	검단동	2,013대	가정1동	1,819대
청라1동	139면	연희동	1,966대	연희동	1,578대
가정3동	143면	석남2동	1,949대	석남2동	1,384대
원당동	234면	신현원창동	1,595대	신현원창동	1,166대
검단동	281면	석남3동	1,213대	석남3동	1,059대
가좌2동	327면	가좌2동	778대	마전동	567대
석남3동	329면	마전동	567대	가좌2동	495대
가정1동	471면	가정3동	557대	가정3동	448대
신현원창동	483면	원당동	543대	당하동	420대
검암경서동	698면	당하동	420대	불로대곡동	402대
가좌4동	704면	불로대곡동	402대	원당동	387대
석남1동	711면	청라1동	362대	청라1동	316대
석남2동	1,246면	가정2동	309대	청라3동	278대
연희동	1,304면	청라3동	308대	가정2동	276대
가좌3동	1,362면	오류왕길동	307대	청라2동	258대
가좌1동	1,437면	청라2동	303대	오류왕길동	231대

- 서구 관내 22개동의 불법주차율은 모두 60%를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주차수급률 또한 모든 행정동에서 70% 이하로 분석되었다.
- 주차 과부족면수 분석결과, 8개동은 1천면 이상의 주차면이 부족하며, 검암경서동의 경우 약3천대 이상, 가좌1동의 경우 약 2천대 이상의 주차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6】 야간 분석지표별 우선순위 상세분석 - 2

행정동	불법주차율	행정동	주차수급률	행정동	과부족면수
검단동	100.0%	불로대곡동	-	검암경서동	-3,450면
당하동	100.0%	청라3동	9.7%	가좌1동	-2,318면
마전동	100.0%	가정2동	11.3%	가좌3동	-1,948면
불로대곡동	100.0%	검단동	14.0%	검단동	-1,732면
검암경서동	98.1%	검암경서동	16.8%	가정1동	-1,642면
가정2동	89.3%	청라2동	19.1%	석남1동	-1,549면
석남3동	87.3%	가정1동	22.3%	가좌4동	-1,540면
가정1동	86.1%	마전동	24.5%	신현원창동	-1,112면
청라2동	85.1%	가정3동	25.7%	석남3동	-884면
석남1동	84.2%	당하동	26.0%	석남2동	-703면
청라1동	83.4%	석남3동	27.1%	연희동	-662면
가좌4동	82.9%	신현원창동	30.3%	가좌2동	-451면
가정3동	80.4%	가좌4동	31.4%	마전동	-428면
연희동	80.3%	석남1동	31.5%	가정3동	-414면
오류왕길동	75.2%	가좌1동	38.3%	불로대곡동	-402면
청라3동	74.4%	청라1동	38.4%	당하동	-311면
가좌1동	73.2%	오류왕길동	39.1%	원당동	-309면
신현원창동	71.3%	가좌3동	41.1%	청라3동	-278면
석남2동	70.9%	가좌2동	42.0%	가정2동	-274면
가좌3동	69.7%	원당동	43.1%	청라2동	-245면
원당동	68.0%	석남2동	63.9%	청라1동	-223면
가좌2동	63.6%	연희동	66.3%	오류왕길동	-187면

다. 조사블럭별 주차수급률 분석

- 2020년 서구 주차수급실태 현장 조사를 통해 분석된 조사 블럭별 수급률 및 주차면 과부족면수 분석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7】 블럭별 주차시설 공급 현황

구분	공급면수	주간			야간		
		수요	수급률	과부족	수요	수급률	과부족
가정1동-01	면	89대	0.0%	-89면	44대	0.0%	-44면
가정1동-02	면	149대	0.0%	-149면	191대	0.0%	-191면
가정1동-03	면	16대	0.0%	-16면	62대	0.0%	-62면
가정1동-04	면	17대	0.0%	-17면	29대	0.0%	-29면
가정1동-05	면	100대	0.0%	-100면	106대	0.0%	-106면
가정1동-06	45면	137대	32.8%	-92면	193대	23.3%	-148면
가정1동-07	162면	153대	105.9%	9면	234대	69.2%	-72면
가정1동-08	186면	397대	46.9%	-211면	574대	32.4%	-388면
가정1동-09	78면	144대	54.2%	-66면	272대	28.7%	-194면
가정1동-10	면	대	-	면	대	-	면
가정1동-11	면	2대	0.0%	-2면	4대	0.0%	-4면
가정1동-12	면	대	-	면	5대	0.0%	-5면
가정1동-13	면	대	-	면	3대	0.0%	-3면
가정1동-14	면	4대	0.0%	-4면	10대	0.0%	-10면
가정1동-15	면	59대	0.0%	-59면	75대	0.0%	-75면
가정1동-16	면	1대	0.0%	-1면	3대	0.0%	-3면
가정1동-17	면	5대	0.0%	-5면	10대	0.0%	-10면
가정1동-18	면	155대	0.0%	-155면	298대	0.0%	-298면
소계	471면	1,428대	33.0%	-957면	2,113대	22.3%	-1,642면
가정2동-01	면	54대	0.0%	-54면	134대	0.0%	-134면
가정2동-02	면	대	-	면	4대	0.0%	-4면
가정2동-03	35면	48대	72.9%	-13면	122대	28.7%	-87면
가정2동-04	면	109대	0.0%	-109면	49대	0.0%	-49면
소계	35면	211대	16.6%	-176면	309대	11.3%	-274면
가정3동-01	면	12대	0.0%	-12면	23대	0.0%	-23면
가정3동-02	43면	130대	33.1%	-87면	225대	19.1%	-182면
가정3동-03	11면	74대	14.9%	-63면	116대	9.5%	-105면
가정3동-04	89면	109대	81.7%	-20면	193대	46.1%	-104면
소계	143면	325대	44.0%	-182면	557대	25.7%	-414면

【표 계 속】

구분	공급면수	주간			야간		
		수요	수급률	과부족	수요	수급률	과부족
가좌1동-01	135면	154대	87.7%	-19면	155대	87.1%	-20면
가좌1동-02	162면	179대	90.5%	-17면	89대	182.0%	73면
가좌1동-03	28면	50대	56.0%	-22면	22대	127.3%	6면
가좌1동-04	137면	894대	15.3%	-757면	452대	30.3%	-315면
가좌1동-05	면	340대	0.0%	-340면	160대	0.0%	-160면
가좌1동-06	면	25대	0.0%	-25면	13대	0.0%	-13면
가좌1동-07	13면	220대	5.9%	-207면	248대	5.2%	-235면
가좌1동-08	121면	193대	62.7%	-72면	249대	48.6%	-128면
가좌1동-09	8면	51대	15.7%	-43면	87대	9.2%	-79면
가좌1동-10	107면	254대	42.1%	-147면	446대	24.0%	-339면
가좌1동-11	36면	243대	14.8%	-207면	111대	32.4%	-75면
가좌1동-12	27면	24대	112.5%	3면	7대	385.7%	20면
가좌1동-13	면	128대	0.0%	-128면	63대	0.0%	-63면
가좌1동-14	37면	87대	42.5%	-50면	114대	32.5%	-77면
가좌1동-15	25면	134대	18.7%	-109면	157대	15.9%	-132면
가좌1동-16	93면	262대	35.5%	-169면	337대	27.6%	-244면
가좌1동-17	71면	162대	43.8%	-91면	67대	106.0%	4면
가좌1동-18	119면	416대	28.6%	-297면	225대	52.9%	-106면
가좌1동-19	84면	134대	62.7%	-50면	149대	56.4%	-65면
가좌1동-20	42면	116대	36.2%	-74면	61대	68.9%	-19면
가좌1동-21	21면	177대	11.9%	-156면	86대	24.4%	-65면
가좌1동-22	면	152대	0.0%	-152면	42대	0.0%	-42면
가좌1동-23	75면	220대	34.1%	-145면	168대	44.6%	-93면
가좌1동-24	2면	163대	1.2%	-161면	114대	1.8%	-112면
가좌1동-25	94면	303대	31.0%	-209면	133대	70.7%	-39면
소계	1,437면	5,081대	28.3%	-3,644면	3,755대	38.3%	-2,318면
가좌2동-01	59면	110대	53.6%	-51면	210대	28.1%	-151면
가좌2동-02	90면	58대	155.2%	32면	101대	89.1%	-11면
가좌2동-03	29면	51대	56.9%	-22면	106대	27.4%	-77면
가좌2동-04	113면	113대	100.0%	면	130대	86.9%	-17면
가좌2동-05	36면	126대	28.6%	-90면	231대	15.6%	-195면
소계	327면	458대	71.4%	-131면	778대	42.0%	-451면

【표 계 속】

구분	공급면수	주간			야간		
		수요	수급률	과부족	수요	수급률	과부족
가좌3동-01	180면	281대	64.1%	-101면	463대	38.9%	-283면
가좌3동-02	68면	194대	35.1%	-126면	417대	16.3%	-349면
가좌3동-03	112면	114대	98.2%	-2면	254대	44.1%	-142면
가좌3동-04	98면	127대	77.2%	-29면	139대	70.5%	-41면
가좌3동-05	171면	221대	77.4%	-50면	365대	46.8%	-194면
가좌3동-06	224면	434대	51.6%	-210면	692대	32.4%	-468면
가좌3동-07	31면	258대	12.0%	-227면	316대	9.8%	-285면
가좌3동-08	106면	196대	54.1%	-90면	114대	93.0%	-8면
가좌3동-09	72면	272대	26.5%	-200면	117대	61.5%	-45면
가좌3동-10	81면	319대	25.4%	-238면	164대	49.4%	-83면
가좌3동-11	129면	456대	28.3%	-327면	224대	57.6%	-95면
가좌3동-12	90면	83대	108.4%	7면	45대	200.0%	45면
소계	1,362면	2,955대	46.1%	-1,593면	3,310대	41.1%	-1,948면
가좌4동-01	16면	49대	32.7%	-33면	74대	21.6%	-58면
가좌4동-02	면	12대	0.0%	-12면	19대	0.0%	-19면
가좌4동-03	면	17대	0.0%	-17면	41대	0.0%	-41면
가좌4동-04	54면	275대	19.6%	-221면	519대	10.4%	-465면
가좌4동-05	면	196대	0.0%	-196면	362대	0.0%	-362면
가좌4동-06	65면	131대	49.6%	-66면	280대	23.2%	-215면
가좌4동-07	41면	123대	33.3%	-82면	290대	14.1%	-249면
가좌4동-08	49면	305대	16.1%	-256면	115대	42.6%	-66면
가좌4동-09	249면	361대	69.0%	-112면	177대	140.7%	72면
가좌4동-10	230면	670대	34.3%	-440면	367대	62.7%	-137면
소계	704면	2,139대	32.9%	-1,435면	2,244대	31.4%	-1,540면
검단동-01	면	20대	0.0%	-20면	46대	0.0%	-46면
검단동-02	면	27대	0.0%	-27면	94대	0.0%	-94면
검단동-03	71면	81대	87.7%	-10면	107대	66.4%	-36면
검단동-04	면	116대	0.0%	-116면	244대	0.0%	-244면
검단동-05	33면	96대	34.4%	-63면	257대	12.8%	-224면
검단동-06	면	67대	0.0%	-67면	253대	0.0%	-253면
검단동-07	53면	139대	38.1%	-86면	249대	21.3%	-196면
검단동-08	면	42대	0.0%	-42면	88대	0.0%	-88면
검단동-09	면	3대	0.0%	-3면	35대	0.0%	-35면
검단동-10	면	61대	0.0%	-61면	188대	0.0%	-188면
검단동-11	면	41대	0.0%	-41면	95대	0.0%	-95면
검단동-12	면	40대	0.0%	-40면	103대	0.0%	-103면
검단동-13	면	39대	0.0%	-39면	74대	0.0%	-74면
검단동-14	면	35대	0.0%	-35면	72대	0.0%	-72면
검단동-15	124면	38대	326.3%	86면	75대	165.3%	49면
검단동-16	면	42대	0.0%	-42면	33대	0.0%	-33면
소계	281면	887대	31.7%	-606면	2,013대	14.0%	-1,732면

【표 계 속】

구분	공급면수	주간			야간		
		수요	수급률	과부족	수요	수급률	과부족
검암경서동-01	71면	38대	186.8%	33면	18대	394.4%	53면
검암경서동-02	34면	269대	12.6%	-235면	79대	43.0%	-45면
검암경서동-03	4면	85대	4.7%	-81면	32대	12.5%	-28면
검암경서동-04	74면	336대	22.0%	-262면	92대	80.4%	-18면
검암경서동-05	6면	130대	4.6%	-124면	33대	18.2%	-27면
검암경서동-06	23면	110대	20.9%	-87면	27대	85.2%	-4면
검암경서동-07	16면	137대	11.7%	-121면	59대	27.1%	-43면
검암경서동-08	면	131대	0.0%	-131면	42대	0.0%	-42면
검암경서동-09	35면	130대	26.9%	-95면	51대	68.6%	-16면
검암경서동-10	77면	170대	45.3%	-93면	56대	137.5%	21면
검암경서동-11	면	151대	0.0%	-151면	57대	0.0%	-57면
검암경서동-12	면	82대	0.0%	-82면	159대	0.0%	-159면
검암경서동-13	61면	318대	19.2%	-257면	628대	9.7%	-567면
검암경서동-14	면	104대	0.0%	-104면	214대	0.0%	-214면
검암경서동-15	면	192대	0.0%	-192면	310대	0.0%	-310면
검암경서동-16	101면	257대	39.3%	-156면	456대	22.1%	-355면
검암경서동-17	면	99대	0.0%	-99면	182대	0.0%	-182면
검암경서동-18	면	148대	0.0%	-148면	278대	0.0%	-278면
검암경서동-19	면	64대	0.0%	-64면	140대	0.0%	-140면
검암경서동-20	94면	110대	85.5%	-16면	149대	63.1%	-55면
검암경서동-21	면	62대	0.0%	-62면	132대	0.0%	-132면
검암경서동-22	면	76대	0.0%	-76면	107대	0.0%	-107면
검암경서동-23	면	107대	0.0%	-107면	229대	0.0%	-229면
검암경서동-24	55면	162대	34.0%	-107면	268대	20.5%	-213면
검암경서동-25	47면	135대	34.8%	-88면	245대	19.2%	-198면
검암경서동-26	면	47대	0.0%	-47면	105대	0.0%	-105면
소계	698면	3,650대	19.1%	-2,952면	4,148대	16.8%	-3,450면
마전동-01	면	3대	0.0%	-3면	14대	0.0%	-14면
마전동-02	면	1대	0.0%	-1면	5대	0.0%	-5면
마전동-03	면	7대	0.0%	-7면	11대	0.0%	-11면
마전동-04	면	28대	0.0%	-28면	80대	0.0%	-80면
마전동-05	면	9대	0.0%	-9면	20대	0.0%	-20면
마전동-06	면	대	-	면	대	-	면
마전동-07	면	11대	0.0%	-11면	29대	0.0%	-29면
마전동-08	54면	50대	108.0%	4면	72대	75.0%	-18면
마전동-09	35면	207대	16.9%	-172면	197대	17.8%	-162면
마전동-10	50면	45대	111.1%	5면	139대	36.0%	-89면
소계	139면	361대	38.5%	-222면	567대	24.5%	-428면

【표 계속】

구분	공급면수	주간			야간		
		수요	수급률	과부족	수요	수급률	과부족
당하동-01	면	62대	0.0%	-62면	99대	0.0%	-99면
당하동-02	69면	23대	300.0%	46면	34대	202.9%	35면
당하동-03	면	7대	0.0%	-7면	33대	0.0%	-33면
당하동-04	면	13대	0.0%	-13면	48대	0.0%	-48면
당하동-05	40면	15대	266.7%	25면	44대	90.9%	-4면
당하동-06	면	52대	0.0%	-52면	105대	0.0%	-105면
당하동-07	면	3대	0.0%	-3면	22대	0.0%	-22면
당하동-08	면	9대	0.0%	-9면	35대	0.0%	-35면
소계	109면	184대	59.2%	-75면	420대	26.0%	-311면
블로대곡동-01	면	80대	0.0%	-80면	141대	0.0%	-141면
블로대곡동-02	면	92대	0.0%	-92면	186대	0.0%	-186면
블로대곡동-03	면	18대	0.0%	-18면	13대	0.0%	-13면
블로대곡동-04	면	8대	0.0%	-8면	35대	0.0%	-35면
블로대곡동-05	면	3대	0.0%	-3면	27대	0.0%	-27면
소계	면	201대	0.0%	-201면	402대	0.0%	-402면
석남1동-01	102면	416대	24.5%	-314면	483대	21.1%	-381면
석남1동-02	249면	202대	123.3%	47면	291대	85.6%	-42면
석남1동-03	97면	241대	40.2%	-144면	362대	26.8%	-265면
석남1동-04	면	84대	0.0%	-84면	68대	0.0%	-68면
석남1동-05	51면	360대	14.2%	-309면	435대	11.7%	-384면
석남1동-06	203면	302대	67.2%	-99면	460대	44.1%	-257면
석남1동-07	9면	148대	6.1%	-139면	161대	5.6%	-152면
소계	711면	1,753대	40.6%	-1,042면	2,260대	31.5%	-1,549면
석남2동-01	165면	507대	32.5%	-342면	101대	163.4%	64면
석남2동-02	면	286대	0.0%	-286면	56대	0.0%	-56면
석남2동-03	308면	531대	58.0%	-223면	146대	211.0%	162면
석남2동-04	98면	372대	26.3%	-274면	105대	93.3%	-7면
석남2동-05	115면	525대	21.9%	-410면	170대	67.6%	-55면
석남2동-06	172면	267대	64.4%	-95면	364대	47.3%	-192면
석남2동-07	157면	230대	68.3%	-73면	346대	45.4%	-189면
석남2동-08	133면	165대	80.6%	-32면	228대	58.3%	-95면
석남2동-09	3면	101대	3.0%	-98면	187대	1.6%	-184면
석남2동-10	33면	58대	56.9%	-25면	80대	41.3%	-47면
석남2동-11	62면	72대	86.1%	-10면	166대	37.3%	-104면
소계	1,246면	3,114대	40.0%	-1,868면	1,949대	63.9%	-703면
석남3동-01	27면	127대	21.3%	-100면	210대	12.9%	-183면
석남3동-02	33면	152대	21.7%	-119면	231대	14.3%	-198면
석남3동-03	192면	246대	78.0%	-54면	273대	70.3%	-81면
석남3동-04	35면	100대	35.0%	-65면	175대	20.0%	-140면
석남3동-05	35면	107대	32.7%	-72면	176대	19.9%	-141면
석남3동-06	7면	104대	6.7%	-97면	148대	4.7%	-141면
소계	329면	836대	39.4%	-507면	1,213대	27.1%	-884면

【표 계 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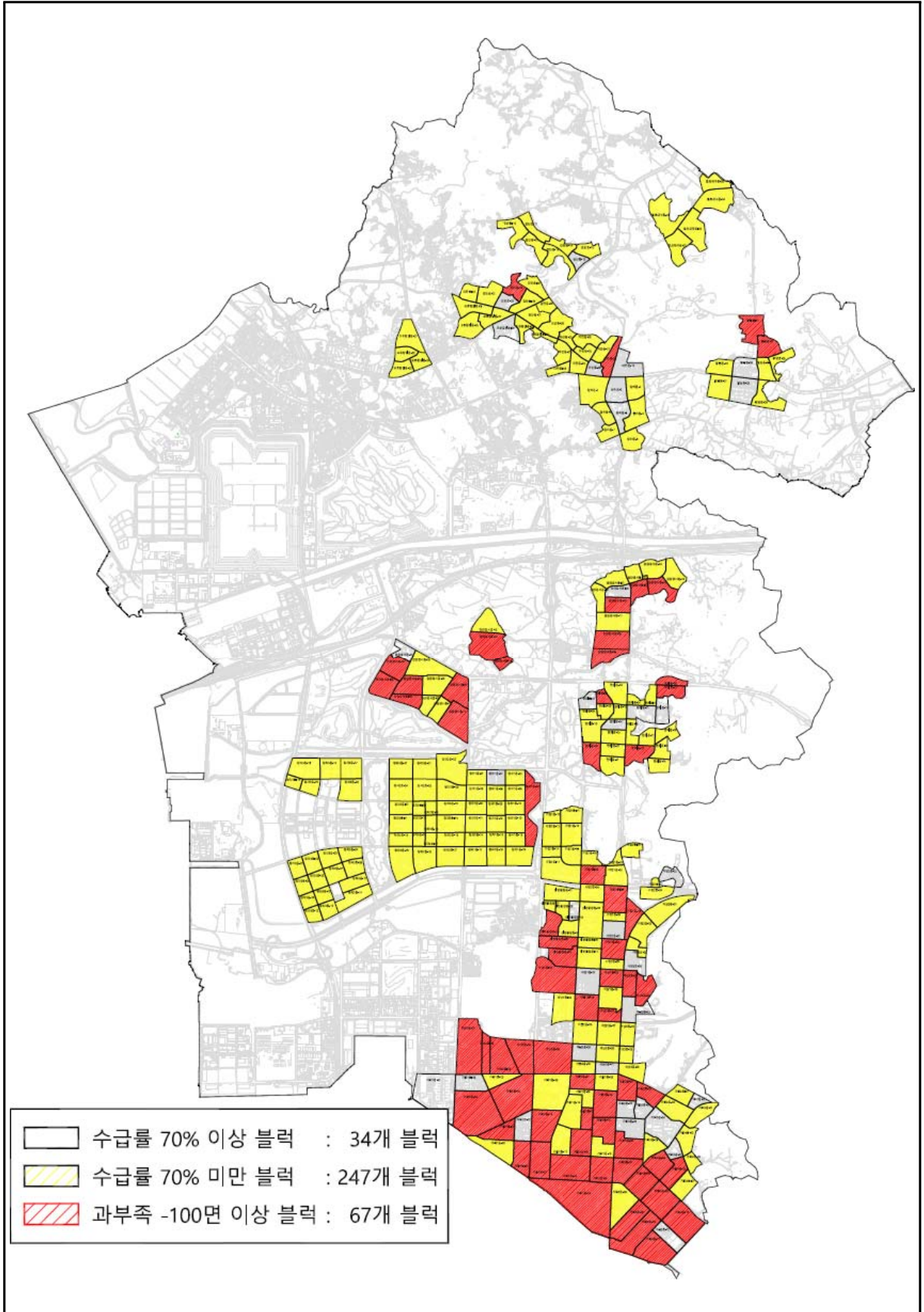
구분	공급면수	주간			야간		
		수요	수급률	과부족	수요	수급률	과부족
신현원창동-01	면	대	-	면	대	-	면
신현원창동-02	면	34대	0.0%	-34면	42대	0.0%	-42면
신현원창동-03	면	대	-	면	12대	0.0%	-12면
신현원창동-04	27면	15대	180.0%	12면	21대	128.6%	6면
신현원창동-05	면	19대	0.0%	-19면	37대	0.0%	-37면
신현원창동-06	19면	131대	14.5%	-112면	197대	9.6%	-178면
신현원창동-07	91면	151대	60.3%	-60면	200대	45.5%	-109면
신현원창동-08	77면	186대	41.4%	-109면	292대	26.4%	-215면
신현원창동-09	45면	132대	34.1%	-87면	180대	25.0%	-135면
신현원창동-10	126면	242대	52.1%	-116면	319대	39.5%	-193면
신현원창동-11	98면	196대	50.0%	-98면	295대	33.2%	-197면
소계	483면	1,106대	43.7%	-623면	1,595대	30.3%	-1,112면
연희동-01	61면	86대	70.9%	-25면	109대	56.0%	-48면
연희동-02	23면	123대	18.7%	-100면	152대	15.1%	-129면
연희동-03	1면	67대	1.5%	-66면	110대	0.9%	-109면
연희동-04	66면	156대	42.3%	-90면	206대	32.0%	-140면
연희동-05	45면	132대	34.1%	-87면	166대	27.1%	-121면
연희동-06	면	187대	0.0%	-187면	189대	0.0%	-189면
연희동-07	70면	240대	29.2%	-170면	357대	19.6%	-287면
연희동-08	16면	48대	33.3%	-32면	55대	29.1%	-39면
연희동-09	3면	69대	4.3%	-66면	98대	3.1%	-95면
연희동-10	13면	79대	16.5%	-66면	101대	12.9%	-88면
연희동-11	233면	73대	319.2%	160면	81대	287.7%	152면
연희동-12	16면	15대	106.7%	1면	대	-	16면
연희동-13	109면	140대	77.9%	-31면	220대	49.5%	-111면
연희동-14	248면	26대	953.8%	222면	51대	486.3%	197면
연희동-15	10면	71대	14.1%	-61면	81대	12.3%	-71면
연희동-16	77면	140대	55.0%	-63면	212대	36.3%	-135면
연희동-17	63면	101대	62.4%	-38면	101대	62.4%	-38면
연희동-18	60면	136대	44.1%	-76면	181대	33.1%	-121면
연희동-19	35면	150대	23.3%	-115면	190대	18.4%	-155면
연희동-20	25면	84대	29.8%	-59면	143대	17.5%	-118면
연희동-21	67면	137대	48.9%	-70면	183대	36.6%	-116면
연희동-22	57면	274대	20.8%	-217면	360대	15.8%	-303면
연희동-23	6면	45대	13.3%	-39면	59대	10.2%	-53면
연희동-24	면	대	-	면	3대	0.0%	-3면
소계	1,304면	2,579대	50.6%	-1,275면	1,966대	66.3%	-662면

【표 계 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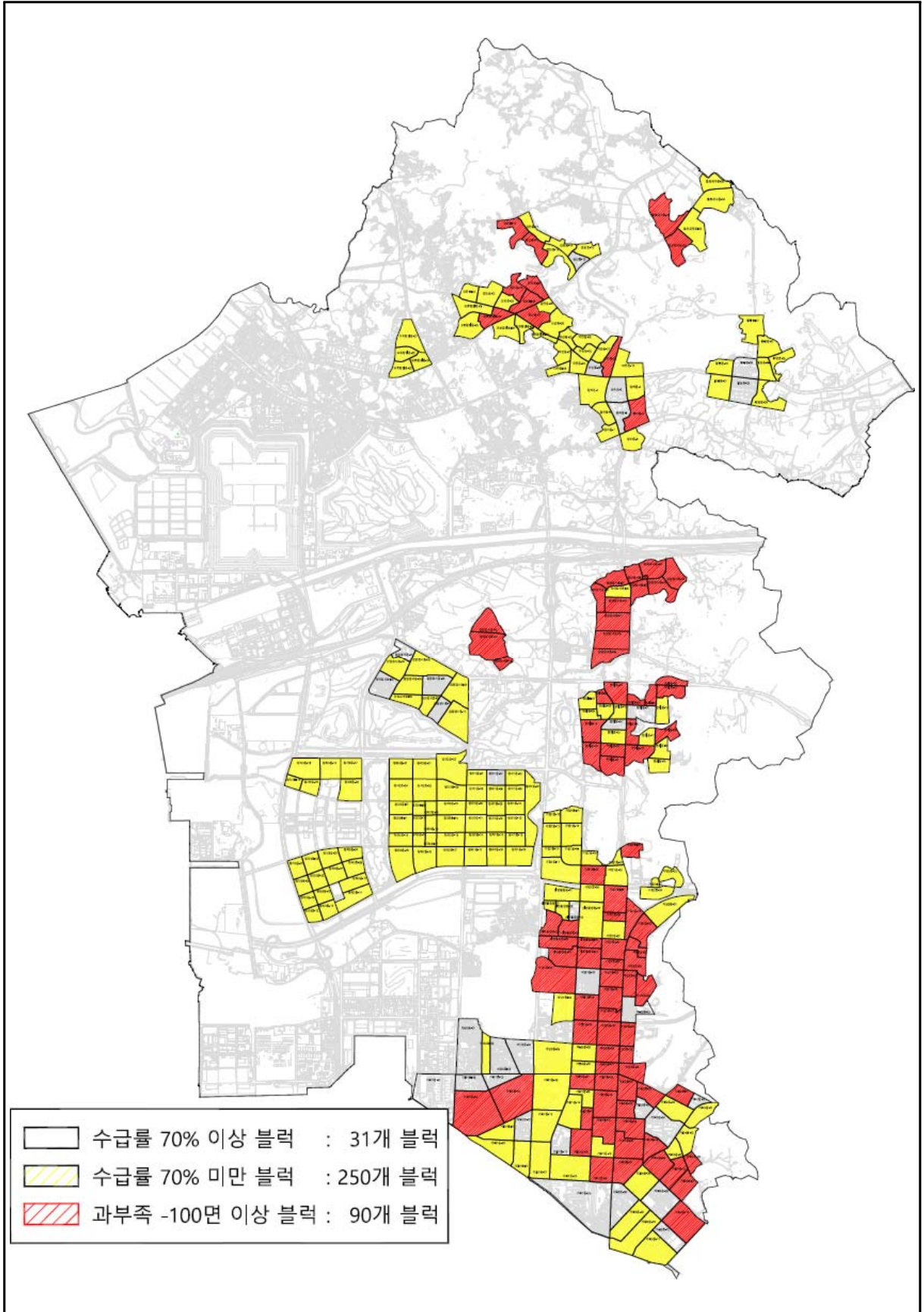
구분	공급면수	주간			야간		
		수요	수급률	과부족	수요	수급률	과부족
오류왕길동-01	면	1대	0.0%	-1면	1대	0.0%	-1면
오류왕길동-02	면	28대	0.0%	-28면	40대	0.0%	-40면
오류왕길동-03	면	대	-	면	대	-	면
오류왕길동-04	면	대	-	면	대	-	면
오류왕길동-05	면	19대	0.0%	-19면	15대	0.0%	-15면
오류왕길동-06	면	5대	0.0%	-5면	20대	0.0%	-20면
오류왕길동-07	85면	174대	48.9%	-89면	231대	36.8%	-146면
오류왕길동-08	35면	23대	152.2%	12면	대	-	35면
오류왕길동-09	면	42대	0.0%	-42면	대	-	면
오류왕길동-10	면	13대	0.0%	-13면	대	-	면
소계	120면	305대	39.3%	-185면	307대	39.1%	-187면
원당동-01	면	101대	0.0%	-101면	대	-	면
원당동-02	면	116대	0.0%	-116면	144대	0.0%	-144면
원당동-03	면	48대	0.0%	-48면	78대	0.0%	-78면
원당동-04	116면	112대	103.6%	4면	75대	154.7%	41면
원당동-05	면	3대	0.0%	-3면	대	-	면
원당동-06	면	17대	0.0%	-17면	대	-	면
원당동-07	면	14대	0.0%	-14면	대	-	면
원당동-08	118면	154대	76.6%	-36면	154대	76.6%	-36면
원당동-09	면	51대	0.0%	-51면	92대	0.0%	-92면
소계	234면	616대	38.0%	-382면	543대	43.1%	-309면
청라1동-01	면	대	-	면	대	-	면
청라1동-02	88면	105대	83.8%	-17면	75대	117.3%	13면
청라1동-03	면	대	-	면	대	-	면
청라1동-04	면	대	-	면	대	-	면
청라1동-05	면	22대	0.0%	-22면	44대	0.0%	-44면
청라1동-06	면	대	-	면	대	-	면
청라1동-07	28면	143대	19.6%	-115면	127대	22.0%	-99면
청라1동-08	면	대	-	면	대	-	면
청라1동-09	면	대	-	면	대	-	면
청라1동-10	면	대	-	면	대	-	면
청라1동-11	면	9대	0.0%	-9면	19대	0.0%	-19면
청라1동-12	면	대	-	면	대	-	면
청라1동-13	면	13대	0.0%	-13면	21대	0.0%	-21면
청라1동-14	면	대	-	면	대	-	면
청라1동-15	면	대	-	면	대	-	면
청라1동-16	면	대	-	면	대	-	면
청라1동-17	면	대	-	면	대	-	면
청라1동-18	23면	50대	46.0%	-27면	76대	30.3%	-53면
청라1동-19	면	대	-	면	대	-	면
소계	139면	342대	40.6%	-203면	362대	38.4%	-223면

【표 계 속】

구분	공급면수	주간			야간		
		수요	수급률	과부족	수요	수급률	과부족
청라2동-01	면	대	-	면	대	-	면
청라2동-02	면	75대	0.0%	-75면	65대	0.0%	-65면
청라2동-03	면	6대	0.0%	-6면	2대	0.0%	-2면
청라2동-04	면	대	-	면	대	-	면
청라2동-05	58면	113대	51.3%	-55면	123대	47.2%	-65면
청라2동-06	면	대	-	면	대	-	면
청라2동-07	면	대	-	면	대	-	면
청라2동-08	면	대	-	면	대	-	면
청라2동-09	면	대	-	면	대	-	면
청라2동-10	면	대	-	면	대	-	면
청라2동-11	면	대	-	면	대	-	면
청라2동-12	면	대	-	면	대	-	면
청라2동-13	면	대	-	면	대	-	면
청라2동-14	면	23대	0.0%	-23면	23대	0.0%	-23면
청라2동-15	면	대	-	면	대	-	면
청라2동-16	면	대	-	면	대	-	면
청라2동-17	면	대	-	면	대	-	면
청라2동-18	면	3대	0.0%	-3면	4대	0.0%	-4면
청라2동-19	면	대	-	면	대	-	면
청라2동-20	면	49대	0.0%	-49면	86대	0.0%	-86면
청라2동-21	면	대	-	면	대	-	면
소계	58면	269대	21.6%	-211면	303대	19.1%	-245면
청라3동-01	면	대	-	면	대	-	면
청라3동-02	면	대	-	면	대	-	면
청라3동-03	면	대	-	면	대	-	면
청라3동-04	면	대	-	면	대	-	면
청라3동-05	면	대	-	면	대	-	면
청라3동-06	면	대	-	면	대	-	면
청라3동-07	면	대	-	면	대	-	면
청라3동-08	면	대	-	면	대	-	면
청라3동-09	면	8대	0.0%	-8면	13대	0.0%	-13면
청라3동-10	면	12대	0.0%	-12면	19대	0.0%	-19면
청라3동-11	면	23대	0.0%	-23면	37대	0.0%	-37면
청라3동-12	면	27대	0.0%	-27면	43대	0.0%	-43면
청라3동-13	면	41대	0.0%	-41면	51대	0.0%	-51면
청라3동-14	면	대	-	면	대	-	면
청라3동-15	30면	78대	38.5%	-48면	67대	44.8%	-37면
청라3동-16	면	71대	0.0%	-71면	47대	0.0%	-47면
청라3동-17	면	71대	0.0%	-71면	31대	0.0%	-31면
청라3동-18	면	대	-	면	대	-	면
청라3동-19	면	대	-	면	대	-	면
청라3동-20	면	대	-	면	대	-	면
소계	30면	331대	9.1%	-301면	308대	9.7%	-278면



【그림 4-2】 행정동별-조사블럭별 주차수급률 - 주간



【그림 4-3】 행정동별-조사블럭별 주차수급률 - 야간

제 5 장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

5.1 기수행과업 성과분석

5.2 문제점 검토

5.3 서구 주차환경개선 목표설정

5.4 주차시설 공급방안

5.5 주차수요 관리방안

5.6 제도 개선방안

제5장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

5.1 기수행과업 성과분석

5.1.1 기수행과업 주차정책의 기본방향

- 서구 주차문제의 해결 및 실현가능한 주차정책의 수립을 위해, 기계획시 수립된 개선계획의 수행내용 검토와 현황 문제점 분석을 진행하였음.
- 『2017년 서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에서는 주차공간의 확보와 주차수요의 효율적 관리, 주차시설의 운영 및 제도개선 등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음.

【표 5-1】 서구 주차정책목표 설정

- ✓ 주거지역과 도심 및 교통 혼잡지역, 공업지역으로 토지이용 현황을 구분
- ✓ 주거지역의 경우 시설공급을 통해 공급량을 확보
- ✓ 도심 및 교통 혼잡지역은 주차시설 억제를 통해 주차수요를 감소
- ✓ 공업지역은 시설공급과 주차시설 억제를 통해 공급량 확보 및 주차수요를 감소



5.1.2 기수행과업 주차정책의 목표

가. 인천시의 주차정책 목표

【표 5-2】 주차정책의 목표

주차공간 확보	교통안전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상, 건축물 등에 주차공간 확보 ✓ 자동차가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 교통수요 정책으로 주차용지가 충분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는 차량의 이동성과 다른 행태 ✓ 차량과 사람의 안전, 교통류 영향 최소화
교통소통 원활화	교통의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선도로변 교통소통 원활화 위한 주차금지 ✓ 노외주차장 주차는 도시교통의 소통을 위한 주차정책 목표의 하나로 중요한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 적재적소에 배치 ✓ 차량소통 원활, 이용자 편리 도모 ✓ 교통시스템 효율적 운영위한 제도 및 주차장의 배치계획 수립

【표 5-3】 인천시 주차정책의 목표

정책목표	세부내용
주차시설 공급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면도로상 노상주차장 확충 ✓ 담장 허물기 사업 시행 ✓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 학교운동장 활용방안 ✓ 공영노외주차장 확충
주차장 관리및 운영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요금제도 개선 ✓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나. 지역별 주차환경개선 기본방안

【표 5-4】 주차환경개선 기본방안

기본방안	기초자료
일방통행 및 노상주차장 확충	현장조사결과
간선도로 시간제 주차	현장조사결과
공영 노외주차장 건설	서구 내부자료 및 현장조사결과
Green Parking 시행	현장조사결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현장조사결과

5.1.3 기수행과업 주차시설공급 수행내역

- 기수립된 『2017년 서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의 목표연도인 2020년 까지 주차장 공급계획의 수행내역을 검토한 결과, 설치주차면수를 기준으로 수행률 조사결과, 5개부문 총 3,721면 중 1,709면(45.9%)이 설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5】 기계획 수행내역 검토

2017 행정구역	2020 행정구역	주차환경개선방안(면수)					합계
		노상주차	시간제주차	노외주차	그린파킹	부설개방	
가정1동	가정1동	9면	-	-	49면	53면	111면
가정2동	가정2동	-	-	-	-	-	-
가정3동	가정3동	146면	-	-	-	-	146면
가좌1동	가좌1동	431면	70면	462면	3면	45면	1,011면
가좌2동	가좌2동	51면	-	-	-	63면	114면
가좌3동	가좌3동	86면	-	36면	-	-	122면
가좌4동	가좌4동	185면	-	100면	-	-	285면
검단1동	검단동	-	-	52면	-	173면	225면
검암경서동	검암경서동	252면	-	23면	-	-	275면
-	마전동	-	-	-	-	-	-
검단4동	당하동	-	-	-	-	-	-
검단2동	불로대곡동	-	-	-	-	-	-
석남1동	석남1동	152면	-	255면	18면	18면	443면
석남2동	석남2동	213면	-	-	-	-	213면
석남3동	석남3동	204면	-	-	7면	-	211면
신현원창동	신현원창동	34면	-	-	21면	52면	107면
연희동	연희동	181면	-	62면	-	180면	423면
검단5동	오류왕길동	13면	-	-	-	-	13면
검단3동	원당동	-	-	-	-	-	-
청라1동	청라1동	-	-	22면	-	-	22면
청라2동	청라2동	-	-	-	-	-	-
청라3동	청라3동	-	-	-	-	-	-
합계		1,957면	70면	1,012면	98면	584면	3,721면
수행내역		63면	미수행	62면	26면	1,558면	1,709면
수행률		3.2%	-	6.1%	26.5%	266.8%	45.9%

주 : 민간의 참여에 의한 그린파킹 및 야간개방 등은 수행률 검토항목에서 제외하였음

가. 노외주차장 확충 수행내역 검토

- 기수립된 『2017년 서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의 목표연도인 2020년 까지 노외 주차장공급계획의 수행내역 검토 결과, 17개소 계획면수 1,012면 중 2개소 62면이 설치되었으며, 수행률은 약 6.1%로 조사되었다.

【표 5-6】 기계화 노외주차장 확충 계획 수행내역 검토

구분	블럭	주소	조성면적	계획면수	설치면수
가좌1동	1	가좌동 104	14,575.0m ²	273면	미설치
	3	가좌동 139-3	1,807.4m ²	60면(확장)	미설치
	8	가좌동 166-3	788.9m ²	66면	미설치
	18-2	가좌동 178	866.1m ²	47면	미설치
	21-1	가좌동 173-7	292.1m ²	16면	미설치
가좌3동	2	가좌동 492-4	564.2m ²	36면	미설치
가좌4동	4	가좌동 331-10	172.9m ²	10면	미설치
	9	가좌동 493-5	1,656.9m ²	90면	미설치
석남1동	1	석남동 203-13	15,000.0m ²	154면	미설치
	4	석남동 515-3	1,361.5m ²	74면	미설치
	7	석남동 217-29	566.6m ²	27면	미설치
검암경서동	11	경서동 350-185	686.3m ²	23면	미설치
연희동	9	심곡동 327-12	168.9m ²	9면	미설치
	20	연희동 710-12	979.5m ²	53면	미설치
검단1동	5	마전동 913-2	196.5m ²	12면	미설치
	7	마전동 984-1	736.4m ²	40면(민영)	약 40대가능
청라1동	2	연희동 766-1	636.8m ²	22면	22면
합계	-	-	-	1,012면	62면
수행률			총 1,012면 중 62면(약 6.1%)		



【그림 5-1】 노외주차장 확충 현황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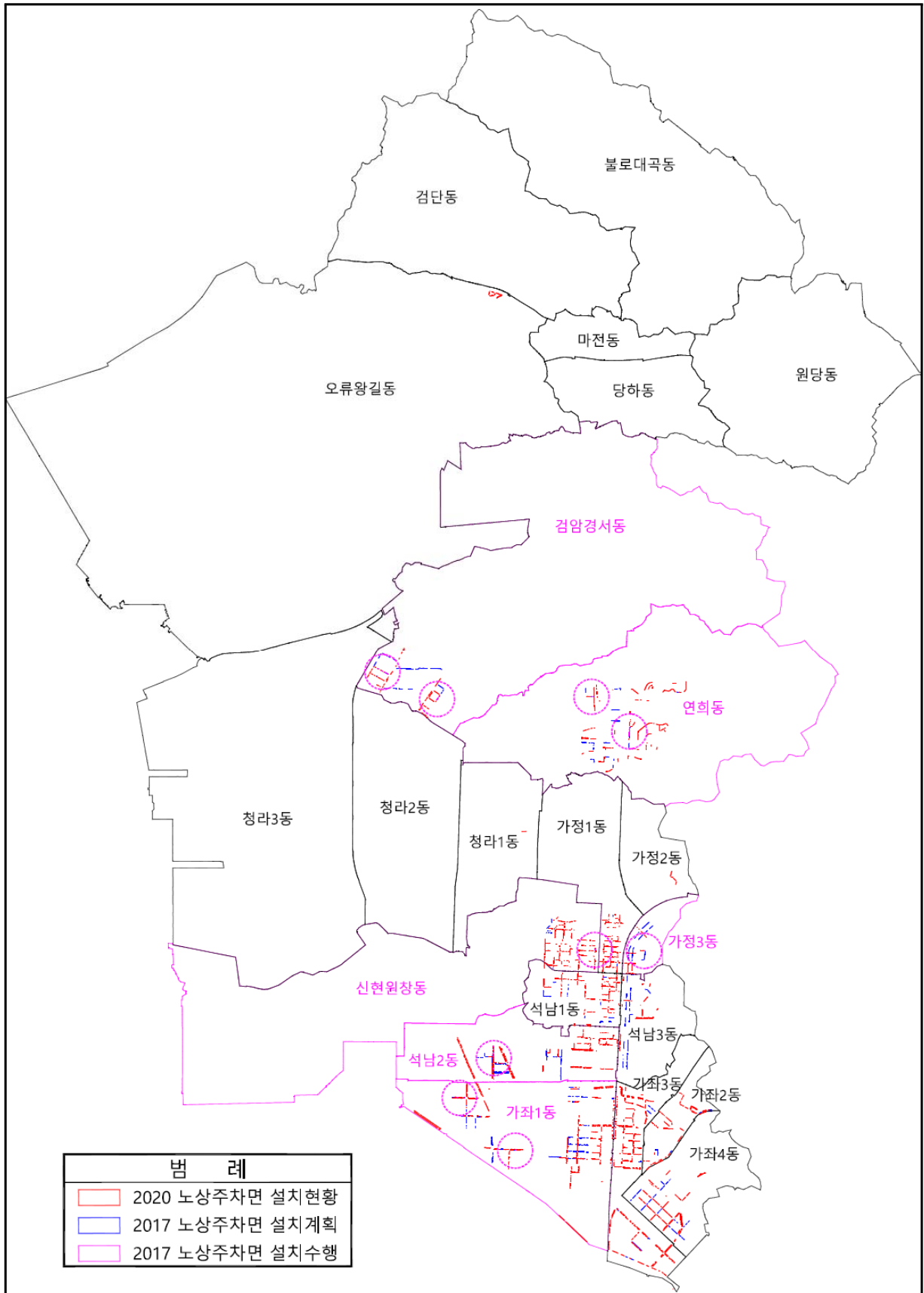
나. 노상주차장 확충 수행내역 검토

- 기수립된 『2017년 서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의 목표연도인 2020년 까지 노상 주차장공급계획의 수행내역 검토 결과, 계획면수 1,957면 중 63면이 설치되었으며, 수행률은 약 3.2%로 조사되었다.

【표 5-7】 기계획 노상주차장 확충 수행내역 검토

2017년 동구분	계획면수	2020년 동구분	설치면수 ^{주)}	수행률
가정1동	9면	가정1동	-	-
가정2동	-	가정2동	-	-
가정3동	146면	가정3동	1면	0.7%
가좌1동	431면	가좌1동	8면	1.9%
가좌2동	51면	가좌2동	-	-
가좌3동	86면	가좌3동	-	-
가좌4동	185면	가좌4동	-	-
검단1동	-	검단동	-	-
검암경서동	252면	검암경서동	13면	5.2%
-	-	마전동	-	-
검단4동	면	당하동	-	-
검단2동	면	불로대곡동	-	-
석남1동	152면	석남1동	-	-
석남2동	213면	석남2동	13면	6.1%
석남3동	204면	석남3동	-	-
신현원창동	34면	신현원창동	1면	2.9%
연희동	181면	연희동	27면	14.9%
검단5동	13면	오류왕길동	-	-
검단3동	-	원당동	-	-
청라1동	-	청라1동	-	-
청라2동	-	청라2동	-	-
합계	1,957면	합계	63면	3.2%

주 : 노상주차장의 경우 주차면의 삭제 및 신설 등 변동이 잦아 명확한 설치시점을 판정하기 어려워, 기설치계획된 지점과 유사한 지점의 설치현황을 설치면수로 가정하였음



【그림 5-2】 노상주차장 확충계획 수행내역 조사결과

다. 시간제 주차허용 수행내역 검토

- 기수립된 『2017년 서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에서는 가좌1동 건지로상 야간박차 허용구간 개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장 조사결과 야간박차 허용을 위한 안내 표지판 등의 미설치로 미수행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8】 기계획 시간제 주차허용 구간 수행내역 검토

구분	블럭번호	도로명	면수	수행점검
가좌1동	15BL	건지로	70면	미설치



【그림 5-3】 야간박차 허용구간 현황 조사결과

라. 부설주차장 개방 수행내역 검토

- 기수립된 『2017년 서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에서는 7개동, 584면을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검토사업으로 개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서구 내부자료 검토결과, 2020년 까지 서구 전체 총 1,558면을 확보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기계획의 대상지점과 실제 시행 건물의 위치가 상이하여 1:1 매칭을 통한 수행 검토는 어려우나, 전체적인 수행성과는 266.7%로 초과 달성·운영중이다.
- 공공위주의 주차시설 공급정책의 한계로 기존 주차시설의 효율적 이용이 주목받고 있는 현재, 서구의 개방사업 추진성과는 매우 주목할 만한 것으로, 향후 적극적인 홍보와 확대시행에 긍정적인 신호로 보여진다.

【표 5-9】 기계획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수행내역 검토

구분	수행내역	수행률	비고
7개동 584면	서구 전체 1,558면	266.7%	목표지표 초과달성

자료 : 서구청 내부자료



【그림 5-4】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수행성과(신현교회)

마. 그린파크킹 수행내역 검토

- 기수립된 『2017년 서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에서는 5개동, 98면을 그린파크킹 대상 부설주차장사업으로 개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서구 내부자료를 인용하여 그린파크킹 수행 현황 조사결과, 2017년 이후 총 26면을 추가 확보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10】 그린파크킹 추진성과

2016년이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352면	6면	9면	11면	378면

자료 : 서구청 내부자료

【표 5-11】 그린파크킹 수행내역 검토

구분	수행내역	수행률	비고
5개동 98면	서구 전체 26면	26.5%	계획지점 1:1 매칭 확인 불가

자료 : 서구청 내부자료

5.1.4 기수행과업 검토결과

- 기계획의 수행률 검토결과, 정량적으로 수치화 할 수 있는 주차면수 설치검토를 통한 주차공간의 확보는 약 45.9%의 수행성과를 달성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노외공영주차장 건설의 경우, 6.1%의 수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계획 수립 후 실제 건립을 위한 추가 조치(타당성분석, 기본 및 실시설계) 미이행과 재원확보, 실제 공사까지의 필요 기간 미고려 등으로 인한 수행률 저하로 판단되며,
- 노상주차면의 수행률은 3.2%로 기본계획상 설치지점의 개략적검토로 인한 실제 설치 가능여부(구조적 문제 - 인접건물 출입구, 도로폭원, 도로시설물 등) 미검토 등이 주요 미설치 사유로 판단된다.
- 주차장 야간개방의 경우, 공공위주의 주차시설 공급정책의 한계로 기존 주차시설의 효율적 이용이 주목받고 있는 현재, 서구의 개방사업 추진성과는 매우 주목할 만한 것으로, 향후 확대시행에 긍정적인 신호로 보여진다.
- 그린파크킹 사업 검토 시, 민원신청에 의한 사업으로 인한 기계획 대상지점과 실제 시행 건물의 1:1 매칭을 통한 수행검토는 어려우나, 전체적인 수행성과는 26.5%로 분석되었으며,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 공공위주의 주차시설 공급정책의 한계로 민간주도의 주차장 확보가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는 현재 서구의 그린파크킹 사업은 향후 확대시행에 긍정적인 신호로 보여진다.

5.2 문제점 검토

- 일반적으로 도시내 주차문제는 지역의 토지이용·개발밀도 및 이동 수단에 대한 선호도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된다. 보통 증가하는 차량 대비 주차장의 공급량이 충분하지 못 할 경우 문제가 발생되며,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하여 예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시도 하고 있으나, 대부분 주차시설 공급위주의 정책·제도가 주를 이루고 있어, 급증하는 주차수요를 포용하기에는 재원적·물리적 한계가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 이에 따라, 본 계획에서는 계획으로만 남게 되는 계획이 아닌, 서구와 협의를 통해 실제적으로 서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목표연도내 실제적인 수행이 가능한 계획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2.1 주차시설 공급부족 및 기타 문제점

가. 주차수급률 저하

- 통계연보 기준 서구의 차량등록대수 대비 주차장 확보율 분석결과, 공급면수는 267,693면, 자동차 등록대수는 239,617대로 확보율은 111.7%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 등록대수 대비 주차면수 비율에 의한 확보율 분석은 차량의 이동 및 등록대수와 실제 차량대수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 본 계획에서는 실제 주차수요 대비 주차장이 확보된 상태 즉, 실제 시민들이 체감 하는 주차문제를 파악하는 주차장 수급률(실제주차수요 대비 주차장 확보 상태)을 바탕으로 서구 주차수급 문제를 검토해 보았다.
- 주차장 수급률 분석 시 주차장 이용자가 제한 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의 공급면수 및 주차수요를 제외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이용가능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수급률 분석을 진행하였다.
- 금회 조사된 서구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동별 주차수급률은 다음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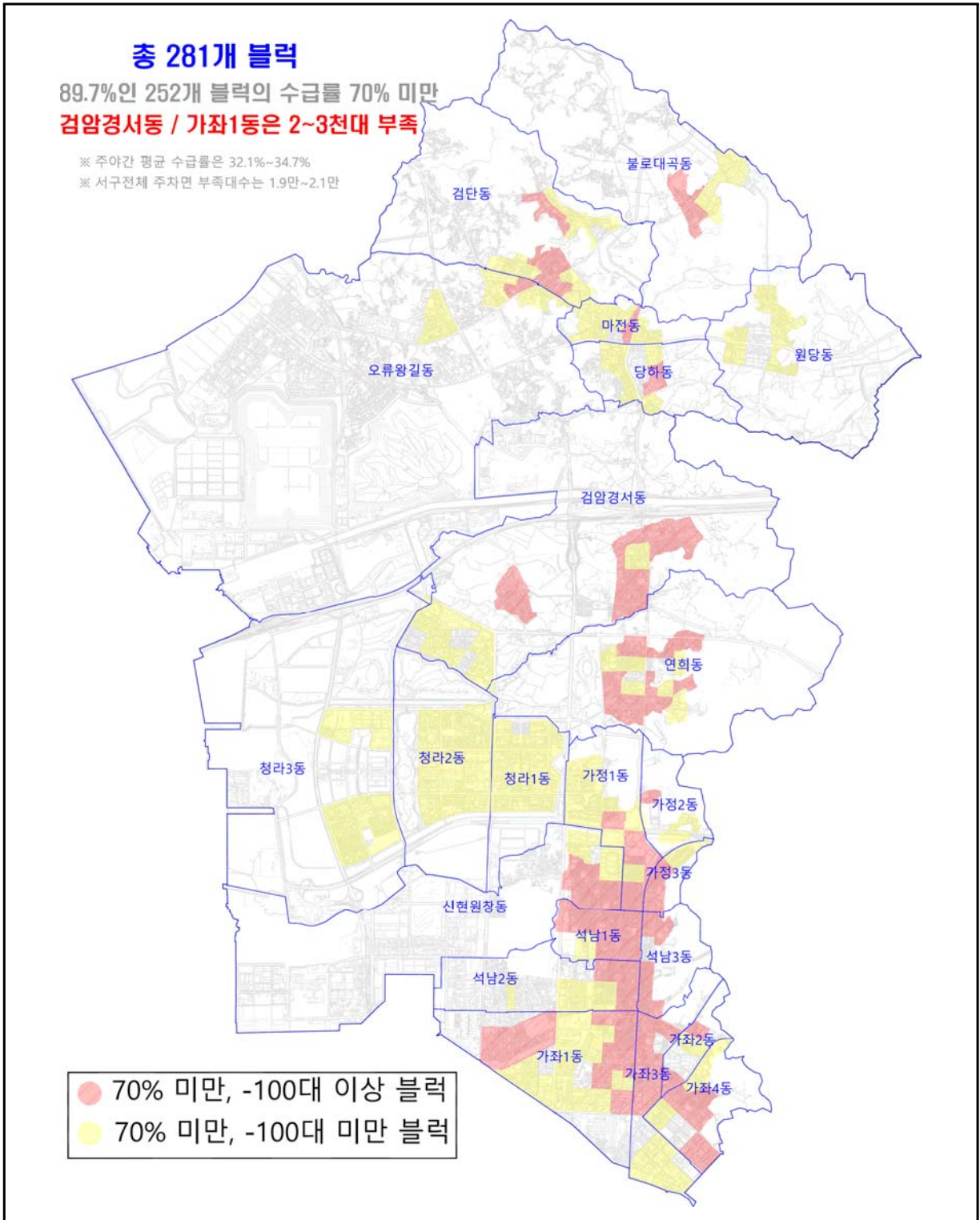
【표 5-12】 동별 주차수급률

구분	공급면수	주차수요		수급률		과부족면수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가정1동	471면	1,428대	2,113대	33.0%	22.3%	-957면	-1,642면
가정2동	35면	211대	309대	16.6%	11.3%	-176면	-274면
가정3동	143면	325대	557대	44.0%	25.7%	-182면	-414면
가좌1동	1,437면	5,081대	3,755대	28.3%	38.3%	-3,644면	-2,318면
가좌2동	327면	458대	778대	71.4%	42.0%	-131면	-451면
가좌3동	1,362면	2,955대	3,310대	46.1%	41.1%	-1,593면	-1,948면
가좌4동	704면	2,139대	2,244대	32.9%	31.4%	-1,435면	-1,540면
검단동	281면	887대	2,013대	31.7%	14.0%	-606면	-1,732면
검암경서동	698면	3,650대	4,148대	19.1%	16.8%	-2,952면	-3,450면
당하동	109면	184대	420대	59.2%	26.0%	-75면	-311면
마전동	139면	361대	567대	38.5%	24.5%	-222면	-428면
블로대곡동	면	201대	402대	0.0%	0.0%	-201면	-402면
석남1동	711면	1,753대	2,260대	40.6%	31.5%	-1,042면	-1,549면
석남2동	1,246면	3,114대	1,949대	40.0%	63.9%	-1,868면	-703면
석남3동	329면	836대	1,213대	39.4%	27.1%	-507면	-884면
신현원창동	483면	1,106대	1,595대	43.7%	30.3%	-623면	-1,112면
연희동	1,304면	2,579대	1,966대	50.6%	66.3%	-1,275면	-662면
오류왕길동	120면	305대	307대	39.3%	39.1%	-185면	-187면
원당동	234면	616대	543대	38.0%	43.1%	-382면	-309면
청라1동	139면	342대	362대	40.6%	38.4%	-203면	-223면
청라2동	58면	269대	303대	21.6%	19.1%	-211면	-245면
청라3동	30면	331대	308대	9.1%	9.7%	-301면	-278면
합계	10,360면	29,131대	31,422대	35.6%	33.0%	-18,771면	-21,062면

주 : 굵은글씨는 과부족면수가 1,000면 이상인 행정동임

- 주차공급면수 대비 주차수요 분석결과, 주차수급률 현황은 주간 35.6%, 야간 33.0%로 매우 낮으며, 특히 과부족 주차면수는 2만대 이상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서구 관내 야간박차대수를 확인할 수 있는 야간 수급률이 주간대비 2.6%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2개동 중 10개동의 과부족면수는 1천대를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특히, 가좌1동, 검암경서동의 경우 과부족면수는 3천대를 초과하여 주차시설의 공급 및 수요관리방안 등의 적용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 향후,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위해 조사블럭별로 세분하여 수급률 분석 결과, 70% 미만 + 100면 이상 부족 총 281개 블럭중 252개블럭(89.7%)블럭이며, 블럭별 위치는 다음과 같다.



【그림 5-5】 서구 관내 주차수급률 저하지역

나. 주차시설 공급 부족에 따른 불법주차문제

- 서구의 불법주차 현황을 살펴보면, 부설주차장 제외 주간 77.7%, 야간 82.3%로 분석되어 주차수요의 대부분이 노상불법주차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조사블럭내 공급면수는 10,360면, 불법주차수요는 주간 22,893대, 야간 26,063대이며, 특히, 검암경서동은 불법주차대수가 4천대를 넘어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13】 동별 불법주차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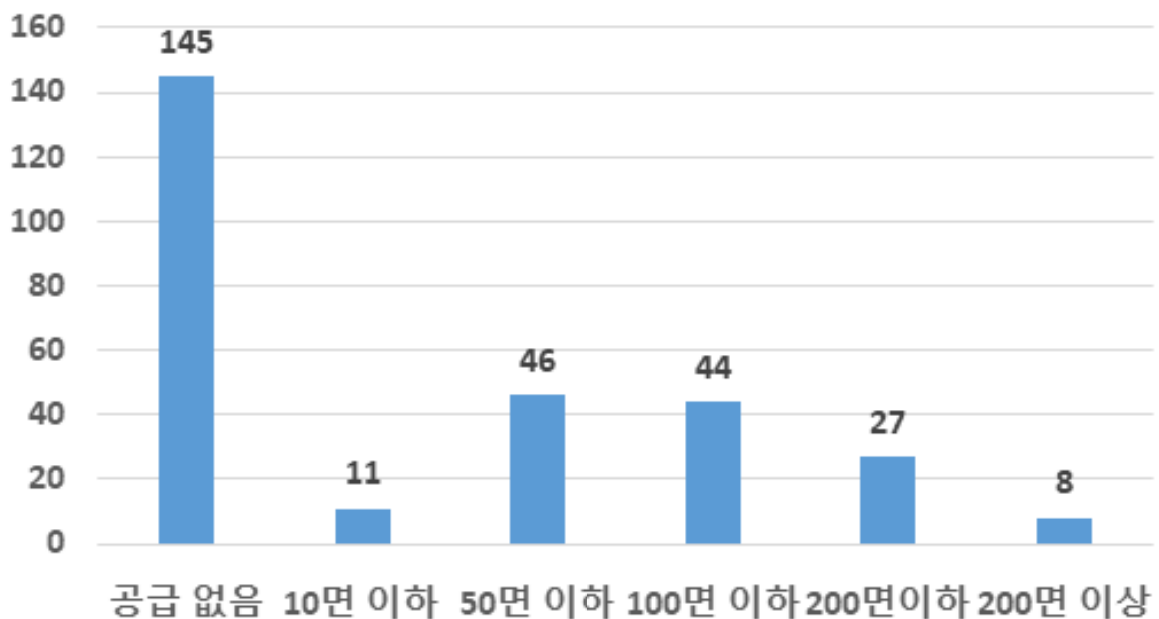
구분	공급면수	주간수요			야간수요		
		전체주차	불법주차	불법주차율	전체주차	불법주차	불법주차율
가정1동	471면	1,428대	1,145대	80.2%	2,113대	1,819대	86.1%
가정2동	35면	211대	194대	91.9%	309대	276대	89.3%
가정3동	143면	325대	252대	77.5%	557대	448대	80.4%
가좌1동	1,437면	5,081대	3,892대	76.6%	3,755대	2,781대	74.1%
가좌2동	327면	458대	241대	52.6%	778대	495대	63.6%
가좌3동	1,362면	2,955대	1,935대	65.5%	3,310대	2,325대	70.2%
가좌4동	704면	2,139대	1,646대	77.0%	2,244대	1,890대	84.2%
검단동	281면	887대	887대	100.0%	2,013대	2,013대	100.0%
검암경서동	698면	3,650대	3,417대	93.6%	4,148대	4,068대	98.1%
당하동	109면	184대	184대	100.0%	420대	420대	100.0%
마전동	139면	361대	361대	100.0%	567대	567대	100.0%
불로대곡동	면	201대	201대	100.0%	402대	402대	100.0%
석남1동	711면	1,753대	1,463대	83.5%	2,260대	1,902대	84.2%
석남2동	1,246면	3,114대	2,160대	69.4%	1,949대	1,384대	71.0%
석남3동	329면	836대	682대	81.6%	1,213대	1,059대	87.3%
신현원창동	483면	1,106대	764대	69.1%	1,595대	1,166대	73.1%
연희동	1,304면	2,579대	2,024대	78.5%	1,966대	1,578대	80.3%
오류왕길동	120면	305대	232대	76.1%	307대	231대	75.2%
원당동	234면	616대	435대	70.6%	543대	387대	71.3%
청라1동	139면	342대	239대	69.9%	362대	316대	87.3%
청라2동	58면	269대	238대	88.5%	303대	258대	85.1%
청라3동	30면	331대	301대	90.9%	308대	278대	90.3%
합계	10,360면	29,131대	22,893대	78.6%	31,422대	26,063대	82.9%

주 : 부설주차장의 공급면수와 주차수요를 제외한 조사결과임

- 동별 세부 조사블럭별 주차면수 공급현황 분석결과, 전체 281개 블록의 51.6%인 145개 블록은 주차시설의 공급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0면 이상을 확보하는 블록은 총 8개 블록으로 전체 281개 블록중 약 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주차시설의 공급이 있는 조사블럭의 평균 공급면수는 76.2면으로, 조사대상 블록의 물리적 범위(300m) 고려 시, 서구의 주차시설 공급은 매우 저조한 실정임
- 이는 서구 조사대상 블록의 주차시설 공급이 매우 열악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결과로써, 블록별 공급면수 세부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14】 블록별 주차면 공급 검토

구분	블럭수	비율	공급면수	평균 공급면수
공급 없음	145	51.6%	-	-
10면 이하	11	3.9%	59면	5.4면
50면 이하	46	16.4%	1,421면	30.9면
100면 이하	44	15.7%	3,266면	74.2면
200면이하	27	9.6%	3,670면	135.9면
200면 이상	8	2.8%	1,944면	243.0면
합계	281	100.0%	10,360면	76.2면



- 금회 주차실태 조사 시 서구 주거용도 건물의 주차장 조사결과, 많은 세대가 주차면을 미확보하여 도로상 불법주차 문제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 다음은 조사블럭내 동별 주차면 미확보 건물 조사자료이며, 특히 야간박차를 위한 주차면을 확보해야 할 주거용도의 건물(단독+공동)은 5,064개소로 조사되었으며, 건물개소수가 아닌 세대수를 감안 시 부족 주차면수는 5,000대를 상회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5-15】 동별 주차면 미확보 건물

단위 : 개소

구분	공동주택	단독주택	업무시설	의료시설	근생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기타	합계
가정1동	83	550	-	-	134	-	-	43	810
가정2동	1	3	-	-	4	-	-	-	8
가정3동	50	1	-	-	14	1	1	2	69
가좌1동	92	394	-	-	124	1	-	196	807
가좌2동	41	40	-	-	57	2	-	11	151
가좌3동	170	333	-	-	100	2	-	96	701
가좌4동	44	322	-	-	112	1	-	51	530
검단동	6	12	1	-	28	-	1	47	95
검암경서동	15	2	-	-	35	-	-	53	105
마전동	4	-	-	-	8	-	-	18	30
당하동	1	1	-	1	10	-	-	16	29
불로대곡동	6	1	-	-	14	-	-	25	46
석남1동	122	696	-	-	209	-	-	124	1,151
석남2동	95	900	3	-	224	-	-	137	1,359
석남3동	112	299	-	-	69	1	-	59	540
신현원창동	51	575	-	1	123	-	-	33	783
연희동	18	11	-	-	34	-	-	50	113
오류왕길동	4	1	-	-	15	-	-	11	31
원당동	1	4	-	-	1	-	-	3	9
청라1동	-	-	-	-	-	-	-	33	33
청라2동	-	-	-	-	-	-	-	22	22
청라3동	-	3	-	-	-	-	-	28	31
합계	916	4,148	4	2	1,315	8	2	1,058	7,453

다. 불합리한 노상주차장 설치 및 운영

-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수급실태 조사시 안전관리실태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경사진도로상 노상주차면 및 불합리한 위치(보호구역내 등)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등을 조사하였다.

【표 5-16】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조사

주차장법 제3조(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용도지역·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이하 "조사구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需給) 실태를 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 ③ 수급실태조사와 안전관리실태조사의 방법·주기 및 조사구역 설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실태조사의 방법 및 주기 등)

2.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실태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 출입도로를 포함하여 주차장 전체를 조사구역으로 할 것
- ② 수급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6조제3항 및 이 규칙 제6조제11호 및 제15호의 준수사항은 매년 한번 이상 점검하고 조사해야 한다.
- ③ 수급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실태조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정된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조사와 주차시설 현황조사로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2. 안전관리실태조사: 조사대상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법 제6조제1항·제19조 및 제19조의5에 따른 설치기준의 준수 여부

나.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여부

다. 법 제19조의9 및 제19조의23에 따른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이행 여부

라. 법 제19조의2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여부

마. 법 제19조의22제7항에 따른 권고의 이행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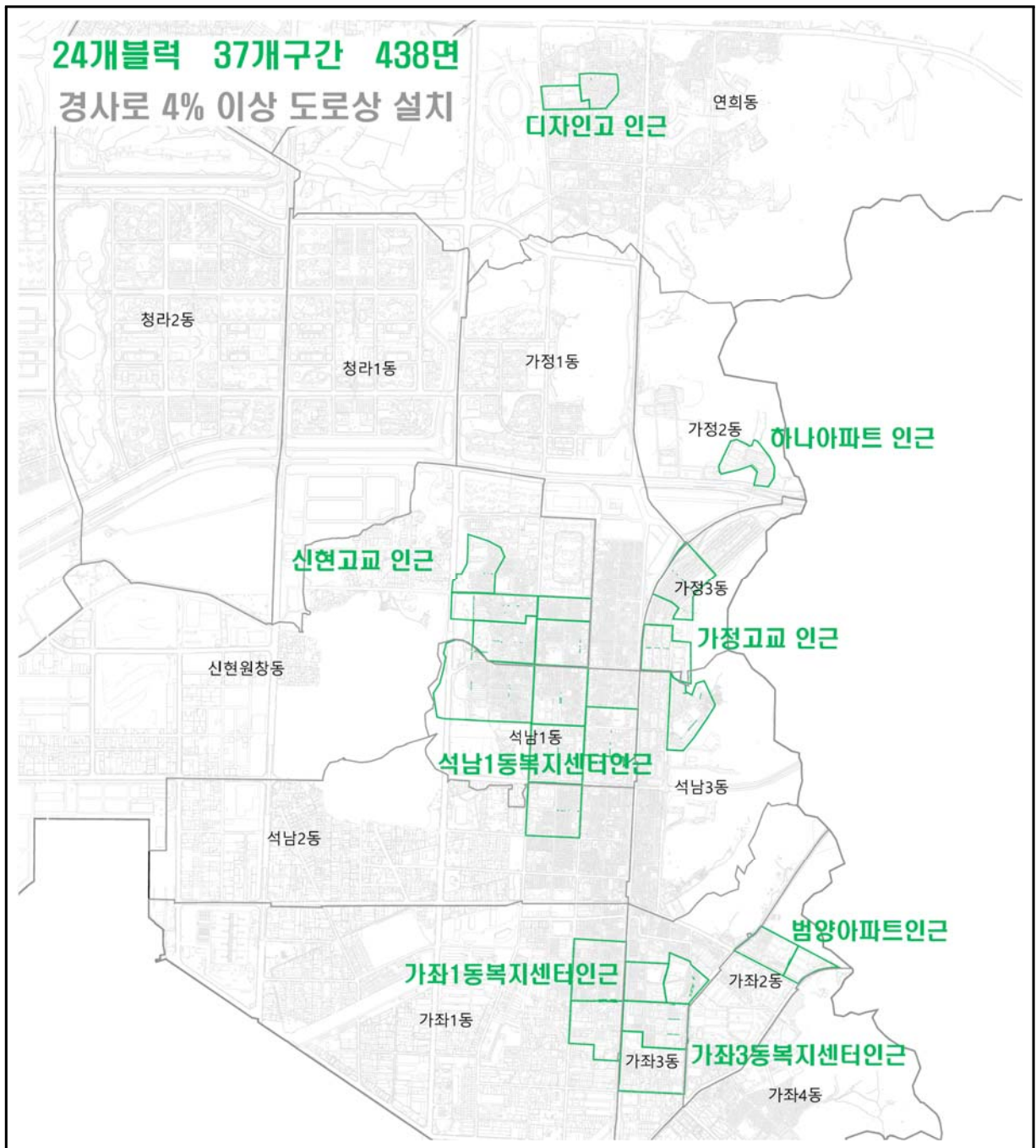
바. 그 밖에 주차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③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한다.

- 서구의 관내 불합리한 노상주차면 설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선정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사구간내 설치된 주차면(경사도 4%이상) ✓ 건물 진출입구 앞 주차면 설치 ✓ 보호구역내 주차면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속방지턱과 중복된 주차면 설치 ✓ 소방시설 앞 주차면 설치
---	--

- 선정 기준에 따른 조사 결과 서구 전체 노상주차면 중 37개구간, 438면이 불합리한 위치의 주차면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서구 전체 노상주차면의 약 5.8% 수준이며, 미끄럼방지 시설 등은 설치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서구는 주차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불합리한 주차면의 삭제 보다는 안전 시설의 설치 및 위치 조정 등을 통한 이용자 안전 개선방안을 우선 시행, 적정 주차수급률 확보 시 점진적으로 삭제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6】 서구 관내 불합리한 주차면 설치 현황

라. 그린파크 지원 확대방안 필요

- 서구에서는 주차장 미확보 세대의 주차면 확충을 위하여 2014년부터 인천시의 보조를 받아 “그린파크”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총 378면, 연평균 63면의 설치가 시행되었음.

【표 5-17】 서구 그린파크 시행현황

2012년이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335면	3명	7면	3면	4면	6면	9면	11면	378면

자료 : 서구청 내부자료

【표 5-18】 2019년 세부 추진실적

지원일자	위치	개소	면수	지원금액		
				계	시비	구비
19.05	가좌동 174-31	1	1	6,500	3,250	3,250
19.06	석남동 582-41	1	4	8,200	4,100	4,100
19.08	거북로77번길11-1	1	1	6,500	3,250	3,250
19.08	거북로77번길12-1	1	1	6,500	3,250	3,250
19.08	거북로 77번길 13	1	1	6,500	3,250	3,250
19.11	가정로 394번길11-30	1	1	6,490	3,245	3,245
19.11	거북로77번길13-1	1	1	6,500	3,250	3,250
19.11	여우재로86번길7-1	1	1	6,500	3,250	3,250
합계		8	11	53,690	26,845	26,845

- 그린파크 사업은 적은 비용으로 개별 세대의 주차면 확보가 가능한 매우 효과적인 사업으로, 서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신청요청이 늘고 있으나, 최근 예산부족으로 신청자 중 일부만 재정지원이 가능하였던 사례가 발생하였다.
- 또한, 그린파크 사업의 지원대상은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또는 연립주택으로 규정되어 있어,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노후 아파트 역시 지원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지원대상의 확대방안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그린파크 사업의 확대 추진 시 부설주차장이 없는 원도심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확대추진을 위한 지원대상의 확대, 해당 예산의 확보 지속적인 홍보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5.2.2 서구 주차환경문제점 종합

- 본 계획에서 실시한 주차실태조사 및 시설조사를 통해 도출된 서구 주차환경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 될 수 있으며, 향후 서구 주차환경개선계획 수립 시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고, 체계적이며, 실증적인 개선과 공급, 관리방안 등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5-19】 서구 주차환경 문제점 종합

항목	원인	개선방향
✓ 주차시설의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의 증가 ✓ 주차수요의 증가 ✓ 기존 주차면 미확보 건물 다수 ✓ 특정지역 주차수요 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별 주차시설 공급 ✓ 민간주차장 개발 유도 ✓ 수요와 공급 일치위한 지역 내 주차시설 확보
✓ 불합리한 주차면 안전문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시설 설치 ✓ 단계적 제거
✓ 제도미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제도 개정
✓ 그린파크 확대방안 강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확대 ✓ 지원조례 개정 ✓ 홍보강화 ✓ 예산확대

5.3 서구 주차환경개선 목표설정

- 서구 주차실태 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 검토 결과, 주차공급의 불균형 및 부족으로 인한 관내 불법주차 문제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검토되어, 본 계획에서는 불법주차대수의 감소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주차시설 공급 및 기존 주차장 이용률 제고방안, 제도개선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 서구 중장기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목표연도 내 서구 불법주차율 '5% 이상 감소'

5.3.1 부문별 개선방안 설정

-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주차정책은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공급 및 관리방안이 가장 이상적인 정책이나, 이는 시간 및 비용 등의 문제로 단기간내 실현이 어려워 본 계획에서는 우선 개선 목표인 '불법주차율 10% 감소' 달성을 위하여 부문별 개선방안을 설정하였다.



5.3.2 주차환경개선의 부문별 역할정립

- 또한,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개선방안은 지자체 주도의 주차시설 공급방안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나, 공급위주의 개선방안은 지자체의 재정보호의 부담과 인허가 기간 등의 제약으로 인한 시행률 저하의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최근 공급정책과 함께 기존 주차시설 이용효율성 증대 방안이 점차 대두되고 있으며,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과 함께 민간부문의 역할도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개선방안의 수립에 앞서 공공과 민간의 부문별 역할을 우선 정립하고자 하였다.

【표 5-20】 주차환경개선의 부문별 역할 정립

구분	공급증대	운영효율증대
공공	주차장 건설 / 탄력주정차 허용 민간주차장 건설 지원제도 마련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완화	주차이용 정보제공 요금제도 개편 / 단속강화 주차안내 시스템 정비
민간	노외주차장 건설 부설주차장 공유사업 참여 그린파킹 참여 / 부설주차장 확대	부설주차장 공유사업 참여 주차장이용 정보제공

5.4 주차시설 공급방안

5.4.1 노외주차시설의 확충

- 서구가 당면한 주차환경 문제 중 주차시설 공급의 부족과 수요의 집중중으로 인한 불법주차대수의 감소를 위하여 주차장 공급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으며,
- 서구청과의 협의를 통해 기계화중인 노외주차장 공급계획 등을 종합하여 목표연도내 공급가능한 주차시설 확충 방안을 제안하였다.
- 노외주차시설 확충의 경우 재원확보 및 실시계획 수립 및 인허가 등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단장기 목표연도별 구분이 아닌 장기목표연도(+6년)내 실행가능한 공급 계획을 중심으로 확충방안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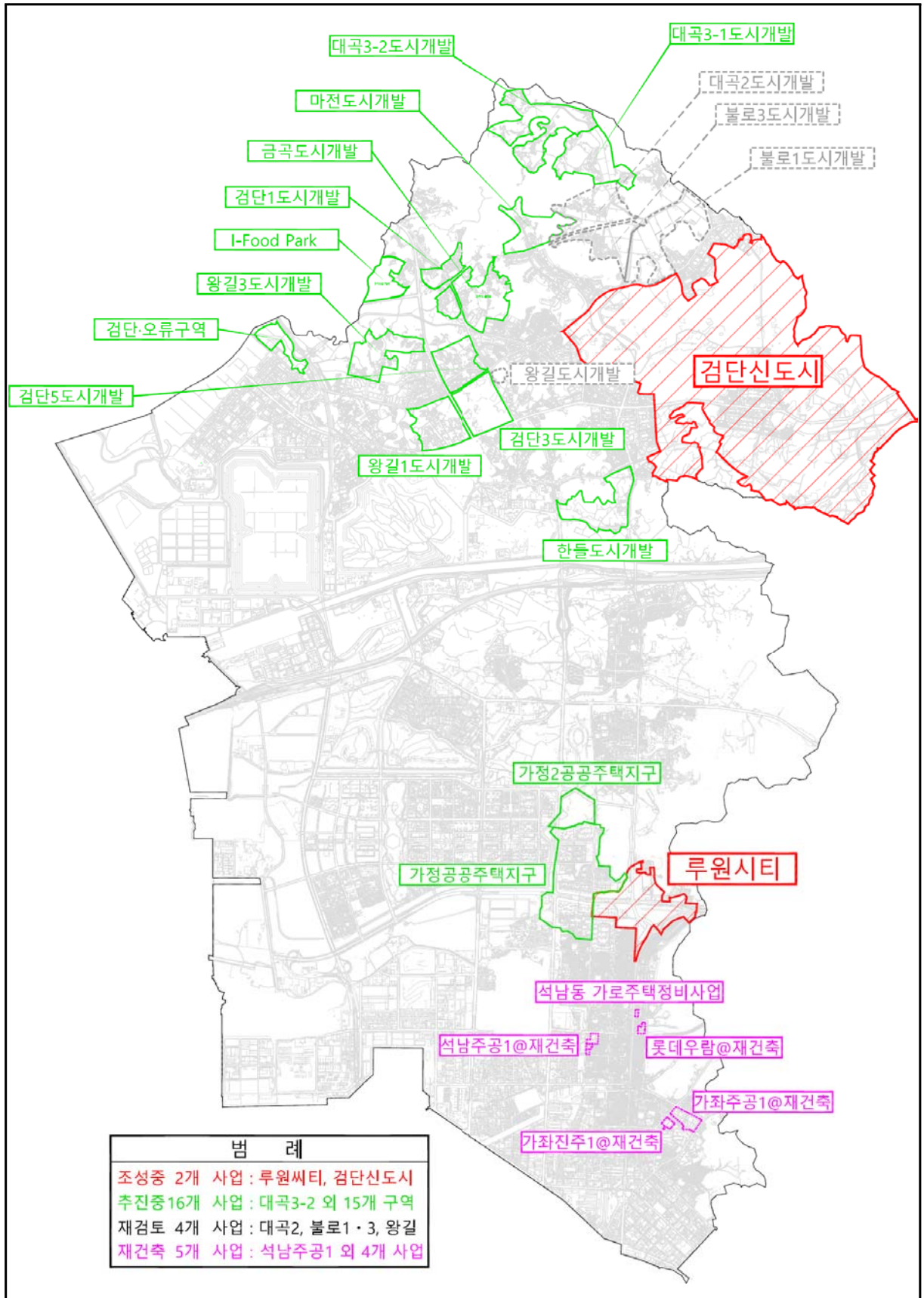
가. 주차시설 공급계획

- 서구에서는 노외주차장의 확충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중이며, 목표연도(2026년)까지 노외주차장확보 계획 6개소와 본 계획에서 제시하는 학교주차장 개방사업 등을 통한 공급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기타 노외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하는 개발계획, 등을 추가 검토하였다.
- 개발계획의 노외주차장 확보계획은 준공연도가 본 계획의 목표연도와 일치하지 않는 등 계획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장래 공급면수에는 미반영 하였으며, 노외주차장 2개소(루원씨티 1, 2)는 조사대상 블록 외곽에 위치하여 미반영 하였다.
- 계획 주차시설(노외주차장 건설 및 증설, 학교주차장 개방)의 공급 시 총 2,589면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 또한, 정량적으로 수치화 되지 못하는 그린파크 사업,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등의 주차환경개선 개선사업과 제도개선을 통한 민간부문의 주차장설치 확대, 요금체계 개선을 통한 주차수요관리방안과 함께 시행 시 서구의 수급률 증대 및 불법 주차대수의 감소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5-21】 개발계획별 노외주차장 확보 가능면수 검토(미반영)

사업명칭	면적	주차면적	설치가능면수	비고	영향권
대곡3-2도시개발사업	816,935㎡	4,902㎡	140면	-	-
대곡3-1도시개발사업	558,315㎡	4,067㎡	116면	주차면적확정	-
마전도시개발사업	204,727㎡	1,228㎡	35면	-	-
검단오류구역 도시개발사업	195,500㎡	5,623㎡	161면	주차면적확정	-
I-Food PARK	281,369㎡	1,688㎡	48면		-
왕길3도시개발사업	465,518㎡	4,190㎡	120면	주차면적확정	-
검단1도시개발사업	324,280㎡	4,051㎡	116면	주차면적확정	-
금곡도시개발사업	565,477㎡	5,655㎡	162면	주차면적확정	검단동01,02
검단5도시개발사업	421,148㎡	2,527㎡	72면		오류왕길동06
왕길1도시개발사업	506,220㎡	5,062㎡	145면	주차면적확정	-
검단3도시개발사업	524,510㎡	3,147㎡	90면	-	원당동01~09
한들도시개발사업	567,567㎡	3,405㎡	97면	-	-
검단신도시조성사업	121,835,572㎡	85,357㎡	2,382면	조성중 주차면적확정	-
인천가정2공공주택지구	262,796㎡	1,608㎡	46면	주차면적확정	-
인천가정공공주택지구	1,325,938㎡	7,967㎡	228면	조성중	가정1동 01,02,10~17
루원씨티도시개발사업	933,807㎡	6,230㎡	262면	조성중 주차면수확정	가정1동 01~05,18 가정2동 01~04
대곡2도시개발사업	504,200㎡	3,025㎡	86면	추진중	-
불로3도시개발사업	458,417㎡	2,751㎡	79면	추진중	-
불로1도시개발사업	708,034㎡	12,069㎡	345면	추진중	-
왕길도시개발사업	40,615㎡	244㎡	7면	추진중	-
불로2도시개발사업	74,939㎡	450㎡	13면	추진중	-
불로지구	310,521㎡	1,863㎡	53면	추진중	-
합계	-	-	4,776면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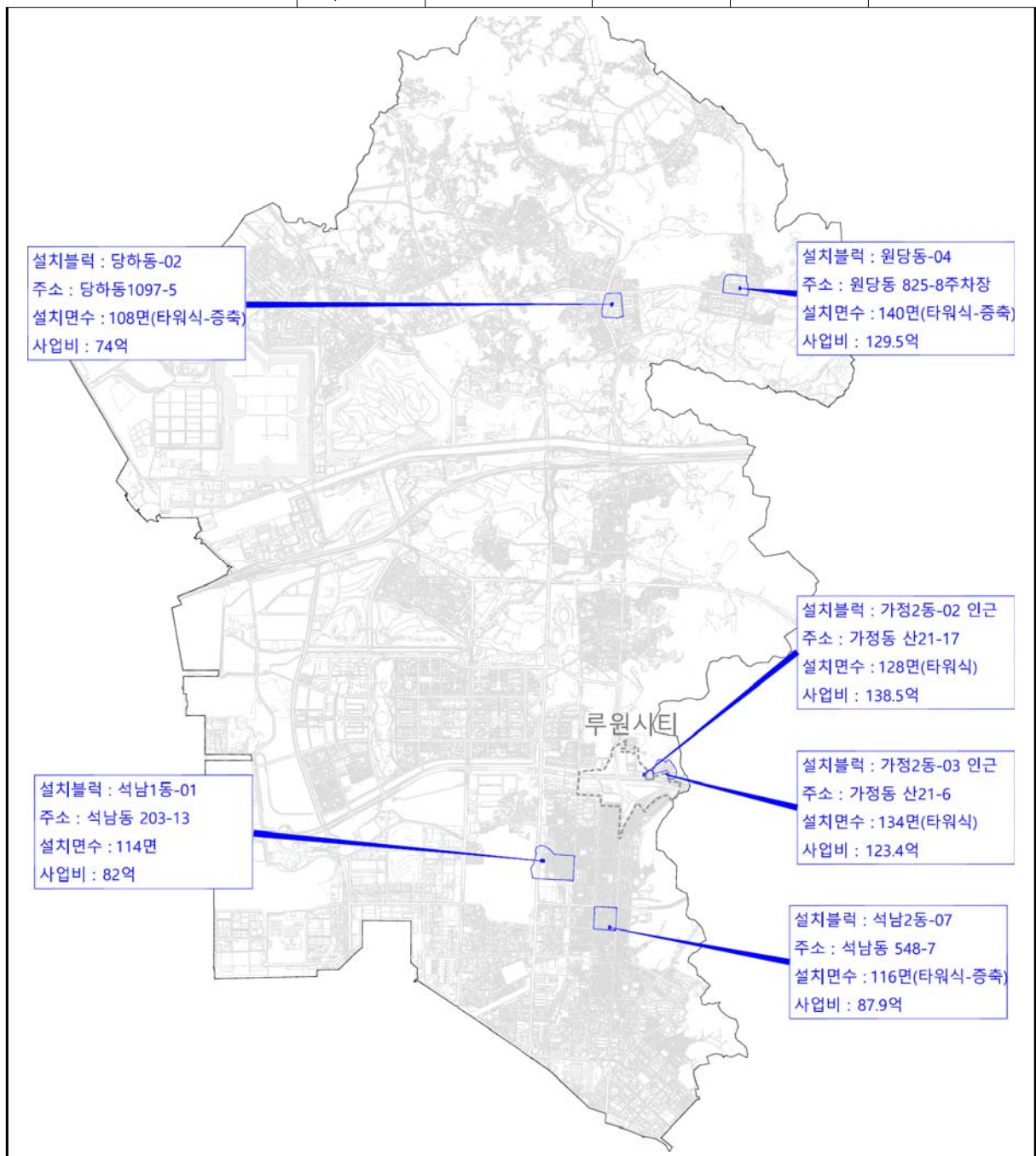
주 : 주차장 면적이 확정되지 않은 개발지구는 인천시 주차조례에 따라 0.6%를 적용하였으며, 1면당 소요면적 35㎡ 적용 5개 재건축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이 미확정이며, 주차면수 확보가능 대상에서 제외함



【그림 5-7】 서구 개발계획 위치도

【표 5-22】 노외주차장 확보 가능면수 검토(목표연도 내)

노외공영주차장 명칭	면적	블럭	계획면수	사업비	비고
당하동1097-5	3,460.0m ²	당하동-02	108면	74.0억	타워식(증축)
원당동825-8	3,800.0m ²	원당동-04	140면	129.5억	타워식(증축)
루원시티공영주차장1	6,720.0m ²	가정2동-02인근	128면	138.5억	타워식(미반영)
루원시티공영주차장2	6,009.0m ²	가정2동-03인근	134면	123.4억	타워식(미반영)
석남동203-13	3,426.5m ²	석남1동-01	114면	82.0억	-
석남동548-7	1,903.6m ²	석남2동-07	116면	87.9억	타워식(증축)
합계	25,319.1m ²	-	740면	635.3억	-



- 장래 서구 주차수요 예측은 관용 및 특수차량 등을 제외한 자가용(승용차, 화물 등) 차량의 연평균 증가율 2.9%를 적용하여 예측하였으며, 증가율 적용시 장래 서구 주차수급률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23】 주차시설 현황 유지 시 주차수급률 분석(2026년)

구분	공급 면수	주차수요		불법주차율		수급률		과부족면수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가정1동	471면	1,648대	2,439대	80.2%	86.3%	28.6%	19.3%	-1,177면	-1,968면
가정2동	35면	244대	358대	91.8%	90.2%	14.3%	9.8%	-209면	-323면
가정3동	143면	374대	642대	77.5%	81.8%	38.2%	22.3%	-231면	-499면
가좌1동	1,437면	5,860대	4,332대	77.8%	74.9%	24.5%	33.2%	-4,423면	-2,895면
가좌2동	327면	527대	897대	52.8%	65.2%	62.0%	36.5%	-200면	-570면
가좌3동	1,362면	3,408대	3,820대	65.9%	71.3%	40.0%	35.7%	-2,046면	-2,458면
가좌4동	704면	2,469대	2,588대	77.0%	84.4%	28.5%	27.2%	-1,765면	-1,884면
검단동	281면	1,020대	2,321대	100.0%	100.0%	27.5%	12.1%	-739면	-2,040면
검암경서동	698면	4,211대	4,784대	94.2%	98.1%	16.6%	14.6%	-3,513면	-4,086면
마전동	109면	212대	483대	100.0%	100.0%	51.4%	22.6%	-103면	-374면
당하동	139면	416대	653대	100.0%	100.0%	33.4%	21.3%	-277면	-514면
블로대곡동	면	231대	464대	100.0%	100.0%	0.0%	0.0%	-231면	-464면
석남1동	711면	2,023대	2,608대	83.4%	84.4%	35.1%	27.3%	-1,312면	-1,897면
석남2동	1,246면	3,593대	2,248대	70.1%	72.2%	34.7%	55.4%	-2,347면	-1,002면
석남3동	329면	964대	1,398대	81.5%	87.8%	34.1%	23.5%	-635면	-1,069면
신현원창동	483면	1,276대	1,840대	69.3%	74.3%	37.9%	26.3%	-793면	-1,357면
연희동	1,304면	2,974대	2,268대	79.3%	81.5%	43.8%	57.5%	-1,670면	-964면
오류왕길동	120면	352대	354대	75.9%	76.0%	34.1%	33.9%	-232면	-234면
원당동	234면	711대	626대	70.6%	72.4%	32.9%	37.4%	-477면	-392면
청라1동	139면	393대	418대	71.0%	88.3%	35.4%	33.3%	-254면	-279면
청라2동	58면	312대	350대	88.5%	85.1%	18.6%	16.6%	-254면	-292면
청라3동	30면	382대	357대	92.1%	91.6%	7.9%	8.4%	-352면	-327면
합계	10,360면	33,600대	36,248대	79.1%	83.6%	30.8%	28.6%	-23,240면	-25,888면

- 차량보유대수 증가율을 적용하여 장래 주차수급률 분석결과, 현황 주차공급시설 유지 시 현황 대비 수급률은 주간 35.6%→30.8%, 야간 33.0%→30.8%, 불법주차율은 주간 78.6%→79.1%, 야간 82.9%→83.6%, 과부족 면수는 주간 18,771면→23,240면, 야간 21,062면→25,888면으로 악화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 앞서 예측된 주차환경의 악화수준을 저감시키기 위해 본 계획의 목표연도 내 노외 주차장의 확보 및 학교주차장 개방사업 시행 시, 증가하는 주차공급시설과 기존 불법주차차량의 적법주차 유도 시 동별 수급률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24】 주차시설 공급 시 주차수급률 분석(2026년)

구분	공급 면수	주차수요		불법주차율		수급률		과부족면수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가정1동	471면	1,648대	2,439대	80.2%	86.3%	28.6%	19.3%	-1,177면	-1,968면
가정2동	35면	244대	358대	91.8%	90.2%	14.3%	9.8%	-209면	-323면
가정3동	143면	374대	642대	77.5%	81.8%	38.2%	22.3%	-231면	-499면
가좌1동	1,469면	5,860대	4,332대	77.3%	74.2%	25.1%	33.9%	-4,391면	-2,863면
가좌2동	455면	527대	897대	28.5%	50.9%	86.3%	50.7%	-72면	-442면
가좌3동	1,398면	3,408대	3,820대	64.8%	70.4%	41.0%	36.6%	-2,010면	-2,422면
가좌4동	828면	2,469대	2,588대	72.0%	79.6%	33.5%	32.0%	-1,641면	-1,760면
검단동	281면	1,020대	2,321대	100.0%	100.0%	27.5%	12.1%	-739면	-2,040면
검암경서동	1,005면	4,211대	4,784대	86.9%	91.7%	23.9%	21.0%	-3,206면	-3,779면
마전동	217면	212대	483대	49.1%	77.6%	102.4%	44.9%	5면	-266면
당하동	139면	416대	653대	100.0%	100.0%	33.4%	21.3%	-277면	-514면
불로대곡동	면	231대	464대	100.0%	100.0%	0.0%	0.0%	-231면	-464면
석남1동	857면	2,023대	2,608대	76.2%	78.8%	42.4%	32.9%	-1,166면	-1,751면
석남2동	1,336면	3,593대	2,248대	67.6%	68.2%	37.2%	59.4%	-2,257면	-912면
석남3동	480면	964대	1,398대	65.9%	77.0%	49.8%	34.3%	-484면	-918면
신현원창동	775면	1,276대	1,840대	46.4%	58.5%	60.7%	42.1%	-501면	-1,065면
연희동	1,438면	2,974대	2,268대	74.7%	79.1%	48.4%	63.4%	-1,536면	-830면
오류왕길동	120면	352대	354대	75.9%	76.0%	34.1%	33.9%	-232면	-234면
원당동	474면	711대	626대	36.8%	34.0%	66.7%	75.7%	-237면	-152면
청라1동	521면	393대	418대	-26.2%	-3.1%	132.6%	124.6%	128면	103면
청라2동	349면	312대	350대	-4.8%	2.0%	111.9%	99.7%	37면	-1면
청라3동	158면	382대	357대	58.6%	55.7%	41.4%	44.3%	-224면	-199면
합계	12,949면	33,600대	36,248대	71.4%	76.6%	38.5%	35.7%	-20,651면	-23,299면

- 부설주차장을 제외한 노외주차장의 추가 공급면수 확보 시, 추가 확보 주차면수는 2,589면으로, 현황 주차시설 공급면수와 장래 주차시설 추가 확보면수를 대상으로, 목표연도(2026년)의 주차수급률 및 과부족면수의 증감은 다음과 같다.

【표 5-25】 주차시설 공급 시 주차수급 분석결과 비교

구분	현황(2020년)①	장래(2026년)		증감(㉑-㉒)	
		현황유지시②	주차시설공급시③		
주간	공급면수	10,360면	10,360면	12,949면	2,589면
	주차수요	29,131대	33,600대	33,600대	대
	불법주차대수	22,893대	26,578대	23,989대	-2,589대
	불법주차율	78.6%	79.1%	71.4%	-7.7%
	주차수급률	35.6%	30.8%	38.5%	7.7%
	과부족면수	-18,771면	-23,240면	-20,651면	2,589면
야간	공급면수	10,360면	10,360면	12,949면	2,589면
	주차수요	31,422대	36,248대	36,248대	대
	불법주차대수	26,063대	30,289대	27,778대	-2,511대
	불법주차율	82.9%	83.6%	76.6%	-6.9%
	주차수급률	33.0%	28.6%	35.7%	7.1%
	과부족면수	-21,062면	-25,888면	-23,299면	2,589면

- 주차시설 공급시 주차수급률은 주·야간 약 7% 증가, 과부족면수는 2,589면 감소, 불법주차율은 6.9%~7.7%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 장기적으로 추가적인 노외주차장 공급과 주차공유사업, 민간주도의 주차장 확보, 제도개선, 단속강화 등과 함께 단계적으로 서구 주차환경문제를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4.2 주차시설의 효율성 증대 방안

가. 학교주차장 공유사업 확대

- 그동안 부족한 공영주차장 건립부지와, 자원확보에 대한 공공의 비용부담, 실제 시행을 위한 소요기간 등의 사유로 공공주도의 주차시설 공급방안은 계획으로만 남게 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였다.
- 주차장 확보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 주차시설의 이용효율 증대를 통한 해결방안이 점차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어, 본 계획에서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내에 주차시설을 공급하기 위한 학교부설주차장 공유사업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1) 서구 학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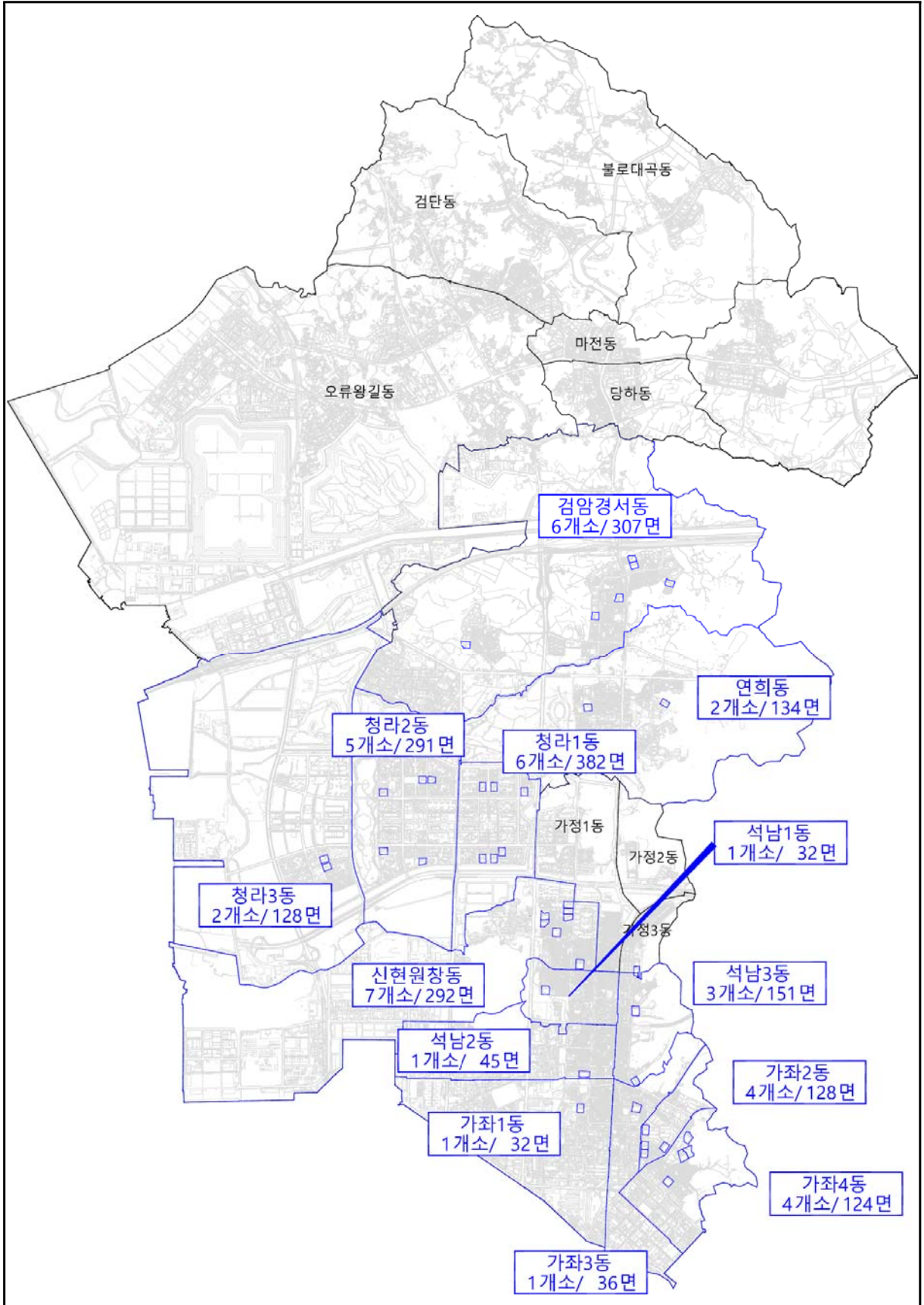
- 접근성이 비교적 떨어지는 고등교육시설(대학교 등)을 제외한 주거지역 인근의 야간개방이 가능한 학교부설 주차장 조사결과, 서구 조사블럭내 학교시설은 총 43개소, 주차장 설치면수는 2,082면으로 조사되었다.

【표 5-26】 조사대상 블럭내 학교시설 현황

구분	개소수	주차면수
초등학교	21개소	998면
중학교	15개소	683면
고등학교	7개소	401면
합계	43개소	2,082면

【표 5-27】 조사대상 블럭내 동별 학교시설 현황

행정동	개소수	주차면수	행정동	개소수	주차면수	행정동	개소수	주차면수
가좌1동	1개소	32면	가좌2동	4개소	128면	가좌3동	1개소	36면
가좌4동	4개소	124면	검암경서동	6개소	307면	석남1동	1개소	32면
석남2동	1개소	45면	석남3동	3개소	151면	신현원창동	7개소	292면
연희동	2개소	134면	청라1동	6개소	382면	청라2동	5개소	291면
청라3동	2개소	128면	합계	43개소	2,082면			





[그림 5-8] 서구 관내 학교시설 위치도

2) 학교주차장 공유사업 사례

- 해당학교 및 교육청과의 협의, 개방시 운영상의 문제 등이 예상되나, 수급률이 낮고, 불법주차율이 높은 서구 실정상 효과적인 주차개선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사업내용 및 지원내용 등의 서구 적용을 위해 타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사례를 검토해보았다.
- 미추홀구 및 부천시의 사례를 참고하였으며,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5-28】 타지자체 학교주차장 개방사업 사례

인천문학초등학교	부천도당중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553 ✓ 사업내용 : 부설주차장 공유 사업 ✓ 시행일자 : 2019. 12. 18 ✓ 사업내용 : 인천문학초 25개 주차면 무료 개방 미리 사용 의사를 밝힌 학교 주변에 사는 주민, 학부모 등에 한하여 회원제 운영 예정 -이용 가능시간 평일 : 오후 6시~ 익일오전 7시 30분 주말 및 공유일 : 종일 -미추홀구 보조금 지원 CCTV 설치 및 시설관리공단 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상시 모니터링, 비상 상황시 출동 인력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부천시 평천로849번길 58 ✓ 사업내용 : 부설주차장 공유 사업 ✓ 시행일자 : 2018. 11. 05 ✓ 사업내용 -도당중 주차장 54면 지역 주민에게 개방 -주민 사전등록제로 운영 -부천시기 관리 및 운영을 맡으며 시설개방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 지원 -학교주차장 공유를 독려하기 위해 각종 행정 재정적 지원과 교육경비보조 사업 평가 시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정책 시행중

3) 학교주차장 공유사업 운영상의 문제점

- 학교운동장 야간개방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 첫째, 상시 출입문 개방으로 야간 범죄발생 우려
 - 둘째, 이용제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주차장에 차량을 방치하거나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에 차량 이동시 안전사고 우려

4) 학교운동장 공유사업 시행방안

- 학교주차장 공유사업 시 인근 파출소와 주민자치센터를 연계된 방범용 CCTV와 조명시설 설치비용을 보조하고 인근 파출소의 상시 순찰을 통해 야간방범문제 최소화 필요.
- 이용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즉시 견인 및 과태료 부과체계를 갖추어 일정횟수 이상 이용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행정 조치에 대한 기준 및 출입단속시스템 마련.
- 대상지 선정 기준
 - 주차난이 심각하고 주차환경이 불량한 주거지역
 - 노외주차장 설치가 곤란한 지역 및 불법주차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
- 시행방안
 - 주민인식의 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단속 등의 노력 필요
 - 야간개방 시설물의 주차관리를 위한 관리 및 감독체계 우선 구축
: 전담공무원 및 현장단속인력 확보
 - 야간개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개정 필요

【표 5-29】 학교주차장 개방사업 지원조례(안)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금액
✓ 20면 이상 개방가능한 학교 ✓ 1일 7시간, 주 35시간 개방 ✓ 협약기간 2년	✓ 주차구획 정비 및 확충 ✓ 주차장 시설개선비용 ✓ 방범시설 설치비용	✓ 설치비 95%이내 -10면까지 1,000만원 -추가 1면당 20만원 -최고 2,000만원 까지

나. 민간위탁 주차공유사업 도입

- 주차공유사업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민간주도의 주차시설 공급방안으로, 지원제도의 수립과 홍보, 적절한 관리감독을 통한 원활한 시행 시 공공의 재원 부담을 줄이고 수요와 공급을 일치 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 최근 지자체별로, 기존 주차시설의 이용 효율성 증대를 통한 불법주차 저감방안을 적극 도입하는 추세로, 본 계획에서는 다양한 사례 검토를 통해 서구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민간위탁 주차공유사업 도입(안)을 제안하였다.

1) 공유사업의 검토


【표 5-30】 민간위탁 주차공유사업의 개요

<p>정책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주차시설의 이용효율 향상 ✓ 민간주도의 주차시설 공급방안 ✓ 공공은 제도적 근거 마련 및 지원제도 마련 ✓ 민간업체를 통한 DB 활용 및 시행 	
<p>계약 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영주차장 및 민간주차장의 DB구축 필요 ✓ 타 이용자의 장기주차 시 소유주의 주차문제 ✓ 도난 및 훼손시 보상문제 ✓ 주차장 소유주의 참여의사에 따른 사업가능 ✓ 보안시설 및 기존 주차시설의 개선비용 부담 ✓ 유료전환 운영시 요금부담에 대한 이용률저하 	
<p>효과 및 정책 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외주차장 건설의 공공 재정부담 감소 ✓ 주차장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및 지원제도 마련, 안내시설 설치 ✓ 참여율 및 이용률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주차단속 ✓ 적정수준의 주차요금제도 개선 	

2) 민간위탁 사례

- 민간 정보제공업체의 수익성 향상을 위하여 유료주차장에 한해 주차요금의 일부 수익 정산 및 인센티브 제공

【표 5-31】 민간업체 정보제공 사례

사업내용	정보제공 자료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 공유정보 민간업체 위탁 ✓ 앱을 활용한 실시간 주차정보 확인 ✓ 센서, 앱 구축 등 민간사업자 제공 ✓ 주차요금의 일부 수익 정산 및 인센티브 	 <p>The image shows two sections of information. The top section, titled '주차장 공유사업 참여방법' (Participation Method for Parking Sharing Business), includes '주차공간 공유자' (Parking Space Provider) and '주차공간 공유하는 방법' (Method of Sharing Parking Space). The bottom section, titled '주차장 공유 찾고 있는 이용자' (Users Looking for Shared Parking), includes '공유된 주차공간 이용하는 방법' (Method of Using Shared Parking Space). Both sections feature smartphone app screenshots and QR codes.</p>

3) 서구 적용방안

- 서구의 경우 건축물 부설주차장 공동 이용을 통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대규모 주차시설 공급효과 창출이 기대됨.
 - 단기적으로는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 장기적으로 시 전체 개방 가능 주차장을 대상으로 주차장 공유사업 시행을 추진함
-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공유사업 참여 유도
 - 건축물 부설주차장 중 주택가에 인접한 건물주 중 개방 가능한 곳을 사전조사
 - 부설주차장 정보 DB 구축
 - 주차장 공유사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 실시
- 직접적인 방법
 - 건축물 지하주차장이나 주차타워의 경우 야간 개방을 위해 필요한 보안장치 등의 추가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에서 부담
 - 업무시간 시작에도 불구하고 미이동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부가 징수하여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 주차장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서 개방하는 주차구획 1면당 보조금 지급 (서울시의 경우 1면당 100~200만원 지원)

- 예산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 일정 범위 내에서 교통 유발부담금을 감면
- 간접적인 방법
 -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을 통해 유료주차장에 한하여 수익성 보장
 - 민간사업자 : DB구축 및 서구주차정보 안내 앱 구축
 - 건물주의 참여의식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
 - 개방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주민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 등의 설치 지원
 - 야간개방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시장 명의로 개방건물 표지판 등을 설치, 지역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는 건물임을 인근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각종 기업 홍보활동에 있어서 혜택 부여

라. 그린파킹 참여 확대

1) 서구 추진현황 지원제도 현황

- 그린파킹 사업은 적은 비용으로 개별 세대의 주차면 확보가 가능한 매우 효과적인 사업이며, 서구에서는 주차장 미확보 세대의 주차면 확충을 위하여 2014년부터 인천시의 보조를 받아 “그린파킹”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총 378가구, 연평균 63건이 시행되었음.

2) 서구 지원제도 현황

【표 5-32】 서구 주차장 설치 보조 관련 법규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2조의2(보조의 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9.29)
1.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자가 기존의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또는 연립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2.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변경·보안시설 등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
3. 학교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변경·보안시설 등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 (단, 20면 이상)
4.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제22조의3(보조금의 지원방법) ①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절차, 보조한도 및 그 밖의 보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보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또는 그 밖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 참여율 증대

- 최근 담장을 허물고 생활도로를 조성함으로써 마을공동체 의식 회복과 차량 소유자 스스로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주차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 서구 그린파킹의 시민 참여율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 강화와 함께 지원대상 기준 건물의 범위 확대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을 노후 공동주택까지 확대시켜 참여율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표 5-33】 타지자체 그린파킹 참여율 증대 방안 제시

홍보강화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플랜카드 제작 ✓ 홈페이지 및 포스터, 플랜카드 부착 등을 통한 지속적 홍보 ✓ "주차장=사용자 부담"의 시민의식 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 공동주택 포함 지원대상 확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내 주차면 설치

-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96년 이전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축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경시설 및 단지 안의 도로, 어린이놀이터 등을 전체 면적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021,국토교통부』에서는 차량대수 급증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내 주차장 부족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기존 1996년 이전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주차장으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하였던 허용대상을 2013년 12월 17 이전 건물로 확대하여 보조금 지급 대상 범위 확대와 함께 서구 그린파킹 사업의 신청을 증대가 기대됨.

【표 5-3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35조제1항 관련) - 요약	
구분	✓ 용도변경,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허가기준	✓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를 각각 전체 면적의 2분의 1 범위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종전의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로서 그 용도변경의 필요성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4.3 불합리한 노상주차면 안전강화방안

가. 서구 운영현황 및 문제점





- 조사 결과 서구 전체 노상주차면 중 37개구간, 438면이 불합리한 위치의 주차면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서구 전체 노상주차면의 약 5.8% 수준이며, 미끄럼방지 시설 등은 설치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최근 경사진도로상 안전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경사진 노상주차장 안전시설 강화방안을 제안하였다.

나. 추진방향

- 서구 관내 경사진 주차장 대부분은 노상주차장으로, 주차장법 시행규칙 규정에 부적합하여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러나, 공영주차장 확보 등 주차시설의 확보없이 경사진 도로상 노상주차면을 일제 정비 할 경우, 서구 관내 주차환경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며, 다수의 민원 발생 및 삭제 구간의 불법주차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 이에 따라, 일제 정비(삭제)방향 보다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큰 구간에 대해 관계 기관(경찰서, 소방서) 협의 및 합동조사를 통해 안전시설물을 우선 설치하고, 향후 주차수급률의 적정 공급시점에 단계적으로 삭제하여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서구 경사진[노상]주차장 안전강화 계획

【표 5-35】 서구 경사진[노상]주차장 안전강화 계획 개요

추진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대공원 주차장 내 어린이 사망사고에 따라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 발표」(18.04) ✓ 「주차장법」개정(일명 하준이법)으로 경사진 주차장 안전기준 등 세부사항 규정(20.06) ✓ 「경사진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추진」통보(20.06, 국토부) 			
관련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사진 주차장 : 주차 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의 미끄러짐이 발생하는 곳 ✓ 안전시설 : 미끄럼 방지시설 및 주의안내표지판 등 설치 ✓ 안전점검 : 정기적으로 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안전관리 실태조사 실시 			
안전 조치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종단경사도 4% 초과 도로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 위치 : 37개구간 438면 ✓ 미끄럼방지시설(고임목) 설치 ✓ -고정형 고임목(카스토퍼)설치가 원칙 ✓ -이면도로의 경우 보행자 넘어짐 등의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곳은 이동형 고임목 비치 (이동형 고임목 설치시 비치함을 설치하고 안내표지판에 이용 명시) 			
	고정형 고임목		이동형 고임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안내표지판 설치 ✓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상시 게시상태 유지 			
	주의안내 표지판 내용		주의안내 표지판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사진 주차장 안전점검 : 3년주기 주차수급실태조사와 병행, 매년 1회 지도점검 				

5.5 주차수요 관리방안

5.5.1 주차요금제도 개선

가. 기본방향

- 서구는 인구 및 세대수,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기존 주차미확보 세대들로 인한 불법주차문제는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 지속적인 주차시설의 공급에도 불구하고, 가용토지 및 가용자원 등 제약조건으로 인해 주차시설 공급의 한계가 있어, 증가하는 불법주차수요를 감당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 주차수요 저감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차량부제 운영을 통한 강제적인 수요감소와 함께 주차요금의 조정을 들 수 있다.
- 그러나, 차량부제 시행은 승용차의 수요억제와 동시에 기존 승용차 통행 수요를 처리 할 수 있는 대체교통수단(대중교통)의 확충이 함께 진행되어야 하므로 대중교통체계 개편 및 시설 확충과 함께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이므로,
- 본 계획에서는 주차요금제도의 개정을 통한 주차수요 저감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장기적으로는 지역주차난 해소와 주민편의를 위해 무료 운영중인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질 높은 서비스 제공, 향후 주차시설 확충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이용률이 높은 공영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유료화하고, 점진적으로 유료화를 확대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타지자체 사례 검토

- 주차요금 인상을 통한 주차수요 저감방안 시행시 교통수요 억제의 순기능과 주차장 이용자의 부담 가중이라는 역기능 사이의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
- 최근 많은 지자체들은 조례 개정으로 요금 인상 및 급지 제도 보완 방식을 추진 하고 있으며, 서민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우나, 장기간 주차요금 고정 및 유지관리비용 등의 물가 상승으로 요금인상을 하려는 지자체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서울연구원에서는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동일 급지라도 공시지가에 따라 요금 차등 부과하는 정책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 서울시는 2020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3개월간 시영주차장의 요금을 한시적으로 25%~50%를 인상하여 차량 수요 억제정책을 펼쳤으며, 요금 인상에 따른 주차수요의 변화를 검토하기 위하여 3개월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음.
- 이는 주차요금 인상이 주차수요 저감에 미치는 유의미한 정책사례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서구 공영주차장의 요금인상을 통한 주차수요 관리방안을 수립하였다.

【표 5-36】 서울시 요금인상에 따른 주차수요 저감효과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시영주차장 요금인상 효과 3개월 모니터링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모든 차량의 주차요금을 일괄 인상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교통지역' 시영주차장의 전체 주차대수는 4.1%(7,679대→7,367대) 감소 ✓ 서울시 전역 시영주차장 일평균 주차대수는 3.3%(25,753대→24,908대) 감소

다. 서구 도입방안

- 장기간 주차요금 고정 및 유지관리비용 등의 물가 상승으로 서구 재정악화가 가중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주차수요의 저감과 부가적으로 서구 주차운영 자원확보를 기대할 수 있는 주차장의 유료화 확대 방안을 제시함.
- 현재 서구에서 운영중인 공영주차장 대부분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 불법주차 수요가 높은 지역의 공영주차장을 단계적으로 유료화 할 필요가 있으며,
- 신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은 유료화 운영을 통해 주차수요 저감 및 회전을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
-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통한 주차수요 저감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실제 요금 인상 후 주차수요의 저감효과가 얼마나 효과적일지 판단할 수 있는 모니터링 등 관련자료의 부족으로 정량적인 기대효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 요금인상은 시민들에게 무척 민감한 사항으로, 자가 차량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시민들이 많은 경우 주차수요는 저감되지 않고 이용자 부담 가중 및 주차장 이용요금 지불에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현 상황에서 오히려 불법주차가 더 늘어나는 등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특히 주의할 점은 공영주차장 운영주체에서는 주차요금을 올렸을 때 주차수요가 감소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검증없이 막연한 추측으로 정책을 추진할 경우 주차수요는 감소되지 않고 운영주체의 수익만 증대될 경우 민원만 증가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 요금제도의 개선은 민원발생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시행시 시범 운영 및 모니터링 효과 분석 등 향후 별도의 용역을 통해 시행 효과의 검증 후 요금인상 수준의 적정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가 있다.
- 마지막으로 주차요금의 효율적 조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마련하여 시민홍보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요금인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유료주차장 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강력한 단속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5.6 제도개선 방안

5.6.1 서구 주차관련 법제도의 미흡

- 2020년 현재 서구에서 제정시행중인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2020.11」에서 정하고 있는 주내용으로는 적용범위, 주차요금, 주차장의 관리, 주차장의 설치기준, 설치보조 등의 내용을 정하고 있다.
- 그러나, 3년마다 시행하여야 하는 '주차수급실태조사'에 관한 내용 및 주차환경 개선지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주차공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민영 주차장의 설치 촉진등에 관한 사항들이 수립되지 않은 실정이다.
- 이에 따라, 본 계획에서는 향후 서구 주차정책 수립 및 시행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5.6.2 주차수급실태조사 관련 제도 정비

- 주차장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의거, 주기적인 주차수급 실태 조사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통한 서구 주차정책 수립의 기초 마련
- 법적기준 설정 : 조례상 주차장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관련 규정 신설
- 조례개정 내용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조사대상 ✓ 2. 조사시기 ✓ 3. 조사내용 ✓ 4. 조사방법 ✓ 5. 데이터베이스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조사내용 ✓ 2. 조사주기 및 시기 ✓ 3. 조사범위

【표 5-37】 주차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관련 규정 신설(안)

제〇〇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p>제00조(주차장수급실태조사) ① 시장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수급실태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급실태조사 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 주차시설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않은 공간(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예정된 지역, 50호 미만의 비도시지역 집단취락지구 등)은 수급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 2. 수급실태조사 시기 :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수급실태조사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차장 및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수급실태조사 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차시설현황조사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야간,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p>② 제1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수급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해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적장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p> <p>③ 수급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수급실태조사원증표를 지참하여 이를 주차시설관리자에게 보여 주어야 하고, 시장은 수집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p> <p>④ 실태조사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의 지속적인 관리와 갱신, 그리고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p> <p>⑤ 그 밖에 수급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제〇〇조의2 (주차장안전관리 실태조사)
<p>제00조의2(주차장안전관리실태조사) ①시장은 법 제3조 및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라 주차장안전관리실태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충족여부 2. 경사진 주차장인 경우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 여부 3. 안전관리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되, 제3조에 따른 수급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4. 다만, 법 제6조제3항 및 규칙 제6조제11호 및 제15호의 준수사항은 매년 한번 이상 점검하고 조사해야 한다. <p>②안전관리실태조사의 범위 : 출입도로를 포함하여 주차장 전체를 조사구역으로 할 것</p>

5.6.3 주차환경개선지구 관련 제도 정비

- 주차환경개선지구는 수급률이 낮고, 주차로 인한 주거환경 및 안전의 문제점이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차시설 확충 및 효율적인 주차운영관리 대책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정·관리하는 방안이다.
- 주차장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주차수급률이 일정 수준 미만인 지역에 대한 개선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계획에서는 서구 주차조례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 법적기준 설정 : 조례상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관리 관련 규정 신설

【표 5-38】 주차환경개선지구 관련규정 신설(안)

제○○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관리)
<p>제00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① 구청장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의 조사구역으로서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결과 주차수급률(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주차수요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0% 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하여는 주차난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 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나. 주택가(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중 주차장 수급률이 낮은 지역 <p>② 구청장은 제1항에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그린파킹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 운동장 야간 개방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소규모 평면주차장 조성사업 4. 민간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등 <p>③ 시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주차수급률이 개선되도록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주차장의 수급실태 및 이용 특성, 장기단기 주차 수요에 대한 예측에 근거하여 공영주차장 건설 등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포함한 연차별 목표 및 관리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주차장 수급실태의 개선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p>
제○○조2(주차환경개선지구의 해제)
<p>제00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의 해제) 구청장장은 제00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p>

5.6.4 주차장 건설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

- 공영주차장의 부지확보 문제와 막대한 주차장 조성비용에 따른 공공위주의 주차 공급의 한계로 인하여, 최근 기존 주차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주차공유 사업 및 민간주도의 주차장 건설을 촉진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 본 계획에서는 민간의 주차장 건설 촉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5-39】 주차장 설치 보조 변경(안)

기존 서구 조례	개정 조례(안)
<p>제22조의2(보조의 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자가 기존의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또는 연립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2.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변경·보안시설 등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 3. 학교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변경·보안시설 등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 (단, 20면 이상) 4.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p>제22조의2(보조의 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자가 기존의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또는 연립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2.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변경·보안시설 등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 3. 학교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변경·보안시설 등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 (단, 20면 이상) 4.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통보를 한 자로서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평면식 주차장의 수용능력의 2배 이상의 규모로 설치한 자

5.6.5 공영주차장 건설 촉진 및 공유를 위한 제도 정비

- 서구 관내 공영주차장의 신설 및 공원시설 등의 용도를 변경, 학교시설 주차장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공영주차장의 설치의 법적 근거마련, 장기적으로 주차장의 유료화 등을 위한 조례 신설(안)을 제안하였다.

【표 5-40】 공영주차장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신설(안)

제00조(공영주차장 설치 촉진)
제00조(공영주차장 설치 촉진) ① 시장은 공영주차장 설치와 확충을 위하여 공공시설이나 공공용지 등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용지의 용도변경 및 주차장 2. 학교시설 주차시설 확충 3. 재개발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재건축 확정지구의 기부채납 공원부지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각 부지 제공자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5.6.6 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제도 정비

- 주차장법에서는 주차장을 노상·노외·건축물부설 주차장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형태에 따른 설치기준에 대해서 주차 단위구획, 주차구획, 전용주차구획, 주차전용 건축물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각 용도별 부설주차장 최소 설치 기준을 정하고, 지역여건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하도록 일부 권한에 대한 위임 하고 있다.
- 서구는 '인천시 주차장 설치조례 [별표2]-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준용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노후주거시설의 경우 주차수요를 감당 할 수준의 주차면이 미확보된 상황이며, 사실상 법적기준을 실제 이용실태에 맞도록 강화한다는 것은 쉽지 않으나, 자칫 간과할 경우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과도한 재정투입을 기대하게 될 수도 있다. 이에 본 계획에서는 현재 주차장관련 조례를 검토하고 설치기준 강화의 변경(안)을 제안하였다.
- 서구는 오래된 저층소형 다세대 주택이 다수 존재하며, 해당 주택들은 이전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적용으로 "1세대=1주차면"이 미확보된 세대가 대다수로, 차량 등록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서구 현실과 함께 주택가 주변도로상 불법주차 문제는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 인천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변경(안)

1) 기본방향

- 주차 조례개정의 기본방향으로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주차장은 차량을 운용하는 개별주체가 확보하도록 하며,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시설을 공급하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즉, 주차시설 공급실태 및 수요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주차장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민간주택에 한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주거지역의 주차정책은 차량 1대당 차고지 1면 이상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2) 주거시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변경(안) 제시

- 현재 서구에서는 주택가의 주차수급이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한 기준 강화가 아닌, 주거시설의 기준 강화를 우선 제안하였다.
-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세부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5-41】 인천시 조례 현황 - 주거시설

시 설 물	설치기준
4.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50㎡ 초과~150㎡ 이하 : 1대 시설면적 150㎡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 + { (시설면적 - 150㎡)/100㎡ }]
5.다가구주택,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은 포함하고, 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1대 이상). 이 경우 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르며, 다가구 및 오피스텔의 경우 1가구(호실)를 1세대로 본다.

- 단독주택의 경우 150m²를 기준으로 이하 면적과 초과면적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세대당 1대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단지조성사업의 경우 '제14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에 의거하여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를 노외주차장으로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그러나 최근 세대당 차량보유대수가 늘어나 주차장은 더욱 많은 대수를 필요로 하고 있어, 확보면적의 증대를 제안하였다.
- 서구는 기존의 노후 주택들의 재건축 및 도시개발사업 등이 예정되어 있어, 본 계획에서는 향후 주민들의 자발적인 주차면 확보를 위하여,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설치기준의 변경 및 단지조성사업의 노외주차장 확보면적 변경(안)을 제시하였다.
-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면적을 세분화하여, 세대당 주차면 확보대수를 제안하였으며, 현행 조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차량 유발의 책임을 위한 민간의 주차장 자진확보방안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표 5-42】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변경(안)

시 설 물	조례 현황	개정 조례(안)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외국공관 안의 주택 등의 시설물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5m ² 이하인 경우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85m ² 당 1대, 전용면적이 85m ² 를 초과하는 경우 70m ² 당 1대로 한다. 다만, 주차대수가 세대(가구)당 또는 호실당 1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대(가구)당 또는 호실당 1대 이상으로 한다.	전용면적 50m ² 미만 세대당 1대 전용면적 70m ² 미만 세대당 1.1대 전용면적 85m ² 이상 세대당 1.3대 오피스텔 호실당 1대

【표 5-43】 단지조성사업 노외주차장 확보기준 변경(안)

조례 현황	개정 조례(안)
<p>제14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p> <p>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p> <p>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p>	<p>제14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p> <p>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1.0퍼센트</p> <p>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p>

- 설치기준 강화와 함께 장기적으로 세대당 확보면수 이상의 차량 소유시 차고지 증명제 등을 통한 주차장 확보에 관한 규제방안도 함께 고려 할 수 있다.
- 본 계획에서 제안하는 설치기준 강화는 장래 주거지역내 주차장 확보를 위한 제안으로 확정적인 설치기준은 아니며, 향후 조례개정에 관한 별도의 용역시행 및 관련부서 간 협의, 주민공청회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 사항이다.

제 6 장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관리계획

- 6.1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목적 및 지정절차
- 6.2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제6장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관리계획

6.1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목적 및 지정절차

6.1.1 지정목적

- 주차환경개선지구는 주차수급률이 낮고, 주차로 인한 주거환경 및 교통안전의 문제점이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차시설 확충 및 효율적인 주차운영 관리 대책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정관리하는 방안이다.
- 주차장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주차수급률이 일정 수준 미만인 지역에 대한 개선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계획 “제6장 6.6 관련 제도의 정비방안”에서는 서구 주차조례개정(안)을 제안하였다.

【표 6-1】 주차환경개선지구관련 규정 신설(안)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관리, 해제에 관한 조례개정(안)

제00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의 조사구역으로서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결과 주차수급률(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주차수요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0% 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하여는 주차난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 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가.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 나. 주택가(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중 주차장 수급률이 낮은 지역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 운동장 야간 개방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소규모 평면주차장 조성사업
4. 민간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등

③ 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주차수급률이 개선되도록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주차장의 수급실태 및 이용 특성, 장기단기 주차 수요에 대한 예측에 근거하여 공영주차장 건설 등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포함한 연차별 목표 및 관리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주차장 수급실태의 개선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제00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의 해제) 구청장은 제00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6.1.2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절차

- 주차환경개선지구를 확정하기 전 주차수급실태 조사분석 내용을 토대로 주차수급률이 70%미만 지역을 선정한 뒤, 주차관련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주차수요에 대한 주차공급이 충족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
- 주차환경개선 예정지구로 선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주차수급실태조사분석 이외에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호응도를 알아보고, 주차관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 또한, 주차환경개선 예정지구를 대상으로 주차환경개선지구 선정위원회의를 조직하여 최종 주차환경개선지구를 결정하고, 사업추진방향을 결정하기 전 시민공청회를 개최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주차환경개선지구 주차관련 정책의 종합적 설계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업설계단계에서는 주차환경개선지구별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시행 초기단계에서부터 개선사업에 참여하도록 하여 주차문화에 대한 의식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절차는 대상지역 조사단계, 대상지역 결정단계, 사업추진 단계, 주차환경개선지구 운영단계로 구분된다.
 - 단, 주차관련 담당기관의 운영상황에 따라 각 단계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축소하여 "구"나 "동" 자체 관련기관의 협의를 통해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운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1단계 : 주차환경개선지구 대상지역 조사단계
 - ① 주차환경개선 대상지 선정 (주차수급률 70%미만 지역)
 - ※ 추가적으로, 70% 미만 지역 중 주차부족대수에 따라 상세 구분 및 부설주차장의 공급 및 수요를 제외한 노상·노외주차장의 공급 및 수요를 대상으로 검토
 - ② 주차수급 현황조사분석 자료 활용 (주차수요 및 주차시설 이용현황조사)
 - ③ 주차환경개선지구 사업우선순위 결정 (주차수급률 및 서구 검토지역 기준)
 - ④ 주차환경개선 예정지구 선정 (시범지역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지역 선정)



- 2단계 : 주차환경개선지구 대상지역 결정단계
 - ① 주차환경개선 예정지구에 대한 시민여론조사(시민의 호응도, 추진의지 등)
 - ② 주차환경개선지구 선정 운영에 관한 시민공청회 개최
 - ③ "구"나 "동" 자체적 주차환경개선지구 선정위원회 개최(선정범위 및 규모 결정 등)
 - ④ "구"나 "동" 자체적으로 교통심의 성격의 회의 개최(주차환경개선지구 확정)
 - ⑤ 주차환경개선지구 주차관련 정책 종합설계
- 3단계 주차환경개선지구 사업추진단계
 - ① 시민위원회 구성(사업에 적합한 위원회 명칭 결정, 위원 선정 및 위원장 선임)
 - ② 주차관련 정책의 논의(주차수급 현황조사, 분석 자료 근거)
 - ③ 주차관련 정책의 수립 및 결정
 - ④ 주차환경개선지구 운영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 4단계 : 주차환경개선지구 운영단계
 - ① 주차환경개선지구 운영계획 수립
 - ② 주차환경개선지구 시범운영기간 설정(홍보 및 계도활동 실시)
 - ③ 주차환경개선지구 시범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 분석 및 제도 보완
 - ④ 주차환경개선지구 정상 운영(주차관련 정책 시행 강화)

6.1.3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기준

- 주차환경개선지구는 주차공급조사와 주차실태조사 및 주변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검토하여 서구에서 우선적으로 주차정책을 시행하여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지정 하도록 한다.
-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에 있어서 주거지역의 경우 야간에 거주자 교통수요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상가·업무시설 및 지하철 역세권 인근지역의 경우 주간에 비거주자 교통수요가 많은 혼잡지역을 대상으로 검토
- 서구 281개 블록을 대상으로 용도지역별 주차공급면수, 주간/야간의 주차수요대수, 주차수급률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개발 우선순위 지정을 위한 기초 DB를 구축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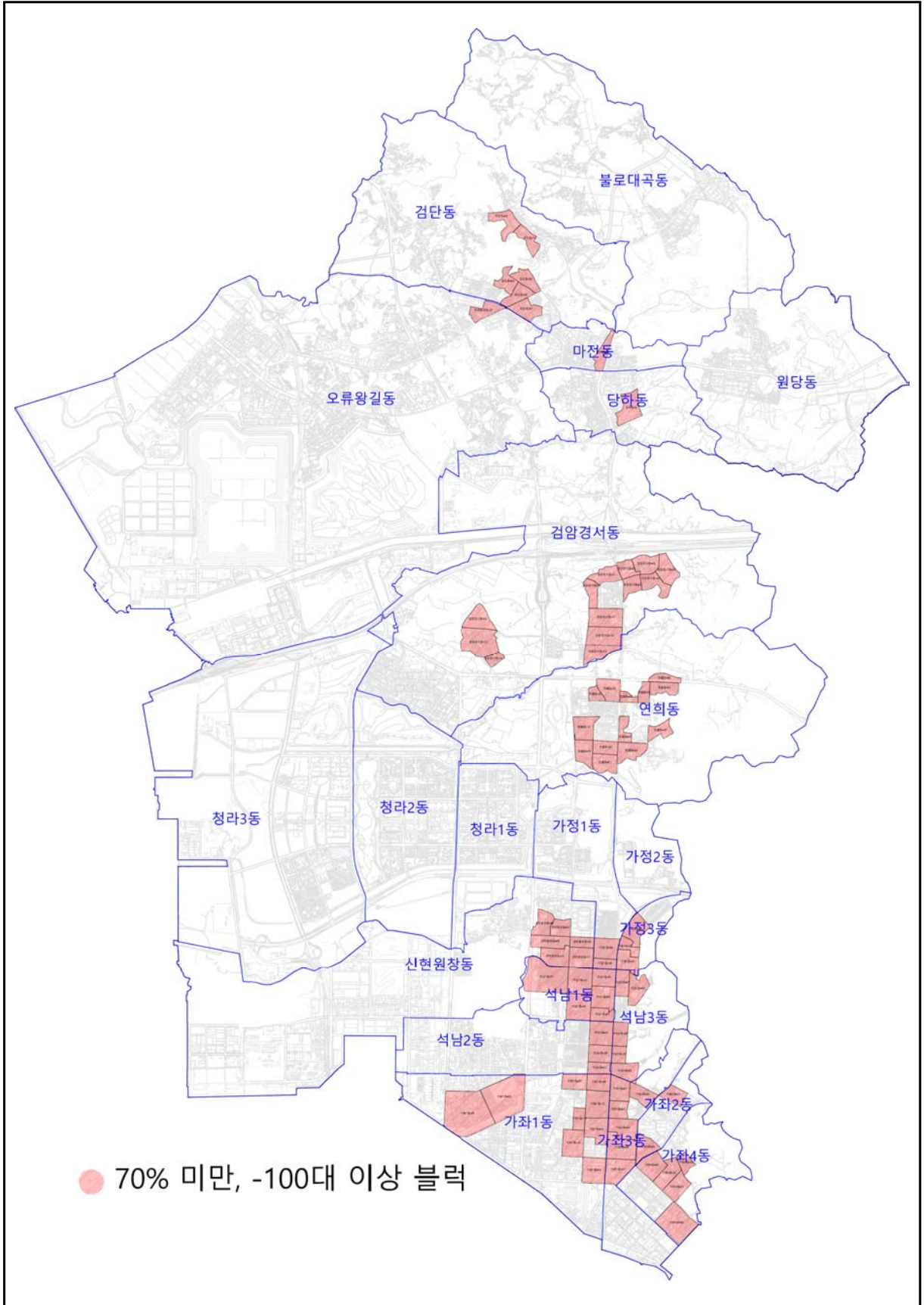
6.1.4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우선순위 평가인자

- 주차환경개선지구는 주차공급조사와 주차실태조사 및 주변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검토하여 서구에서 우선적으로 주차정책을 시행하여 정비가 필요한 지역 선정에 참고하였으며,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위해 본 계획에서 검토한 평가인자는 주차수급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주차장 수급율과 주차면 과부족대수이다.
- 이외에도 향후 추가적인 DB구축을 통해 동별, 용도지역별 구분에 따른 주차면적 비율, 인구수, 세대수, 자동차등록대수, 차량보유율 등을 활용하여 평가인자의 보완을 유도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주차환경개선지구 우선순위 평가 이후 개발사업 대상지 지정시 소유권자(국가, 지자체, 민간, 기타 등)에 대한 평가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6.2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6.2.1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선정

- 서구 주차환경개선지구는 주차수급실태 조사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주야간 주차수급률 70%미만인 지역 중, 주차수요 대비 주차면 부족대수 100면 이상인 지역을 검토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주차공급이 적어 수급률이 적게 분석되는 지역과, 도시개발예정지역등은 제외하였다.
- 수급률 분석결과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대상 블록은 83개 블록으로 선정되었다.



【그림 6-1】 주차환경개선지구 대상 블록 선정

가. 시범사업지구 선정

- 본 계획에서는 주차수급실태조사를 통한 수급률 및 불법주차율, 과부족면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 시범대상 우선순위를 검토해보았다.
- 서구 전체 조사블럭 중 주차환경이 열악한(수급률 70% 이하, 과부족면수 100면 이상) 블럭은 252개 블럭으로 전체의 약 89.7%를 차지하고 있어, 본 계획에서는 행정동별 우선순위를 제안하고자 한다.
- 향후 행정동별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금회 조사된 세부 블럭별 수급률 및 과부족면수를 고려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 선정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며,
- 주차환경 개선지구 우선 선정 대상 행정동의 선정 기준은 수급률 70% 미만, 과부족면수 1,000면 이상으로 선정하였으며, 행정동별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표 6-2】 주간 분석지표별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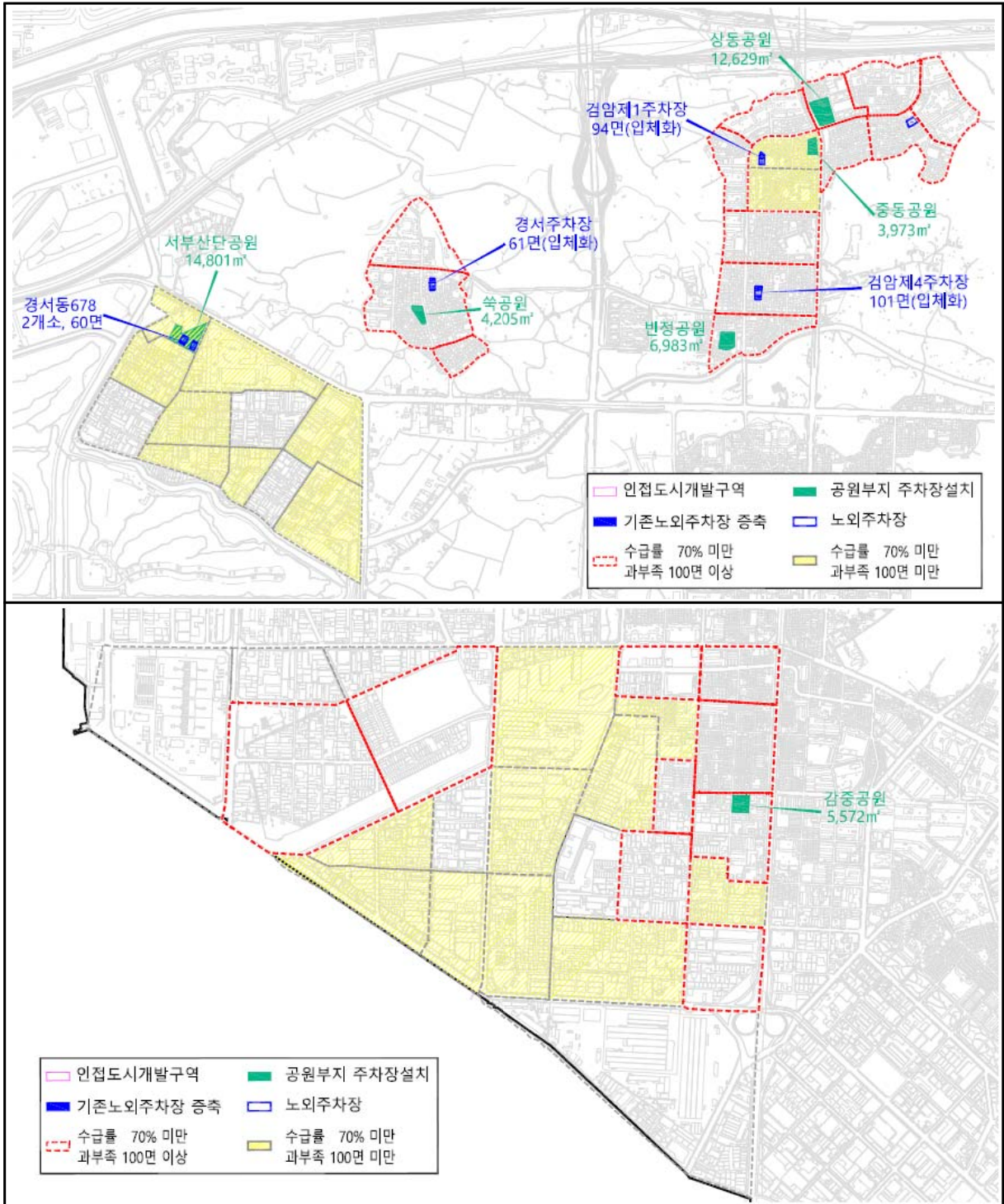
행정동	주차수급률	행정동	불법주차대수	행정동	과부족면수
검암경서동	19.1%	가좌1동	3,892대	가좌1동	-3,644면
가좌1동	28.3%	검암경서동	3,417대	검암경서동	-2,952면
가좌4동	32.9%	석남2동	2,160대	석남2동	-1,868면
가정1동	33.0%	연희동	2,024대	가좌3동	-1,593면
석남2동	40.0%	가좌3동	1,935대	가좌4동	-1,435면
석남1동	40.6%	가좌4동	1,646대	연희동	-1,275면
가좌3동	46.1%	석남1동	1,463대	석남1동	-1,042면
연희동	50.6%	가정1동	1,145대	가정1동	-957면

【표 6-3】 야간 분석지표별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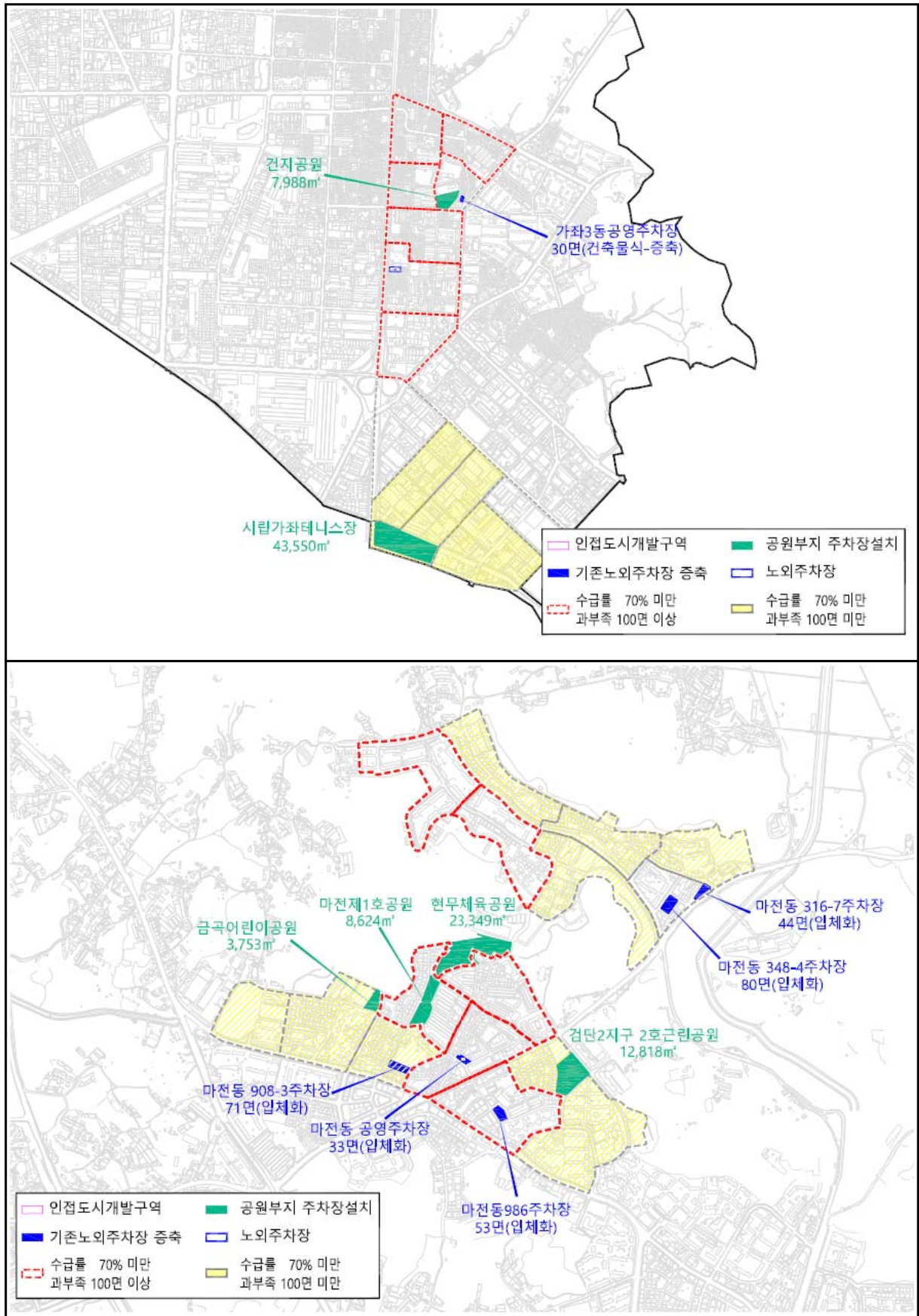
행정동	주차수급률	행정동	불법주차대수	행정동	과부족면수
검단동	14.00%	검암경서동	4,068대	검암경서동	-3,450면
검암경서동	16.80%	가좌1동	2,781대	가좌1동	-2,318면
가정1동	22.30%	가좌3동	2,325대	가좌3동	-1,948면
석남3동	27.10%	검단동	2,013대	검단동	-1,732면
신현원창동	30.30%	석남1동	1,902대	가정1동	-1,642면
가좌4동	31.40%	가좌4동	1,890대	석남1동	-1,549면
석남1동	31.50%	가정1동	1,819대	가좌4동	-1,540면
가좌1동	38.30%	연희동	1,578대	신현원창동	-1,112면
가좌3동	41.10%	석남2동	1,384대	석남3동	-884면
석남2동	63.90%	신현원창동	1,166대	석남2동	-703면
연희동	66.30%	석남3동	1,059대	연희동	-662면

나. 동별 시범사업지구 내 주차공급시설 검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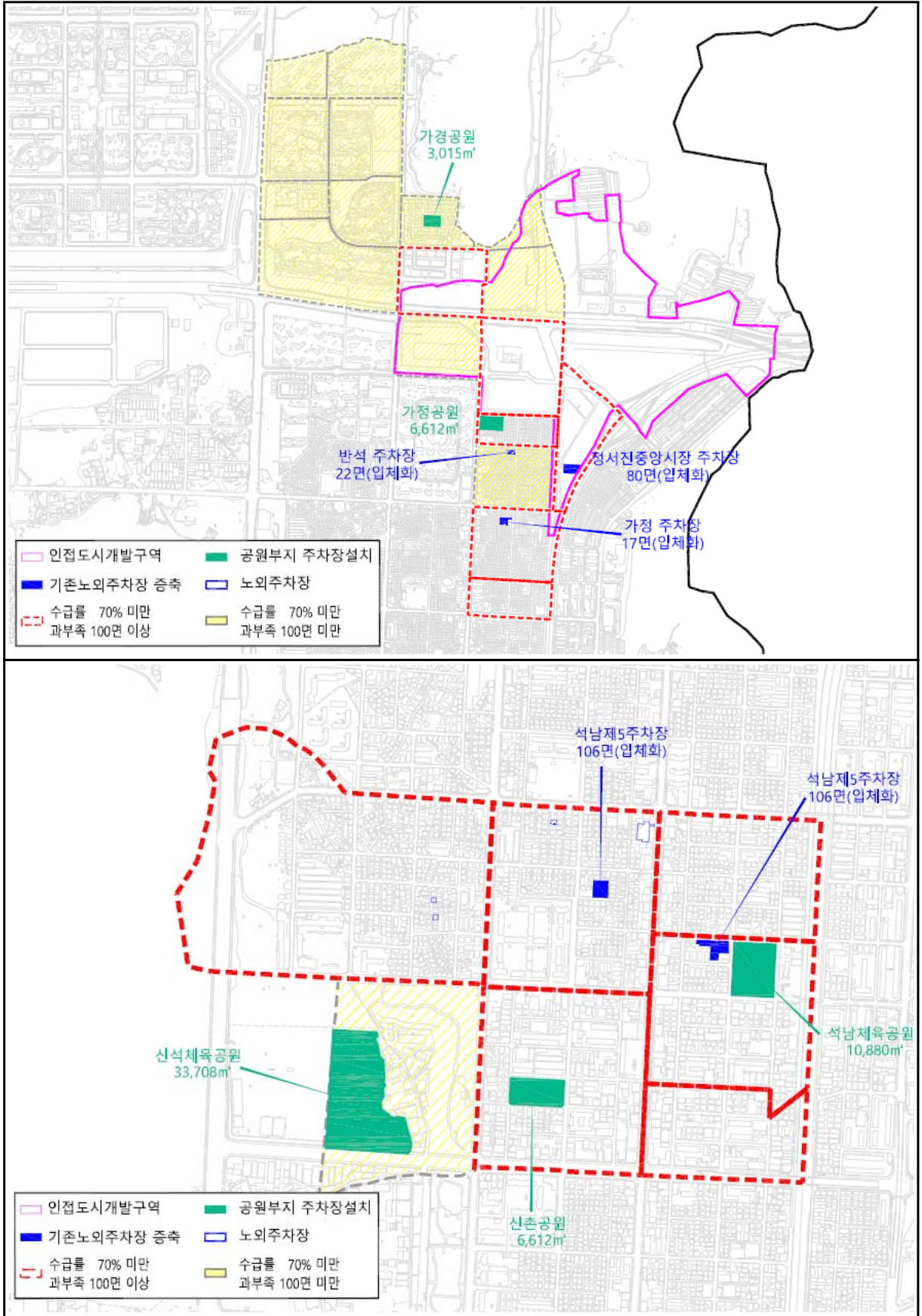
- 주차수급률 및 과부족면수 등 종합적 분석을 통해 주차환경개선지구 시범사업지구 지정 및 운영시 주차시설 공급 가능방안을 검토한 결과, 공원부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의 건설 및 기존 공영주차장의 입체화 대상부지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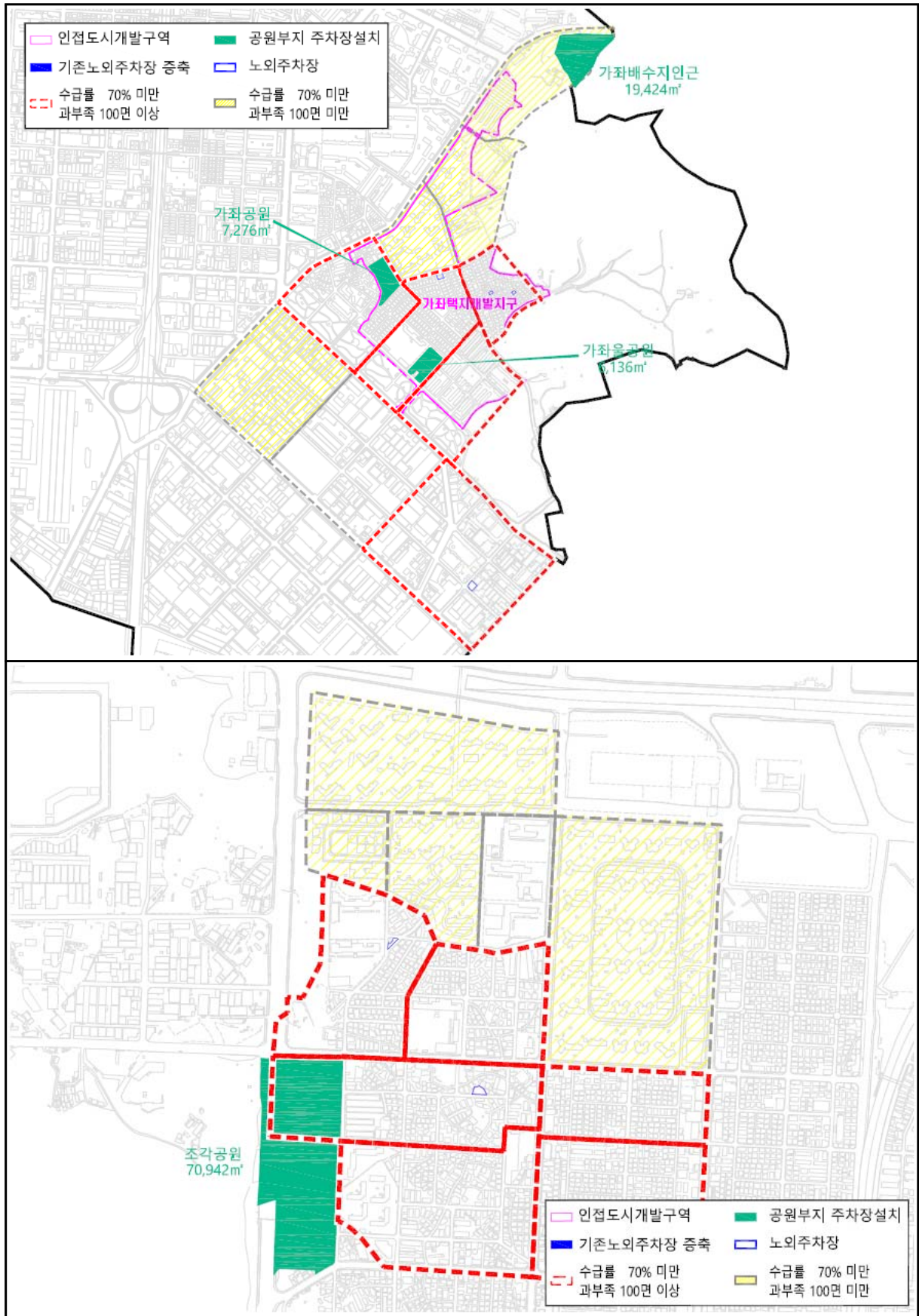
[그림 6-2] 동별 주차시설 공급 검토안 - 검암경서동, 가좌1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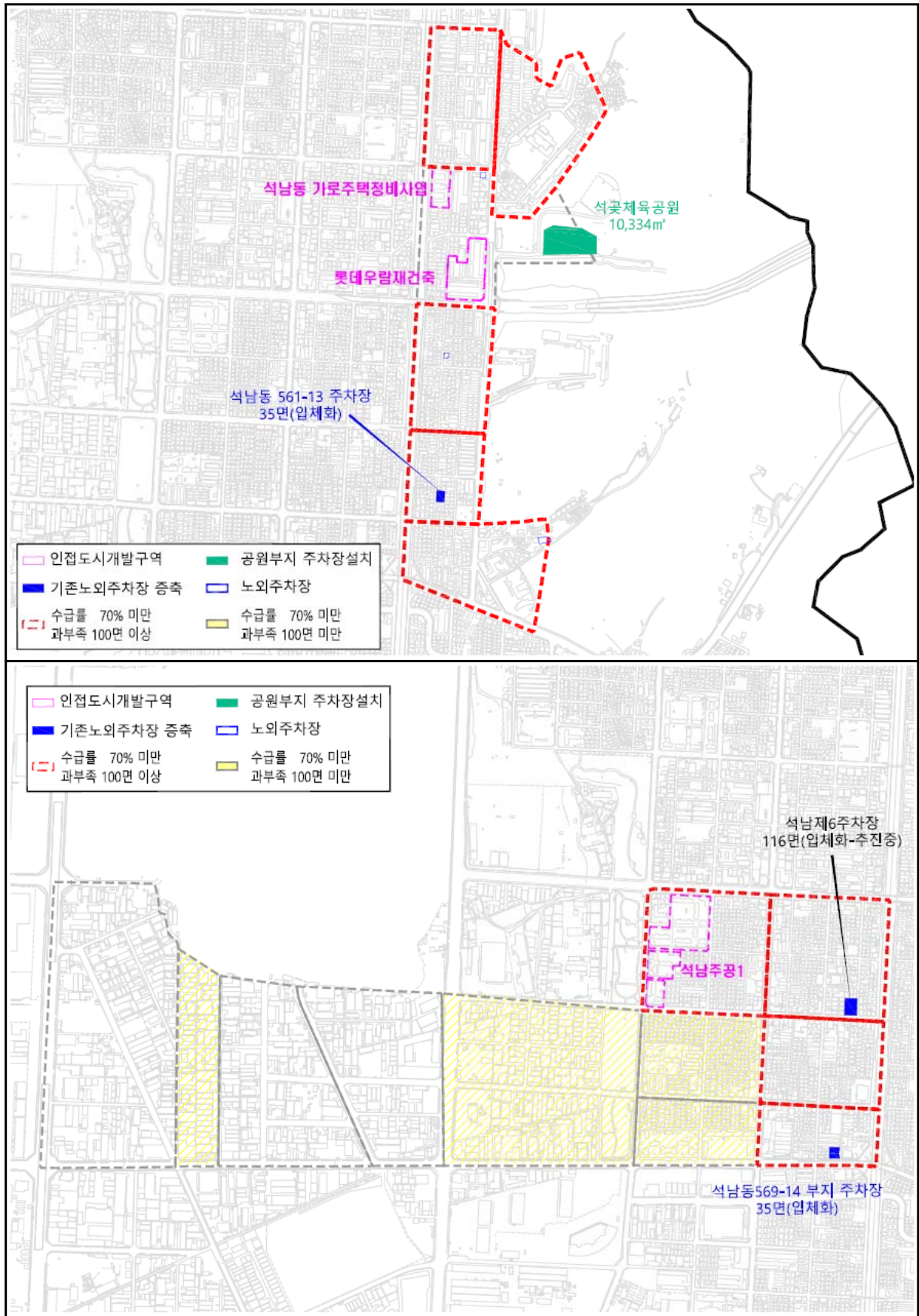
[그림 6-3] 동별 주차시설 공급 검토안 - 가좌3동, 검단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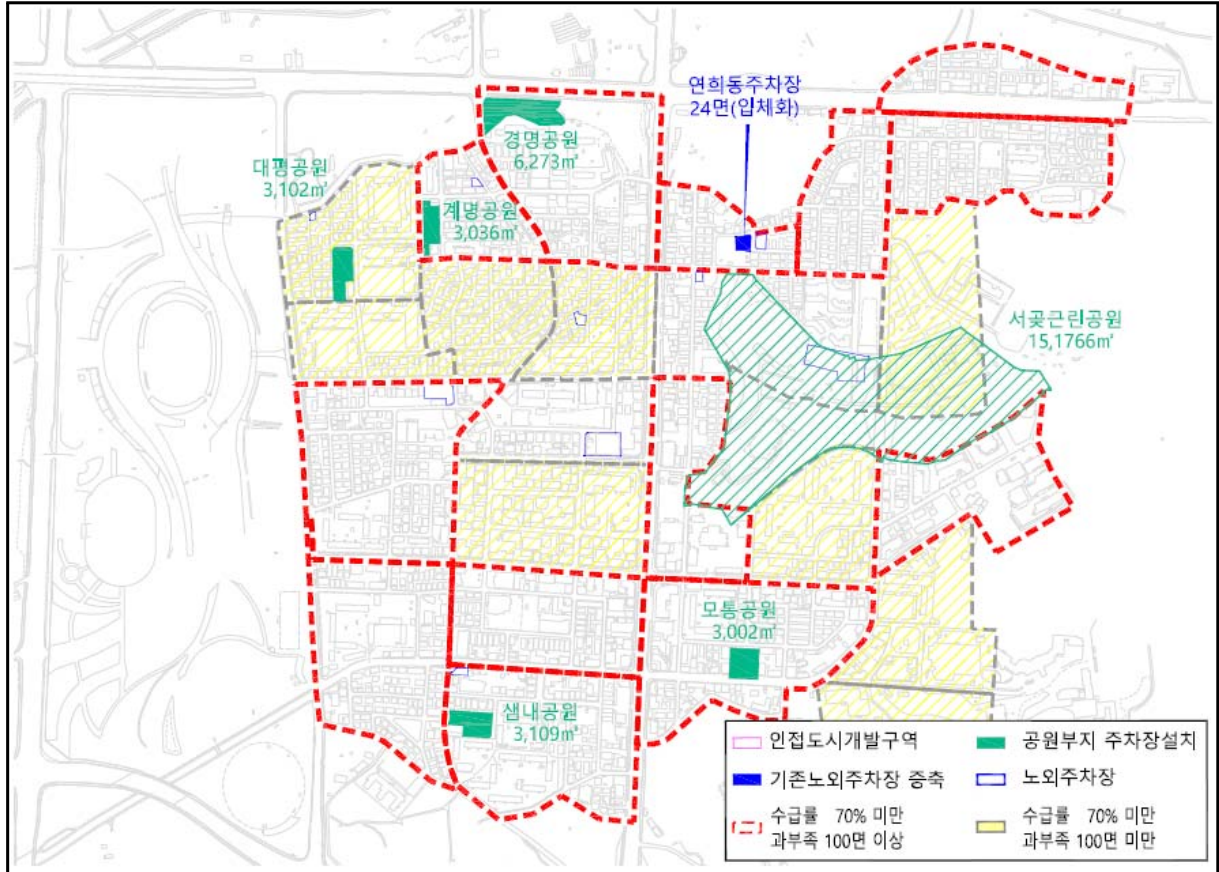
【그림 6-4】 동별 주차시설 공급 검토안 - 가정1동, 석남1동



[그림 6-5] 동별 주차시설 공급 검토안 - 가좌4동, 신현원상동



【그림 6-6】 동별 주차시설 공급 검토안 - 석남3동, 석남2동



【그림 6-7】 동별 주차시설 공급 검토안 - 연희동

6.2.2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시행 시기

- 지정대상으로 선정된 83개 블록의 동시 시행은 관련제도의 정비, 시행계획 수립, 주민참여 및 홍보 등 시간상의 이유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 주차면 과부족면수가 가장 높은지역을 시범대상지구로 우선 선정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주차수급률이 낮고, 불법주차 대수가 많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낙후된 주차 환경에서 주민들의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참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주차요금제도개선의 효과를 모니터링 할 수 있고,
- 공원내 노외주차장 설치 등의 시행 시 주차시설의 공급에 따른 주차환경 개선의 효과를 즉시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역과 대형상가 및 아파트, 학교, 공공시설 등의 주차공유 및 주차장개방사업 등을 추진 할 수 있는 지역의 선정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시행을 위하여는 해당지역 주민의 참여가 중요한 사항으로, 본 계획의 수립이 완료되는 2021년 5월부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선정하고 사업추진을 시민위원회 구성과 주차정책의 논의, 관련주차정책의 수립 확정 후 국토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주차환경개선 사업 공모사업 등을 거쳐, 공모사업 선정 시 2022년부터 대상사업지 주차환경개선지구 시범사업 운영단계가 진행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6-4】 시범사업 시행시기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05 2020 서구 주차수급실태조사 계획 완료 ✓ 2021.06 대상지역 범위 결정, 여론조사, 공모사업 용역 발주 ✓ 2021.06 시민공청회 개최 및 선정위원회 개최 ✓ 2021.08 주차환경개선지구 확정 ✓ 2021.09 주차환경개선지구 주차관련 정책 종합설계 완료 ✓ 2021.10 국토부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 ✓ 2022.00 사업시행
--

6.2.3 주차환경개선지구의 관리계획

【표 6-5】 주차환경개선지구의 관리계획

구 분		사 업 내 용	비 고
개선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주차율 10% 감소 ✓ 주거환경정비로 주민만족도 80%이상 	-
지구교통개선사업 (주거환경 및 교통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커뮤니티 도로 보행환경 정비 - 보도설치, Traffic-calming기법 도입 ✓ 교통안전을 위한 주요교차점 고원식교차로 및 험프식 횡단보도 설치 ✓ 도로 재포장 	✓ 교통정책과 연계
주차 공급	공영주차장공급	✓ 블록내 공원부지 주차장 설치	-
	학교주차장개방	✓ 개방기간 및 규모에 따른 제도적 지원	-
	민간주도의 주차시설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개정, 지원제도 마련을 통한 민간주차장 설치 유도 ✓ 그린파킹 참여 유도 	
	주차공유사업 도입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정보 DB구축(공공+민간) 후 참여 홍보 ✓ 지원제도 마련 및 유료화를 통한 수익 창출 	✓ 기존 주차시설 이용효율화
수요 관리	전면유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록내부 및 영향권내 주차장 전면 유료화 ✓ 요금제도 개선을 통한 수요관리 	-
	단속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환경개선지구 주차단속 전담팀 구성 ✓ 24시간 상시 견인체계 구축 ✓ 외부 도로망 주차단속 cctv 설치 	-
기타	특화사업	✓ 블록 주진출입로에 주차환경개선지구 안내표지 설치	-

부 록

- 조사결과 보고회 자료
- 주차관련 법령
- 주차공유대상 사업 건축물

부 록

■ 조사결과 보고회 자료



01 과업의 개요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과업의 배경

- 가구수 및 자동차 급증에 따른 주차장 확보 필요
- 기존 주차면 미확보 건물 이용자의 주차문제 심화

과업의 목적

- 주차실태 조사를 통한 실증적인 자료 확보
- 실태조사에 근거한 주차정책수립 및 집행의 기초자료 활용

법적근거

- 주차장법 제3조에 따른 3년 단위 법정계획
- 전차수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의 목표연도(~2020년) 도래

과업의 범위

시간적 범위

- 조사기준년도 : 2020년
- 통계자료 기준년도 : 2018년 / 2020년
- 목표연도 : 2023년(기준+3년), 2026년(기준+6년)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 서구 전체(116.90km², 22개동)

내용적 범위

구분	내용적범위
기본현황 및 교통현황 조사 및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현황 분석 도시교통지표 현황 및 전망
주차시설 현황 및 주차이용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대상 블록 선정 주차시설 및 주차이용 실태조사 수급률 분석
DB시스템 자료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광역시 GIS 플랫폼 DB 구축
주차환경 개선방안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01 과업의 개요

과업수행절차

주요 추진 내용 및 일정

- 2020.03. 계약 및 과업착수
- 2020.05. 인천시 주차조사업 구축 관련 간담회(1차)
- 2020.06. 인천시 주차조사업 구축 관련 간담회(2차)
- 2020.07. 스마트주차조사 조사항목 건의
- 2020.08. 조사원 모집 및 교육
- 2020.11. 현장조사 완료
- 2020.12. 인천시 스마트주차조사 시스템 검토
- 2021.01. 스마트주차조사 시스템 분석자료 검증
- 2021.02. 서구 주차실태조사 분석
- 2021.03. 조사결과 보고회
- 2021.03. 최종보고회(예정)

과업수행절차

과업 수행방향 설정

주차관련자료 수집

조사계획 수립

조사구역 설정

주차조사업을 활용한 시설 및 수요조사

조사자료 분석

주차환경 개선방안 수립

- 조사일정, 조사내용, 조사방법
- 조사원교육 등 조사를 위한 사전준비

- 주차장법에 근거한 조사블록 설정

- 주차이용실태조사
- 주차시설현황조사
- 조사결과 입력

- 조사자료 분석 및 문제점 진단
- 조사결과 보고

- 주차정책 및 공급방안 설정
- 최종보고



도시 일반 현황 02 서구 일반현황

인구 및 자동차등록대수

- ✓ 최근 5년간 서구의 인구는 연평균 +2.0% 지속적 증가
- ✓ 자동차등록대수는 연평균 +5.2% 증가
- ✓ 동기간 인천시 인구 -0.2% 감소, 자동차 +6.0% 증가



- ✓ '20년 기준 544,465명, 236,427대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이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원거주민의 일시적인 이주로 판단되며,
- ✓ 향후 루원시티, 검단신도시 등 개발계획 완료시 서구의 인구 및 자동차등록대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서구 주차면 확보 추이

- ✓ 인천 서구 통계연보 기준 최근 5년간 서구의 주차면수는 2014년 17.3만대 → 2018년 26.8만대로 11.5%의 증가 이는 동기간 인천시 전체 증가율 6.4% 대비 폭발적 증가율



- ✓ 통계자료 수집기간내 인천시/서구 주차면수 비율

- 청라지구, 루원시티 등 개발계획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증가



도시 일반 현황 02 서구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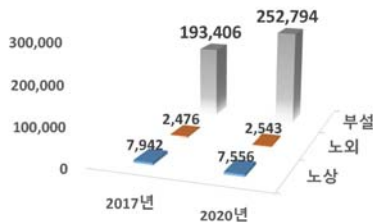
주차장 유형별 증감 추이

- ✓ 통계자료 기준 서구 주차장 유형별 주차면수 변화
 - 노상주차면 연평균 -2.4% 감소(-793면)
 - 노외주차장 연평균 -10.8% 감소(-3,666면)
 - 부설주차장 연평균 +13.2% 증가(+99,192면)
- 청라지구 등 개발계획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증가



전차수('17년) 대비 주차장 유형별 증감 추이

- ✓ 전차수('17년) 249블럭 ⇨ 금회('20년) 281블럭
 - 총 주차면수 203,824면 → 262,893면(+59,069면)
 - 노상주차장 7,942면 → 7,556면(-386면)
 - 노외주차장 2,476면 → 2,543면(+67면)
 - 부설주차장 193,406면 → 252,794면(+59,388면)



☑ 조사구역 설정


03

주차수급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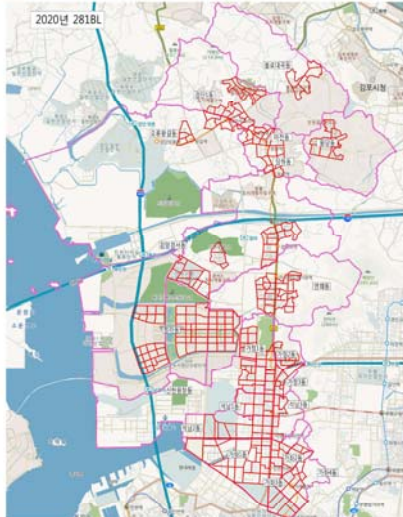
조사구역 설정 기준

- ✓ 조사편의를 위한 기준
 - 균등한 면적 설정(300m~500m)
 - 조사구역 중복/누락방지 위해 도로의 중앙선을 경계로 구분
- ✓ 정책수립을 위한 기준
 - '17년 분석대상 블록을 기준으로 조사구역 설정
 - 신규택지개발지역 추가설정(오류왕길동, 청라동, 가정동)
 - 인천시 조사시스템과의 호환을 위한 동명 및 블록번호 재설정
 - 산업단지 및 녹지지역, 개발예정구역 등 제외

조사구역 설정 예시



조사블록 선정(22개동 281개 블록)





☑ 조사내용

03

주차수급실태조사

조사내용

- ✓ 주차시설 현황조사(공급현황)
 - 주차장법 규정에 따른 주차시설(노상, 노외, 건축물 부설주차장)
 - 자동차(이륜차 포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주차 가용공간) 대상
 - 소재지, 운영 및 관리주체, 용도, 운영시간, 주차요금, 주차규모 등
- ✓ 주차이용실태조사(주차수요)
 -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는 모든 차량에 대한 조사
 - 주차장 위치, 적법 및 불법여부

조사시간

- ✓ 주차시설현황조사
 - 주간시간대 (07:00 ~ 20:00)에 조사
- ✓ 주차이용실태조사
 - 점두시간 고려, 주간시간대 (07:00 ~ 20:00)와 야간시간대 (20:00 ~ 익일 07:00)로 구분하여 총 2회 조사
 - 단 조사일은 평일 및 공휴일, 징검다리 휴일, 집중 휴가철 등을 제외한 요일중 주차이용행태가 가장 평이한 평일에 조사를 시행

조사방법

- ✓ 주차시설현황조사
 - 모든 주차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
 - 주차시설 직접 방문 / 현장확인 후 핸드폰 앱을 이용한 자료입력
- ✓ 주차이용실태조사
 - 주·정차 차량을 주간 및 야간으로 나누어 차종, 적/불법 여부를 구분하여 조사
 - 주차위치, 주차차량정보 등을 핸드폰 앱을 사용한 직접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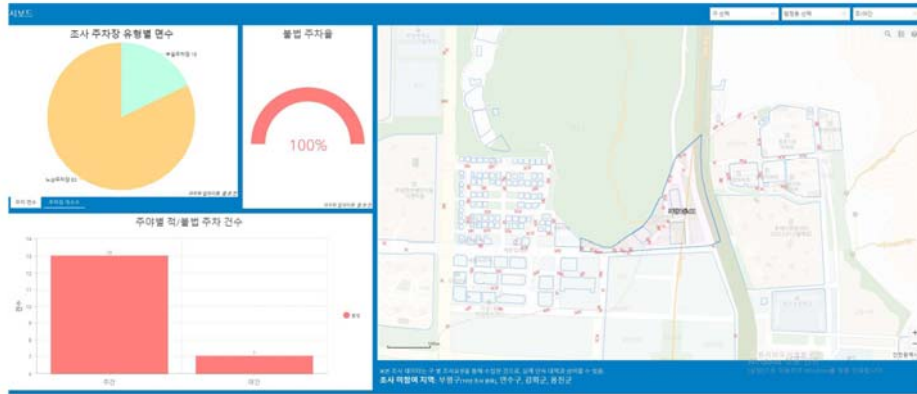




03 주차수급실태조사

조사내용

주차실태 조사 입력자료 표출 예시(인천광역시 GIS플랫폼 <https://icloud.incheon.go.kr>)



조사분석 및 활용

- ✓ 인천광역시 주차관리 시스템*상 관리자 모드 로그인 후 동별 블록별, 주·야간 적불법 주차 등 종합적인 자료 분석 가능
- ✓ 분석결과를 텍스트 및 도면으로 출력 가능
- ✓ 주차수급을 저하지역을 선정하여, 주차환경 개선방안 우선순위 결정 및 개선방안 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
 - 공급확대, 수요억제 등 제도 시행의 근거
 - 주차시설 공급 방법의 결정, 우선순위 및 규모 결정



03 주차수급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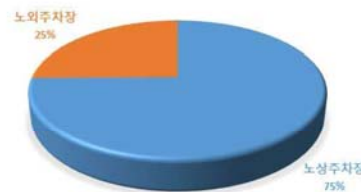
주차시설 현황

서구 주차장 설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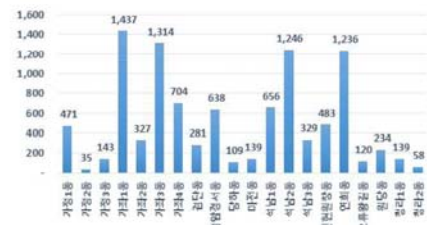
✓ 노상 : 7,556면 / 노외 : 2,543면 / 총 주차 : 10,099면

구분	노상	노외	합계	비율
가정1동	352	119	471	4.7%
가정2동	35	-	35	0.3%
가정3동	118	25	143	1.4%
가좌1동	1,437	-	1,437	14.2%
가좌2동	327	-	327	3.2%
가좌3동	1,268	46	1,314	13.0%
가좌4동	636	68	704	7.0%
검단동	-	281	281	2.8%
검암경서동	280	358	638	6.3%
달하동	-	109	109	1.1%
마전동	-	139	139	1.4%
불로대곡동	-	-	-	0.0%
석남1동	433	223	656	6.5%
석남2동	1,140	106	1,246	12.3%
석남3동	270	59	329	3.3%
신현원창동	466	17	483	4.8%
연희동	702	534	1,236	12.2%
오류왕길동	85	35	120	1.2%
원당동	-	234	234	2.3%
정리1동	7	132	139	1.4%
정리2동	-	58	58	0.6%
정리3동	-	-	-	0.0%
합계	7,556	2,543	10,099	100.0%

✓ 조사대상 블록의 유형별 주차현황 : 노외 25%, 노상 75%



✓ 조사대상 동별 주차면수 설치현황 : 가좌1:3동, 석남2동, 연희동 순



04 주차수급실태조사 분석

기본개요

- ✓ 주차장 수급률 : 주차수급 현황의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
 - 분석 대상지에서 주차장 수요 · 공급의 절대량을 비교
 - 공급 여유 > 100%, 공급부족 < 100%
- ✓ 산정방법 : 자동차 등록대수에 의한 방법, 수요에 의한 방법
 - 등록대수에 의한 방법 : 행정동별 등록대수의 정리 미흡 (주간차량의 이동으로 현황과 불일치)
 - 실태조사에 의한 방법 : 조사자료를 기준으로 수급률 분석
- ✓ 본 과업에서는 실태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수요에 의한
- ✓ 동별/블럭별 수급률을 산정함

실태조사에 의한 수급률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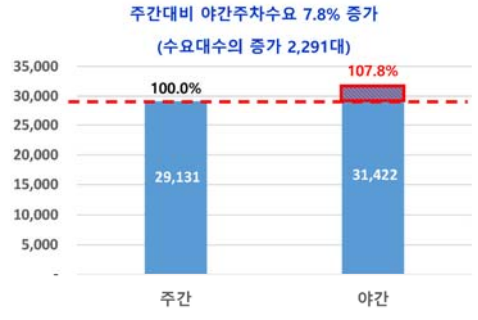
- ✓ 주차수급률 : 총 주차면수에 대한 침투시 주차대수 비
- ✓ 침투시 주차대수는 주 · 야간 현장조사 자료를 이용함

주차수급률(%)

$$\frac{\text{조사구역별 전체 주차면수(노상+노외)}}{\text{조사구역별 침투시 주차대수}} \times 100$$

수급률 분석결과

- ✓ 조사구역별 주 · 야간 주차수요 조사결과
 - 주간 29,131대, 야간 31,422대
 - 수급률 : 주간 34.7%, 야간 32.1%
 - 야간 : 주간대비 약 1.08배의 주차수요
- ⇒ 주차난 체감의 우선순위에 따른 노상주차 및 노외주차장의 공급면수와 수요를 기준으로 수급률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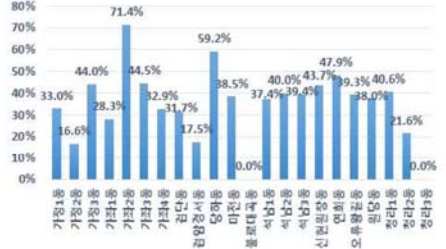


04 주차수급실태조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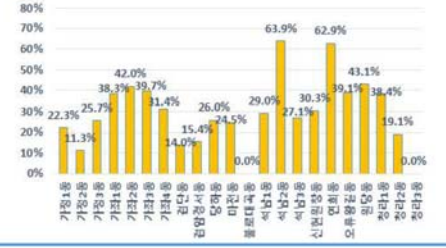
동별 주차수급률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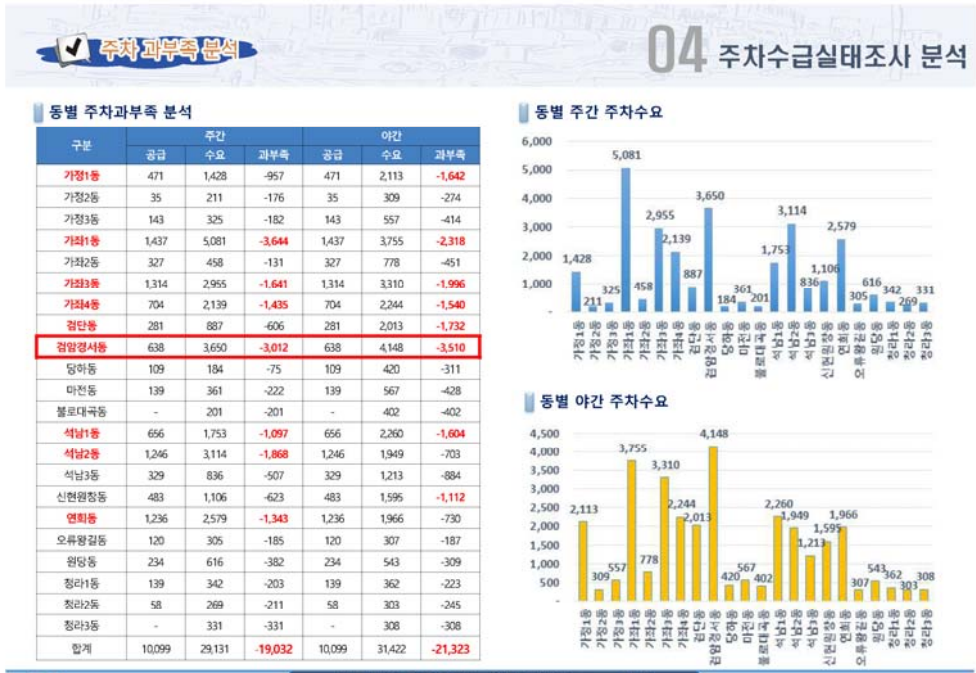
구분	주간			야간		
	공급	수요	수급률	공급	수요	수급률
가정1동	471	1,428	33.0%	471	2,113	22.3%
가정2동	35	211	16.6%	35	309	11.3%
가정3동	143	325	44.0%	143	557	25.7%
가좌1동	1,437	5,081	28.3%	1,437	3,755	38.3%
가좌2동	327	458	71.4%	327	778	42.0%
가좌3동	1,314	2,965	44.5%	1,314	3,310	39.7%
가좌4동	704	2,139	32.9%	704	2,244	31.4%
검단동	281	887	31.7%	281	2,013	14.0%
검암경서동	638	3,650	17.5%	638	4,148	15.4%
당아동	109	184	59.2%	109	420	26.0%
마전동	139	361	38.5%	139	567	24.5%
볼로대곡동	-	201	0.0%	-	402	0.0%
석남1동	656	1,753	37.4%	656	2,260	29.0%
석남2동	1,246	3,114	40.0%	1,246	1,949	63.9%
석남3동	329	836	39.4%	329	1,213	27.1%
신현원장동	483	1,106	43.7%	483	1,595	30.3%
연희동	1,236	2,579	47.9%	1,236	1,966	62.9%
오류왕길동	120	305	39.3%	120	307	39.1%
원당동	234	616	38.0%	234	543	43.1%
청라1동	139	342	40.6%	139	362	38.4%
청라2동	58	269	21.6%	58	303	19.1%
청라3동	-	331	0.0%	-	308	0.0%
합계	10,099	29,131	34.7%	10,099	31,422	32.1%

동별 주간 주차수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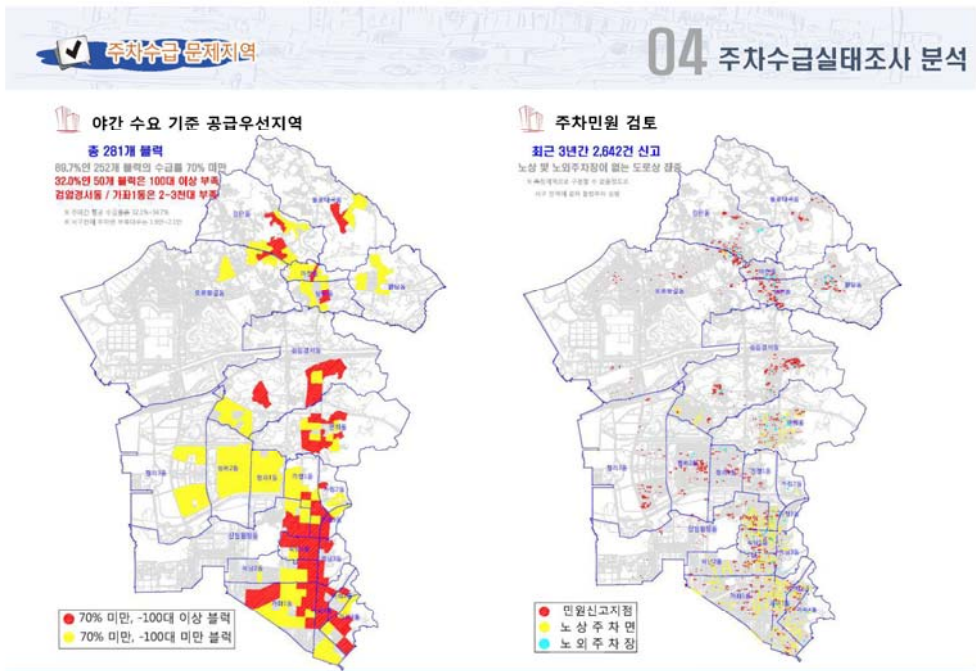


동별 야간 주차수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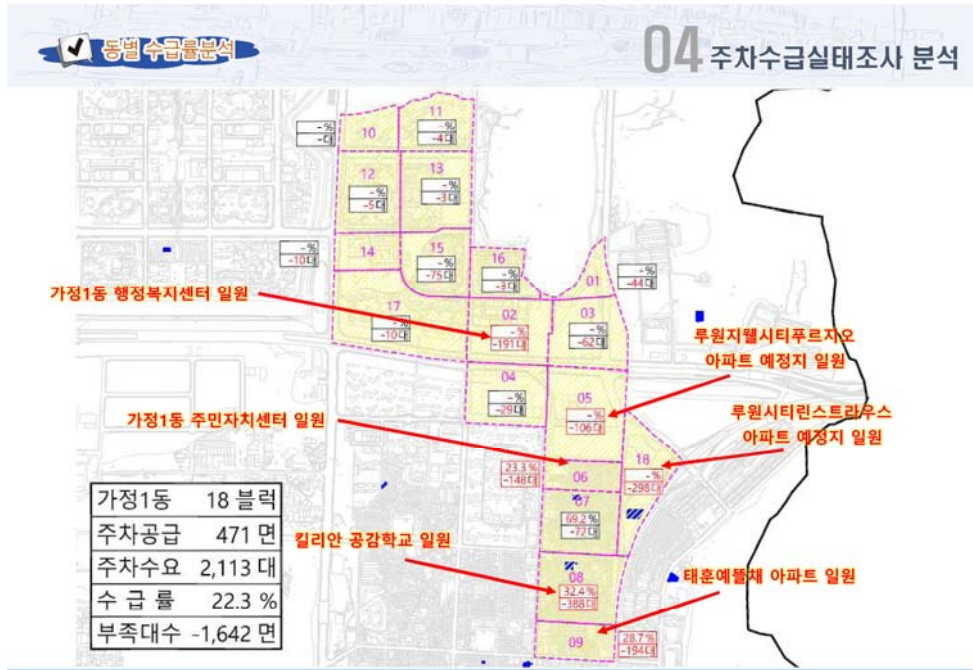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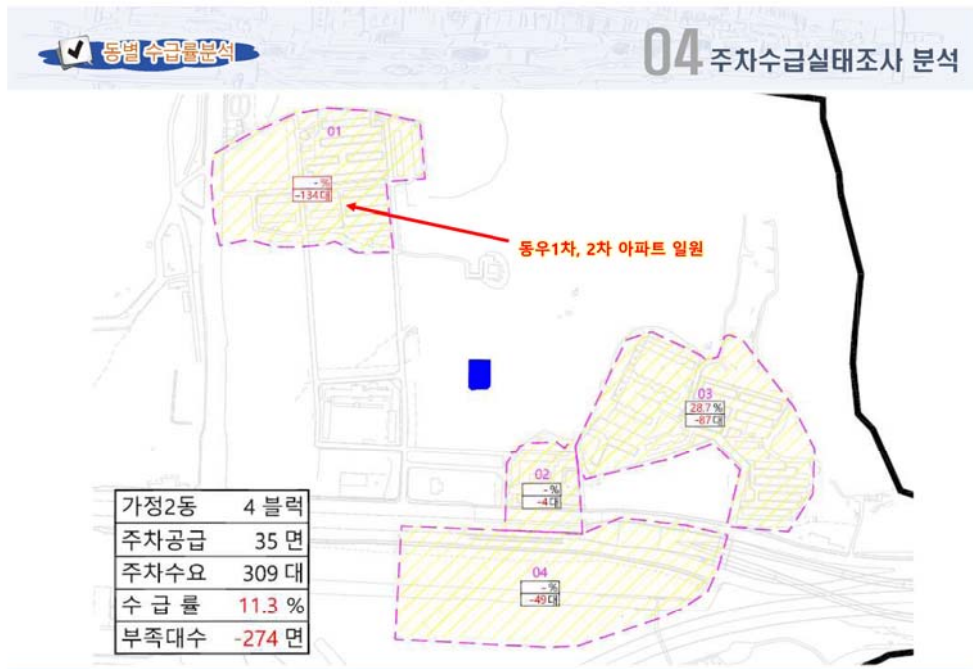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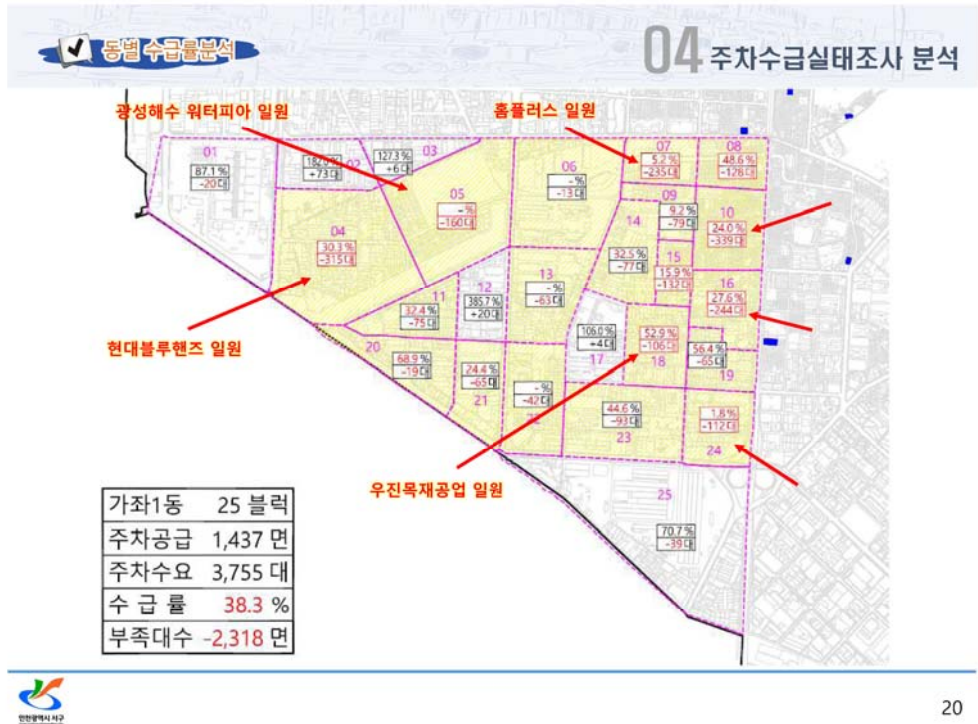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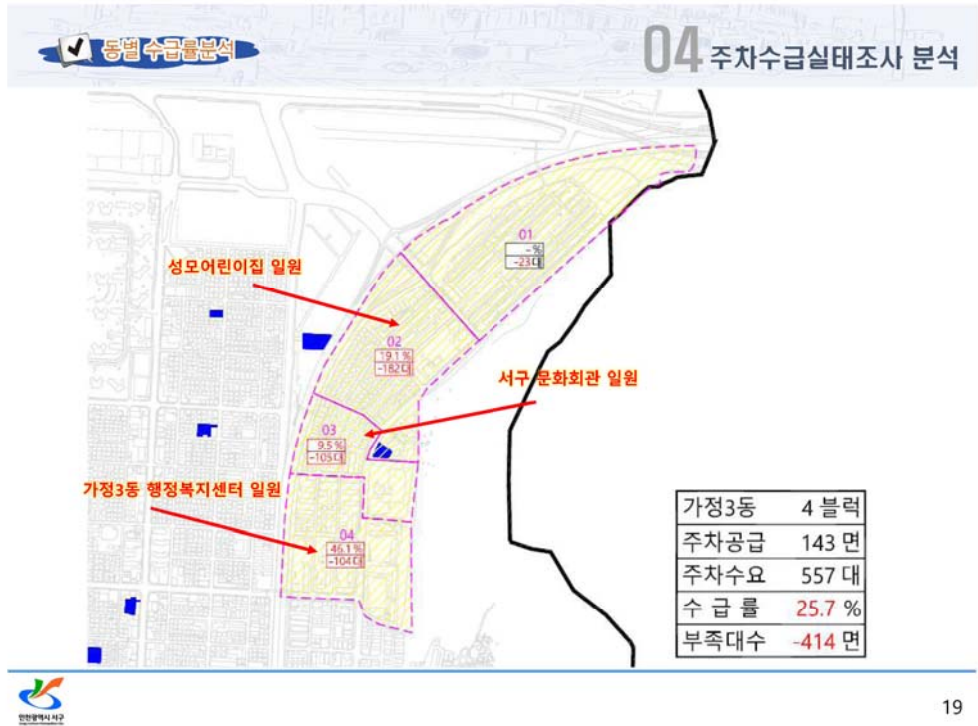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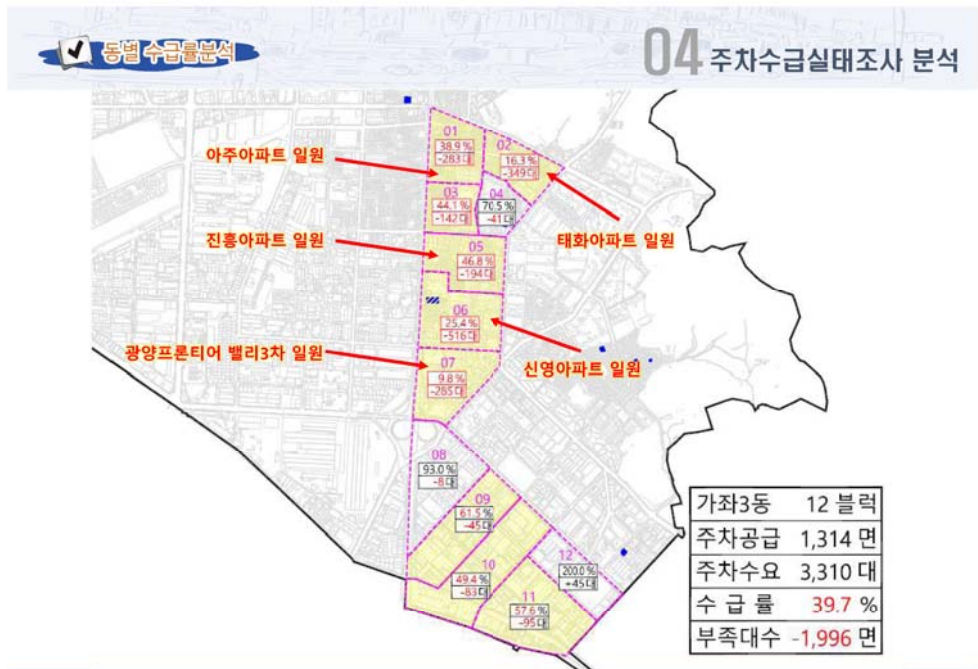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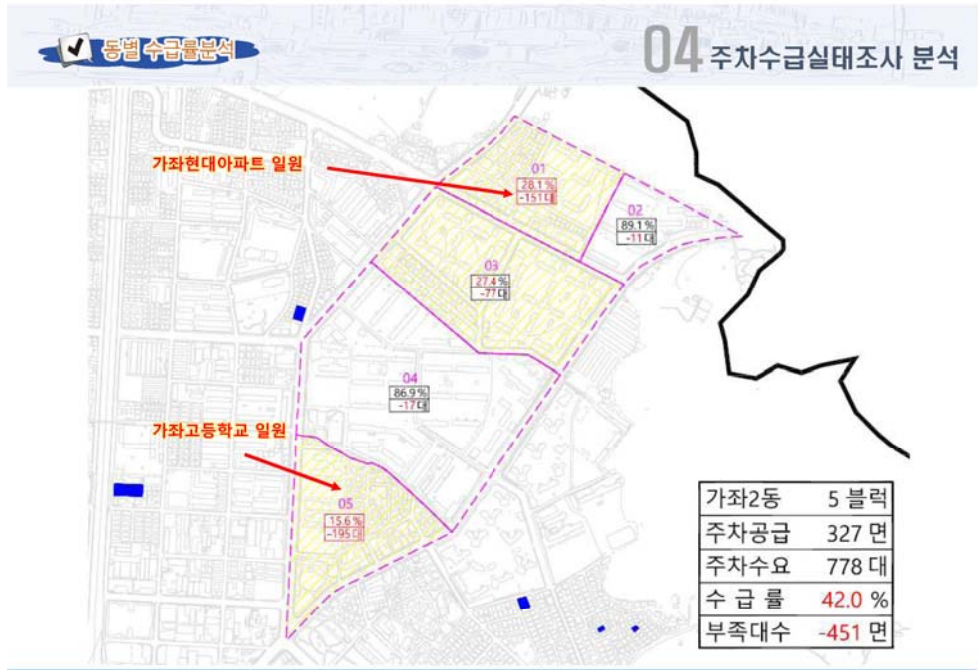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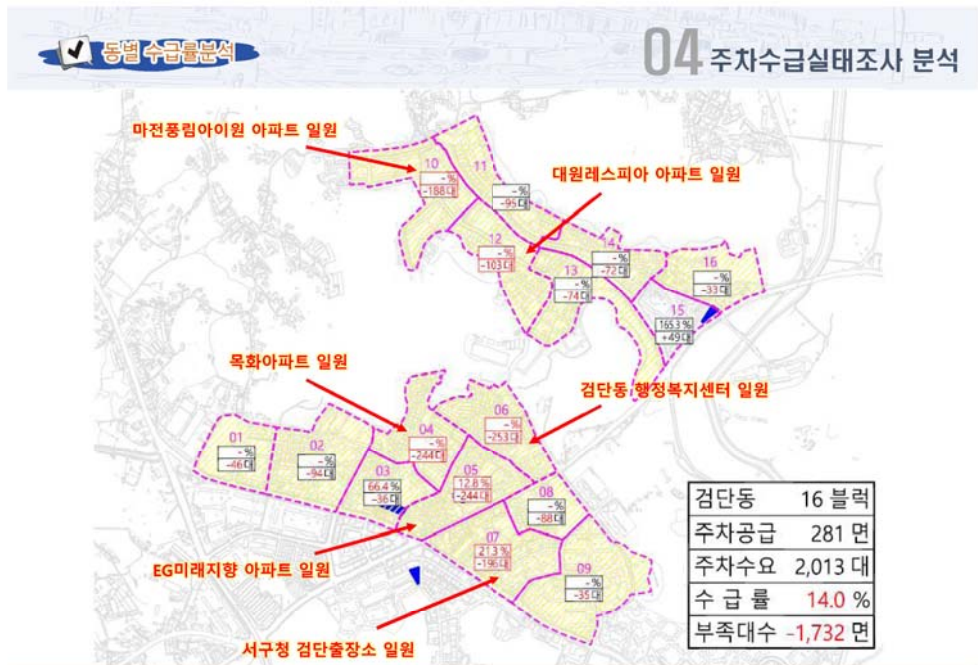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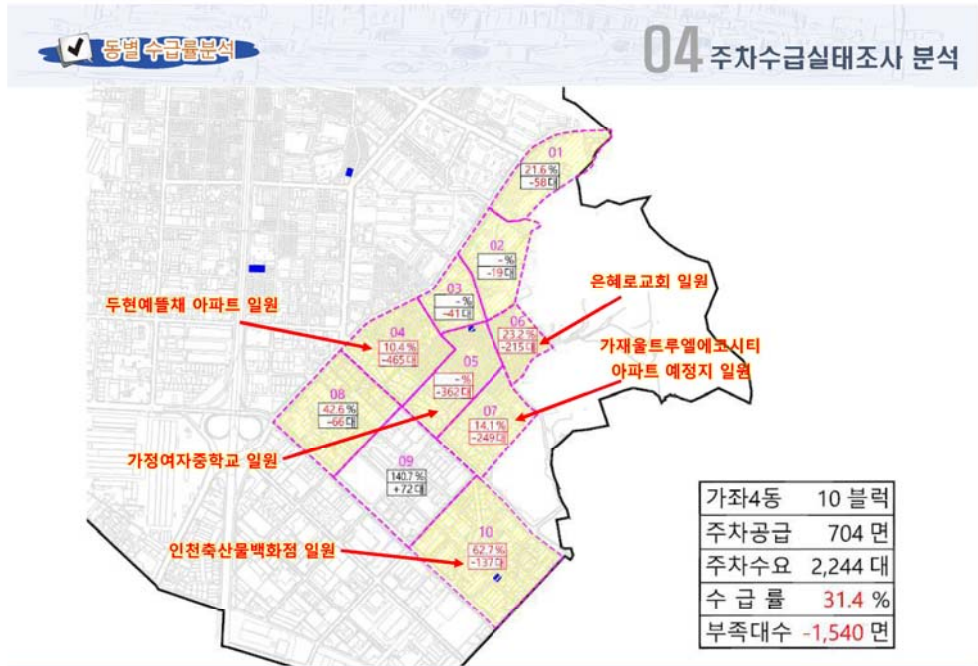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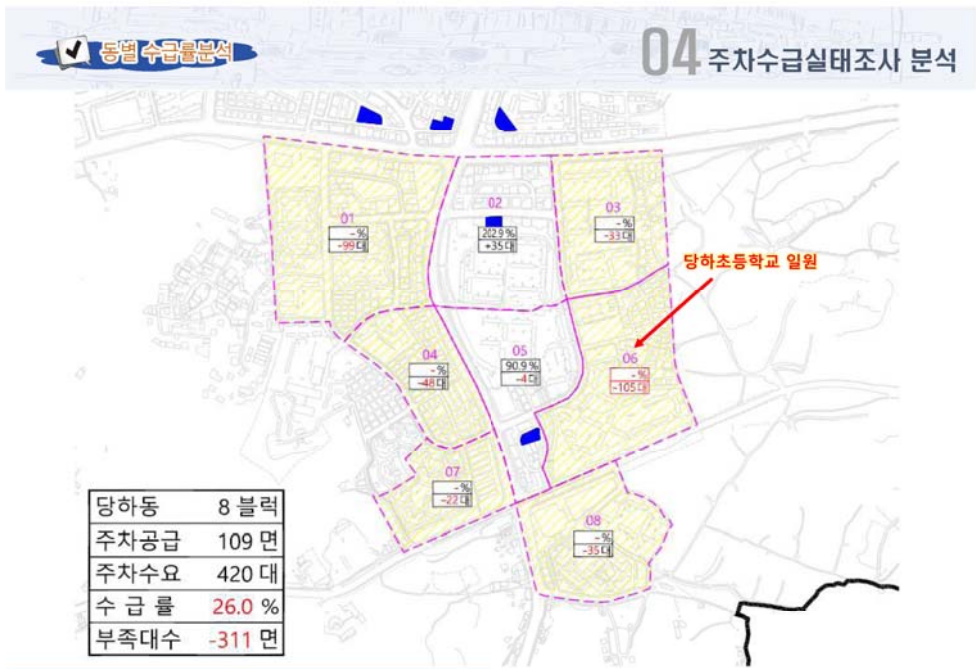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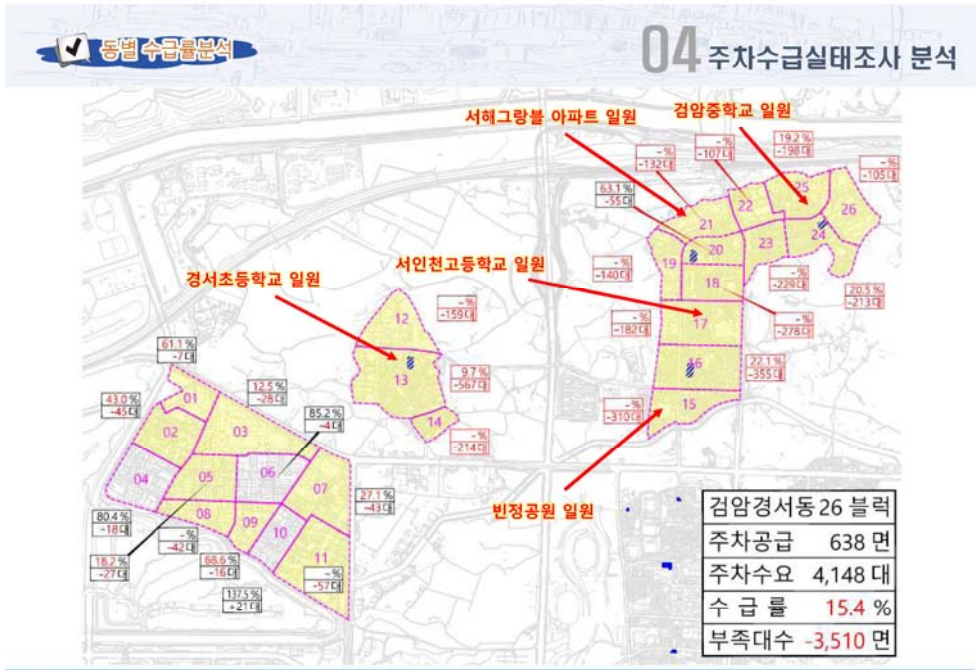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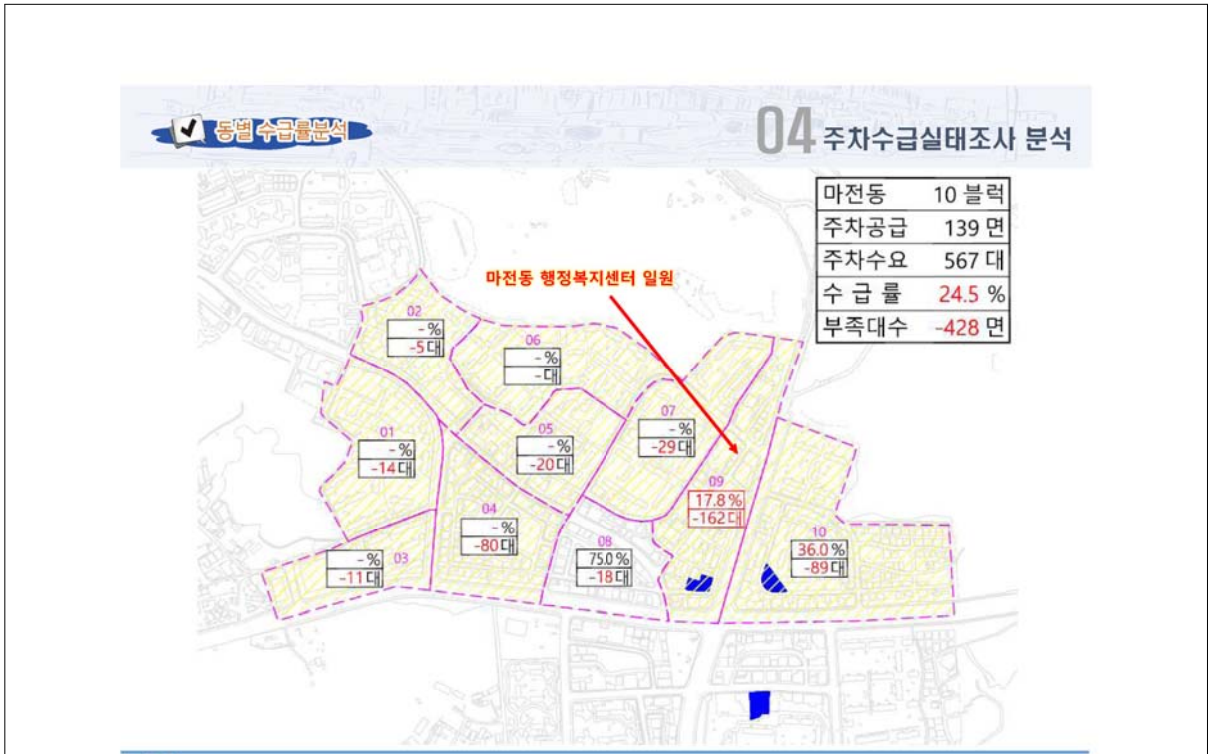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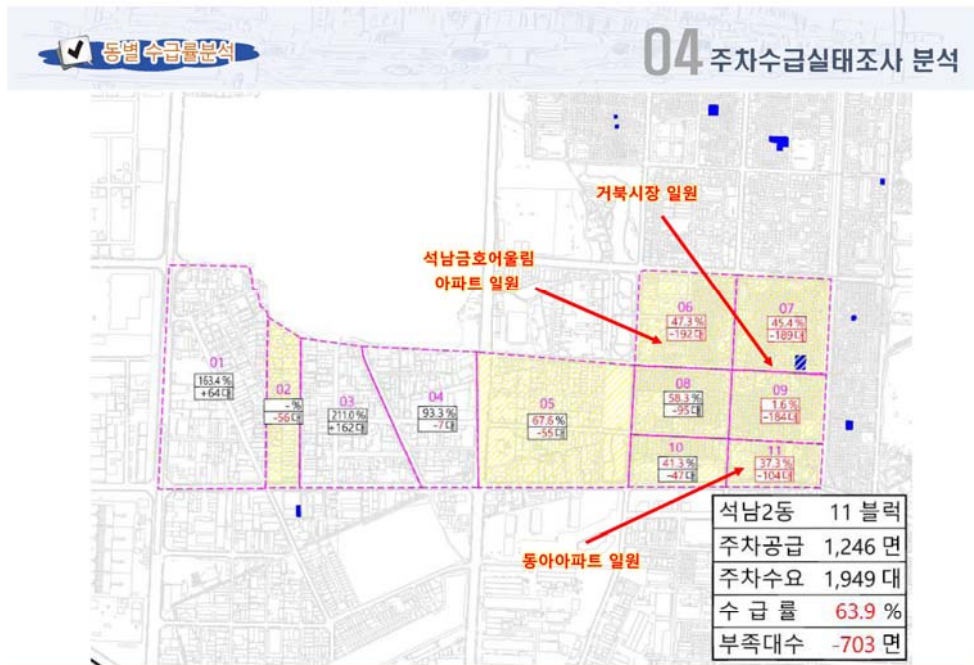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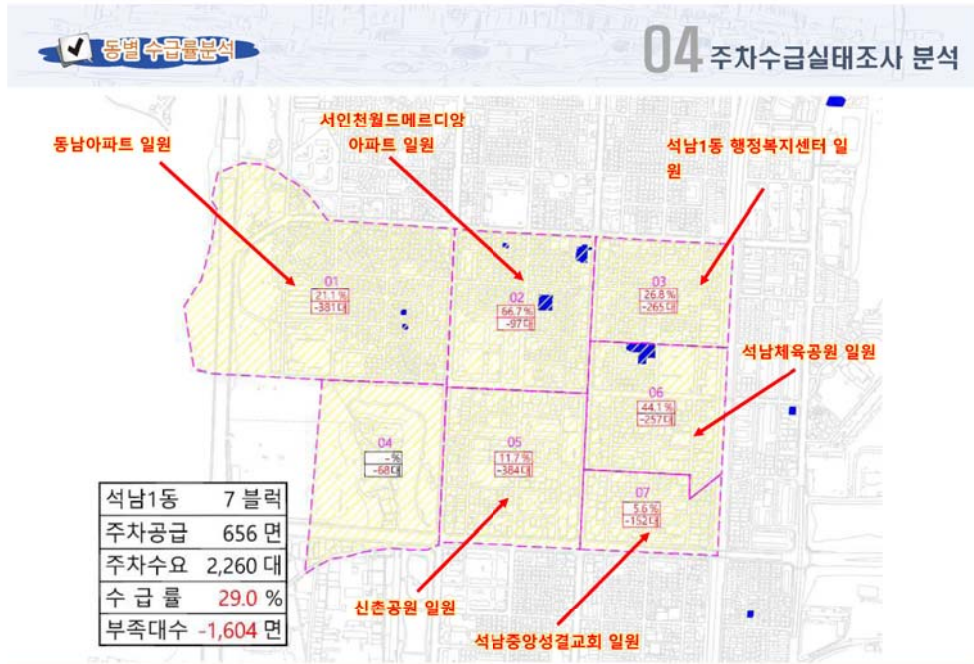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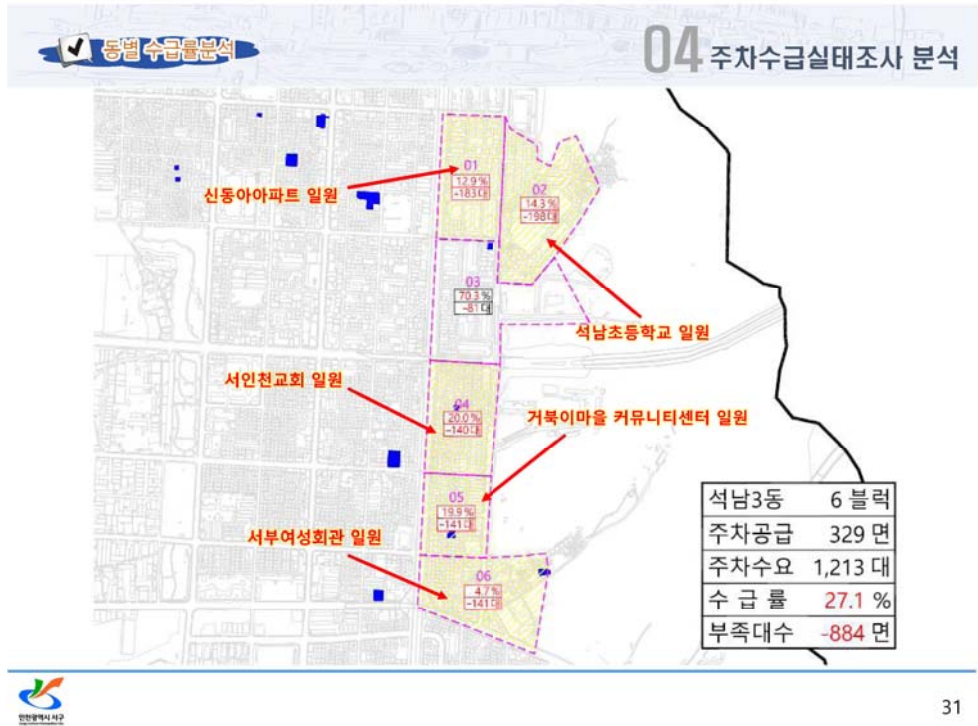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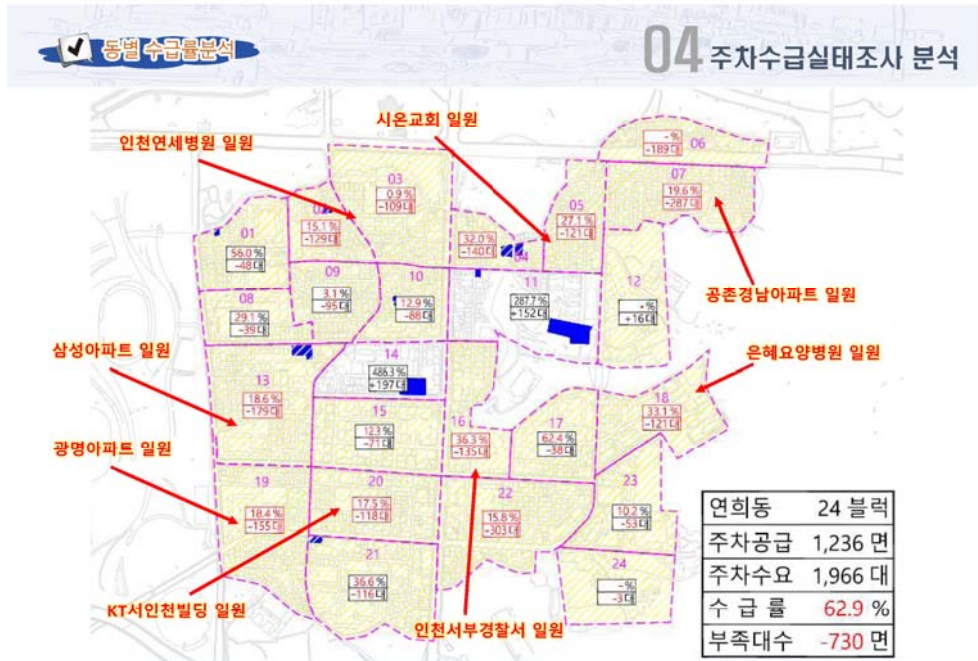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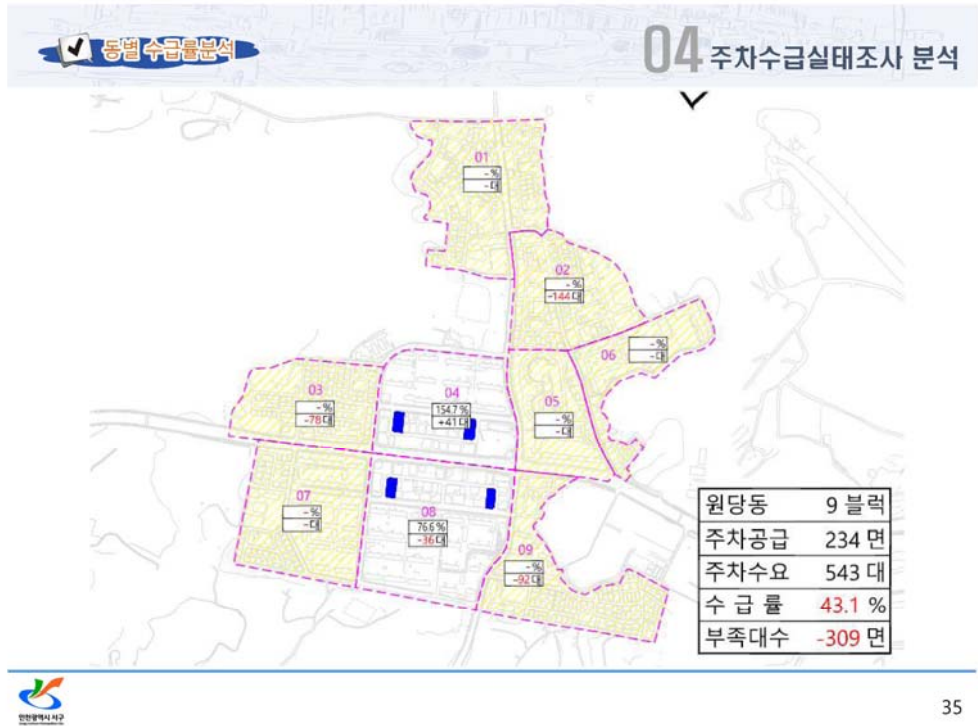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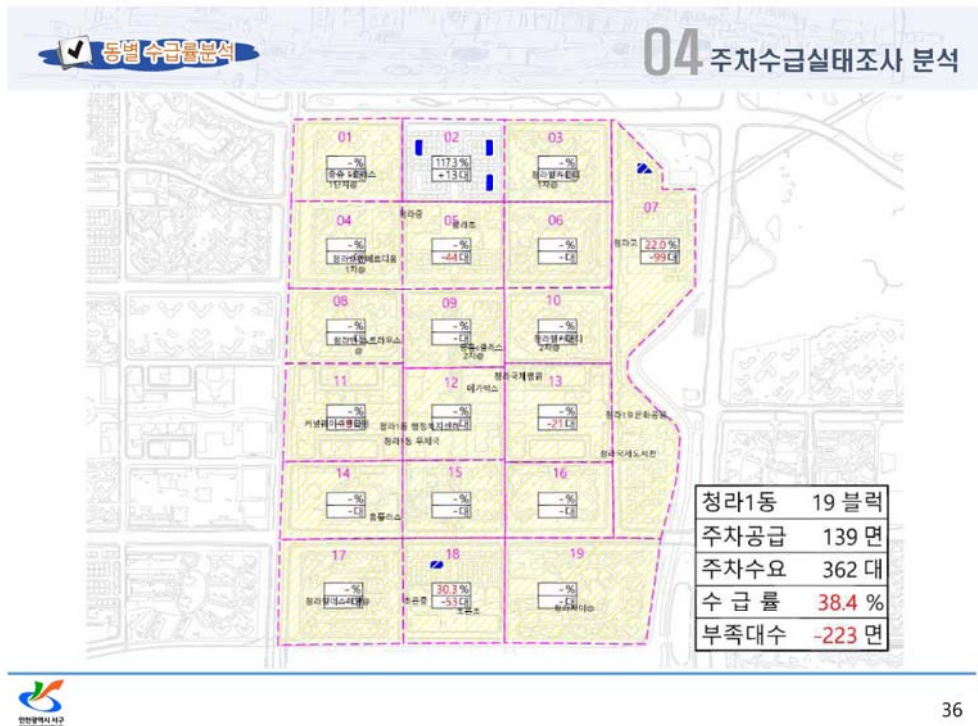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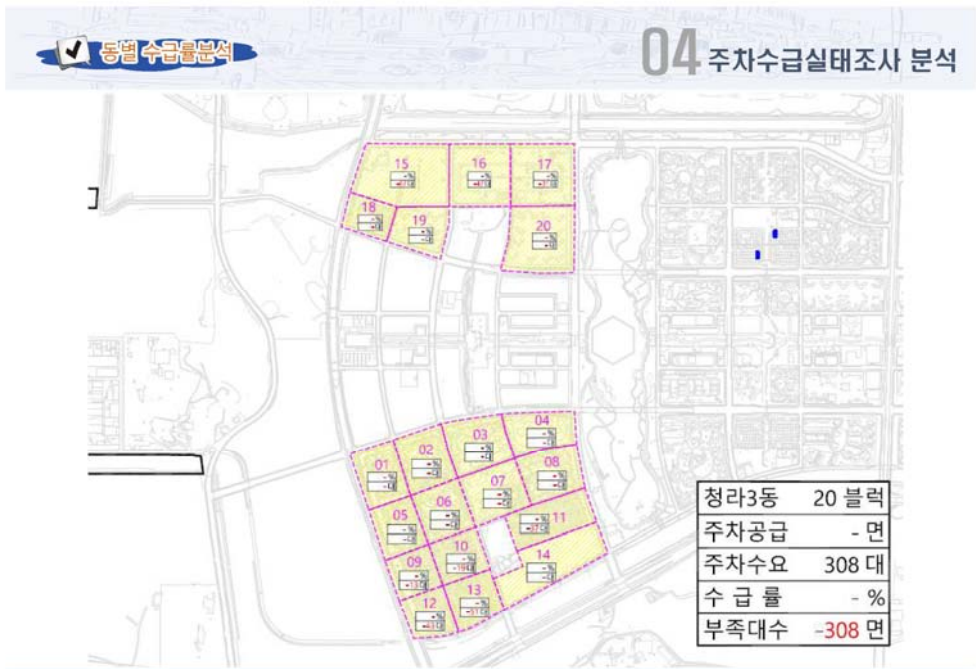




35



36



문제점 도출 04 주차수급실태조사 분석

주차시설 공급의 절대적 부족

- ✓ 부설주차장을 제외한 노외 노상주차장의 절대적 부족
 - 야간기준
 - 주차공급 10,099면, 주차수요 31,422 ⇒ **21,323면 부족**
 - 전체 노상주차의 **67.9%는 불법주차**

주차시설 이용 활성화 필요

- ✓ 시설주차 기피
 - 주차장 유무와 상관없는 불법주정차
 - 불법노상주차의 주차장 유도 필요
 - 목적지 ⇄ 주차장간 거리 부담
 - 서구는 무료 주차장이 80%이상, 이용 저조
 - 노상 및 노외 불법 주정차 성행
- ⇒ **단기 : 주차공유, 야간개방 등 단기 공급방안 적극검토**

주정차 단속

- ✓ 유료주차 및 주정차금지에 관한 시민의식 전환 필요
- ✓ 특정구간, 특정 시간대 제외 강력한 단속 필요
 - 과태료 증대, 단속강화 등 제도적 개선 방안 모색 필요

장기적 주차시설 추가확보 필요

- ✓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 감안 시 주차수요 증가
 -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 : 연평균 5.2%
 - 주차수요 : '20년 31,422대 → '26년 42,592대
 - ⇒ **+11,170대 증가, 현행 주차면수 유지 시 확보율은 23.7% 까지 하락(현황 32.1%)**
 - ※ 국토부 - 대도시 주차장 적정 확보 비율 130% 권장
 - ※ 한국교통연구원 - 도시지역내 적정 확보 비율 200%
 - ⇒ **주차면 미확보 주민(주차난민)의 심각한 주차문제 발생**
 - 기존 주차장의 증축 및 신규 노외주차장 설치 필요

대규모 노외주차장 공급은 시간적 비용적 한계
주차부족분(현황 2.1만대) 단기간 해결 불가
기존 주차장 이용 활성화 및 시민의식 계도 필요



주차환경 개선 기본방향 05 주차환경 개선방안

기본방향

- ✓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시행정책
⇒ **수요와 공급의 일치**
- ✓ 수요밀집지역의 주차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별로 적용 가능한 합리적인 주차정책 제시
 - 공급증대
 - 운영효율증대
 - 주차수요 억제
- ✓ 주차환경개선지구 제도마련
- ✓ 효율적인 행정지원 시스템의 마련 및 집중적인
주차질서에 대한 계도나 단속활동을 병행

주차환경 개선 방법



주차환경 개선의 부문별 역할

구분	공급증대	운영효율증대
공공	주차장 건설 민간주차장 건설 지원 제도 마련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주차이용 정보 제공 요금제 개편 단속강화
민간	부설주차장 공유 부설주차장 확대	주차이용 정보 제공



주차시설 공급계획·검토 **05 주차환경 개선방안**

주차시설의 확충방안

단기 주차시설 확충방안	장기 주차시설 확충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주차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간 주차장 공급의 현실적 어려움 • 조사된 부설주차장 중 주차간 여유대수 건물 대상 • 민간 업체 공유사업 위탁 방안 검토 • 서구 민간업체 지원제도마련(민간지원 방안) 예) 주차장 무료개방시 연간 보조금 지원 (20면 이상 2년간 무료제공, 주35시간 무료개방 의무) ✓ 중고등학교 주차장 야간개방 검토(교육청 협조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법시설 설치, 주차면 도색 등 비용지원 필요 ✓ 담장허물기 사업 지속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점 : 신청에 의한 시행으로 공급확대 불확실성 <li style="text-align: center;">비용대비 효과가 적으며, 보조금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휴공유지,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지역 등 최대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천㎡ 이상 공원 시설 주차장 설치 ✓ 수요 높은 지역 노외주차장 설치 ✓ 기검토중인 노외주차장 설치계획의 실제적인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확보 우선시 국비지원 가능 • 국토부 주차환경개선지구 보조금 지원 ✓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래 공급확대로 수급률 안정시기 장기적 방안으로 검토 <p style="text-align: center;">※ 단점 : 순환제 이용의 불편, 기존도로 재정비 필요</p> <p style="text-align: center;">충분한 주차면 확보 어려움</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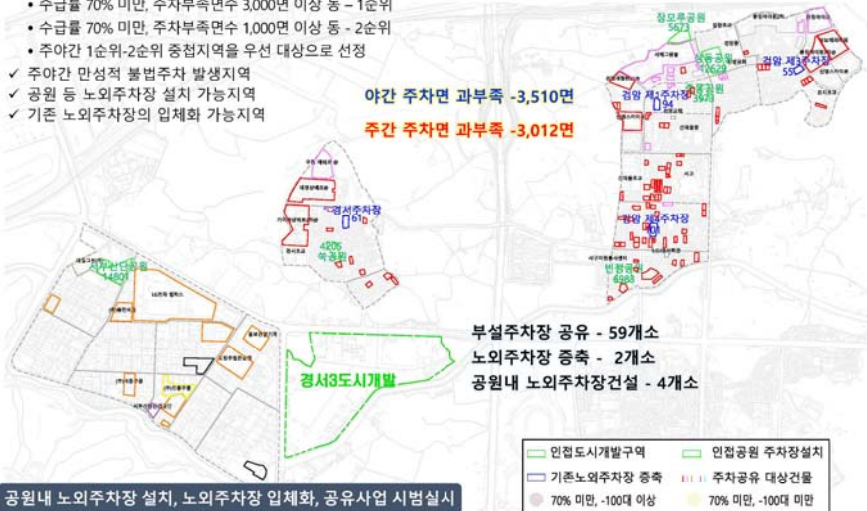


주차시설 공급계획·검토 **05 주차환경 개선방안**

공급우선지역 선정

- ✓ 수급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부족지역의 계층화
 - 수급률 70% 미만, 주차부족면수 3,000면 이상 동 - 1순위
 - 수급률 70% 미만, 주차부족면수 1,000면 이상 동 - 2순위
 - 주차간 1순위-2순위 중첩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
- ✓ 주차간 만성적 불법주차 발생지역
- ✓ 공원 등 노외주차장 설치 가능지역
- ✓ 기존 노외주차장의 입체화 가능지역

우선공급지역 예시(검암경서동)



공원내 노외주차장 설치, 노외주차장 입체화, 공유사업 시범실시



05 주차환경 개선방안

주차시설 공급계획 검토

▶ 애플용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 서비스 병행

- 스마트폰 앱을 통한 공유주차장장의 주차정보 (위치, 실시간 주차공간 확인 등) 제공
- 사업시행방안
 -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을 통한 주차정보 제공
 - 주차장 정보제공 체계 구축 필요
- 민간부설주차장 참여 독려방안
 - 시스템 설치비용 및 유지관리비 지원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 인센티브 지원사례(서울시)

- 주차정보제공 건축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10% 경감 혜택
 - 부담금 10%내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설치, 유지관리 비용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서구청 → 공공주차장 정보제공 → 민간부설 주차장 → 주차정보 공유 → 정보제공 사업자

준비 → 계약 → 의무 → 혜택

시스템 구축비 지원 인센티브 → 민간부설 주차장 → 주차정보 공유 → 정보제공 사업자

공공주차장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시스템유지관리

공공주차장 정보제공 민간참여 유도 인센티브 제공 → 실시간 주차장 정보제공 민간참여 유도

주차정보제공 협약 및 운영비 지원 → 민간부설주차장에 대한 수수료 및 경과비

남는 주차면으로 수입이 늘겠네

주차장

관

시민

주차장 찾는 시간이 절약되겠네

주차장 설치예산 절약할 수 있겠네

불필요한 차량운행 및 주차장 설치 최소화 가능

프로그램	대상	이행기준	최대 경감비율
주차 수요 관리	주차 정보 제공 소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시간 주차정보 안내가 가능한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 운영 및 주차정보 제공 ※시설물 설치비용 해당 연도만 경감 	부담금의 100분의 10 범위 내



05 주차환경 개선방안

주차환경 개선지구 (안)

▶ 관계법령(주차장법 제4조)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조사구역으로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은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국계법」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중 조례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환경 개선 지구 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결정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관리에 관한 **연차별 목표**를 정하고, **매년 주차장 수급 실태의 개선 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 지정절차

대상지역 조사 → 주차수급실태조사 → 수급률 저하지역 선정

↓

대상지역 결정 → 선정지역 여론조사 및 시민홍보도 조사

↓

→ 주차환경개선지구 선정위원회 개최

↓

→ 주차환경개선지구 결정

↓

→ 시민공청회개최-주차관련 정책 종합설계

↓

사업추진 → 시민위원회 구성 - 주차관련 정책 논의

↓

→ 주차관련 정책 수립 및 결정

↓

→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

운영 → 운영계획 수립

↓

→ 시범운영기간 설정-홍보 및 제도활동 실시

↓

→ 시범운영 문제점 분석 및 제도 보완

↓

→ 주차환경개선지구 정상운영



주차환경 개선지구(안) **05 주차환경 개선방안**

개선지구 지정기준

- ✓ 주차 공급조사와 실태조사, 교통여건 등을 검토하여 우선적으로 주차정책을 시행하여 정비 필요지역 지정
 - 상가, 업무시설 및 역세권 인근지역 주간 비거주자 수요 밀집지역
 - 야간시간대 주차수급률 70%미만 주거지역
 - 주야간 만성적 불법주차 발생지역
 - 개발계획(주거환경개선 및 재개발사업 등) 예정되지 않은 지역
 - 기타 주차수급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 금회 수급실태조사 결과, 수급률 저하지역의 계층화를 통한 공급 우선지역 선정
 - ⇒ 수급률 70% 이하 + 노상·노외주차 100대 이상 부족지역 (7개동, 16개 블록)

개선지구내 시행방안 예시

- ✓ 공급
 - 공영주차장 설치
 - 이면도로 등 노상주차장 설치
 - 부설주차장 개방
- ✓ 수요관리
 - 요금제 변경(유료/무료, 인상/인하)
 - 단속강화 및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 ✓ 기타
 - 부설주차장 미사용 주차면 원상회복 권고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변경

주차환경개선지구 선정 및 시행시 국도비 지원

- ⇒ 국도부 주차환경개선지구 주차난 해소 위해 사업비 50% 지원, 2015년 부터 사업부지가 확보된 사업 위주 276개소 선정 (공영주차장 확보, 무인주차관리시설,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 ⇒ 중소기업벤처부 재래시장 주차장 건설 시 국비 지원



안전시설 개선방안 **05 주차환경 개선방안**

경사진 주차면 개선방안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 ✓ 대상 : 종단경사도 4% 초과 도로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 ✓ 고정형 고임목(카스토퍼) 설치가 원칙
- ✓ 이면도로의 경우 보행자 넘어짐 등의 안전사고가
- ✓ 예상되는 곳은 "이동형 고임목" 비치
 - 이동형 고임목 : 별도 비치함을 설치하여 보관하고 안내표지판에 고임목 이용 명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 4조의2(고임목 등의 설치)

- ① 법 제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이란 주차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의 미끄러짐이 발생하는 곳을 말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정형 고임목을 설치해야 한다.
- ③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자동차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주의 안내표지판 설치

- ✓ 설치 원칙 :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 원칙
- ✓ 형태,규격,재질 : 현장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하되, 상시 게시 상태 유지
- ✓ 표지 내용 : 경사진 곳 표시(주의), 차량 미끄러짐 방지 조치사항
 - 주차구간이 길어 운전자가 안내표지판 인식이 곤란한 지역의 경우 2개 이상 설치



05 주차환경 개선방안

안전시설 개선방안

경사진 도로상 주차면 개선방안

안전시설 설치 개요

- 설치대상 : 서구 전역(37개구간, 438면)
- 설치시설: 고정형 및 이동형 고임목 + 주의안전표지판
- 안전관리실태조사 : 3년주기로 주차수급실태조사와 병행 실시

향후 계획

- 경사진 주차장 안전시설 설치
- 경사진 주차장 안전점검
- 관계기관 협의 및 정비
- 3년 주기 주차수급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차시설 확대, 공유주차 활성화 등 수급률 안정화 시기 진출입구 앞, 어린이보호구역내, 소방시설 인근 등 불합리한 주차면 우선 단계적 삭제 예정

경사진도로 노상주차면 설치 현황(서구 전체)

24개블럭 37개구간 438면
경사로 4% 이상 도로상 설치

주차장의 확보없이 노상주차면 삭제 시 주차부족문제 악화
선 안전시설 설치 후 불합리한 주차면 우선 점진적 삭제 예정



05 주차환경 개선방안

주차제도 개선방안 검토

주차정보안내시스템 도입

- 민간업체 위탁 방안 검토
 - 금회 조사된 20면 이상 여유 부설주차장 대상 공유사업 참여 독려
- 앱을 활용한 실시간 주차정보 확인
 - 주차장위치, 운영시간, 요금, 빈자리 등
 - 센서, 앱 구축 등 설치: 민간사업자
 - 주차요금의 일부 수익 정산 및 인센티브

강서구 '모두의 주차장' 앱

서울시 주차정보서비스

인천공항 '핸들러파크' 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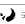
주차관련 법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주차장법
<p style="text-align: center;">주차장법</p>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54호, 2020. 10. 2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국도교통부(도시교통과) 044-201-3811, 3814</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제1장 총칙 <개정 2010. 3. 22></p> <p>제1조(목적) 이 법은 주차장의 설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公衆)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4></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6. 8., 2012. 1. 17., 2016. 1. 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의 것을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도시주차장(都市駐車場): 도시의 노면 또는 교통정리(交通整理)장면(場面)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시설(一)의 용도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露外駐車場): 도시의 노면 및 교통정리(交通整理)장면(場面)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시설(一)의 용도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附設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정리(交通整理)장면(場面)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시설(一)의 용도에 제공되는 것 라. 건축물(建築物)의 부속 주차장으로서 시설(一)의 용도에 제공되는 것 마. "기계식주차장"이란 건축물(建築物)의 시설(一)의 용도에 제공되는 것 2. "기계식주차장"이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관리시설(機械式)을 갖춘 주차장으로서 시설(一)의 용도에 제공되는 것 3. "기계식주차장"이란 기계식주차장(機械式)을 갖춘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4. "도로"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한다. 5.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6. "주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주차를 말한다. 7. "주차관리규약"이란 자동차 1대당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8. "주차구역"이란 하나의 주차구역(一)의 용도에 제공되는 것 9. "자동차구역"이란 제2조제1항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輕便自動車) 및 동일한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역을 말한다. 10.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11. "주차권한건축물"이란 건축물의 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12.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용도변경은 포함한다)을 말한다. 13. "기계식주차장 정비 보수"이란 기계식주차장시설의 고장을 수리하거나 고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비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 12. 24> <p>제3조(주차장 수입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① 특별시장·광역시·광역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행정지구·행정동·행정리·행정마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이하 "조사구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분별 주차장 수입(總額) 실태를 조사하여 "주차실태조사"라 한다(이하 "조사"라 한다). <개정 2019. 12. 24></p> <p>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안전하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이하 "안전"이라 한다). <개정 2019. 12. 24></p> <p>③ 수입실태조사와 안전관리실태조사의 방법, 주기 및 조사구역 설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2. 24></p> <p>[전문개정 2010. 3. 22.] [폐지개정 2019. 12. 24.]</p>	<p style="text-align: center;">주차장법</p>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54호, 2020. 10. 2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국도교통부(도시교통과) 044-201-3811, 3814</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제4조(주차장 관리) ①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자동차관리자의 수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장관리자의 수탁자가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주차장관리자의 수탁자와 그 관리로 직접 갈취하는 사업은 "법령"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표함으로써 한다. <p>제5조(노상주차장의 주차범위 제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따른 자동차가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주차하는 경우 2. 경찰관 5명 이상이 제2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건을 충족 아니라고 주차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역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5. 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6. 특별시장·광역시·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원장에 임을 명하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의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4> 7. 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4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 3. 22> <p>제6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름"을 함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정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1. 6. 8., 2016. 1. 19.></p> <p>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효용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기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p> <p>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때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p> <p>④ 특별시장·광역시·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주차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p> <p>⑤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특별시장·광역시·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서 위탁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광역시·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4항에 준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준하여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p> <p>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1항제1호의 제한조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6. 8., 2013. 3. 23., 2016. 1. 19., 2020. 6. 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상주차장의 원하나 일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 제한 2. 자동차 주차시간의 제한 3.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경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4. 제1항에 따른 제한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공고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p>제10조의2(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때에 따라 주</p>
<p>☐ 법제처 - 1 / 18 - ☑ 국가법령정보센터</p>	<p>☐ 법제처 - 2 / 18 - ☑ 국가법령정보센터</p>
<p style="text-align: center;">주차장법</p> <p>("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각목에 따른 이륜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차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p> <p>② 특별시장·광역시·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을 지정할 때 해당 지역 주차장의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일정한 비율 이상 정하여야 한다.</p> <p>③ 특별시장·광역시·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관리대상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22></p>	<p>④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차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⑤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와 그 관리로 직접 갈취하는 사업은 "법령"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표함으로써 한다.</p>
<p>☐ 법제처 - 3 / 18 - ☑ 국가법령정보센터</p>	<p>☐ 법제처 - 4 / 18 - ☑ 국가법령정보센터</p>

주차장법

<p style="text-align: center;">주차장법</p> <p>차장을 설치할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4.></p> <p>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방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계속관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常駐)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22.]</p> <p>제11조(노상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노상주차장에 주차장 표지(전용주차구역의 표지를 포함한다)와 구획선을 설치하여야 한다.</p> <p>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3. 22.]</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노외주차장 <개정 2010. 3. 22.></p> <p>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①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할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3. 22., 2013. 3. 23.></p> <p>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노외주차장에 최종차량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차량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 3. 22.></p> <p>③ 삭제 <1999. 2. 8.></p> <p>④ 삭제 <1999. 2. 8.></p> <p>⑤ 삭제 <1999. 2. 8.></p> <p>⑥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도 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구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 3. 22., 2013. 3. 23., 2018. 12. 18.></p> <p>[전문개정 1990. 4. 21]</p> <p>[전문개정 2010. 3. 22.]</p> <p>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을, 승용차, 택시면허의 취소한다 및 놀이시설 등 건축 처분에 대하여는 「도로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p> <p>1. 건축용: 100분의 90 이하 2. 용적률: 13500퍼센트 이하 3. 택시면허의 취소: 45 이하부터 이상 4. 놀이 시설: 다음 각 목의 비율 이하</p> <p>가. 택시가 타미 12미터 미만의 도도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택시에 접한 도로(택시가 돌 수 있는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 단축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택시가 타미 12미터 이상의 도도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택시에 접한 도로의 반 단축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5/100의 타미(타미를 단축하였더라)에 대한, 비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 미만이다. [전문개정 2010. 3. 22.]</p> <p>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경관선정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일 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p> <p>② 단지조성사업등의 총용적률,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은 경찰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전용 주차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p> <p>[전문개정 2010. 3. 22.]</p> <p style="text-align: center;">법제처 - 5 / 16 - 국가법령정보센터</p>	<p style="text-align: center;">주차장법</p> <p>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① 노외주차장은 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p> <p>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④ 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관리 구역"은 "노외주차장관리 구역"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3. 22.]</p> <p>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p> <p>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소와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찰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6. 1. 19.></p> <p>③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제15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주차요금 등을 강제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 1. 19.></p> <p>[전문개정 2010. 3. 22.]</p> <p>제15조(관리방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을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 19.></p> <p>1. 경찰관 사용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2.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노외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역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p> <p>[전문개정 2010. 3. 22.]</p> <p>제16조 삭제 <1999. 2. 8.></p> <p>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할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4.></p> <p>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無利用期間)에 상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p> <p>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방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계속관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3. 22.]</p> <p>제18조(노외주차장의 표시)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전용주차구역의 표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4.></p> <p>② 제1항에 따른 표지의 종류·식상과 그 밖에 표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22.]</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부설주차장 <개정 2010. 3. 22.></p> <p>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판지연못, 그 밖에 주차요금을 증명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p> <p>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 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22.]</p> <p style="text-align: center;">법제처 - 6 / 16 - 국가법령정보센터</p>
<p style="text-align: center;">주차장법</p> <p>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① 노외주차장은 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p> <p>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④ 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관리 구역"은 "노외주차장관리 구역"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3. 22.]</p> <p>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p> <p>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소와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찰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6. 1. 19.></p> <p>③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제15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주차요금 등을 강제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 1. 19.></p> <p>[전문개정 2010. 3. 22.]</p> <p>제15조(관리방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을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 19.></p> <p>1. 경찰관 사용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2.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노외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역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p> <p>[전문개정 2010. 3. 22.]</p> <p>제16조 삭제 <1999. 2. 8.></p> <p>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할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4.></p> <p>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無利用期間)에 상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p> <p>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방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계속관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3. 22.]</p> <p>제18조(노외주차장의 표시)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전용주차구역의 표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4.></p> <p>② 제1항에 따른 표지의 종류·식상과 그 밖에 표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22.]</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부설주차장 <개정 2010. 3. 22.></p> <p>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판지연못, 그 밖에 주차요금을 증명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p> <p>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 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22.]</p> <p style="text-align: center;">법제처 - 6 / 16 - 국가법령정보센터</p>	<p style="text-align: center;">주차장법</p> <p>1.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 부지를 말한다)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p> <p>2.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추후 확보된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p> <p>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p> <p>④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1항에 위반사항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회칙을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p> <p>⑥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서 같은 조 제2항 문장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22.]</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조의2 기계식주차장 <개정 2010. 3. 22.></p> <p>제19조의5(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①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2., 2018. 8. 14.></p> <p>② 특별시장·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지역실정에 고려된 구역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4.></p> <p>1.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2. 기계식주차장의 종류 3.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의 비율</p> <p>[전문개정 2010. 3. 22.] [전문개정 2018. 8. 14.]</p> <p>제19조의6(기계식주차장의 안전도인용) ① 기계식주차장용 제역·조립 또는 수납하여 양도·대여 또는 설치하려는 자(이하 "제역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계식주차장의 안전도인용(安全度인용)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종(인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p> <p>② 제1항에 따라 안전도인용을 받으려는 자는 미리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의 조립도(組立圖), 안전장치의 도면(圖面),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안전도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2.></p> <p>제19조의7(안전도인용서의 발급)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계식주차장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역자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용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2.></p> <p>[전문개정 2010. 3. 22.]</p> <p>제19조의8(안전도인용의 취소)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역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도인용을 취소할 수 있다.</p> <p>1. 제1항에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안전도인용을 받은 경우 2. 안전도인용을 받은 후 다른 다른 기계식주차장용 제역·조립 또는 수납하여 양도·대여 또는 설치한 경우 3. 제19조의7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역자등은 안전도인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9조의7에 따른 안전도인용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22.]</p> <p>제19조의9(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①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안전도인용을 받은 기계식주차장</p> <p>②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이하 "기계식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p> <p style="text-align: center;">법제처 - 8 / 16 - 국가법령정보센터</p>

주차장법

주차장법	주차장법
<p>이다 한다)는 그 기계식주차장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절차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절차: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마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사용절차의 종료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검으로 실시하는 검사 3. 통상검사 및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정기 검사, 정기검사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개정 2010. 3. 22.] <p>제19조의10(검사확인등의 범위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검사확인증을 발급하고, 불합격한 자에게는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워야 한다.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에 따라 받은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6. 9.></p> <p>③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은 사용할 수 없다. [변경개정 2010. 3. 22.]</p> <p>제19조의11(검사비용 등의 납부) 제19조의6에 따른 안전도인중 또는 제19조의9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도인중 또는 검사에 따른 비용을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변경개정 2010. 3. 22.]</p> <p>제19조의12(검사업무의 대행)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9 및 제19조의1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검사에 필요한 업무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전문장기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p> <p>[변경개정 2010. 3. 22.]</p> <p>제19조의13(기계식주차장자의 설치)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치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계식주차장자가 노후(老朽), 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기계식주차장설치를 설치한 날부터 5년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한 정함)인 경우 2.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입지상 설계가 불합리한 경우 3.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설치를 할 경우에도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여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자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을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설치를 할하여야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5.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서의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 6.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원천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준의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한이연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단결정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8.> 7.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기계식주차장자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6., 2018. 12. 18.> <p>[변경개정 2010. 3. 22.]</p> <p>제19조의14(기계식주차장자 보수입의 등록) ① 기계식주차장자 보수입(이하 "보수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② 제1항에 따라 보수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변경개정 2010. 3. 22.]</p> <p>제19조의15(검사서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수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 3. 28., 2016. 1. 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파산선언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p style="text-align: center;">● 법제처 - 9 / 18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19조의19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19조의15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 6. 인신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변경개정 2010. 3. 22.] <p>제19조의16(보통 가입) ①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보수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입자"라 한다)는 그 등록을 수행하여야 하고, 또는 자신도 타인에게 등록을 할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을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장의 종류, 가입 절차, 및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9조의17(특수사항의 변경 등) 보수입자는 그 영업용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再開業)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8. 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15. 8. 11.> 2. 삭제 <2015. 8. 11.> <p>[변경개정 2010. 3. 22.]</p> <p>제19조의18(시정명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수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9조의14제2항에 따른 보수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19조의16에 따른 보증을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개정 2010. 3. 22.] <p>제19조의19(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수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9조제2호·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수입의 등록을 한 경우 2. 제19조의1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일정을 바꾸어 이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9조의17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의18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보수의 종료로 인하여 기계식주차장자의 이용자를 서명하게 하거나 다차계 한 경우 또는 차등차를 파손시킨 경우 6. 영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영입정지기간에 영입을 한 경우 7.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영입정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변경개정 2010. 3. 22.]</p> <p>제19조의20(기계식주차장관리자의 배치 등)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자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자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기계식주차장자의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0. 6. 9.></p> <p>③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 관련 법령, 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자의 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을 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자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선임된 기계식주차장자 관리인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자 관리인의 임무, 안내문의 부착 위치와 세부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3. 21.></p> <p>[총선 제19조의20은 제19조의21이후 <2015. 8. 11.>]</p> <p>제19조의21(기계식주차장 정보의 구축·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2017. 10. 24.></p> <p style="text-align: center;">● 법제처 - 10 / 18 - </p>
<p>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9조의9에 따른 검사의 이력기록 2. 제19조의14부터 제19조의19까지에 따른 보수입에 관한 사항 2의2. 제19조의22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와 관련한 정보 2의3. 제19조의23에 따른 경미한 안전사고의 결과에 관한 정보 3. 제25조에 따른 보고·처리의 내용 및 검사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제19조의12에 따른 정보통신망, 제19조의14에 따른 보수입등록망, 제25조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공하거나 정보의 일부를 일방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보존입력 2016. 1. 15.]</p> <p>[총선 제19조의21은 제19조의22이후 <2016. 1. 15.>]</p> <p>제19조의22(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그가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으로 인하여 이용자나 인명(人命)이 다치는 사고, 자동차 유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고의 내용 및 검사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은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은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사고조사위원을 둘 수 있으며, 사고조사위원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한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을 판명하기 위하여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국토교통부는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을 판명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합법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제작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⑦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존입력 2017. 10. 24.]</p> <p>[총선 제19조의22는 제19조의23이후 <2017. 10. 24.>]</p> <p>제19조의23(기계식주차장의 경미안전사고)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해당 기계식주차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안전사고 발생 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경미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경미안전검사의 기준을 낮추거나 정기적으로 경미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한 자가 발생한 경우 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3.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자의 성능 저하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경우 <p>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에 따른 경미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운영할 수 없으며, 다시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미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경미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경미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9제2항제2호에 따른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미안전검사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p> <p style="text-align: center;">● 법제처 - 11 / 18 - </p>	<p>⑤ 경미안전검사에 관해서는 제19조의10제1항·제2항 및 제19조의11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검사", "제19조의9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는 "제19조의23제1항에 따른 경미안전검사"로 본다. <개정 2017. 10. 24.></p> <p>⑥ 제1항에 따른 경미안전검사의 기준·항목·방법 및 실시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존입력 2017. 3. 21.]</p> <p>[제19조의23에서 이후, 총선 제19조의23은 제19조의24이후 <2017. 10. 24.>]</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보칙 <신설 2017. 10. 24.></p> <p>제19조의24(부기등기) ①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및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위치 변경된 부설주차장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시설물과 그에 부속된 부설주차장 관계정보를 표시하는 내용을 간략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용도변경이 인정되어 부설주차장으로 사용이 면제된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의 내용 및 장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존입력 2014. 3. 18.]</p> <p>[제19조의23에서 이후 <2017. 10. 24.>]</p> <p>제20조(공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 제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노외주차장 설치계획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는 다른 목적으로 배당(配當)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관계 행정청은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로·광장·공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등 공공시설의 지하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법」, 「토지공법」 및 지적 등에 관한 법률, 「학교시설사업 추진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경유허가를 받거나 토지확립명령에 대한 협의 등을 한 것으로 보며,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및 시설물을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유도 및 사용도를 합법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4.></p> <p>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지상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2항을 준용한다. [변경개정 2010. 3. 22.]</p> <p>제21조(보조 또는 용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 또는 시설물설치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자원의 용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환경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29.></p> <p>[변경개정 2010. 3. 22.]</p> <p>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특별시·광역시·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제한(制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3. 21., 2012. 1. 17., 2018. 12. 18., 2020. 6. 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계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을 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제2부특별자치도 또는 시장등이 부과·징수한 과세료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부처외의 전입금 4. 장부의 보조금 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에 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제2부특별자치도 또는 시장등이 부과·징수한 과세료 7. 제32조에 따른 이행차예금의 징수금 <p style="text-align: center;">● 법제처 - 12 / 18 - </p>

2020년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

주차장법	
주차장법	주차장법
<p>8. 「지방세기본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광역시에 한정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제원으로 조성한다.</p> <p>1. 제2항제1호의 수입금 및 납부금 중 해당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대용공간요금에 해당하는 납부금의 전부</p> <p>2. 제24조제2에 따른 과징금의 전부</p> <p>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p> <p>4.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보조금</p> <p>5.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등이 부과·징수한 과태료</p> <p>6. 제12조제2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전부</p> <p>④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수수료 외에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회계로부터 보조할 수 있다.</p> <p>⑥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에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⑦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에 이 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정(訂定)은 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2021. 1. 12.> <전문개정 2010. 3. 22.></p> <p>제21조의(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제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 3. 31., 2012. 1. 17., 2018. 12. 18., 2020. 6. 9., 2021. 1. 12.></p> <p>1.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에 관한 비용의 납부금</p> <p>2. 제24조제2에 따른 과징금의 전부</p> <p>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p> <p>4. 광부의 보조금</p> <p>5. 「지방세기본법」 제112조(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p> <p>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부과·징수한 과태료</p> <p>7.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전부</p> <p>8. 「지방세기본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광역시에 한정한다)</p> <p>9. 광역시의 보조금</p> <p>③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제원으로 조성한다.</p> <p>1. 제2항제1호의 수입금 및 납부금 중 해당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대용공간요금에 해당하는 납부금</p> <p>2. 제24조제2에 따른 과징금의 전부</p> <p>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p> <p>4.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보조금</p> <p>5.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등이 부과·징수한 과태료</p> <p>6.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전부</p> <p>7.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전부</p> <p>8.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전부</p> <p>9.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전부</p> <p>10. 주차장개선사업: 주차장시설 및 주차관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장개선사업자 지정, 관리, 주차장 정보공개, 주차장유지관리사업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사업</p> <p>11. 주차시설유지사업: 주차시설 홍보 및 교육, 주차단속활동 및 단속장비구입, 단속시스템 구축 등 주차여용 할</p>	<p>상화를 위한 사업</p> <p>3. 주차장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p> <p>⑤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 12.></p> <p>⑥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수수료 외에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회계로부터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2.></p> <p>⑦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에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 12.></p> <p>⑧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에 이 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정(訂定)은 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2021. 1. 12.> <시행일: 2021. 7. 13.>제21조의2</p> <p>제21조의3(주차관리 전담기구 설치)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설립을 설치·경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22.></p> <p>제21조의4(주차장 정보발굴 구축·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차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차장 정보발굴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1. 다음 각 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관한 사항</p> <p>가. 제17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p> <p>나. 제8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p> <p>다.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및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p> <p>2. 다음 각 목에 따른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항</p> <p>가.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p> <p>나.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관리 및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p> <p>3. 다음 각 목에 따른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항</p> <p>가.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p> <p>나.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및 통도변경에 관한 사항</p> <p>4. 그 밖에 주차장과 관련하여 사용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정보발굴에 필요한 정보발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주차장 운영과 관련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제공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1. 제7조에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p> <p>2. 제1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p> <p>3.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자</p> <p>③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정보발굴을 공동으로 이룰 수 있다.</p> <p>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정보발굴의 구축·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주차장 정보발굴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 11. 26.></p> <p>제22조(주차요금 등의 사용 제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0조제1항 및 제3항과 제14조제1항에 따라 받는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 비용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3. 22.></p> <p>제22조의2(자비로 의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차장의 구조·설치기준 등의 제정,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기준의 제정, 그 밖에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주차장 운영과 관련한 자비로 의정할 수 있으며, 정보제공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 법제처 - 13 / 18 -</p> <p>국가법령정보센터</p>	<p>☐ 법제처 - 14 / 18 -</p> <p>국가법령정보센터</p>
<p>대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p> <p>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22.></p> <p>제23조(감독) ① 삭제 <2009. 1. 7.></p> <p>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하게 유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해당 주차장에 대한 시정·개선 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2018. 12. 18., 2021. 1. 12.></p> <p>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정·개선 명령을 발령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2., 2018. 12. 18., 2021. 1. 12.></p> <p>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하게 유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노외주차장관리자에게 행정명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개선, 공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전문개정 2010. 3. 22.></p> <p>제24조(행정명지 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관리자 또는 제19조의3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약을 것을 금지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2018. 12. 18., 2021. 1. 12.></p> <p>1. 제6조제1항·제2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p> <p>2. 제6조제3항에 따른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지 않은 경우</p> <p>3. 제17조제2항(제19조제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p> <p>4.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p> <p>5.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기회 또는 방해한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 3. 22.></p> <p>제24조의2(과징금처분)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명목 및 부과 방법 등에 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한. <개정 2012. 1. 17., 2018. 12. 18., 2021. 1. 12.></p> <p>② 제24조에 따른 과징금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재정회의의 의결을 거쳐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 3. 22.></p> <p>제24조의3(청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문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p> <p>1. 제19조제1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을 취소</p> <p>2. 제19조제19에 따른 부유금 등록의 취소</p> <p><전문개정 2010. 3. 22.></p> <p>제25조(보고 및 검사)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관리자 또는 제19조제12에 따른 건물검사기관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검사장 또는 그 업무와 관계있는 장소에서 주차시설·검사시설 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p> <p>② 제1항에 따라 검사받은 건물에서는 그 건물용 목적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이를 관리인에게 부여되어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조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p>	<p><전문개정 2010. 3. 22.></p> <p>제26조(수수료)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입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전문개정 2010. 3. 22.></p> <p>제27조 삭제 <1995. 12. 25.></p> <p>제28조 삭제 <2010. 3. 22.></p> <p>제29조 삭제 <개정 2010. 3. 22.></p> <p>제29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7. 10. 24.></p> <p>1. 제19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한 자</p> <p>2.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p> <p>3. 제19조제2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8. 11., 2017. 3. 21., 2017. 10. 24.></p> <p>1. 노외주차장인 주차장연속축을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장 사용 비율을 위반하여 사용한 자</p> <p>2.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p> <p>3. 제19조제2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p> <p>4. 제19조제16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용 주차·조달 또는 수납하여 양도·대여 또는 설치한 자</p> <p>5. 제19조제16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안전도에 대한 검사를 하는 자로서 부정한 검사료를 한 자</p> <p>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9항 제2호 또는 제19조제23항의 검사를 받은 자</p> <p>7. 제19조제10항의 용도에 따른 검사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p> <p>8. 제19조제10항을 위반하여 검사에 불응하거나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p> <p>9. 제19조제12 또는 제19조제2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검사대행을 지명받은 자 또는 그 수임으로서 부정한 검사료를 한 자</p> <p>10. 제19조제14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수입을 한 자</p> <p>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9항에 따른 부수입의 등록을 한 자</p> <p>11의2. 제19조제20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용 주차·조달 또는 수납하여 양도·대여 또는 설치한 자</p> <p>11의3. 제19조제20제1항에 따른 정당한명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p> <p>12. 제24조에 따른 금지기간에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한 자 <전문개정 2010. 3. 22.></p> <p>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문개정 2010. 3. 22.></p> <p>1. 제19조제2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p> <p>2. 제19조제22제2항을 위반하여 통배한 사고의 위험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은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자</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3. 22., 2015. 8. 11., 2015. 1. 19., 2017. 3. 21., 2017. 10. 24., 2020. 6. 9.></p> <p>1. 제17조제2항(제19조제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p> <p>2. 제19조제9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3. 제19조제10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p> <p>4. 제19조제17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5. 제19조제20제2항을 위반하여 안내문을 붙이지 아니한 자</p> <p>5의2. 제19조제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제29조제2항제11호제3에 따라 벌칙을 부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6. 제19조제23제3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용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기계식주차장 관리인으로</p>
<p>☐ 법제처 - 15 / 18 -</p> <p>국가법령정보센터</p>	<p>☐ 법제처 - 16 / 18 -</p> <p>국가법령정보센터</p>

주차장법

주차장법	주차장법
<p style="text-align: center;">주차장법</p> <p>로 진입하거나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p> <p>7.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 3. 22., 2017. 10. 24.></p> <p>④ 삭제 <2009. 1. 7.></p> <p>⑤ 삭제 <2009. 1. 7.></p> <p>⑥ 삭제 <2009. 1. 7.></p> <p>[전문개정 1985. 12. 31.]</p> <p>[목적개정 2010. 3. 22.]</p> <p>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10.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9조제22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된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제19조제22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원상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된다는 돌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3. 22., 2015. 8. 11., 2016. 1. 19., 2017. 3. 21., 2017. 10. 24., 2020. 6. 9., 2021. 1. 12.>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7조제2항(제19조제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방의 이용을 저지한 자 제19조의제3항에 따른 사용권사 또는 정기주차자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전사를 받지 아니한 자(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9조의제17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19조의제20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지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기계식주차장지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제19조제22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 정당한전검사 받지 아니한 자(제29조제2항제11호3에서 따라 벌칙을 부과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1.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9조제10제1항(제19조제15제5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확인용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제19조제20제2항을 위반하여 안내문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 3. 22., 2017. 10. 24., 2021. 1. 12.> <p>[전문개정 1985. 12. 31.]</p> <p>[목적개정 2010. 3. 22.]</p> <p>[시행령 <2021. 7. 33.] 제30조</p> <p>제31조(입법규정) 법인의 대표거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과형을 처(處)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전문개정 2009. 1. 7.]</p> <p>제32조(이행강제금)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명령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9조의제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역의 설치비용의 20퍼센트 제19조의제4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역의 설치비용의 10퍼센트 <p>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해당 장의 관리책임자에게 정당한 사유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당하는 뜻을 미리 통보(通告)하여야 한다.</p> <p>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p> 	<p style="text-align: center;">주차장법</p> <p>란,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확하게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p> <p>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원상회복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내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원상회복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5회를 초과할 수 없다.</p> <p>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제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p> <p>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를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체계 부처공급의 경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6. 6., 2020. 3. 24.></p> <p>⑦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 회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0. 3. 22.]</p> <p>부칙 <17554호, 2020. 10. 20.></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법제처 - 17 / 18 - 국가법령정보센터</p>	<p>법제처 - 18 / 18 - 국가법령정보센터</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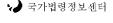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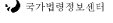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주차장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 2021. 4. 21] [대통령령 제31636호, 2021. 4. 2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국도교통부(도시교통과) 044-201-3811, 3814</p> <p>제1조(목적) 이 영은 「주차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전문개정 2010. 10. 21.]</p> <p>제2조(주차진출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같은 표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놀이시설, 청소년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0., 2016. 1. 19., 2018. 2.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삭제 <1996. 6. 4.> 삭제 <1996. 6. 4.> <p>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법」에 따른다. 다만, 기계식주차장의 연면적은 기계식주차장지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과 기계실, 관리사무소 등의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p> <p>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시 또는 시장은 법 제12조제6항 또는 제19조제10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제외한 지역의 주차진출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해당 지역의 규정에로 제한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0. 10. 21.]</p> <p>제2조(중요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의제2항 후단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계획서지구의 지정구역의 10퍼센트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세출된 주차수용량 3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p>[전문개정 2010. 10. 21.]</p> <p>제2조의2(삭제) <1996. 6. 4.></p> <p>제3조(삭제) <1999. 3. 17.></p> <p>제3조의2(삭제) <2009. 7. 7.></p> <p>제4조(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설치비용) 법 제12조제3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이라 한다)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역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역을 합한 주차구역: 전용주차구역의 100분의 10 이상</p> <p>2.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역: 전용주차구역의 100분의 5 이상</p> <p>[전문개정 2021. 3. 30.]</p> <p>제5조(삭제) <1999. 3. 17.></p> <p>제5조의2(삭제) <2000. 7. 27.></p> <p>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제한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지·벽지·산지·저지, 도심지의 강변도로나 기타 그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치 아니할 경우 	<p style="text-align: center;">주차장법 시행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단독주택·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대체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대형인원 수용 시설물의 인접구역 또는 그 거북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방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차장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를 해당한다)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은 주차수용의 특성 또는 용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규모를 비롯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규정에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차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사항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용인원 수 5인이지만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 위락시설 및 주택 중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건축물 안에서 용도 상호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 다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전문개정 2010. 10. 21.]</p> <p>제7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차수용 300대의 규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개정 2016. 1. 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 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대차나 시설물의 부지와 통로로 연결된 대차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부지가 너비 12미터 이하인 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 도로의 맞은편 토지(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도로의 건너편에 있는 시설물 정면의 경계와 그 외에 위치한 필지를 말한다)에 부설주차장을 그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업인 경우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위에서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부지의 정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로거리 600미터 이내 해당 시설물이 있는 등·리(행정동·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시설물과의 통행 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등·리 <p>[전문개정 2010. 10. 21.]</p> <p>제8조(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물의 위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번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특별자치도시·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장소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 등의 건설도면상에 위치하게 되어 자동차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p>법제처 - 19 / 9 - 국가법령정보센터</p>	<p>법제처 - 2 / 9 - 국가법령정보센터</p>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령
<p>2.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 및 유통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을 말한다. 유흥시설,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용도별 건축비용 연면적의 범위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p> <p>3. 주차장장의 규모: 주차대수 300대 이하의 규모(「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경우에는 별도)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p> <p>④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차장 설치규칙 면제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물의 위치·용도 및 규모 2.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의 규모 3.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및 주차장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의 해당 비용의 납부에 관한 사항 4.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5. 제1항제1호나목의 장소에 있는 시설물의 경우에도 최중의 하역과 그 밖에 해당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 이를 제외한 규모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만 설치의무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p>제9조(주차장 설치비용의 납부 면제)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대한 리카·인가 등을 받지 전까지: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2. 해당 시설물의 준공검사(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다) 신청 전까지: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p>제10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면제의 주차장 무상사용 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용 준공검사와인주(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할 때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중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부설주차장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하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납부한 주차장 설치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설물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할 때의 해당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기준에 따른 경우외로 나누어 산정한다.</p> <p>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가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시설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주차장의 주차난이 심하거나 그 밖에 그 주차장을 이용할 것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주차장 외의 다른 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다.</p> <p>④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부설주차장 지정으로 지정하려는 노외주차장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에 설치한 노외주차장인 경우에는 미리 해당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21.)</p> <p>제11조(기존 시설물) ① 법 제19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건축물, 공동주택 또는 조형물로서 해당 시설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 안에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추가로 설치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0. 21.)</p> <p>제11조의2(기재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 법 제19조제1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는 데 동의한 시설물 가.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주변가 등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판매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p>○ 법제처 - 3 / 9 - 국가법령정보센터</p>	<p>는 시설물</p> <p>나.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시·군 또는 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물</p> <p>2.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시설물(본조성을 2020. 8. 4.)</p> <p>제12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① 법 제19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4. 10. 2012. 10. 29. 2014. 9. 11. 2016. 7. 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번의 토지이용 상황 등으로 인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 경우 변경 후의 용도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 즉시 주차장으로 환원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변경된 용도의 사용기간은 주차장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2. 지킴이 장난 개살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시설·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주차장의 용도 변경이 해당 주차장 외의 주차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제6조 또는 법 제19조제10항에 따른 해당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변경·조리·재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조차 부위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4.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5.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한 부설주차장 또는 법 제19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제6조에 따라 시설물 전부 또는 그 부지에서 인근 주차로 부지 변경된 부설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 6.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의 부설주차장을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제2항하 각 호에 따른 건축물(수해방지시설 등에 관한 규정)이 철거되는 공종주택은 제외한다)의 주차장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이용 지원(승용자동차이용을 위한 전용주차대를 설치하고 승용자동차 이용을 위한 승용자동차를 잠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차장의 면적이 승용자동차이용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전용주차대 면적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나.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차장의 면적이 해당 주차장의 전체 주차구획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 다. 해당 주차장이 승용자동차이용 지원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을 즉시 주차장으로 환원하는 데에 지장이 없을 것 <p>② 법 제19조제4항제1호·제2호 및 조 제1항제5호·제6호의 경우에 종전의 부설주차장은 새로운 부설주차장의 용도가 사용된 후에 용도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주차장 부지에 종속하는 건물 안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0. 29. 2014. 9. 11.></p> <p>③ 법 제19조제4항제2항 단서에 따라 부설주차장 용도의 변경을 금지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경우는 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기존 주차장을 부설 또는 종속하는 경우(모든 또는 종속하는 조건으로 인정한다)다 한다. (전문개정 2010. 10. 21.)</p> <p>제12조의2(기재주차장치의 안전진도 등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6항제1항에 따라 기재주차장치의 안전진도 관련 신청(이하 "안전진도"라 한다)을 받거나 안전진도응답을 받은 내역의 변경에 관한 신청을 받은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가 법 제19조제16항제1항에 따라 하여야 하는 보합은 신청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고당 예상당첨액이 1억원 이상일 것 2. 제1항제1항 예상당첨액이 1억원 이상일 것 3. 보수업자가 신청하여 최초로 보수계약을 체결하는 날 이전에 제1항에 따른 보합에 가입하여야 한다. <p>② 보수업자는 보합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보합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보합계약의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합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 10. 21.)</p> <p>제12조의3 삭제 <2016. 2. 11.></p> <p>제12조의4(연동특수 승의 기준) ① 법 제19조의19제2항에 따른 연동특수 및 영입업자의 기준은 별표 4를 한다. (전문개정 2016. 2. 11.)</p> <p>제12조의5(10기재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법 제19조의2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재주차장"이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기재주차장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6. 2. 11.) (후시 제12조의10·제12조의11로 이동 <2016. 2. 11.>)</p> <p>제12조의11(기재주차장 정보망의 구축·운영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21제3항에 따라 기재주차장 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6. 2. 20.> (전문개정 2016. 7. 19.) (후시 제12조의12로 이동 <2016. 7. 19.>)</p> <p>제12조의12(10기재주차장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19조의22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관위원회(이하 "위하"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할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지명위원은 1명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명위원: 기재주차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위촉위원: 기재주차장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인 법사 나. 「도로교통법」 제11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은 자로서 안전관리 분야의 자질을 가지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경력에 임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다. 행정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법 제19조의12제4항 제2항 제1항 전문지식위원회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p>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지명위원과 위촉위원 중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⑥ 위원회는 필요하고 인정할 관례인 또는 관계 전문가 위원회의 출석사유가 발원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⑦ 위원회는 출석위원 3명, 관례인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연의 범위에서 상당한 이비로 지급할 수 있다.</p> <p>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 법제처 - 4 / 9 - 국가법령정보센터</p>
<p>주차장법 시행령</p> <p>2. 기재주차장치의 출입구, 통로, 주차구획의 크기 및 안전장치를 법 제19조의7에 따른 안전기준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10. 21.)</p> <p>제12조의3(기재주차장치의 사용검사 등) ① 법 제19조의19제2항에 따른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 1. 19.></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법 제19조의23제1항 각 호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연장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다음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을 가진다. <신설 2018. 2. 20. 2016. 10. 23.></p> <p>③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검사기간은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검사기간 이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1. 19. 2018. 2. 20.></p> <p>④ 법 제19조의19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1. 19. 2018. 2.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주차장치가 설치된 건축물의 용도로 인하여 그 건축물과 기재주차장치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기재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설치하 의무가된 부설주차장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 3. 화재사건이나 그 밖에 정기검사 받기 못한 부속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p>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정기검사를 연기하였던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2018. 2. 20.></p> <p>⑥ 제5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연기받은 자는 해당 사유가 없었음을 때에는 그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가 끝난 때부터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 19. 2018. 2. 20.> (전문개정 2010. 10. 21.)</p> <p>제12조의4(건설내역자의 지정 및 취소) ① 법 제19조의12에 따라 건설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문기술자격을 인정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술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징계수령이 없지 않았으면 별표 2에 같다.</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기술자격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표 2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건설업무를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전문기술자격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0. 21.) <p>제12조의5(기재주차장치의 절기) ① 법 제19조의1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개정 2016. 7. 19.></p> <p>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시·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재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재주차장치의 절기를 정할 수 있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절기되는 기재주차장치의 종류별 2호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 7. 19.></p> <p>③ 제2항에 따라 완화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종속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정해지면 용도도 변경할 때에 그 종속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6. 7. 19.> (전문개정 2010. 10. 21.)</p> <p>제12조의6(보수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기재주차장치 보수업(이하 "보수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및 실적이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 12. 28.></p> <p>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14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 12.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9조제1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별표 3에 따른 보수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p>○ 법제처 - 5 / 9 - 국가법령정보센터</p>	<p>주차장법 시행령</p> <p>3.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10. 21.) (전문개정 2011. 12. 28.)</p> <p>제12조의7(보증) ① 법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가 법 제19조의16제1항에 따라 하여야 하는 보합은 신청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고당 예상당첨액이 1억원 이상일 것 2. 제1항제1항 예상당첨액이 1억원 이상일 것 3. 보수업자가 신청하여 최초로 보수계약을 체결하는 날 이전에 제1항에 따른 보합에 가입하여야 한다. <p>② 보수업자는 보합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보합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보합계약의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합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 10. 21.)</p> <p>제12조의8 삭제 <2016. 2. 11.></p> <p>제12조의9(연동특수 승의 기준) ① 법 제19조의19제2항에 따른 연동특수 및 영입업자의 기준은 별표 4를 한다. (전문개정 2016. 2. 11.)</p> <p>제12조의10(기재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법 제19조의2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재주차장"이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기재주차장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6. 2. 11.) (후시 제12조의10·제12조의11로 이동 <2016. 2. 11.>)</p> <p>제12조의11(기재주차장 정보망의 구축·운영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21제3항에 따라 기재주차장 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6. 2. 20.> (전문개정 2016. 7. 19.) (후시 제12조의12로 이동 <2016. 7. 19.>)</p> <p>제12조의12(10기재주차장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19조의22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관위원회(이하 "위하"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할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지명위원은 1명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명위원: 기재주차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위촉위원: 기재주차장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인 법사 나. 「도로교통법」 제11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은 자로서 안전관리 분야의 자질을 가지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경력에 임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다. 행정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법 제19조의12제4항 제2항 제1항 전문지식위원회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p>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지명위원과 위촉위원 중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⑥ 위원회는 필요하고 인정할 관례인 또는 관계 전문가 위원회의 출석사유가 발원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⑦ 위원회는 출석위원 3명, 관례인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연의 범위에서 상당한 이비로 지급할 수 있다.</p> <p>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 법제처 - 6 / 9 - 국가법령정보센터</p>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령
<p>이 말한다. [본조신설 2015. 10. 23.] [동인 제12조의12는 제12조의15로 이동 <2018. 10. 23.>]</p> <p>제12조의13(위험의 해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촉)하거나 그 임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경신장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관할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0. 23.] [동인 제12조의13은 제12조의16으로 이동 <2018. 10. 23.>]</p> <p>제12조의14(위원회원의 임명)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조의22제1항 후단에 따라 보고받은 중대한 사고에 관한 내용의 검토 2. 법 제19조의22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예방 방지, 예방을 위한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의 조사 3. 법 제19조의22제5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한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등에 대한 판정 [본조신설 2015. 10. 23.] [동인 제12조의14는 제12조의17로 이동 <2018. 10. 23.>]</p> <p>제12조의15(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실시시기) ① 법 제19조의23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최초로 받아야 하는 날은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날부터 10년의 속하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이하 이 항에서 "만료일"이라 한다) 전 180일부터 만료일까지이고, 해당 검사기간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만료일에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0. 23.> ② 법 제19조의23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최초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만료일"이라 한다)의 전날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고, 해당 검사기간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만료일에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0. 23.> [본조신설 2015. 2. 20.] [제12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의15는 제12조의16으로 이동 <2018. 10. 23.>]</p> <p>제12조의16(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기준·항목 및 방법) 법 제19조의23제6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항목 및 방법 등에 따른다. <개정 2015. 10. 23.> 1. 법 제19조의23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2. 법 제19조의27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기준 3. 기계식주차장치의 구조 및 구성방식 4. 기계식주차장에 적용되는 기술의 특성 [본조신설 2015. 2. 20.] [제12조의13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의16은 제12조의19로 이동 <2018. 10. 23.>]</p> <p>제12조의17(부기동기의 절차 등)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와 법 제19조의4제1항제2,3 및 이 법 제12조의16항제6호에 따라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된 주차장을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법 제19조의2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기동기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1., 2016. 7. 19., 2018. 2. 20., 2018. 10. 23.> 1.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었음을 시설물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동기(이하 "시설물의 부기동기"라 한다) 2.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등록됨을 부설주차장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동기(이하 "부설주차장의 부기동기"라 한다) ②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은 그 부지 인근에 병행해서 위치 변경하여 설치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등기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부기동기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소재지의 변경등기 2. 새로이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부기동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부기동기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9. 11.] [제12조의14에서 이동 <2018. 10. 23.>]</p> <p style="text-align: center;">● 법제처 - 7 / 9 - </p>	<p>제12조의18(부기동기의 내용) ① 시설물의 부기동기에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음"이라는 내용과 그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명기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의 부기동기에는 "이 토지(또는 건물)는 "주차장법"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변경이 인정되기 전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과 그 시설물의 소재지를 명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9. 11.] [제12조의13에서 이동 <2018. 10. 23.>]</p> <p>제12조의19(부기동기의 말소 신청) ① 법 제19조의24제1항에 따라 부기동기란 부설주차장으로서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기동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1., 2016. 7. 19., 2018. 2. 20., 2018. 10. 23.> 1. 제12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당 부설주차장 전부에 대한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 시설물의 부기동기 및 부설주차장의 부기동기의 말소 동시 신청 2. 제1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 종전 부설주차장의 부기동기의 말소 신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분에 따라 시설물의 부기동기 또는 부설주차장의 부기동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부기동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부설주차장의 부기동기만을 말소 신청 2. 시설물의 소유자와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소유자가 시설물의 부기동기 및 부설주차장의 부기동기의 말소를 각각 신청 [본조신설 2014. 9. 11.] [제12조의16에서 이동 <2018. 10. 23.>]</p> <p>제13조(집중료 및 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등 공공시설"이란 초·중·고등학교, 공립학교, 공공의 청사, 주차장 및 운동장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도로·광장·공원 및 제1항의 공공시설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최초 사용기간 동안 그 부지에 대한 집중료를 그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한다. ③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주차장 및 운동장을 말한다. [변경개정 2010. 10. 21.]</p> <p>제14조(보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1. 목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목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아닌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 용도에 제공되는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토지대금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2분의 1. 다만, 국유지·공유지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의 3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 3. 목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아닌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의 3분의 1. 다만, 국유지·공유지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의 3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1. 4. 20.> 1. 목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추진하는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사업비용의 일부 2. 제1호 외의 자가 추진하는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용 가. 주차 용도에 제공되는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설치비용의 2분의 1 나. 주차 용도에 제공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사업비용의 3분의 1 [변경개정 2010. 10. 21.]</p> <p>제15조(주차장특별회계의 제원) ① 법 제2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지방비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예산액 중 5%의 10배를 뜻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동"이란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중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의 납부금을 말한다. [변경개정 2010. 10. 21.]</p> <p>제16조(감축)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외주차장관리자에게 감축할 필요한 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시면으로 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법제처 - 8 / 9 - </p>
<p style="text-align: center;">주차장법 시행령</p> <p>1. 노외주차장의 위치 및 명칭 2.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명칭을 내리는 이유 4. 조치가 필요한 사항의 내용 5. 조치기간 6. 명칭 붙이일에 대한 조치 내용 [변경개정 2010. 10. 21.]</p> <p>제16조의2 삭제 <1997. 12. 31.></p> <p>제17조(과징금등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의 규모, 노외주차장 설치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그 밖에 특별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그 5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격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변경개정 2010. 10. 21.]</p> <p>제17조(과징금등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변경개정 2021. 4. 20.] [시행령: 2021. 7. 13.] 제17조</p> <p>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8. 10. 23.> [변경개정 2016. 7. 19.]</p> <p>제19조 삭제 <2009. 7. 31.></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636호, 2021. 4. 20.> 이 영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별표 / 시선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별표 2] 건물주차장관리자의 지정조건(제12조의4제2항 관련) [별표 3] 보수업의 등록기준(제12조의6제1항 관련) [별표 4] 등록회소 및 영업정지 기준(제12조의9제1항 관련) [별표 5]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제17조제1항 관련)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p> <p style="text-align: center;">● 법제처 - 9 / 9 - </p>	<p style="text-align: center;">주차장법 시행령</p>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1. 4. 16] [국도교통부령 제843호, 2021. 4. 16, 일부개정]

국도교통부(도시교통과) 044-201-3811, 38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용개정 2010. 10. 29]

제1조의2(실체조사 방법 및 주기 등)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방법 및 실체조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
 - 가. 사적행 형으로 실체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구역 내의 주차장 현황에 대한 실체조사 결과 300미터를 넘지 않도록 할 것
 - 나. 각 조사구역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를 경계로 구분할 것
 - 다. 아파트단지 및 단독주택단지 가 설치된 지역 또는 주차기능과 상업·업무기능이 설치된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시설 수급의 특성상,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같은 특성을 가진 지역별로 조사구역을 설정할 것
2.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실태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 출입도로를 포함하여 주차장 전체를 조사구역으로 할 것
- ② 수급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조사의 주기는 종전으로 한다. 다만, 법 제6조제3항 및 이 규칙 제6조제11호 및 제15조의2와 같은 사항은 매년 이상 점검하고 조사해야 한다.
- ③ 수급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수급실태조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실체조사(주차구역별로 주차수요조사와 주차시설 현황조사로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 나. 안전관리실태조사: 조사대상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 가. 법 제6조제1항·제19조 및 제19조의5에 따른 설치기준의 준수 여부
 - 나.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여부
 - 다. 법 제19조의9 및 제19조의23에 따른 사용승인, 정기검사 및 정기안전점검사 이행 여부
 - 라. 법 제19조의2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지 관리인의 배치 여부
 - 마. 법 제19조의22제7항에 따른 경고의 이행 여부
 - 바. 그 밖에 주차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실태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각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와 주차시설 현황을 대표·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제1호지사의 주차실태 조사결과 입력대행제 기록(전산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입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관리한다.
(단정개정 2020. 6. 25)

제2조(주차장의 형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형태는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주차장(이하 “자유식주차장”이라 한다)과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이하 “기계식주차장”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며, 이를 다시 “시상·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 또는 건축물(건축물적용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기계식주차장: 지하식·건축물식

② 건축물: 지하식·건축물식

[원용개정 2010. 10. 29]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역)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관리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 20, 2018. 10. 25>

1. 행방주차장의 경우

● 법제처 - 1 / 16 -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차장법 시행규칙

② 노상주차장의 주차구역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원용개정 2010. 10. 29]

제4조의2(고밀도 등의 설치)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국도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이란 주차자동차가 적당히 많은 상태에서 자동차의 미끄러짐이 발생하는 곳을 말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주차권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밀도 고밀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고밀도 고밀도를 설치할 경우 주차장의 형태·위치 등으로 인하여 주차관리구역으로의 진출입이나 주차가 원활히 곤란한 경우
 2. 고밀도 고밀도를 설치할 경우 보행자 안전 또는 교통 혼잡 등에 지장을 초래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③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자동차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1. 주차장이 경사진 곳이라는 사항
 2. 차량이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항
 - 가. 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를 작동시킬 것
 - 나. 주차장에 비침윤 이용형 고밀도를 풍으로 차량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 다. 조밀장치를 가장자리 방향으로 설치할 것
[본조신설 2020. 6. 25]

제5조(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2. 6., 2016. 4. 12., 2020. 6. 25>

1. 노외주차장의 유지권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의 토지이용 현황,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보행거리 및 보행자를 위한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2.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유지권 안에서 정해진 주차수요를 이미 설치되었거나 장래에 설치할 계획인 자동차 주차장(이하 “기존 주차장”)의 시설 또는 주차수요와의 연관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3.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지역은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이어야 한다. 다만,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으로서 주차장이 설치되어도 해당 하천 및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지역
 - 나. 도시의 환경변경 없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지역
 - 다. 주차장 설치를 목적으로 도시의 환경변경 허가를 받은 지역
 - 라. 특별시장·광역시·시·군수 또는 구청장이 녹지 주차장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4.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은 주차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될 수 있으면 공원·광장·공원·가. 도시공원 및 자연휴양림의 등에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5. 노외주차장의 설치 및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노외주차장에 설치되는 시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5호(건널목의 가장자리만 해당한다) 및 같은 법 제3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
 - 나. 횡단보도(육교 및 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로부터 5미터 이내에서 있는 도로의 부분
 - 다. 비면 4미터 이하의 도로(주차대수 200대 이상인 경우에는 비면 6미터 이하의 도로)와 종단 기둥까지 10미터를 초과하는 도로
 - 라. 휴게원, 휴게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친화시설 등의 출입구로부터 20미터 이내에서 있는 도로의 부분
6. 노외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골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교통에 미치는 지장이 적은 도로에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의 교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각각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구의 너비가 5.5미터 이상으로서 출구와 입구가 차선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함께 설치할 수 있다.
8. 특별시장·광역시·시·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배를 초과하여 4배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장래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 법제처 - 3 / 16 -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차장법 시행규칙

구분	너비	길이
경형	1.7미터 이상	4.5미터 이상
일반형	2.0미터 이상	6.0미터 이상
보도 및 보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2.0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이륜자동차 전용	1.0미터 이상	2.3미터 이상

2. 행방주차장의 경우

구분	너비	길이
경형	2.0미터 이상	3.5미터 이상
일반형	2.5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확장형	2.5미터 이상	5.2미터 이상
확대인원용	3.3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이륜자동차 전용	1.0미터 이상	2.3미터 이상

③ 제1항에 따른 주차관리구역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주차관리구역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물 이상의 연속된 주차관리구역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는 제1항에 따른 주차관리구역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관리구역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5. 3. 23>

[원용개정 2010. 10. 29]

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2. 6.>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의 주차수요와 노외주차장 또는 그 밖에 자동차의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의 현황을 고려하여 유지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할 필요가 있다.
2. 주차면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분리대나 그 밖에 도로의 폭으로부터 도로로 향해 크게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800)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출구와 입구에서 전방방향을 가시거리를 확보한다. 이와 같다(가 4)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출구와 입구가 6미터를 이한 도로에서 보행자 도로와 차도가 구별되어 있고, 그 차도의 너비가 13미터 이상인 도로에 설치하는 경우
 - 나. 출구와 입구가 6미터를 이한 도로에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로에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5. 고밀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고가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도로교통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 및 같은 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노상주차장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배를 초과하여 4배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장래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 법제처 - 2 / 16 -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9. 경사진 곳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 등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원용개정 2010. 10. 29]

제5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29., 2012. 7. 2., 2013. 3. 25., 2013. 8. 23., 2014. 7. 15., 2018. 3. 21., 2018. 10. 25., 2020. 6. 25., 2021. 4. 16>

1.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서 자동차의 회전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도와 도로가 갈라지는 부분을 곡선형으로 하여야 한다.
2. 노외주차장의 출구 부근의 규모는 해당 출구로부터 2미터(이륜자동차 전용 출구의 경우에는 1.3미터)를 후한 노외주차장의 차로의 중심선상 1.4미터를 줄이어서 도로의 중심선에 위치하도록 정한 원폭·요폭폭 각각 60도의 범위에서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노외주차장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가. 주차구역선의 긴 변과 짧은 변 중 한 변 이상이 차도에 길어야 한다.
 - 나. 차로의 너비는 주차행의 외 출입구(시차)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 제4호에서 또한 같다)의 경우에 다른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 이륜자동차 전용 노외주차장

주차행의	차로의 너비	
	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	출입구가 1개인 경우
평행주차	2.5미터	3.5미터
각각주차	4.0미터	4.0미터
45도 대향(對向)주차	2.3미터	3.5미터

2) 1) 외의 노외주차장

● 법제처 - 4 / 16 -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형식	차도의 너비	
	출입구가 2개 이상 인 경우	출입구가 1개인 경우
병행주차	3.3미터	5.0미터
각각주차	6.0미터	6.0미터
60도 대향주차	4.5미터	5.5미터
45도 대향주차	3.5미터	5.0미터
교차주차	3.5미터	5.0미터

- 노외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도는 제3조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폭은 부본은 자동차가 6미터(같은 경우를 사용하는 주차장의 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 이륜자동차 전용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내면변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경사도의 차도 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5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5미터 이상)으로 하여, 경사도의 양쪽 백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에 둘레 10센티미터 이하인 15센티미터 이만의 연의(畵面)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의 부본은 차도의 너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경사도의 수평경사도는 직선 부본에는 17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곡선 부본에서는 14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경사도의 노면은 거친 역으로 하여야 한다.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의 경사도는 너비 6미터 이상인 2차로를 확보하거나 원형차로와 직선차로를 분리하여야 한다.
-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위치까지 자력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30대 이하인 1대의 자동차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2항 및 제3조를 준용하여, 자동차용 승강기의 출구와 입구가 연부 설치되어 있거나 주차장의 내부에서 자동차가 발판전환을 할 수 있을 때에는 제16조제3항에 따른 진입로를 설치하고 제16조제2항에 따른 진입로 또는 방화전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에 사용되는 부본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0.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노외주차장 내부 공간의 일정한 장소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점의 일위 8시간의 평균 주차가 50퍼센트 이하(「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인원관리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실내주차장은 25퍼센트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 주차장구획으로서 차폭로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은 백면에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폭도(畵폭)와 최대 폭도 및 차폭로 폭도 각각 같아야 한다.
- 주차구역 및 차도, 최소 폭도는 10미터 이상, 최대 폭도는 최소 폭도의 10배 이내
- 주차장 출구 및 입구 최소 폭도는 300센티 이상, 최대 폭도는 없음
-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 최소 폭도는 50센티 이상, 최대 폭도는 없음
- 노외주차장은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차장주차장으로서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은 원시차무소

법제처

- 5 / 16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차장법 시행규칙

- 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카메라로 텔레비전(녹화장치를 포함한다)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한 발광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발광설비는 주차장의 바닥면으로부터 170센티미터의 높이에서 있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카메라로 텔레비전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와 녹화장치의 화면 수가 같아야 한다.
 - 촬영된 화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 및 특별시장·광역시·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하는 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선방직 안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2층 차면이 서로 20킬로미터의 수평거리로 평면중첩하는 경우에 건물 수 있는 장소의 구조물로서 구조재 안에 의하여 안전하고 확인된 구조물
 - 「도로법 시행령」 제3조제4호에 따른 방호(防護) 울타리
 - 2층 차면이 서로 20킬로미터의 수평거리로 평면중첩하는 경우에 건물 수 있는 장소의 구조물로서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것을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선방직 안전설비
- 노외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평행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도가 7퍼센트 이하인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노외주차장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상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중수(당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를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설치해야 하며, 합경포화적 자동차장의 전용주차구획을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별 주차장용을 고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군 또는 차차구의 조례로 합경포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의 의무 설치 비율을 100분의 5보다 상향하여 정할 수 있다.
-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장 내에서 안전한 보행권을 위하여 과속방지턱, 차량의 일시정지선 등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3조제3호각목에 따른 지면에 설치되는 주차장에는 흙수 등으로 인한 자동차 흠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모두 설치해야 한다.
 - 차량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주차 차단기
 - 주차장 전체를 볼 수 있는 카메라로 텔레비전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
 - 차량, 흠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차광 패널을 안내할 수 있는 방수설비 또는 전광판
- 차제 <2000. 6. 29>
- 차제 <1996. 6. 29>
-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기자동차충전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의 운영비는 주차장 총시설비(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의 용도도 사용되는 면적을 합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0. 10. 29, 2012. 7. 2., 2016. 12. 30., 2021. 4. 16>
 - 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동화장실
 - 간이매점, 자동차 장식용 판매점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침례수조
 - 2차로, 「차량 및 석출대역으로 사법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차소(특별시장·광역시·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
 - 노외주차장이 연이·승양이 필요한 경우인 시설
 -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
 -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 총시설비의 총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주차장 총시설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10. 29, 2012. 7. 2.>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외주차장 안전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군 계획시설을 부대시설로서 중첩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외의 용도도 사용하는 도시·군 계획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부대시설을 포함한 주차장 총시설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10. 29, 2012. 7. 2.>
 - 제1항제2호에 따른 유선방직 안전시설의 설계 및 설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

법제처

- 6 / 16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차장법 시행규칙

- 에 고시한다. <개정 2010. 10. 29, 2013. 3. 23>
<개정개정 2010. 10. 29>
- 제6조의2(노외주차장의 전용주차구역 설치)**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7. 27>
 - 주차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구역으로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화석연료자동차용 충전 시설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 대형면적 주차장은 화석연료 자동차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용 지원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필요하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주차 허용하는 자동차(이하 이 항에서 "전용주차구역용"라 한다)가 주차되지 않는 시간대에 전용주차구역용 차의 주차장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6>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4. 16>
<신설개정 2010. 10. 29>
- 제7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제치한 자는 별지 제1호 제2차의 노외주차장 설치(예시) 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를 첨부(설치 등본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제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노외주차장을 양수하거나 일정한 자 등을 포함한다)는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제3차의 노외주차장 변경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를 첨부하여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29>

- 제7조의2(노외주차장의 설치 제한)** ① 법 제12조제6항 또는 별 제10조제10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은 부설주차장(주변 및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4. 2. 6>
 - 자동차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 또는 주거지역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서 도시계획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
 -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은 그 지역의 자동차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 법 제10조제10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은 최고한도로 정하며, 그 최고한도는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별표 1의 설치기준(조례로 설치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 설치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설치기준"이라 한다)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설치기준의 종횡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은 시설물의 종류별, 규모별 또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화물의 화적(貨積)을 위한 주차 또는 장면에 등 교통수단이나 긴급자동차 등의 주차를 위한 최소한의 주차구획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개정 2010. 10. 29>
- 제8조** 삭제 <1999. 3. 12>
- 제9조** 삭제 <1999. 3. 12>
- 제10조** 삭제 <1999. 3. 12>
-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 제6호 및 제10조 제16호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0호·제12호·제13호·제15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민속유적 및 다세대주택으로부터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25>

법제처

- 7 / 16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차장법 시행규칙

- 다음 각 호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주차장주차구역으로서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취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또는 업무시설(이하 이 항에서 "판매시설등"이라 한다)의 용도로서 용도의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외의 건축물(일부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의 부설주차구역으로서 건축시설의 형태와 주차구역장에는 백면에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폭도 및 최대 폭도 제6조제1항제4호 각 목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5>
 -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설치되는 화상형 주차단위구획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14호를 준용한다. <신설 2020. 7. 2>
-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10대 이하인 주차구역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 7. 2., 2013. 1. 25., 2016. 4. 12>
 -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차단위구획과 길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병행주차	3.0미터
각각주차	6.0미터
60도 대향주차	4.0미터
45도 대향주차	3.5미터
교차주차	3.5미터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걸쳐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당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 이상)으로 하여, 도로의 폭을 포함하는 중앙선까지도 하도,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양쪽을 경계면까지로 한다.
- 보도와 차도의 구획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걸쳐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각각주차구역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4.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로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길하여 배치할 수 있다.
-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걸쳐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원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화물칸의 통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 사이에 0.5미터 이상의 공간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11항 및 제5항에 따라 도로를 차로로 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도로와 주차구획선 사이에는 당행 주차장구의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2. 7. 2.>
<신설개정 2010. 10. 29>

- 제12조(부설주차장 설치제한의 제외)** ① 법 제19조제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식의 부설주차장 설치제한(부설주차장 인근설치제한)에 다음 각 호의 사항(판매시설을 포함한다)이 도로를 침범하여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근처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만 상한한다. <개정 2020. 6. 25>
 - 부설주차장의 배치
 - 공사설비(등)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 시설물의 부지외 주차장의 설치 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속력 1천200킬로미터 1이상의 차량
 - 토지의 지면·지속 및 변역이 적인 토지로서(건축물의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연계·건축연계·층수 및

법제처

- 8 / 16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규칙
<p>높이와 주차행선이 격인 건물주위를 포함한다)</p> <p>5. 경사진 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 디그릴 방지시설 및 디그릴 주의 안내표지 설치계획</p> <p>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엔 「건설경비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경비의 공동이용을 통해 설치비가 부담 (인도등)을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포함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변경규정 2010. 10. 29.]</p> <p>제13조(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등)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는 별지 제4호식에 따른다.</p> <p>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제5항 전단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주차장 설치비부과 과 납부장소 및 납부기한을 경하여 신청인에게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인이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 일 시종료후 관한 설치허가 등을 할 때 별지 제4호식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변경규정 2010. 10. 29.]</p> <p>제14조 삭제 <2000. 7. 29.></p> <p>제15조(부설주차장 인선설치 관리대상)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식의 부설주차장 인선설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부설주차장 인선설치 관리대장은 전체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체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변경규정 2010. 10. 29.]</p> <p>제16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신청 등)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식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서에 용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규정 2010. 10. 29.]</p> <p>제16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의5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 25., 2013. 3. 23., 2016. 4.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계식주차장 출입구의 앞면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공극(空穴)이라 함은 「건설용어·용어」 또는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기계장치(이하 "방향전환장치" 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0미터 이하, 너비 1.9미터 이하, 높이 1.55미터 이하, 무게 1,85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8.1미터 이상, 길이 9.5미터 이상의 전환장치 또는 지면 4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 과 방향전환장치에 걸린 너비 1미터 이상의 과 차 공극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75미터 이하, 너비 2.15미터 이하, 높이 1.85미터 이하, 무게 2,20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10미터 이상, 길이 11미터 이상의 전환장치 또는 지면 4.5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 과 방향전환장치에 걸린 너비 1미터 이상의 과 차 공극 2. 기계식주차장의 내부에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2층 이상으로 주차구획이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기계식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11조제2항제2호를 준용한다. 3.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 출입구까지의 차로(이하 "전입로" 라 한다) 또는 전환공로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의 진입을 허용할 수 있는 장소(이하 "정류소" 이하 "정류소"라 함은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 20대에 초과하여 200대에 한 대로의 정류소를 확보하여야 하며, 정류소의 수는 다음 과 동등하다. 다만,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 부근 설치되어 있거나 전입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동정류소수가 6퍼센트 이하인 전입로의 길이 5미터마다 한 대분의 정류소를 확보한 것으로 본다.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05미터 이상, 너비 1.9미터 이상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35미터 이상, 너비 2.15미터 이상 4. 기계식주차장에서는 차량도보구역 50미터이하의 이면을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를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차구역: 최소 조도는 50억스 이상 <p>④ 법제처 - 9 / 16 - 국가법령정보센터</p>	<p>나. 출입구: 최소 조도는 150억스 이상</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도에 정하는 때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2.></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제6조(같은 조 제1항제3호·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11조제1항에서 이를 준용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4. 12.> [변경규정 2010. 10. 29.]</p> <p>제16조의3(기계식주차장의 안전도검사와 신청 등) 영 제12조제2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식(이하 "안전도검"이라 한다) 또는 변경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식(이하 "안전도검"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변경)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계식주차장지 사자서 2. 법 제19조제6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안전도검서(변경인증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한 안전도검서서를 말한다). 3. 기계식주차장지 안전도검서(변경인증의 경우엔 해당한다) [변경규정 2010. 10. 29.] <p>제16조의4(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검사와) ① 법 제19조제6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3식(이하 "기계식주차장지 안전도검서"라 한다)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검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계식주차장치의 전체 도면(최소 축척 100분의 1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2. 안전장치의 도면 및 설명서(변경인증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 3. 기계식주차장지 사자서 4. 주요 구조부의 강도계산서 및 도면(변경인증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 5. 기계식주차장지 출입구의 도면 및 설명서(변경인증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도검서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검사하여 별지 제8호의4식(이하 "기계식주차장지 안전도검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변경규정 2010. 10. 29.] <p>제16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① 법 제19조제7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 25., 2013. 3. 23., 2016. 4.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계식주차장지에 사용하는 재료는 「산업표준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또는 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기계식주차장지 출입구의 크기는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3미터 이상, 높이 1.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4미터 이상, 높이 1.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 통행하는 기계식주차장지 출입구의 높이는 1.8미터 이상으로 한다. 3. 주차구획의 크기는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2미터 이상, 높이 1.6미터 이상, 길이 5.1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30미터 이상, 높이 1.90미터 이상, 길이 5.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의 길이가 5.1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구획의 길이는 차량의 길이보다 최소 0.2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운반기의 크기는 자동차가 들어가는 바닥의 너비를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1.9미터 이상, 대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1.9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기계식주차장지 내부에 자동차를 밀착시키는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의 크기는 너비 50센티미터 이상, 높이 1.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6. 기계식주차장지 출입구에는 출입문을 설치하거나 기계식주차장지 작동과 있을 때 기계식주차장지 출입구로 차량 또는 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즉시 그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자동차가 주차구역 또는 운반기 안에서 제자리에 위치하여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지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의2. 기계식주차장에는 자동차의 높이와 주차구획의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식주차장은 제외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2년식 주차장지: 주차구획이 2층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지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아래·위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지 <p>④ 법제처 - 10 / 16 - 국가법령정보센터</p>
<p>4. 다연식 주차장지: 주차구획이 3층 이상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지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아래·위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지</p> <p>다. 수직연합식 주차장지: 주차구역에 자동차가 들어갈수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수직으로 순환이용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지</p> <p>8. 기계식주차장지의 작동 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그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p> <p>9. 승강식 주차장지(승강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자동으로 운반하여 주차하는 주차장지를 말한다)에는 승강기 안에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p> <p>10. 기계식주차장지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경하여 고시한다.</p> <p>② 법 제19조제6제1항에 따라 안전도검을 받아야 하는 자는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에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p> <p>③ 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의 개정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안전기준의 개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변경규정 2010. 10. 29.]</p> <p>제16조의6(안전도검신청서의 발급) ① 제16조의5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검을 신청 또는 변경인증을 신청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기계식주차장지 제16조의5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의3식(이하 "기계식주차장지 안전도검신청서(문본서류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2.></p> <p>②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지 안전도검신청서의 기재내용 중 주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를 발급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변경사항을 고지 적은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소가 다른 시·군·도 또는 구로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지 안전도검신청서를 또 쓰게 되거나 일어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6식(이하 "기계식주차장지 안전도검신청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발급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지 안전도검신청서 2. 일어난 경우에는 그 사유서 <p>④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지 안전도검신청서를 발급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해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19조의8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지의 안전도검을 취소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변경규정 2010. 10. 29.]</p> <p>제16조의7 삭제 <2004. 7. 1.></p> <p>제16조의8(기계식주차장지의 사용검사 등) ① 법 제19조제9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지의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8식(이하 "기계식주차장지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1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사용신청의 경우엔 첨부하지 않는다.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도검서 신청 시 제출한 주요 구조부의 강도계산서에 포함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용이오르보·체인 시험장서서 2. 인증서 시험장서서 3. 감독서 시험장서서 4. 계동서 시험장서서 5. 운반기 제작명세서 6. 설치장소 약도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대행기관은 검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8항에 따른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마치고 항목별 검사결과를 법 제19조제9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하 "기계식주차장관리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부작합판정을 받은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항목을 보완한 후 재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대행기관은 검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2.> <p>④ 법제처 - 11 / 16 - 국가법령정보센터</p>	<p>⑤ 검사대행기관은 제3항에 따른 보완항목에 대한 검사를 할 때 사진, 시험장서서, 그 밖의 증명서류 등으로 보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진 등의 확인으로 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대행기관은 제3항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⑥ 검사대행기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법 제19조제10에 따른 별지 제8호의9식(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계식주차장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⑦ 제5항에 따라 검사신청을 또는 사용검사 보지를 접수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해당 기계식주차장지의 기준을 다음 과에 부합하여야 한다.</p> <p>⑧ 영 제12조제3제3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지의 정기검사를 연기하려는 자는 그 연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의11식(이하 "대형 기계식주차장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안전도검을 하여야 한다.</p> <p>⑨ 영 제12조제3제3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지의 정기검사를 연기하려는 자는 그 연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의11식(이하 "대형 기계식주차장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안전도검을 하여야 한다.</p> <p>⑩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9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지의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을 제16조의2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지의 설치기준과 제16조의5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지의 안전기준에 따라 측정오차와 기계장치치의 마모를 등을 고려하여 검사항목별로 경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변경규정 2010. 10. 29.]</p> <p>제16조의9(검사비용 등) 법 제19조의6에 따른 검사기관, 법 제19조의12에 따른 검사대행기관 및 법 제19조의22에 따른 점검인원사를 시행하는 기관은 법 제19조의11(법 제19조의2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비용을 결정한다. 「연차차량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연차차량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한다)의 업무에 따라 검사비용을 결정한다. <개정 2013. 3. 23.></p> <p>③ 법제처 - 12 / 16 - 국가법령정보센터</p>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규칙
<p>④ 삭제 <2016. 7. 27.> [문헌개정 2016. 10. 29.]</p> <p>제16조의13(동독대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6조의12제2항에 따라 동독증을 발급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지 보수업 변경신고서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지 보수업 동독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문헌개정 2016. 10. 29.]</p> <p>제16조의14(보수업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법 제19조의17에 따른 보수업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문헌개정 2016. 10. 29.]</p> <p>제16조의15(기계식주차장지 관리인 교육 등) ① 법 제19조의20제3항 전단에서 “국도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지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기계식주차장지 관리인 교육”이라 한다)” 및 같은 항 후단에서 “국도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 이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② 기계식주차장지 관리인 교육 및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계식주차장지에 관한 일반적사항 2. 기계식주차장지 관련 법령 3. 기계식주차장지 운영 및 취급 4. 화재 및 고장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조치방법 5.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지의 안전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기계식주차장지 관리인은 기계식주차장지 관리인 교육을 받은 후 3년(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기계식주차장지 관리인 교육의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하고, 보수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 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기계식주차장지 관리인 교육 및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기계식주차장지 관리인 교육 및 보수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교육을 필요한 수강료를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수강료의 금액에 대하여 이라 국도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헌개정 2015. 3. 21.]</p> <p>제16조의16(기계식주차장지 관리인의 의무) 법 제19조의20제4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지 관리인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3. 21.> 1. 기계식주차장지 조적에 필요한 지식, 기계식주차장지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방법 등에 대하여 중립이 유지될 것 2. 긴급상황 발생 시 연락처(휴일 제외)를 포함한 및 기계식주차장지 보수업종 종의 연락처를 포함한다 3. 기계식주차장지 관리인의 성명 및 연락처 4. 기계식주차장지의 형식 및 주차 가능 자동차 [문헌개정 2016. 7. 27.] [문헌 제16조의16호 제16조의20호 이후 <2016. 7. 27.>]</p> <p>제16조의17(기계식주차장지 안내문 부착 위치 등) ① 법 제19조의20제4항에 따른 안내문은 기계식주차장지 이용자가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계식주차장지를 작동하기 위한 스위치 근처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21.> ② 제1항에 따른 안내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6. 25.> 1. 차량의 입고 및 출고 방법 2.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 방법 3. 긴급상황 발생 시 연락처(휴일 제외)를 포함한 및 기계식주차장지 보수업종 종의 연락처를 포함한다 4. 기계식주차장지 관리인의 성명 및 연락처 5. 기계식주차장지의 형식 및 주차 가능 자동차 [문헌개정 2016. 7. 27.]</p> <p>제16조의18(기계식주차장지 안전 관련 정보) 법 제19조의21제1항제4호에서 “국도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19조의16부터 제19조의18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지의 안전도인증에 관한 정보 2. 법 제19조의2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지 관리인의 제재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지의 위치 및 주차가능 수 등 기계식 주차장의 현황에 관한 정보 [문헌개정 2016. 7. 27.]</p> <p style="text-align: center;">● 법제처 - 13 / 16 - ● 국가법령정보센터</p>	<p>제16조의19(중대한 사고) 법 제19조의22제1항 본문 및 법 제19조의23제1항제2호에서 “국도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5. 10. 25.> 1.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2. 기계식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한 의사의 최종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를 입은 사람이 발생한 사고 3.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한 자동차가 전도 또는 추락한 사고 [문헌개정 2015. 3. 21.] [문헌 제16조의19호 제16조의22호 이후 <2018. 3. 21.>]</p> <p>제16조의20(사고보고 등)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법 제19조의22제1항 전단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멸 또는 절치부사로 건물붕괴, 화재, 사고발생 일시·장소 및 피해 정도를 관한 사항·군수 또는 구청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 제19조의22제1항 후단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사료원장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도교통부장관 및 별지 제19조의22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관리위원회(이하 “사고조사관리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은 법 제19조의22제3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을 조사한 때에는 조사를 할 때에 속하는 다음 날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를 사고조사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의 원인 및 경위에 관한 사항 2. 사고 원인의 분석에 관한 사항 3. 사고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고와 관련하여 조사·관련된 사항 [문헌 개정 2015. 10. 25.] [문헌 제16조의20호 제16조의22호 이후 <2018. 10. 25.>]</p> <p>제16조의21(사고조사반이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9조의22제4항에 따라 사고조사반으로 사고발생지역을 관할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에 조동조사반, 한국교통안전공단 본부에는 전문조사반을 구성·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동조사반은 2명 이상의 사고조사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고개요 및 원인 등의 조사 2.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사료원장 보고서의 작성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조사반(이하 “전문조사반”이라 한다)은 조동조사반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사고조사원으로 구성하며, 조사반장 및 사고조사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소속 직원, 기계식주차장 또는 안전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전문조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고 원인의 조사·분석 2. 피해 현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문조사반장이 사고 원인 파악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조사 [문헌개정 2018. 10. 25.] [문헌 제16조의21호 제16조의23호 이후 <2018. 10. 25.>]</p> <p>제16조의22(기계식주차장 경일안전검사 실시 등)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법 제19조의23제1항에 따른 경일안전검사를 받으려면 별지 제16호의1서식의 기계식주차장 경일안전검사 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법 제19조의23제4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경일안전검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25.>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영 제12호의13에 따른 경일안전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후, 합격여부 및 항목별 검사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합격의 통보를 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검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여부 및 해당 항목 검사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합격의 통보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합격의 항목을 보완한 후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항목에 대하여만 검사를 실시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일안전검사 또는 재검사를 실시할 때 해당 기계식주차장</p> <p style="text-align: center;">● 법제처 - 14 / 16 - ● 국가법령정보센터</p>
<p style="text-align: center;">주차장법 시행규칙</p> <p>장관리자등을 현장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할 때 별지 제6호의9서식의 경일안전검사 또는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사용금지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검사확인증 또는 사용금지표지를 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보기 등을 통해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문헌 개정 2015. 3. 21.] [문헌 제16조의20호 이후, 종전 제16조의22호 제16조의24호 이후 <2018. 10. 25.>]</p> <p>제16조의23(기계식주차장 경일안전검사 기준인력 등) ① 법 제19조의23제4항에 따라 경일안전검사를 대행하는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별표 1에 따른 경일안전검사 기준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신규교육: 경일안전검사 기준인력으로 처음 선임될 때 받아야 하는 교육 2. 정기교육: 신규교육 후 3년(신규교육 또는 직원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3. 임시교육: 기계식주차장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국도교통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제2항에 따른 경일안전검사의 기준인력에 대한 교육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문헌 개정 2015. 3. 21.] [문헌 제16조의21호 이후, 종전 제16조의23호 제16조의25호 이후 <2018. 10. 25.>]</p> <p>제16조의24(부실주차장 인건비지급인식) ① 시설물의 소유자는 법 제19조의24제1항에 따른 부실주차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부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7., 2015. 3. 21., 2018. 10. 25.>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따른 부실주차장 인건비 지급 확인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5.> [문헌개정 2015. 3. 21.] [문헌 제16조의22호 이후 <2018. 10. 25.>]</p> <p>제16조의25(주차장 정보망의 대상 정보) 법 제21조의4제1항제4호에서 “국도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별 제3호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데이터와 같을 정보이다. [문헌개정 2021. 4. 16.] [문헌 제16조의25호 제16조의26호 이후 <2021. 4. 16.>]</p> <p>제16조의26(표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표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문헌개정 2010. 10. 29.] [문헌 제16조의25호 이후 <2021. 4. 16.>]</p> <p>제17조(수수료) 법 제26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3. 21.> [문헌개정 2010. 10. 29.]</p> <p>제18조 삭제 <2009. 6. 30.></p> <p>제19조(규제의 재검토) 국도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6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2. 제17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통보 등 3. 제11조에 따른 부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4. 제16조의5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지의 안전기준 5. 제16조의12에 따른 보수업의 등록신청 등 [문헌개정 2016. 12. 30.]</p> <p>부칙 <제843호, 2021. 4.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영향 평가 등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노외주차장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6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영향 평가 등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제3조(화원구역 및 공동수면엔 설치된 주차장의 침수 방지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2조</p> <p style="text-align: center;">● 법제처 - 15 / 16 - ● 국가법령정보센터</p>	<p>· 제12조제3 및 이 규칙 제5조제3호 기록에 따라 하원구역 및 공동수면에 설치된 노외주차장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6조제1항제1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호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p> <p>별표 / 서식 [표표 1] 경일안전검사 기준인력 및 검사기준(제16조의21제1항 관련) [표표 3] 수수료표(제17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주차장지 조사결과 입력대장 [별지 제1호의2서식] 노외주차장(상차, 폐차)통보서 [별지 제1호의3서식] 노외주차장 변경통보서 [별지 제2호서식] 부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실주차장 인건비지급서) [별지 제3호서식] 삭제 <1999.3.12.> [별지 제4호서식] 부실주차장 설치부 면제신청서 및 면제서 [별지 제5호서식] 부실주차장 인건비지급 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삭제 <1999.3.12.> [별지 제7호서식] 삭제 <1999.3.12.> [별지 제8호서식] 부실주차장 통보등명세서 신청서 [별지 제8호의3서식] 기계식주차장지 안전도검사 신청서 [별지 제8호의4서식] 기계식주차장지 안전도검사서 [별지 제8호의5서식] 기계식주차장지 안전도명세서 [별지 제8호의6서식] 기계식주차장지 안전도명세서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8호의7서식] 삭제 <2004.7.1.> [별지 제8호의8서식] 기계식주차장 검사 신청서 [별지 제8호의9서식] 기계식주차장 검사확인증 [별지 제8호의10서식] 기계식주차장 사용금지표지 [별지 제8호의11서식] 기계식주차장 경일안전검사 인건비지급서 [별지 제8호의12서식] 기계식주차장지 설치기준지 및 신고확인증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10.10.29.> [별지 제10호서식] 기계식주차장지 보수업 등록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기계식주차장지 보수업 등록증 [별지 제12호서식] 기계식주차장지 보수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2016. 7. 27.> [별지 제14호서식] 기계식주차장지 보수업 동독대장 [별지 제15호서식] 기계식주차장지 보수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 [별지 제15호의2서식] 기계식주차장 사료원장 보고서 [별지 제15호의3서식] 부실주차장 안전 설치 확인서 [별지 제16호서식] 신통증명서</p> <p style="text-align: center;">● 법제처 - 16 / 16 - ● 국가법령정보센터</p>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p style="text-align: center;">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p> <p>(법률) 1980-07-04 조례 제 01264호 (법률) 1983-11-26 조례 제 01703호 (전문개정) 1986-03-08 조례 제 01967호 (법률개정) 1989-04-04 조례 제 02269호 (법률개정) 1989-11-07 조례 제 02339호 (전문개정) 1991-07-06 조례 제 02532호 (법률개정) 1992-06-24 조례 제 02638호 (법률개정) 1993-08-19 조례 제 2723호 (법률개정) 1994-11-21 조례 제 2875호 (법률개정) 1995-01-01 조례 제 2886호 (인천광역시조례명칭통합명령(관한조례)) (법률개정) 1995-01-01 조례 제 2890호 (법률개정) 1997-01-20 조례 제 3139호 (법률개정) 1998-05-11 조례 제 3244호 (법률개정) 1998-09-18 조례 제 3263호 (법률개정) 1998-10-19 조례 제 3269호 (법률개정) 1999-08-16 조례 제 3356호 (법률개정) 2001-01-08 조례 제 3502호 (법률개정) 2001-09-24 조례 제 3541호 (법률개정) 2002-03-25 조례 제 3594호 (법률개정) 2002-07-15 조례 제 3625호 (법률개정) 2004-06-08 조례 제 3769호 (법률개정) 2005-01-10 조례 제 3802호 (법률개정) 2006-01-02 조례 제 3869호 (법률개정) 2007-06-18 조례 제 4017호 (법률개정) 2008-08-04 조례 제 4189호 인천광역시 외국인 주차장 및 관련 조례 제 1부 (법률개정) 2009-01-12 조례 제 4257호 (법률개정) 2009-06-08 조례 제 4297호 (법률개정) 2009-07-27 조례 제 4318호 (법률개정) 2009-11-09 조례 제 4343호 인천광역시경로차량주차장 설치 조례 (법률개정) 2010-10-18 조례 제 4554호 (법률개정) 2012-10-02 조례 제 5152호 (법률개정) 2012-11-19 조례 제 5174호 (법률개정) 2013-05-27 조례 제 5248호 (법률개정) 2014-01-09 조례 제 5319호 (법률개정) 2014-10-31 조례 제 5409호 (법률개정) 2015-01-12 조례 제 5446호 (법률개정) 2015-01-12 조례 제 5447호 (법률개정) 2015-04-13 조례 제 5471호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법률개정) 2015-05-26 조례 제 5510호</p>	<p>(법률개정) 2015-07-27 조례 제 5532호 (법률개정) 2015-09-30 조례 제 5568호 (법률개정) 2015-12-28 조례 제 5603호 규격개선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법률개정) 2016-09-26 조례 제 5705호 (법률개정) 2017-04-17 조례 제 5793호 (법률개정) 2017-09-25 조례 제 5871호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법률개정) 2018-02-26 조례 제 5943호 (법률개정) 2019-01-07 조례 제 6064호 (법률개정) 2019-06-03 조례 제 6169호 인천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대중 및 자용한대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법률개정) 2019-07-17 조례 제 6221호 (법률개정) 2019-09-23 조례 제 6254호 (법률개정) 2020-03-30 조례 제 6362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가늠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위한 조례</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 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04, 2009-01-12></p> <p>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p> <p>제2조의2 (삭제 2015-12-26)</p> <p>제3조 (삭제 2016-09-26)</p> <p>제4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 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 한다. ② <삭제 1998-05-11> ③ 공영주차장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을 대한 100퍼센트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4-10-31> ④ 공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는 지정사 회납지부의 액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4-10-31></p> <p>제4조의2 (주차요금의 감면)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며, 통수하여야 할 주차요금의 100원 미만은 출사한다. <개정 2007-06-18, 2012-11-19, 2013-05-27, 2014-10-31, 2015-09-30> <개정 2015-12-28></p> <p>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인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래의 출도가 성하여 등록하고 타인으로부터 해당 구역에 주차하게 하는 경우 : 80퍼센트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p>
<p>과지는 연료) <개정 2018-02-26> <개정 2019-07-17></p> <p>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상근1급부터 7급까지의 국 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 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명서를 소지한 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 지한 자 <개정 2019-07-17></p> <p>다. 「고령자특별유용 등 한자지원 및 단차설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고령자특별유용증서 및 고령자특별유용증서, 고령자특별유용 장애인복지증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자 <개정 2015-07-27></p> <p>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부상자로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신설 2015-01-12></p> <p>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에 따른 한자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 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 대상자증서를 소지한 자 <신설 2015-01-12></p> <p>바. 「인천광역시 병역면제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면제자 예우대상자 <신설 2015-09-30></p> <p>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경형자동차와 이륜자동차 : 60퍼센트 감면 <개정 2007-06-18></p> <p>3.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승용차부채 용역대상자가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 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월 정기주차의 경우에는 30퍼센트를 감면한다. <2014-10-31 개정></p> <p>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차요금 : 1년간 100퍼센트 감면 <개정 2007-06-18></p> <p>가. 도청납세자료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제통상기 교부한 정식 납세증 표시(신자리)를 부착한 차량 <신설 2007-06-18></p> <p>나. 시장이 발급한 지원대상자증서를 소지한 자로서 지원대상자증서를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 우 <신설 2007-06-18></p> <p>5. 관공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권환을 환승한 적이 확인된 경우 : 50퍼센트 감면</p> <p>6. 교통카드의 요금결제기 가능한 공영주차장에서 이용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경우 : 20퍼센트 이내 에서 시장이 정한다. (단, 월정기주차의 요금은 제외한다.)</p> <p>7. 주차부담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20퍼센트 이내에서 시장이 정한다.</p> <p>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 50퍼센트 감면. 다만, 나머지 해당하는 자동차 중 전 기자동차가 총감면 금액이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연료한다. <개정 2017-04-17></p> <p>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항에 따른 자동차중대기(자동차 외부에 차용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시달 가능한 차량만 해당한다)</p> <p>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p> <p>9. 「아이디어카드」 소유자 및 3차년 이상 디자인가공이 증명서류를 지참(주민등록증, 건강보험카드 등)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면</p> <p>10.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용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요금을 월한번이 지정된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 으며, 주차요금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단, 「승용차공용이용 자동차」란 승용차공용이용을 위한 이 목적의 경우 시간제로 공용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14-10-31></p> <p>11. 인천광역시 주회택 거주자로서 「모자보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임신부가 합출한 차</p>	<p>장이 발생한이나 보조사에서 발행한 산후수유 등 증명서류를 제시한 경우 : 100퍼센트 감면 <신설 2018-02-26></p> <p>제5조 (공영주차장의 관리) ①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등 주차장이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군 수·구청장에게 그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구청장에게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시장 구청장·군 수가 청수하여 납부한 금액의 청정비율을 해당하는 금액을 청수부담금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그 교부 비율은 해당 주차장의 운영 여건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법 제4조, 제13조제1항 및 제14항, 조제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의 관리 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주차장관리에 따른 시세,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p> <p>제6조 (주차기부 금지) 노상 및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을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승차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5-12-28></p> <p>제7조 (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표시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며, 이항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3-05-27></p> <p>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리자 주소·성명, 주차장명, 차량 등)</p> <p>② 노외주차장(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의 표시의 규격은 별표 5에 따 르고,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내용 등에 관한 안내표지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 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p> <p>제7조의1 (제7조의2로 이동 1998-05-11)</p> <p>제7조의2 (허역주차구역의 지정) ①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허역주차구역은 노상주차장 중시역 해당 구역의 교통여건을 참작하여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 <개정 2015-12-28></p> <p>② 제1항의 허역주차구역에서는 해당자동차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차를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p> <p>③ 제2항에 따라 허역을 위한 해당자동차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별표4의 주차금지용 안내표지의 규격에 준한 허역주차구역 표시판을 설치하고, 제한구역·제한구역·제한사유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p> <p>제8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 장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에 갖춘 자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는 1년 단위로 주차장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에 따른 공사·공단이 주차장 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주차장 사용료의 납부방법 등을 시장이 따 르기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02]</p>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p>제9조 (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노상및노외주차장</p> <p>제10조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통하여 시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시간 측정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교부하는 방법 3. 주차표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 4. 교통카드 등 결제카드에 의한 방법 <p>5. 주차구역을 사용하는 방법</p> <p>②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은 종료 2시간 이내 에 주차하는 차량과 특별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 주차구역 및 주차시간 측정기에 의하여 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의 경우에는 따로 주차요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p> <p>③ 이이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차기작업을 돌면서 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의 사유에 해당하여 주차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불한다.<대 령 2017-04-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장의 물차 또는 운할 중단 등 주차장 관리자의 과실사유로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시 륜 기간의 주차요금을 일괄 계산하여 환불 2. 주차장 이용자가 이시, 미착, 출장 및 자동차의 고도·불차·도난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 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차 시까지의 주차요금 환불신청서를 제출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 한 이시용 기간의 주차요금을 일괄 계산한 금액의 80퍼센트 환불. 다만, 물차기간 시작 전에 환불 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 <p>제11조 (이용제한) <삭제 1999-08-16></p> <p>제12조 (주차구획선의 표시방법) ① 주차장법 및 별표 별표 7의 제4호를 준용한다. 도로의 노면, 울타리 주차장의 여간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상 따로 표시가 필요할 수 있다. <대령 2020.03.30.></p> <p>② 주차구획의 1차선 및 2차선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5510호에 제3호를 준용한다. <대령 2008-08-04, 2013-05-27, 2014-10-31, 2015-12-28></p> <p>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통상적 인 교통흐름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p> <p>제12조의2(일선부 노상주차장 설치) ① 일선부의 주차 편의를 위해 일선부 노상주차장을 설 치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주차구역구획은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일선부, 그 밖의 형 식의 경우는 황색형으로 한다.</p> <p>[본조신설 2012-10-02]</p> <p>제12조의3(관공버스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본조신설 2015-05-26 조례 제5510호] ① 시장은 국토교통부장 제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관공버스 전용주차구역을 설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공버스 전용주차구역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는 승차장</p>	<p>문이 16인 이상인 승합자동차가 주차되도록 하여야 한다. <대령 2015-12-28></p> <p>③ 제1항에 따른 관공버스 전용주차구역에는 제7조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 여야 하고, 식별이 용이하도록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p> <p>제12조의4 (영양이 및 광종이 저너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① 분영이 등 2명 이상의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일한다) 자녀를 돌보는 보호자의 주차편의를 위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주차구역구획은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일선부, 그 밖의 형 식의 경우는 황색형으로 한다.</p> <p>[본조 신설 2019-01-07]</p> <p>제13조 (노외주차장의 설치신규) <삭제 1995-01-01></p> <p>제14조(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①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대령 2015-07-27></p> <p>가. 주차대수 규모가 200 이상 500 미만인 경우: 한 칸 이상</p> <p>나. 주차대수 규모가 500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p> <p>② 시설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0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4퍼센트를 포함 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차수 및 기준은 제20조를 준용한다. <대령 2015-07-27><대령 2015-12-28></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상한선 정해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몫수는 이를 한 칸 으로 본다. <대령 2015-07-27></p> <p>제14조의2(단지토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 토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대령 2012-11-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역개발촉진법」에 따른 역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상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입지개발사업 6.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제2조에 따른 도시개발법)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사업 중 「도시개발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에 관한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개발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것 <p>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토성사업 등의 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15호에 따른 공동주택법, 「역개발촉진법」에 따른 도시개발법 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것</p> <p>③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것</p> <p>④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것</p> <p>⑤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것</p> <p>⑥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것</p> <p>⑦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것</p> <p>⑧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것</p> <p>⑨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것</p> <p>⑩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것</p> <p>⑪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것</p> <p>⑫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것</p> <p>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것</p> <p>⑭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것</p> <p>⑮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것</p> <p>⑯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것</p> <p>⑰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것</p> <p>⑱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것</p> <p>⑲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것</p> <p>⑳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것</p> <p>㉑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것</p> <p>㉒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것</p> <p>㉓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것</p> <p>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것</p> <p>㉕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것</p> <p>㉖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것</p> <p>㉗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것</p> <p>㉘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것</p> <p>㉙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것</p> <p>㉚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것</p> <p>㉛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것</p> <p>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것</p> <p>㉝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것</p> <p>㉞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것</p> <p>㉟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것</p> <p>㊱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것</p> <p>㊲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것</p> <p>㊳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것</p> <p>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것</p> <p>㊵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것</p> <p>㊶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것</p> <p>㊷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것</p> <p>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것</p> <p>㊹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것</p> <p>㊺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것</p> <p>㊻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것</p> <p>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것</p> <p>㊽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것</p> <p>㊾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것</p> <p>㊿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것</p>
<p>성등이 공급 등에 대하여 사용 또는 운수·구동장치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p> <p>② 단지토성사업 등의 개발사업시행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 며, 법 제17조에 따라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시설유지 등 관할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야 한다.</p> <p>③ 단지토성사업 등의 공동주택개발 수임시 별첨된 용역 주차수급분석 결과에 의거하여 주차장 공급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별첨된 용역 공동주택개발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주차구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01-12] <제14조의2에서 이후 2009-06-08></p> <p>제14조의4(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제14조로 이행]</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부 설 주 차 장</p> <p>제15조 (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법"이라 함)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을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대령 2013-05-27, 2016-09-28></p> <p>② 국토교통부장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국토교통부장 제 6조제4항에서 정한 시설은 하고, 주차장 총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40퍼센트를 기준으로 한다. 지역의 주차수요 및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50퍼센트의 비율의 범위 내에서 군·구로별로 달리 정 할 수 있다. <대령 2008-08-04, 2013-05-27, 2014-10-31></p> <p>③ 일선부 전용주차구역에 대하여는 제12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2-10-02></p> <p>④ 주차장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차량차단차의 종류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라 지정한 관리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6-09-28></p> <p>제16조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 <삭제 1997-01-20></p> <p>제17조 <삭제 2016-09-26></p> <p>제18조 (비밀부보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삭제 2001-01-08></p> <p>제19조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의 예외) <삭제 1995-01-01></p> <p>제20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등) ①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설치차수 및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 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를 준용한다.</p> <p>제21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보조) 시장은 군·구·자치단체가 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의 주 택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것 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개발하려는 자에게 설치 또는 시설개선 비 용의 일부를 보조하고자 할 경우 시 도시교통사업개발사업제로부터 그 보조금액을 「인천광역시 재정운 영 조례」에 따라 군·구·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01-08] <대령 2006-01-02> <대령 2009-1-12> <대령 2015-4-13> <대 령 2015-7-22>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p> <p>제21조의2 (용차 등) ① 시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요건을 갖추어 용차를 신청할 경 우 자격을 심사하여 시 도시교통사업개발사업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용차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용차의 범위, 신청자의 자격, 용차의 방법 및 신청조건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1조의3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예외의 제한) ① 인천광역시청 및 소속기관의 청사(이하 "공공기관"이라 함)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서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면제하고도 인출할 때 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p>	<p>⑤ 주차요금, 이용시간, 이용대상차량, 기타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규칙 및 별도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보 칩</p> <p>제22조 (권한의 위임) ① 법 제7조제1항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권한을 군·구·자치단체에 위임한다. 다만, 위임내용 중 「관공버스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한 관 공버스구역은 제외하며, 「도로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폭 200미터 초과 도로에 노 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대령 2007-06-18, 대령 2009-01-12, 대령 2009-11-06, 대령 2014-10-31></p> <p>② 법 제7조·제8조·제9조제2·제3호·제10조·제12조·제13조·제14조에 따른 사항의 관할 중 관 공주차구역 안에서 발행하는 사무에 관한 권한은 관공주차구역통제에 위임한다. <신설 2009-01-12></p> <p>[제22조에서 이후,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후 2012-10-02]</p> <p>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4조에서 이후 2012-10-02]</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1983-11-26 조례 제1703호)</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1986-08-08 조례 제1967호)</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1989-04-04 조례 제2269호)</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1989-11-07 조례 제2339호)</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1991-07-06 조례 제2532호)</p> <p>① (이행규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967호 1989-08-06)</p>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p>부칙 <1992-06-24 조례 제26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1993-08-19 조례 제2723호></p> <p>부칙 <1994-11-21 조례 제2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1995-01-01 조례 제2886호></p> <p>부칙 <1995-01-01 조례 제2890호></p> <p>부칙 <1997-01-20 조례 제3139호></p> <p>부칙 <1998-05-11 조례 제3246호> 이 조례는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1998-09-18 조례 제3263호></p> <p>부칙 <1998-10-19 조례 제3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1999-08-16 조례 제3356호></p> <p>부칙 <2001-01-08 조례 제3502호></p> <p>부칙 <2001-09-24 조례 제3541호></p> <p>부칙 <2002-03-25 조례 제3594호></p>	<p>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2002-07-15 조례 제362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3769호 2004-07-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설을 설치허가를 득하였거나, 허가를 신청 중에 있는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부칙 <제3802호 2005-01-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설을 설치허가를 득하였거나, 허가를 신청 중에 있는 주차장건축 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부칙 <제3869호 2006-01-0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설을 설치허가를 득하였거나, 허가를 신청 중에 있는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부칙 <제4017호 2007-06-1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한의 위임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 관리를 위탁한 노상주차장인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까지는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한다.</p> <p>부칙 <제4189호 2008-08-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4257호 2009-0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인된 단지조성사업등의 주차장 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승인된 단지조성 사업계획 상의 주차시설 공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에 계약한 노상주차장 부지는 제외한다.</p>
<p>부칙 <제4297호 2009-06-08> 이 조례는 200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4318호 2009-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4343호 2009-11-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2조 중 “「광역시유구역의 지형 및 운량에 관한 법률」을 각각 「광역시유구역의 지 형 및 운량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⑥-⑪ (생략)</p> <p>부칙 <제4854호 2010-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5152호 2012-10-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5174호 2012-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5246호 2013-0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5319호 2014-01-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위탁 중인 공용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위 탁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공용주차장에 대하여는 제4조의2제3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p>	<p>부칙 <제5406호 2014-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위탁 중인 공용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탁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공용주차장에 대하여는 제4조의2제3호 및 제4조의2제10호의 개정에도 불 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p> <p>부칙 <제5446호 2015-0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5447호 2015-01-12> 이 조례는 201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제15조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 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건축물의 강관심·건축심의신청, 건축신고 및 용도변 경 등을 포함한다.)을 최초로 신청한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 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건축물의 강관심·건축심의신청, 건축신고, 용도변경 및 설계변경 등을 포함한다.)을 받았거나, 신청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15조 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칙 <제5471호 2015-04-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p> <p>부칙 <제5510호 2015-0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5532호 2015-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5568호 2015-09-30></p>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5601호 2015-12-28></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5705호 2016-09-26></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제15조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건축물의 경관심사·건축심의의신청, 건축신고 및 용도변경 등을 포함한다)을 최초로 신청한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건축물의신청, 건축신고, 용도변경 및 설계변경을 포함한다)을 받았거나, 신청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15조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칙 <제5722호 2016-11-14></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주민참여위원회의 위원 임기에 대한 특례) (생략) 제4조(경과조치)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하 생략)</p> <p>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1조 중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p> <p>(이하 생략)</p> <p>제6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생략)</p> <p>부칙 <제5793호 2017-04-17></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5871호 2017-09-25></p> <p>부칙 <제5943호 2018-02-26></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6064호 2019-01-07></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6221호 2019-07-17></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6254호 2019- 9-23></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 허가 등(건축물의신청, 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최초로 신청한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 허가 등(건축물의신청, 건축신고, 용도변경 및 설계변경을 포함한다)을 받았거나, 신청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칙 <제6362호 2020-03-30></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	---

인천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

<p style="text-align: center;">인천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p> <p style="text-align: center;">(제정) 2020-12-31 조례 제 6535호</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공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 감소와 주차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경제적·사회적 이익 실현을 도모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공간"이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주차단위구역 등 주차가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2. "주차공유"란 주차공간을 사용자 권한을 가진 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주차공간의 사용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3. "주차공유 플랫폼"이란 실시간으로 주차가 가능한 주차공간의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오프라인 환경을 말한다. <p>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차공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4조(학무) ① 인천광역시청(이하 "시장"라고 한다)은 주차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구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p> <p>제5조(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천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4.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의 파급에 관한 사항 5.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인천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에 따른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차공유 용역자 등 시간대 관련 기관 및 전문가, 군·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주차공유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제6조(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운영 2. 주차공유에 관한 인식개선 및 홍보활동 등 위한 홍보 3.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제7조(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주차공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협력하여 주차공유 플랫폼을 개발·운영·제공·활용할 수 있다.</p> <p>②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주차구획을 제공하는 거주자권을 주차구획 변경자에게는 거주자권을 주차구획 재배치시 기능을 추가하거나 책임식 모인드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p>	<p>를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 하지 아니한다.</p> <p>제8조(군·구 지원)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 또는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자재 사업을 추진하는 군·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추진 경과 등에 따라 군·구별로 차등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제9조(주차공유 운영 협력의 관계) 시장은 시 및 군·구의 주차공유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하여 주차공유 관련 정보통신 인프라 및 데이터의 등을 통하여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 대상,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p> <p>부칙 <제6535호, 2020.12.31.></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	--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p style="text-align: center;">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p> <p style="text-align: center;">[1999.01.11 조례 제513호]</p> <p style="text-align: center;">(개정) 1999.10.16 조례 제554호</p> <p style="text-align: center;">2000.11.23 조례 제618호</p> <p style="text-align: center;">2005.01.17 조례 제779호</p> <p style="text-align: center;">2005.06.19 조례 제796호</p> <p style="text-align: center;">2005.12.26 조례 제819호</p> <p style="text-align: center;">(일부개정) 2006.12.01 조례 제 860호</p> <p style="text-align: center;">(일부개정) 2008.11.17 조례 제 977호</p> <p style="text-align: center;">(일부개정) 2008.12.26 조례 제 978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p> <p style="text-align: center;">(일부개정) 2011.01.07 조례 제1120호</p> <p style="text-align: center;">(일부개정) 2014.09.29 조례 제1233호</p> <p style="text-align: center;">(일부개정) 2015.03.18 조례 제1249호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p> <p style="text-align: center;">(일부개정) 2016.07.08 조례 제1455호</p> <p style="text-align: center;">(일부개정) 2017.03.29 조례 제1514호</p> <p style="text-align: center;">(일부개정) 2017.11.13 조례 제1536호</p> <p style="text-align: center;">(일부개정) 2018.10.02 조례 제1594호</p> <p style="text-align: center;">(일부개정) 2019.11.18 조례 제1717호</p> <p style="text-align: center;">(일부개정) 2020.05.18 조례 제1757호 (여러문 한자어 병행에 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병합 및 소송 고문 전문 조목 등 일부개정 조례)</p> <p style="text-align: center;">(일부개정) 2020.06.29 조례 제1793호</p> <p style="text-align: center;">(일부개정) 2020.06.29 조례 제1794호</p> <p style="text-align: center;">(일부개정) 2020.11.09 조례 제1817호</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26, 2014.9.29, 2016.7.8)</p> <p>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p> <p>제3조(시효) (2000.11.23)</p> <p>제4조(주요요건 및 기준) ①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요요건은 별표 13 같다. 이 경우 주요요건의 합계 등 총수요량을 모두 합산한 주요요건의 100% 미만은 아니한다. (개정 1999.10.16, 2014.9.29, 2019.11.18, 2020.6.29.)</p> <p>② 공영주차장관리자는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주요요건 외에 그 주요요건(노외주차장의 안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 주차요건)에 대한 100퍼센트의 가산요건을 합산하여 부과한다.(개정 2000.11.23, 2014.9.29, 2016.7.8, 2017.3.29, 2020.6.29.)</p> <p>③ 공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요요건과 제2항에 따른 가산요건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p>	<p>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개정 2014.9.29)</p> <p>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물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00.11.23, 2006.12.1, 2016.7.8, 2020.6.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제1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인자동차 등록이 종료되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1일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개정 2000.11.23, 2014.9.29, 2016.7.8, 2017.3.29) 2. 대기량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60퍼센트 감면 (개정 2006.12.1, 2014.9.29, 2016.7.8) 3. 자가용승용차 부차 참여자량 ; 50퍼센트 감면(단, 물 기증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11.23, 2006.12.1, 2014.9.29) 가. (식료 2014.9.29) 나. (식료 2014.9.29) 다. (식료 2014.9.29) 4. 식료 <2014.9.29> 5. 총승차량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권출발 승용차 확인란 경우 ; 50퍼센트 감면 (개정 2014.9.29) 6.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주차요금 감면종류 부착차량 ; 1일 2시간 이내 100퍼센트 감면(자원봉사활동 6시간 초과자에 대하여 시간초과 다음 연도부터 2시간 차감) (신설 2005. 1.17, 개정 2008.11.17, 2014.9.29, 2016.7.8) 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 50 퍼센트 감면. 다만, 낙후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가 충전용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신설 2006.12.1, 개정 2014.9.29, 2016.7.8, 2017.3.29, 2018.10.2) 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화물자동차,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의 등의 표지를 부착한 차량 나.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 친화적 자동차 8. 65세 이상 노인운전자 자가용전 차량 ; 20퍼센트 감면 (신설 2006.12.1, 개정 2014.9.29) 9. 「아이오이카드」 소유자 및 3차년 이상 다자녀가정이 증명서류를 지참(주인독립통분, 관리보통카드 등)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면 (신설 2014.9.29) 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제19조에 따른 전통시장 육성사업을 위하여 전통시장을 이용한 고객여 사용자자를 이용한 경우(전통시장에서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함) ; 최초부터 1시간까지 면제(신설 2014.9.29, 개정 2016.7.8, 2018.10.2) 11. 시중에 고철한 승용차공용이륜 자동차는 물 기증자를 발행하여 지정된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으나, 주차요금은 50%감면으로 감면(여기서 "승용차공용이륜 자동차"란 승용차공용이륜 차량이 유통할 경우 시간제로 공영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17.11.13) 12.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생활 개선차량 「도요모터카」 제2차제1호에 따른 일반부가 합승형 차량 이 발행이나 모토스포츠 발행한 산악스포츠 등 증명서류를 소지한 경우 ; 100퍼센트 감면(신설 2018.10.2) 13.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100퍼센트 감면(이 경우 "노상주차장"으로 한함 천 ○) <신설 2019.11.18> <p>○ 주차요금을 서구 지역화폐로 징수할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감면 외에 50퍼센트 범위에서 추가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11.9></p> <p>○ 제1항 및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역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구청장이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p>																								
<p>2020.6.29> (출전 제2호에서 이동 <2020.11.9>)</p> <p>제6조(공영주차장의 관리) 법 제8조 및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인명, 물품, 장비 확보하여야 하며 주차장관리에 따른 시비,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9.29, 2016.7.8)</p> <p>제7조(주차기부의 금지)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개정 2014.9.29, 2016.7.8, 2019.11.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탈취상 또는 인화성 물질을 휴대한 차량 3. 식료 (1999.10.16) 4. 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차장 안에서 영입행위를 하는 경우 (개정 2016.7.8) 5. 주차장의 주요요건을 미납한 경우 <신설 2019.11.18> <p>제8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존용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4를 따른다.(개정 2014.9.29, 2016.7.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요 결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개정 1999.10.16, 2014.9.29) <p>② 노외주차장(구형상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표지의 규격은 별표 5에 따르고, 앞면의 이용에 제공되는 내용 등에 관한 안내표지를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존용한다.(개정 1999.10.16, 2014.9.29, 2017.3.29)</p> <p>③ 노외주차장(구형상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9.10.16, 2014.9.29)</p> <p>④ 주차장표지, 안내표지의 규격, 기법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6를 따른다.(개정 2016.7.8)</p> <p>제9조(하역주차구역의 지정)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역을 노상주차장 중에서 해당구역의 교통여건을 참작하여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9.29, 2016.7.8)</p> <p>② 제1항의 하역주차구역에서는 총중량차 및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개정 2014.9.29, 2016.7.8)</p> <p>③ 제2항에 따른 하역을 위한 자동차 외의 자동차 주차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주차장이용안내표지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역 표지를 설치하고, 경찰차량·피해구급차·폐차시간·폐차시간 등 을 영기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3, 2014.9.29, 2016.7.8)</p> <p>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구청장이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같다.(개정 2000.11.23, 2014.9.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 또는 구·군에 설치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이나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p>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부여하여야 할 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9.29)</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5%;">구 분</td> <td style="width: 25%;">선 정 방 법</td> <td style="width: 25%;">납부하여야 할 금액</td> <td style="width: 25%;">납 부 방 법</td> </tr> <tr> <td>가. 제1항제1호의</td> <td> 위탁자가 총하는</td> <td> 위탁자가 총하는 금액</td> <td> 위탁자가 총하는</td> </tr> </table>	구 분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 부 방 법	가. 제1항제1호의	위탁자가 총하는	위탁자가 총하는 금액	위탁자가 총하는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5%;">법 안</td> <td style="width: 25%;">방 법</td> <td style="width: 25%;">방 법</td> <td style="width: 25%;">방 법</td> </tr> <tr> <td>나. 제1항제2호의</td> <td> 위탁자가 총하는</td> <td>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td> <td> </td> </tr> <tr> <td>다. 제1항제3호의</td> <td> 방 법</td> <td> 도로 폭하는 면적, 공유재산대부</td> <td> 3개월 단위로 선납</td> </tr> <tr> <td>가. 나 이외의 경우</td> <td> 경정입찰</td> <td> 입찰가액</td> <td> 3개월 단위로 선납</td> </tr> </table> <p>제11조 식료(1999.10.16)</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p> <p>제12조(노상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는 노상주차장은 도로 폭 20미터 미만의 도로로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로폭 20미터 초과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4.9.29)</p> <p>[단서신설 2017.3.29]</p> <p>제12조의2(전용주차구역의 설치·운영)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주차가 도로에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주차수요에 따라 2차로 이상으로 인접할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로 할 단위로 또는 분기 단위로 주차요금 차감을 차감에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12.26, 2014.9.29, 2016.7.8)</p> <p>②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 대상차량, 운영시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참하여 이를 인천광역시 서구 구청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9.29, 2016.7.8)</p> <p>③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설치구간에는 별표 4의 주차장이용안내 표지판에 관한 전용주차장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9.29)</p> <p>④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주차요금은 별표 1의 규격에 따른 4시간 이하의 주차요금을 적용한다.(개정 2014.9.29, 2017.3.29)</p> <p>[본조신설 2000.11.23]</p> <p>제13조(공영주차장의 주요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현금, 서구지역화폐, 금액기공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총수입금의 2%를 초과하여 징수한다. 다만, 위탁하여 관리할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징수방법을 참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4.9.29, 2017.3.29, 2019.11.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차량 출몰시기에 따른 방법(개정 2017.3.29) 2. 주차차량 고부하는 방법 3. 주차표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 4. 선납주차권을 사용하는 방법 <신설 2019.11.18> <p>○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개정 2014.9.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료(1999.10.16) 2.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인 휴게시간 1시간 이내 주차하는 차량 및 운영시간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차량과 총액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개정 2000.11.23, 2019.11.18) 3.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입차하면서 운전자가 선납을 희망할 경우(운영시간 종료시까지 요금을 선납으로 징수하고 출차 시 실제 주차요금으로 환산한다) 	법 안	방 법	방 법	방 법	나. 제1항제2호의	위탁자가 총하는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		다. 제1항제3호의	방 법	도로 폭하는 면적, 공유재산대부	3개월 단위로 선납	가. 나 이외의 경우	경정입찰	입찰가액	3개월 단위로 선납
구 분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 부 방 법																						
가. 제1항제1호의	위탁자가 총하는	위탁자가 총하는 금액	위탁자가 총하는																						
법 안	방 법	방 법	방 법																						
나. 제1항제2호의	위탁자가 총하는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																							
다. 제1항제3호의	방 법	도로 폭하는 면적, 공유재산대부	3개월 단위로 선납																						
가. 나 이외의 경우	경정입찰	입찰가액	3개월 단위로 선납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p><신설 2016.11.18.></p> <p>㉔ 다만, 유휴지 주차권을 등록한 자가 다른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주차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불충분하다.(개정 2014.9.29, 2016.7.8, 2016.11.18.)</p> <p>1. 주차장의 설치 또는 운영 중의 주차장 관리자의 과태처로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임시 용 기간의 주차요금을 일괄 계산하여 환불 <개정 2016.11.18.></p> <p>2. 주차장 이용자가 이사, 이적, 장기출장 및 자동차의 매도, 폐차, 도난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의 주차요금 환불신청서를 제출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 임시용 기간의 주차요금을 일괄 계산한 금액의 80퍼센트 환불, 다만, 유휴지기간 시작 전에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개정 2014.9.29, 2016.7.8, 2016.11.18.)</p> <p>제14조(노숙자차량 부대시설의 종류 등) 국토교통부장관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숙자차량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국토교통부장관 제6조제4항에서 정한 시설 중 고, 주차장 총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35%이하로 한다.(개정 2008.12.26, 2014.9.29, 2016.7.8, 2017.3.29)</p> <p>[전문개정 2000.11.23]</p> <p>제15조(주차구역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주차 용량 표시 방법 7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여,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종류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구획하여 도로를 할당 수 있다.(개정 2014.9.29, 2020.5.18.)</p> <p>② 주차구역의 1차로 표준규격은 국토교통부장관 제3조를 준용한다.(개정 2008.12.26, 2014.9.29, 2016.7.8)</p> <p>③ 노숙자차량은 평행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통행성 및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4.9.29)</p> <p>④ 너비 6미터 미만 도로에도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써 구획선이 교통 혼잡을 막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노숙자차량을 설치할 수 있다.(신설 1999.10.16, 개정 2017.3.29)</p> <p>제16조(의자대인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① 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숙자차량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대수 규격이 200인 이상 500인 미만인 경우: 2인 이상 2. 주차대수 규격이 500인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이상 이상 ② 구획선이 설치하는 노숙자차량의 주차대수 규격이 5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4%이상인 장 의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가 가장 가까운 장소 2. 화재주방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④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할 것 2. 주차장 바닥면에는 굴곡이 없는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 중 소수층 이상의 물주는 비율 10%로 한다. <p>[본조신설 2017.3.29]</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부설주차장</p> <p>제17조 석회 <2000.11.23></p> 	<p>제17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 ①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 제6 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등의 전용주차의 설치기준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0조를 준용하고, 전용 주차는 별표 10에 같다.(개정 2014.9.29, 2017.3.29, 2018.10.2.)</p> <p>② 석회 <2017.3.29></p> <p>③ 석회 <2017.3.29></p> <p>[본조신설 2011.11.7]</p> <p>[개정규칙 2017.3.29]</p> <p>제18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인근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인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한에 같다.(개정 2014.9.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로거리 600미터 이내(개정 2014.9.29) 2. 해당 시설물이 소재하는 동(행정동)을 위하여 이 법 이 호에서 고다) 및 해당 시설물과의 통행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인접구역에 관한 통행(개정 2014.9.29, 2016.7.8) <p>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개정 2014.9.29)</p> <p>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숙자차량부설주차장을 부지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개정 2014.9.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만 부설주차장부설주차장의 주차구역 1연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 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율 곱하여 산정한다. 2. 부설주차장부설주차장의 주차구역 1연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숙자차량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 윌(토지가격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개정 2014.9.29) 3.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 한 가격으로 하되, 구획선이 불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4.9.29, 2017.3.29) 4. 건축비는 해당 노숙자차량(구획선이 설치한 노숙자차량)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관리비 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건축법령」 제 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충하여 산정한다.(개정 2014.9.29, 2017.3.29) ② 구획선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 표 8의 공영주차장 부설비용을 부과하여 하며, 부설비용이없는 공영주차장 부설비용을 부과한 는 날부터 설치비용으로 납부한 금액을 별표 1의 설치구분에 따라 통행기주방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 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공영노숙자차량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주차 장의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유료 공영노숙자차량의 금액 및 요금을 준용한다.(개정 2014.9.29, 2016.7.8) ③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숙자차량부설주차장을 부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다만, 구획선이 불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 할 수 있다.(개정 2014.9.29, 2016.7.8)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만 건축물부지의 주차구역 1연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 설주차장의 주차대수율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역 1연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격에 주차구역 1연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 한 가격으로 하되, 구획선이 불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p>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4.9.29, 2016.7.8)</p> <p>4. 주차구역 1연의 면적은 18㎡를 하되, 총 주차대수 규격이 80인 이상인 경우에는 12㎡로 한다.</p> <p>[전문개정 2000.11.23]</p> <p>제19조의2(기계차 주차장치의 설치) ① 법 제19조의13 제4항에 따라 기계차주차장의 수급 실적 및 이를 특산 등을 고려하여 기계차주차장치의 설치가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주차 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0조 제2항 다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기계차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 분의 1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준공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등도 변경할 때에는 그 중속 또는 등도변경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p> <p>[본조신설 2017.3.29]</p> <p>제19조의3(기계차주차장의 설치 기준) 생활수칙서, 안내시설 중 요르스탈의 부설주차장 기계차 주차장은 설치할 경우에는 기계차주차장을 합설주차대수의 30%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7.11.13]</p> <p>제20조 석회(2000.11.23)</p> <p>제21조 석회(1999.10.16)</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보칙</p> <p>제22조(용차권) (개정 2014.9.29)</p> <p>① 구획장은 노숙자차량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요건을 갖추어 용차권을 신청할 경우 자격을 심사하여 주차장별최대 대량의 범위에서 주차장별최대 용차권을 할당할 수 있다.(개정 2016.7.8)</p> <p>② 제1항의 용차의 범위, 신청자의 자격, 용차의 방법 및 신청조건 등의 사항은 규격으로 정한다.(개정 2016.7.8)</p> <p>제22조의2(보조의 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주차장별최대용차권 설치비용의 일부만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같다.(개정 2014.9.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자가 기존의 단체주택, 다세대 주택 또는 연립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철 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2.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비중·보안시설 등을 설 치하고자 하는 경우 3. 학교건물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비중·보안시설 등을 설치 하려고 하는 경우 (단, 20년 이상) <p>[본조신설 2000.11.23, 개정 2005. 5.19]</p> <p>4.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공동주택관 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개정 2005.12.26, 2014.9.29, 2017.3.29)</p> <p>제22조의3(보조금의 지원방법) ①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구획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구 획장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보조금의 지급결자, 보조한도 및 그 밖의 보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획장이 따로 정하는 바 에 따른다.(개정 2014.9.29)</p> <p>③ 구획장은 보조금의 관리·분수에 관한 사무의 일부만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 고는 그 밖의 관공기관 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7.8, 2017.3.29)</p> <p>[본조신설 2000.11.23]</p>	<p>제22조의4(보조금의 반환) ①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에는 이를 차액 없이 구획장에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9.29, 2016.7.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2.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폐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준공과 보조금 수령부터 반환일까지 정한 이들을 제외한 이자를 계산하여 환급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9.29, 2017.3.29)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보조금(이자를 포함한다)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 방자치단체의 예산 외에서 회수한다.(개정 2014.9.29, 2016.7.8) <p>[본조신설 2000.11.23]</p> <p>제23조(과징금처분) ① 석회 (1999.10.16)</p> <p>② 구획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과 통지에 납부유지해 의무행위의 종 료,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정소를 명시한 납부유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 부유지서 발송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4.9.29, 2016.7.8)</p> <p>③ 구획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유지서 결정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날을 정하여 과징금을 징수하여 징수한다.(개정 2014.9.29, 2016.7.8)</p> <p>④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재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1999.10.16, 2014.9.29)</p> <p>제23조의2(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 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9.29, 2015.3.18, 2016.7.8)</p> <p>[본조신설 2000.11.23]</p> <p>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7.8)</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1999.11.11 조 제513호)</p> <p>이 조례는 공포후 200일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1999.10.16 조 제554호)</p> <p>①(시행령)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이사항) 관련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자 시효를 허가 등을 할 때 설치유지거나 시설을 설치하기 신청중인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의한다.</p> <p>③(행정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하 다)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2000.11.23 조 제631호)</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2005. 5.19 조 제796호)</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2005.12.26 조 제819호)</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p>부칙(2006.12. 1 조례 제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2008.11.17 조례 제9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2008.12.26 조례 제9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2011.11.7 조례 제1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2014.9.29 조례 제12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2015.3.18. 조례 제1249호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5호에 따른 "그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고 조차)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과부보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생략 ③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④제2조제2호 중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p> <p>부칙(2016.7.8 조례 제1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2017.3.29 조례 제15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2017.11.13 조례 제15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고 조차)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건축허가·건축신고 등(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신청 중인 건축물, 건축허가(건축신고, 용도변경 및 용적변경을 포함한다)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은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p> <p>부칙(2018.10.2. 조례 제15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2020.5.18. 조례 제1757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2020.6.29. 조례 제17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2020.6.29. 조례 제17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2020.11. 9. 조례 제1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	---

[별표 1] <개정 2020.6.29.>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4조제1항 관련)

구 분	1회 주차권		전일주차권	월정기주차권	
	최초30분까지	최초30분이후 15분당		주간	야간
1급지	1,000원	500원	10,000원		100,000원
2급지	600원	300원	6,000원	60,000원	30,000원
3급지	400원	200원	4,000원		40,000원
4급지	300원	150원	3,000원		30,000원

- 비 고 -

- 주차요금표는 규정장이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 주차장 운영에 따른 적용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되 주차장별 이용자 특성 등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가. 주간 : 09:00부터 19:00까지
나. 야간 : 1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 전일주차권 및 월정기주차권은 노외주차장에 한하며,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지역실정 및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위임, 위탁 시)가 따로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급지 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난을 참작하여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위임, 위탁 시)가 정한다.
- 노외주차장과 전일주차가 허용되는 노상주차장에 한하여 5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에는 전일요금으로 징수한다.
- 1구획은 **극도로좁은일 예외조치에 따른** 표준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적용 구획수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 주차요금의 특례
가.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위임, 위탁 시)는 인근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기요금을 기준으로 할증 또는 할인할 수 있으며, 할증 및 할인요금은 각 기준요금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나.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월정기주차권의 경우, 박차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차장 인근 거주자로 확인된 경우와 월 10대 이상의 다수 계약임소 등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3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다.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급지를 구분하지 않고 1급지 전일주차권 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회당 정액요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라. 노외주차장의 야간시간 이용요금은 50퍼센트 할인 금액으로 한다.
마. 주차요금을 서구지역화폐로 징수할 경우에는 5퍼센트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바. 「인천광역시 서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구청사의 월 정기주차권을 제한함으로써 인근 공영주차장을 대체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다.

[별지 서식]

<p>인천광역시 서구 개방주차장 <input type="checkbox"/> 지정 신청서 <input type="checkbox"/> 보조금 지원 신청서</p>		
신청인	성명 (법인·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p>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 한함</p>		
개발유형	<input type="checkbox"/> 신규개발 <input type="checkbox"/> 재개발 (회)	
이용요금	<input type="checkbox"/> 무료 <input type="checkbox"/> 유료 (주차요금)	
개발기간		
개발면적	<p>면 (육내 면, 육외 면, 기타 면)</p>	
개발시간	<p>* 요일별, 시간별, 설정별 상세히 기재 바랍니다.</p>	
사업명	<p>보조금 지원 신청 내용</p>	
	<p>사업비 (단위: 천원)</p> <p>총 계 자체부담 지원신청 착수에정원 완료예정일</p>	<p>사업기간</p>
<p>「인천광역시 서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소유자등 (서명 또는 인)</p>		
<p>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p>		
구미서류	<p>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p>	
	<p>1. 개발비용지원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근거 포함) 1부. 2. 사업비 중 자체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발의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 - 관계법령 및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른 서면동의서 1부.</p>	

서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관리조례

인원광역시 서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관리 운영 조례

(附則) 2019.07.11 조례 제1693호
(전부개정) 2020.12.21 조례 제184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제19조제15항에 따라 개방주차장의 지정, 관리·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의 같다.
1. "개방주차장"이란 인공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함)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19조제13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이 무료 또는 유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주차장을 말한다.
2. "소유자"란 어떤 시설물과 부설주차장을 소유한 자 또는 관리하는 자(소유자의 위임·동의 등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3. "이용차"란 개방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와 운전자와 동승자를 말한다.

제3조(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 「주차장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호나목에 따라 개방주차장으로 지정을 필요로 하는 시설물인 공동주택, 종교시설 등을 말한다.

제4조(개방주차장 지정 권) ① 구청장은 주차난 해소가 필요한 지역의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개방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유자 등이 개방주차장의 지정 또는 개방명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방주차장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과 개방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방주차장 소재지 및 개방기간에 관한 사항
 2.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는 주차면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지원 및 환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개방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④ 협의사항(기간 연장을 포함한다)을 변경하거나 또는 개방기간 만료 이후 재개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5조(개방주차장 지정 기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 할 수 있다. 다만, 개방주차장을 유료로 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인공광역시 서구 개방주차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1. 개방하는 주차면의 "개방주차장"이란 한(가)이 5년 이상할 것
2. 개방주차장을 하루 2시간, 주 5일, 연간 30일 계속 개방할 것
3. 부설주차장의 일부를 개방하는 경우 개방주차장은 일반주차장과 구별할 것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부설주차장의 전용일 구간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 접하는 경우
나, 차량의 교통이 곤란한 도로에 접하는 경우
 2. 해당 지역의 주차장이 충분한 확보되어 있거나 주차가 곤란한 지역의 부설주차장인 경우
 3. 주차수요를 해소하기 어려운 외곽지역 또는 미개발지역인 경우
 4. 부설주차장 위치, 시설의 구조·설비 등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개방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어렵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보조금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함)을 예산의 범위에서 소유자등에게 보조·지원할 수 있다.

1. 개방주차장 시설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개방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 ③ 보조금의 교부 신청·결정·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 외에는 「인공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개방주차장 지정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공광역시 서구 개방주차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다.

1. 개방주차장 보조금 지원기준 결정
2. 유료로 운영되는 개방주차장의 지정
3. 개방주차장 지정 우선순위 결정(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4. 개방주차장 미지정에 따른 의사신청(제2호는 제외한다)
5. 개방주차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추천한다.
② 당연직 위원으로 개방주차장 담당과장, 주차, 교통, 공동주택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공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함)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주차, 교통, 공동주택 관련 업무를 하는 행정기관 공무원
3. 주차, 교통, 도시계획, 건축, 주택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과적위원 2명씩을 추천하고, 총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의 서기를 둘 수 있고, 이 경우 간사는 개방주차장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에 상당한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제10조(관리 및 운영 등) ① 개방주차장은 소유자등이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7호나목에 따라 구청장이 지칭하여 개방주차장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은 자(이하 "관리자"라 함)가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유료 개방주차장의 주요요건인 「인공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 공동주차장 등급표 3급지 요건의 범위에서 구와 소유자등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개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개방할 수 있으며, 제8호의 방법으로는 개방하는 경우에는 관리자로 이용하는 사람 역장을 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역장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 주민 누구나 이용하도록 개방
2. 거주 우선 주차장으로 개방
3. 상용주차장으로 개방
- ④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개방주차장의 깨끗하고 쾌적한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료 개방주차장의 청소관리 업무를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수입의 처리 등) ① 개방주차장의 주요요건은 소유자등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인공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함)의 수입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1항 단서에 따른 수입 범위에서 개방주차장 사용에 따른 보상금 공동주택의 소유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안내표지판 설치) 관리자는 이해자가 없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이해 안내표지판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안내표지판 구역 등의 통일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직접 설치하고 이를 관리자에게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이용 제한 등)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방주차장 이용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2. 자동차의 규격 및 구조상 주차가 곤란한 경우
3. 탈회성 또는 인회성 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4. 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차장 안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이용차 또는 관계자가 개방주차장이 속한 시설물(부차물 포함한다)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
6. 그 밖의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4조(차량의 이동제한 등) ① 관리자는 개방주차장에 주차할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법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이동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1. 개방주차장으로 지정된 주차구역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2. 개방주차장의 개방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제한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및 제36조를 준용하며, 「인공광역시 공간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인공광역시 공간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5조(피해배상 및 손해배상 책임 등)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 또는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 부담을 진다.

1. 부설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 등에 피해를 입힌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힌 경우
- ③ 유료 개방주차장 관리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법 제17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9.7.11 조례 제16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2.21 조례 제1840호)

- ① (시행령)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처음부터)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와 개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개방 중인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개방주차장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주차공유사업 대상 건축물

- 서구 건축물대장 및 주차실태조사를 통해, 서구 관내 부설주차장 공유가 가능한 주차면 20면 이상 건축물의 검토결과, 총 857개 건물이 대상 건물로 조사되었으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행정동	건물수	주차면	행정동	건물수	주차면
가정1동	36개소	21,453면	가정2동	11개소	3,298면
가정3동	16개소	3,410면	가좌1동	123개소	11,308면
가좌2동	21개소	10,038면	가좌3동	93개소	7,018면
가좌4동	39개소	8,572면	검암경서동	134개소	9,869면
석남1동	70개소	4,556면	석남2동	33개소	2,886면
석남3동	26개소	2,042면	신현원창동	27개소	9,373면
연희동	91개소	8,667면	원당동	1개소	948면
청라1동	61개소	19,859면	청라2동	55개소	28,935면
청라3동	20개소	13,418면	합계	857개소	165,650면

해당블럭	주소	건물명	주용도	주차대수
가정1동-02	가정동619-5			48면
가정1동-02	가정동619-6	루원탑프라자	의료시설	44면
가정1동-02	가정동618-3	엔시티타워2차	제1종근린생활시설	49면
가정1동-02	가정동645-6	SD프라자	제1종근린생활시설	27면
가정1동-02	가정동617-4	엔시티타워	제1종근린생활시설	70면
가정1동-02	가정동609-1	MK타워	제2종근린생활시설	88면
가정1동-02	가정동619-4	드림타워	제1종근린생활시설	55면
가정1동-02	가정동617-3	가정봄프라자	제1종근린생활시설	93면
가정1동-02	가정동619-7	쓰리엠타워	제2종근린생활시설	95면
가정1동-02	가정동645-2	디오스텔루원시티오피스텔	업무시설	443면
가정1동-02	가정동619-1	한일골드타워	제1종근린생활시설	40면
가정1동-02	가정동619-3	대건프라자	제1종근린생활시설	49면
가정1동-02	가정동618-1	새롬프라자	제1종근린생활시설	49면
가정1동-02	가정동618-2	금강하이프라자	제1종근린생활시설	34면
가정1동-02	가정동618-6	에이스타워	자동차관련시설	107면
가정1동-04		루원시티1차SK리더스뷰아파트		2,948면
가정1동-05		루원지웰시티푸르지오아파트		895면
가정1동-08	가정동515-6		교육연구시설	23면
가정1동-08	가정동512-4	세브란스산업보건의원	제1종근린생활시설	26면

해당블럭	주소	건물명	주용도	주차대수
가정1동-08	가정동516-1		제2종근린생활시설	20면
가정1동-09	가정동526-27	진흥아파트	공동주택	25면
가정1동-09	가정동523-2	태훈예뜰채아파트	공동주택	107면
가정1동-09	가정동525	인천화력사택	공동주택	69면
가정1동-10	가정동530-4	정서진중양시장	자동차관련시설	80면
가정1동-11	연희동621-16			1,358면
가정1동-12	가정동597-2	엘에이치웨스턴블루힐	제2종근린생활시설	2,754면
가정1동-13	가정동604-1	가정엘에이치3단지	제1종근린생활시설	2,944면
가정1동-14	가정동603-1	루원제일풍경채	제2종근린생활시설	2,174면
가정1동-15	가정동605-1	인천가원초등학교		144면
가정1동-15	가정동606-3	아트프라자	제2종근린생활시설	20면
가정1동-15	가정동605-5	가원프라자	제2종근린생활시설	24면
가정1동-15	가정동606-4	두리식자재마트	자동차관련시설	96면
가정1동-16	가정동604-1	소명감리교회	종교시설	60면
가정1동-16	가정동609-1	루원호반베르디움더센트럴	공동주택	2,368면
가정1동-17	가정동610-1	루원시티프라디움	제2종근린생활시설	3,826면
가정1동-18	가정동117-9	가정동HB타워	자동차관련시설	201면
가정2동-01	가정동산17-9	현광아파트	공동주택	61면
가정2동-01	가정동5-96	성광아파트	공동주택	61면
가정2동-01	가정동5-92	동우아파트	공동주택	259면
가정2동-01	가정동5-120	한성아파트	공동주택	49면
가정2동-01	가정동5-93	동우아파트	공동주택	110면
가정2동-01	가정2동-01	가정2동-01	포레나루원시티	1,309면
가정2동-03	가정동341-13	하나아파트	공동주택	204면
가정2동-03	가정동284-401	뉴서울아파트	판매시설	519면
가정2동-03	가정동341-15	3차하나아파트	노유자시설	214면
가정2동-03	가정동341-14	하나아파트	공동주택	408면
가정2동-03	가정동산21-21	대우자동차사원아파트	공동주택	104면
가정3동-01	가정동546	한신그랜드힐빌리지	제2종근린생활시설	1,920면
가정3동-02	가정동430-55	가정동430-55	제2종근린생활시설	23면
가정3동-02	가정동555-13	바로크주택	공동주택	28면
가정3동-02	가정동556	길운씨티빌	제2종근린생활시설	172면
가정3동-02	가정동557	기도의집	노유자시설	22면
가정3동-03	가정동430-21		문화및집회시설	174면
가정3동-03	가정동563-1	대진아파트	공동주택	82면
가정3동-03	가정동562-2	진흥아파트	공동주택	114면
가정3동-04	가정동569	한국상가	제2종근린생활시설	21면
가정3동-04	가정동569	한국아파트	공동주택	131면
가정3동-04	가정동567	한국아파트	공동주택	156면
가정3동-04	가정동568	한국아파트	공동주택	174면

해당블럭	주소	건물명	주용도	주차대수
가정3동-04	가정동564	진흥아파트	제2종근린생활시설	178면
가정3동-04	가정동430-37	가석초등학교	가석초등학교	27면
가정3동-04	가정동565	대진아파트	공동주택	70면
가정3동-04	가정동566	인향아파트	제2종근린생활시설	118면
가좌1동-01	가좌동598	가좌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처리시설	126면
가좌1동-02	가좌동602-10		공장	22면
가좌1동-02	가좌동602-36		공장	29면
가좌1동-02	가좌동602-38	한신에스앤드(주)		21면
가좌1동-02	가좌동602-3	성지라미텍	창고시설	25면
가좌1동-03	가좌동173-103	가좌동173-103	공장	20면
가좌1동-04	가좌동173-299	(주)에이씨엠	공장	52면
가좌1동-04	가좌동173-282		공장	21면
가좌1동-04	가좌동602-7		공장	25면
가좌1동-04	가좌동173-229	월드약기(주)	공장	21면
가좌1동-05	가좌동173-169		제1종근린생활시설	45면
가좌1동-05	가좌동173-352			106면
가좌1동-06	가좌동173-334		공장	26면
가좌1동-06	가좌동173-203		자동차관련시설	1,660면
가좌1동-06	가좌동173-3		공장	40면
가좌1동-06	가좌동173-3		공장	120면
가좌1동-06	가좌동173-3		공장	780면
가좌1동-06	가좌동173-43		공장	32면
가좌1동-06	가좌동173-3	동화오토앤비즈	창고시설	130면
가좌1동-06	가좌동173-3		공장	65면
가좌1동-06	가좌동173-3		공장	380면
가좌1동-06	가좌동173-3		공장	74면
가좌1동-06	가좌동173-3		공장	38면
가좌1동-07	가좌동118	(주)홈플러스	판매시설	738면
가좌1동-07	가좌동104-13	ARTCITY	업무시설	82면
가좌1동-07	가좌동106-5	인하메디컬센터	제1종근린생활시설	67면
가좌1동-07	가좌동106-9	해담빌	업무시설	84면
가좌1동-07	가좌동104-12	ARTCITY	업무시설	82면
가좌1동-07	가좌동104		판매시설가좌동104	28면
가좌1동-08	가좌동108-9	풍경채	공동주택	23면
가좌1동-08	가좌동114-87		가좌동114-87	22면
가좌1동-08	가좌동114-89		가좌동114-89	22면
가좌1동-08	가좌동107	쌍마아파트	공동주택	54면
가좌1동-08	가좌동114-88		가좌동114-88	22면
가좌1동-09	가좌동147-35	4&1레뷰	업무시설	80면
가좌1동-09	가좌동147-2		제1종근린생활시설	22면

해당블럭	주소	건물명	주용도	주차대수
가좌1동-09	가좌동136	무한퍼스트지	업무시설	123면
가좌1동-09	가좌동147-32	대명운수	교육연구시설	20면
가좌1동-09	가좌동147	봉화초등학교	교육연구시설	32면
가좌1동-09	가좌동139-46	현대빌라	공동주택	211면
가좌1동-10	가좌동144-30	한화미리움아파트	공동주택	32면
가좌1동-10	가좌동140-36	삼오연립	공동주택	28면
가좌1동-10	가좌동144-21	대명연립	공동주택	24면
가좌1동-10	가좌동140	삼영아파트	제1종근린생활시설	122면
가좌1동-10	가좌동143-62	지구미가로	공동주택	54면
가좌1동-11	가좌동178-213		자동차관련시설	54면
가좌1동-11	가좌동178-217	가좌중소기업형공장	공장	20면
가좌1동-11	가좌동178-39	아주목재		24면
가좌1동-11	가좌동178-24	인천도시가스(주)	위험물처리시설	32면
가좌1동-12	가좌동178-53			43면
가좌1동-12	가좌동178-45		공장	44면
가좌1동-13	가좌동178-366	예림임업	공장	26면
가좌1동-13	가좌동178-270		공장	48면
가좌1동-13	가좌동173-76		자동차관련시설	168면
가좌1동-13	가좌동178-367	예림임업	공장	26면
가좌1동-13	가좌동178-368	예림임업	공장	26면
가좌1동-13	가좌동178-268		공장	25면
가좌1동-13	가좌동178-55		공장	87면
가좌1동-13	가좌동178-224	세인실업	자동차관련시설	31면
가좌1동-13	가좌동178-55	대성금속(주)	공장	71면
가좌1동-14	가좌동148-59		공장	34면
가좌1동-14	가좌동148-5		공장	37면
가좌1동-14	가좌동148-58	(주)세동알앤디	창고시설	22면
가좌1동-14	가좌동148-3	신명아파트	제2종근린생활시설	174면
가좌1동-14	가좌동148-17		공장	22면
가좌1동-15	가좌동146	(양수용)	공장	21면
가좌1동-16	가좌동157-14	유진아파트	공동주택	46면
가좌1동-16	가좌동155-19	더원팰리스	업무시설	21면
가좌1동-16	가좌동160-16	제이팰리스	업무시설	36면
가좌1동-16	가좌동155-17	보광팰리스	업무시설	28면
가좌1동-16	가좌동153		자동차관련시설	180면
가좌1동-16	가좌동153		운동시설	86면
가좌1동-16	가좌동158-3	유진아파트	공동주택	46면
가좌1동-16	가좌동158-17		공장	20면
가좌1동-16	가좌동158-12	덕산아파트	제1종근린생활시설	87면
가좌1동-16	가좌동157-12		자동차관련시설	24면

해당블럭	주소	건물명	주용도	주차대수
가좌1동-17	가좌동150-19	엠파크허브	자동차관련시설	659면
가좌1동-17	가좌동150-12			120면
가좌1동-17	가좌동150-17	연구소	창고시설	152면
가좌1동-18	가좌동576		공장	36면
가좌1동-19	가좌동560-4		공장	27면
가좌1동-20	가좌동178-165		공장	34면
가좌1동-20	가좌동178-165	대덕테크노타운	공장	44면
가좌1동-20	가좌동178-62		공장	33면
가좌1동-21	가좌동178-63	핸즈코퍼레이션주식회사	공장	225면
가좌1동-21	가좌동178-75	(주)오뚜기인천물류센터	창고시설	52면
가좌1동-21	가좌동178-63	만인	교육연구시설	126면
가좌1동-21	가좌동178-67		쓰레기처리시설	108면
가좌1동-21	가좌동178-78	현광아파트형공장	공장	83면
가좌1동-21	가좌동178-446		쓰레기처리시설	45면
가좌1동-21	가좌동178-156	인천종합공구상가	판매시설	24면
가좌1동-21	가좌동178-72		공장	48면
가좌1동-21	가좌동178-447			34면
가좌1동-22	가좌동178-244	드레곤벨리	공장	75면
가좌1동-22	가좌동178-116	주식회사사조대림	공장	74면
가좌1동-22	가좌동178-116	주식회사사조대림	공장	22면
가좌1동-22	가좌동178-105	엠파크타워	자동차관련시설	589면
가좌1동-22	가좌동178-116	주식회사사조대림	공장	74면
가좌1동-22	가좌동178-115	(주)세스코	공장	24면
가좌1동-22	가좌동178-83		제2종근린생활시설	88면
가좌1동-22	가좌동178-10	동화상협(주)	위험물처리시설	29면
가좌1동-22	가좌동178-199		제2종근린생활시설	24면
가좌1동-23	가좌동585-77		공장	21면
가좌1동-23	가좌동585-60		공장	21면
가좌1동-23	가좌동585-1		창고시설	26면
가좌1동-23	가좌동585-70			30면
가좌1동-23	가좌동574-8		공장	73면
가좌1동-23	가좌동585-20	가좌.CAPT형공장	공장	48면
가좌1동-24	가좌동564-11	영창테크노타운아파트형공장	공장	67면
가좌1동-24	가좌동564-13	토지산업2차지식산업센터	공장	90면
가좌1동-24	가좌동564-15		공장	53면
가좌1동-24	가좌동564-10		공장	24면
가좌1동-24	가좌동564-12		창고시설	28면
가좌1동-24	가좌동564-14		창고시설	29면
가좌1동-25	가좌동178-358	가좌동정비공장	자동차관련시설	24면
가좌1동-25	가좌동180-152	리퍼스가구	공장	35면

해당블럭	주소	건물명	주용도	주차대수
가좌1동-25	가좌동180-102		공장	79면
가좌1동-25	가좌동573-21	태진로기계공업(주)	쓰레기처리시설	240면
가좌1동-25	가좌동570-7	성보공업주식회사	창고시설	47면
가좌1동-25	가좌동178-90	동화상협(주)	공장	23면
가좌1동-25	가좌동571-7	가좌동공장(주)서울엔지니어링	공장	20면
가좌1동-25	가좌동180-171		공장	20면
가좌1동-25	가좌동570-3		공장	22면
가좌2동-01	가좌동75-1	인성프라자	제1종근린생활시설	52면
가좌2동-01	가좌동79-12	에이스프라자	제1종근린생활시설	23면
가좌2동-01	가좌동81-22	현대아파트	공동주택	230면
가좌2동-01	가좌동81-59	범양아파트	공동주택	510면
가좌2동-02	가좌동2-19	공작아파트	제2종근린생활시설	94면
가좌2동-03	가좌동30-132		교육연구시설	23면
가좌2동-03	가좌동7	가좌한신희플러스	공동주택	2,508면
가좌2동-03	가좌동7	가좌한신희플러스	제1종근린생활시설	2,780면
가좌2동-04	가좌동30-4	진주아파트	공동주택	644면
가좌2동-04	가좌동30-102	진주아파트상가동	공동주택	255면
가좌2동-04	가좌동42-2	모건베스트원	제2종근린생활시설	21면
가좌2동-04	가좌동30-89	효정아파트	공동주택	168면
가좌2동-04	가좌동30-86	진주아파트	공동주택	1,596면
가좌2동-04	가좌동30-92	예일비전센타	교육연구시설	54면
가좌2동-04	가좌동30-2	진주아파트	공동주택	590면
가좌2동-04	가좌동30-92	가림고등학교	교육연구시설	41면
가좌2동-04	가좌동30-100	진주아파트	공동주택	298면
가좌2동-04	가좌동30-81	예일비전센타	교육연구시설	46면
가좌2동-05	가좌동230		교육연구시설	34면
가좌2동-05	가좌동231	가림초등학교	교육연구시설	39면
가좌2동-05				32면
가좌3동-01	가좌동192-66	현광아파트	공동주택	36면
가좌3동-01	가좌동193	세우아파트	공동주택	83면
가좌3동-01	가좌동171-3	아주아파트	공동주택	60면
가좌3동-01	가좌동192-7	세우아파트	공동주택	44면
가좌3동-01	가좌동193-1	인향아파트	공동주택	112면
가좌3동-02	가좌동72-1		제1종근린생활시설	35면
가좌3동-02	가좌동122-2	현대아파트	공동주택	251면
가좌3동-02	가좌동186	해찬솔	공동주택	24면
가좌3동-02	가좌동122	태화아파트	공동주택	187면
가좌3동-02	가좌동184-10	가좌제일교회	종교시설	25면
가좌3동-02	가좌동122	동진아파트	공동주택	93면
가좌3동-03	가좌동207-1	영남아파트	공동주택	154면

해당블럭	주소	건물명	주용도	주차대수
가좌3동-03	가좌동207-1	동남아파트	공동주택	134면
가좌3동-03	가좌동200	인천건지초등학교		34면
가좌3동-03	가좌동206-7	한일아파트	공동주택	36면
가좌3동-04	가좌동197-13		제2종근린생활시설	38면
가좌3동-04	가좌동122-4	우신프라자	제2종근린생활시설	65면
가좌3동-04	가좌동197-30	가좌3동주차장	자동차관련시설	30면
가좌3동-04	가좌동195	가좌중학교	교육연구시설	36면
가좌3동-04	가좌동199-2	인향아파트	공동주택	70면
가좌3동-05	가좌동210-3	진주프라자	제2종근린생활시설	22면
가좌3동-05	가좌동260-1	상아아파트	공동주택	32면
가좌3동-05	가좌동210	신한연립	공동주택	24면
가좌3동-05	가좌동215-3	진흥아파트	제2종근린생활시설	240면
가좌3동-05	가좌동260	하나아파트	공동주택	92면
가좌3동-05	가좌동224-2	하나아파트	제2종근린생활시설	130면
가좌3동-05	가좌동214	풍림아파트		398면
가좌3동-05	가좌동260-3		제2종근린생활시설	40면
가좌3동-06	가좌동277-7	나은병원	의료시설	143면
가좌3동-06	가좌동262		제1종근린생활시설	82면
가좌3동-06	가좌동272-1	이화아파트	공동주택	32면
가좌3동-06	가좌동277	청담빌딩	의료시설	57면
가좌3동-06	가좌동272-9		공장	30면
가좌3동-06	가좌동261-2	한샘아파트	공동주택	106면
가좌3동-06	가좌동261	상아아파트	제1종근린생활시설	93면
가좌3동-06	가좌동217	신현대아파트	공동주택	331면
가좌3동-06	가좌동278-5			143면
가좌3동-06	가좌동262-1	신영아파트	공동주택	108면
가좌3동-06				28면
가좌3동-07	가좌동273-3		공장	27면
가좌3동-07	가좌동273-22	농업회사법인더파머스주식회사	판매시설	23면
가좌3동-07	가좌동274-1			541면
가좌3동-07	가좌동556-29		업무시설	50면
가좌3동-07	가좌동556-24		공장	21면
가좌3동-08	가좌동548-10	태평양인천물류센타	창고시설	48면
가좌3동-08	가좌동552-1			21면
가좌3동-08	가좌동552-33		공장	26면
가좌3동-08	가좌동571-3	태평양인천물류센타	창고시설	48면
가좌3동-08	가좌동552-27		공장	78면
가좌3동-08	가좌동548-9		공장	36면
가좌3동-08	가좌동548-1	LT메탈	위험물처리시설	32면
가좌3동-08	가좌동552-25	(주)큐플러스	공장	24면

해당블럭	주소	건물명	주용도	주차대수
가좌3동-09	가좌동543-3			26면
가좌3동-09	가좌동541-1	스마트테크노타워	공장	298면
가좌3동-09	가좌동543-6		공장	20면
가좌3동-09	가좌동543-7		공장	20면
가좌3동-09	가좌동543-9		공장	28면
가좌3동-09	가좌동542-6	(주)비에이치	공장	53면
가좌3동-09	가좌동543-1		창고시설	42면
가좌3동-09	가좌동542-7	(주)이오시스템	공장	77면
가좌3동-09	가좌동543-4		공장	20면
가좌3동-09	가좌동543-2		공장	48면
가좌3동-09	가좌동542-3		공장	31면
가좌3동-09	가좌동541-2	(주)웰뷰텍	공장	25면
가좌3동-10	가좌동539-6		제1종근린생활시설	22면
가좌3동-10	가좌동539-15	IBC센터	공장	81면
가좌3동-10	가좌동540-4			34면
가좌3동-10	가좌동539-16		공장	44면
가좌3동-10	가좌동539-13		공장	22면
가좌3동-10	가좌동177-1		운동시설	67면
가좌3동-10	가좌동540		쓰레기처리시설	142면
가좌3동-10	가좌동537-1	한미반도체제3공장	공장	133면
가좌3동-10	가좌동539-2	연우패키징센터	위험물처리시설	72면
가좌3동-10	가좌동537-2	부광금속	공장	41면
가좌3동-10	가좌동538-3		공장	24면
가좌3동-10	가좌동539-3		공장	35면
가좌3동-10	가좌동540-3	신주실업주식회사	공장	21면
가좌3동-10	가좌동539-8	(주)유니월드오토테크	자동차관련시설	72면
가좌3동-10	가좌동537-4	기정화학주식회사	창고시설	27면
가좌3동-11	가좌동542-3	한미반도체(주)	공장	55면
가좌3동-11	가좌동525-4		공장	51면
가좌3동-11	가좌동525-5		공장	36면
가좌3동-11	가좌동531-6		위험물처리시설	86면
가좌3동-11	가좌동533-3	한미반도체	공장	69면
가좌3동-11	가좌동606-10	한미반도체주식회사	공장	162면
가좌3동-11	가좌동532-1		공장	22면
가좌3동-11	가좌동525-6	화인화학	공장	32면
가좌3동-11	가좌동531-1	에스앤티대우주식회사	공장	68면
가좌3동-12	가좌동524-4		공장	42면
가좌3동-12	가좌동530-3	주안비티센터2차	공장	84면
가좌3동-12	가좌동530-2	(주)하도공장	공장	36면
가좌3동-12	가좌동524-2		공장	64면

해당블럭	주소	건물명	주용도	주차대수
가좌3동-12	가좌동530-1	씨동	공장	33면
가좌4동-01	가좌동306	코스모스아파트	공동주택	234면
가좌4동-01	가좌동395-4	가정초등학교	교육연구시설	24면
가좌4동-01	가좌동306-1	한마음아파트	공동주택	128면
가좌4동-02	가좌동402	인천동인천여자중학교	교육연구시설	52면
가좌4동-02	가좌동611	인천가좌두산위브트레지움	공동주택	2,091면
가좌4동-03	가좌동613	인천가좌두산위브트레지움	공동주택	4,182면
가좌4동-04	가좌동329-5		공동주택	113면
가좌4동-04	가좌동618	두현예뜰채아파트	공동주택	60면
가좌4동-05	가좌동343	인천가정여자중학교	교육연구시설	36면
가좌4동-07	가좌동407	유영아파트	제1종근린생활시설	150면
가좌4동-08	가좌동285		공장	26면
가좌4동-08	가좌동287-20	(주)뉴토펙스	위험물처리시설	25면
가좌4동-09	가좌동301	가좌동301	공장	24면
가좌4동-09	가좌동455-16	가좌동455-16	공장	23면
가좌4동-09	가좌동455-15	가좌동455-15	공장	26면
가좌4동-09	가좌동299-9	대한예수교장로회가좌제일교회	종교시설	56면
가좌4동-09	가좌동469-11	대한예수교장로회선목교회	종교시설	42면
가좌4동-09	가좌동455-21	가재울플라자	의료시설	39면
가좌4동-09	가좌동455-28		공장	20면
가좌4동-09	가좌동469-4			21면
가좌4동-09	가좌동468-1	현대자동차정비공장	자동차관련시설	232면
가좌4동-09	가좌동455	주식회사화미	공장	36면
가좌4동-09	가좌동299-1	인천물류센터	창고시설	46면
가좌4동-09	가좌동294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쓰레기처리시설	57면
가좌4동-09	가좌동295-7		공장	22면
가좌4동-10	가좌동480		제2종근린생활시설	24면
가좌4동-10	가좌동476-6	삼호축산유통프라자	제2종근린생활시설	55면
가좌4동-10	가좌동493-3		공장	24면
가좌4동-10	가좌동484		제2종근린생활시설	21면
가좌4동-10	가좌동482	인천축산물백화점	판매시설	164면
가좌4동-10	가좌동476-12		제1종근린생활시설	70면
가좌4동-10	가좌동482-1		공장	177면
가좌4동-10	가좌동473-4	(주)연우	공장	22면
가좌4동-10	가좌동493	(주)케이엠앤아이인천공장	공장	20면
가좌4동-10	가좌동472-2		쓰레기처리시설	31면
가좌4동-10	가좌동477-4		쓰레기처리시설	30면
가좌4동-10	가좌동484-5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노유자시설	77면
가좌4동-10	가좌동472		종교시설	68면
가좌4동-10	가좌동480-15		가좌동	24면

해당블럭	주소	건물명	주용도	주차대수
검암경서동-01	경서동678			55면
검암경서동-01	경서동678-1	대길그린(주)	쓰레기처리시설	38면
검암경서동-02	경서동682		공장	28면
검암경서동-03	경서동363-80	LG전자인천캠퍼스	공장	643면
검암경서동-03	경서동680-3	(주)풍전비철	공장	23면
검암경서동-04	경서동682-14			45면
검암경서동-06	경서동381-78		창고시설	24면
검암경서동-06	경서동363-165		공장	42면
검암경서동-07	경서동693	볼보건설기계물류센터	공장	33면
검암경서동-07	경서동693-5	도림주철관공업(주)-제3공장	공장	31면
검암경서동-08	경서동363-199	(주)극동주공	공장	28면
검암경서동-09	경서동363-182	이노텍	공장	20면
검암경서동-09	경서동363-190	(주)진흥주물	위험물처리시설	36면
검암경서동-09	경서동689-3		공장	36면
검암경서동-09	경서동689	서부산업단지관리공단본부	제2종근린생활시설	54면
검암경서동-10	경서동696-10			22면
검암경서동-11	경서동350-34	라동	창고시설	37면
검암경서동-12	경서동719-3	우정에쉐르아파트	제1종근린생활시설	294면
검암경서동-12	경서동720-1		운동시설	221면
검암경서동-12	경서동722-1	태평상베르아파트	공동주택	610면
검암경서동-13	경서동741	경서초등학교	교육연구시설	53면
검암경서동-13	경서동731-16	경서센트럴맨션	공동주택	21면
검암경서동-13	경서동757-10	아시아드빌	공동주택	36면
검암경서동-13	경서동728-4	명성프라자	제2종근린생활시설	22면
검암경서동-13	경서동754-2	크리스탈빌	공동주택	24면
검암경서동-13	경서동756-1	다솜채Ⅱ	공동주택	24면
검암경서동-13	경서동727-1	가이아상베르2차아파트	공동주택	589면
검암경서동-13	경서동738-12		공동주택	21면
검암경서동-14	경서동763-6	LG스위트홈	공동주택	21면
검암경서동-14	경서동766-6	에벤에셀	공동주택	27면
검암경서동-14	경서동767-6	대명홈타운	공동주택	24면
검암경서동-15	검암동677-3	베라체	공동주택	20면
검암경서동-15	검암동677-7		공동주택	23면
검암경서동-15	검암동679-3	자원봉사센터	교육연구시설	26면
검암경서동-15	검암동684-3	DH빌	공동주택	20면
검암경서동-15	검암동671-4	S.G.I경서회관	종교시설	20면
검암경서동-15	검암동669-1	그랜드비스타	공동주택	23면
검암경서동-15	검암동673-1	에스띠아	공동주택	66면
검암경서동-15	검암동683-6	이레케슬	공동주택	56면
검암경서동-15	검암동666-1	다채움	공동주택	44면

해당블럭	주소	건물명	주용도	주차대수
검암경서동-15	검암동668-1	엘지아트빌	공동주택	24면
검암경서동-15	검암동673-13	신한파크빌5차	공동주택	24면
검암경서동-16	검암동650-1	근생밋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23면
검암경서동-16	검암동661-5	블리스빌	공동주택	20면
검암경서동-16	검암동674-14	그린파크	공동주택	32면
검암경서동-16	검암동645-3	SI연립주택	공동주택	22면
검암경서동-16	검암동655-11		공동주택	32면
검암경서동-16	검암동674-7	그린파크	공동주택	32면
검암경서동-16	검암동663-3	더갤러리	공동주택	20면
검암경서동-16	검암동652-1	더프라임	공동주택	32면
검암경서동-16	검암동649-2	프로방스	공동주택	22면
검암경서동-16	검암동661-4	골든캐슬	공동주택	27면
검암경서동-16	검암동664-10		공동주택	28면
검암경서동-16	검암동660-4	해송N	공동주택	24면
검암경서동-16	검암동676-10	해피하우스	공동주택	29면
검암경서동-16	검암동649-12		공동주택	24면
검암경서동-16	검암동676-11	도요빌	공동주택	28면
검암경서동-16	검암동662-10	베네스트	공동주택	24면
검암경서동-16	검암동660-1	효산캐슬	공동주택	24면
검암경서동-16	검암동646-3	쌍무지개마을	공동주택	24면
검암경서동-16	검암동648-17	리베라	공동주택	20면
검암경서동-16	검암동675-14	부경캐슬	공동주택	22면
검암경서동-16	검암동661-1	그랜드비스타	공동주택	20면
검암경서동-16	검암동652-2	더프라임	공동주택	29면
검암경서동-16	검암동647-7	에벤에셀	공동주택	24면
검암경서동-17	검암동641-4	굿모닝타운하우스	공동주택	22면
검암경서동-17	검암동641-5	굿모닝타운하우스102동	공동주택	22면
검암경서동-17	검암동641-6	굿모닝타운하우스(101동)	공동주택	22면
검암경서동-17	검암동636-1	타워팰리스5차	공동주택	25면
검암경서동-17	검암동635-2	아이빌리지	공동주택	25면
검암경서동-17	검암동630-2		공동주택	29면
검암경서동-17	검암동635-13		공동주택	24면
검암경서동-17	검암동634-4	하이원	공동주택	22면
검암경서동-17	검암동632-6	이안빌리지	공동주택	22면
검암경서동-17	검암동636-7	서인천고등학교		30면
검암경서동-17	검암동641-1	플로렌스빌	공동주택	28면
검암경서동-17	검암동634-3	프라다	공동주택	24면
검암경서동-17	검암동643-1	스페이스빌	공동주택	28면
검암경서동-17	검암동640-5	현대렉스빌	공동주택	21면
검암경서동-17	검암동642-4	한마루타운	공동주택	24면

해당블럭	주소	건물명	주용도	주차대수
검암경서동-17	검암동629-3	간재울초등학교	교육연구시설	47면
검암경서동-17	검암동634-16	메르시에	공동주택	24면
검암경서동-17	검암동643-3	해모로타운	공동주택	29면
검암경서동-17	검암동644-1	S클래스	공동주택	28면
검암경서동-17	검암동640-4	정성드림빌5차	공동주택	21면
검암경서동-17	검암동642-3	한마루타운	공동주택	24면
검암경서동-17	검암동642-1	루시아빌	공동주택	29면
검암경서동-18	검암동621-6	검암교회	종교시설	23면
검암경서동-18	검암동626-2	태건프라자	제1종근린생활시설	31면
검암경서동-18	검암동627-1	스페이스아트타운	공동주택	42면
검암경서동-18	검암동619-4	간재울중학교	교육연구시설	53면
검암경서동-18	검암동623-4		공동주택	24면
검암경서동-18	검암동623-6	E원캐슬	공동주택	23면
검암경서동-19	검암동595-5	검암마젤란21아파트	공동주택	206면
검암경서동-19	검암동605-1	검암3차신명스카이뷰	공동주택	286면
검암경서동-19	검암동604-1	힐탑	공동주택	24면
검암경서동-19	검암동628	삼보해피하임	제2종근린생활시설	252면
검암경서동-19	검암동604-4	시크릿가든7차	공동주택	24면
검암경서동-20	검암동610-1	서해프라자	제1종근린생활시설	30면
검암경서동-20	검암동612-3	스페이스빌	공동주택	28면
검암경서동-20	검암동612-12	성은휴하우스	공동주택	24면
검암경서동-21	검암동596-3	대림프라자1	제2종근린생활시설	29면
검암경서동-21	검암동599-5	고산프라자	제1종근린생활시설	28면
검암경서동-21	검암동596-1	검암동살리텍빌딩	제1종근린생활시설	29면
검암경서동-21	검암동598-2	검암프라자	제1종근린생활시설	25면
검암경서동-21	검암동597-1	다복빌딩	제1종근린생활시설	32면
검암경서동-21	검암동595-3	서해그랑블	제1종근린생활시설	967면
검암경서동-21	검암동597-4	엘리시움	공동주택	29면
검암경서동-22	검암동495	검암초등학교	교육연구시설	50면
검암경서동-22	검암동497	검암중학교	교육연구시설	49면
검암경서동-22	검암동498-2	신생교회	종교시설	26면
검암경서동-23	검암동524-3	아카데미프라자	제1종근린생활시설	24면
검암경서동-23	검암동525-10	베르데힐	공동주택	28면
검암경서동-23	검암동525-5	베르데힐	공동주택	29면
검암경서동-24	검암동536-3		공동주택	22면
검암경서동-24	검암동536-1	은지초등학교	교육연구시설	55면
검암경서동-24	검암동515-1	검암제3주차장	교육연구시설	55면
검암경서동-24	검암동519-6	골드타워	공동주택	23면
검암경서동-24	검암동534-5	소풍	공동주택	26면
검암경서동-24	검암동519-2	휴안	공동주택	23면

해당블럭	주소	건물명	주용도	주차대수
검암경서동-24	검암동534-4	소풍	공동주택	20면
검암경서동-24	검암동534-2	소풍	공동주택	20면
검암경서동-24	검암동519-1	골드타워	공동주택	28면
검암경서동-25	검암동499-9	골드밸리	공동주택	21면
검암경서동-25	검암동510-5	로얄프라자	제1종근린생활시설	61면
검암경서동-25	검암동506-1	동곡프라자	제2종근린생활시설	24면
검암경서동-25	검암동508-1	장은프라자	제2종근린생활시설	61면
검암경서동-25	시천동158-4			24면
검암경서동-25	검암동501-1	풍림아이원2차	제2종근린생활시설	723면
검암경서동-26	검암동512-2	풍림아이원3차아파트	공동주택	346면
검암경서동-26	검암동535-2	검암4차신명스카이뷰골드	제2종근린생활시설	311면
검암경서동-26	검암동511	풍림아이원	제1종근린생활시설	312면
검암경서동-26	검암동535-1	검암2차신명스카이뷰	제2종근린생활시설	327면
검암경서동-26	검암동512-1	삼보해피하임	공동주택	292면
석남1동-01	석남동206			106면
석남1동-01	석남동199-181		종교시설	21면
석남1동-01	석남동209	대명아파트	공동주택	147면
석남1동-01	석남동208-2	창고	교육연구시설	32면
석남1동-01	석남동208-1	동남아파트	공동주택	288면
석남1동-02	석남동477	무한빌딩	제1종근린생활시설	42면
석남1동-02	석남동450-3		제2종근린생활시설	26면
석남1동-02	석남동446	서인천월드메르디앙	제1종근린생활시설	833면
석남1동-02	석남동444-4	황해아파트	제1종근린생활시설	74면
석남1동-03	석남동460-2	남양아파트101	공동주택	28면
석남1동-03	석남동463	남양아파트102	공동주택	28면
석남1동-03	석남동456		업무시설	30면
석남1동-03	석남동456-6	석남프라자	제1종근린생활시설	23면
석남1동-03	석남동464-1	삼산아파트	공동주택	47면
석남1동-03	석남동464-3	한화수플림아파트	공동주택	49면
석남1동-03	석남동466-1	현광아파트	공동주택	112면
석남1동-04	석남동203	신석체육공원	관광휴게시설	40면
석남1동-05	석남동517	knp상상빌리지	공동주택	190면
석남1동-05	석남동516-6	어반스뷰2차	업무시설	46면
석남1동-05	석남동517-3		공동주택	49면
석남1동-05	석남동519-7	화덕약품(주)	업무시설	25면
석남1동-05	석남동520-11	제니스15차	공동주택	35면
석남1동-05	석남동518-18		운동시설	106면
석남1동-05	석남동521-4		공동주택	22면
석남1동-05	석남동515-9	DH더씨티	업무시설	26면
석남1동-05	석남동511-12	해경스테이1차-A동	숙박시설	36면

해당블럭	주소	건물명	주용도	주차대수
석남1동-05	석남동516-5		공동주택	23면
석남1동-05	석남동446	해경블루문	업무시설	34면
석남1동-05	석남동523-13	의료법인성세의료재단		95면
석남1동-05	석남동516-4	인천플러스	숙박시설	42면
석남1동-05	석남동511-16	해경스테이1차-B동	숙박시설	36면
석남1동-05	석남동520-40	위즈클래스	업무시설	33면
석남1동-05	석남동523-1		의료시설	45면
석남1동-05	석남동516-3	금성아파트	공동주택	24면
석남1동-05	석남동514-1	수정아파트	공동주택	122면
석남1동-05	석남동519-1		자동차관련시설	29면
석남1동-05	석남동512-2			24면
석남1동-05	석남동522-3	보광네오센스아파트	공동주택	81면
석남1동-05	석남동521-2	동우아파트	공동주택	89면
석남1동-05	석남동521		자동차관련시설	24면
석남1동-06	석남동508-4	DH씨밀레	공동주택	40면
석남1동-06	석남동496-26	하모니캐슬	업무시설	43면
석남1동-06	석남동507-2	제니스16차	공동주택	38면
석남1동-06	석남동497-17	해드림	공동주택	52면
석남1동-06	석남동457-3			70면
석남1동-06	석남동509-1			40면
석남1동-06	석남동509-11			48면
석남1동-06	석남동499	태산아파트	공동주택	102면
석남1동-06	석남동496-4	세움캐슬	업무시설	66면
석남1동-06	석남동507-7	광덕아파트	공동주택	66면
석남1동-06	석남동496-12	해경오루체	숙박시설	58면
석남1동-06	석남동498-9	DH씨티	업무시설	40면
석남1동-06	석남동497-1	씨엠팰리스	공동주택	51면
석남1동-06	석남동498	트윈팰리스	공동주택	36면
석남1동-06	석남동509-15		숙박시설	32면
석남1동-06	석남동484	노인복지회관	노유자시설	22면
석남1동-06	석남동481-1		제2종근린생활시설	95면
석남1동-06	석남동509-31	에버그린	업무시설	28면
석남1동-06	석남동509-2		의료시설	36면
석남1동-06	석남동497	해드림아파트2차	공동주택	47면
석남1동-06	석남동506-5	석남룩소르주상복합공동주택	업무시설	56면
석남1동-06	석남동498-1	트윈팰리스	공동주택	33면
석남1동-06	석남동506-3	우주아파트	공동주택	32면
석남1동-07	석남동504-9		공동주택	25면
석남1동-07	석남동510-12	어반스뷰	업무시설	54면
석남1동-07	석남동504-3		공동주택	25면

해당블럭	주소	건물명	주용도	주차대수
석남1동-07	석남동503	중앙아파트	공동주택	24면
석남1동-07	석남동504-8	에메랄드	업무시설	43면
석남1동-07	석남동502-6	석남아파트	공동주택	24면
석남1동-07	석남동501	중앙아파트	공동주택	68면
석남2동-01	석남동223-228		공장	21면
석남2동-01	석남동223-216	마이스터스	공장	34면
석남2동-01	석남동650-66	대원통상공장	공장	25면
석남2동-02	석남동223-271		공장	30면
석남2동-04	석남동223-521		공장	25면
석남2동-04	석남동223-21	(주)케이비아이텍	쓰레기처리시설	30면
석남2동-05	석남동223-85	석남동제이엠건설사옥	제2종근린생활시설	44면
석남2동-05	석남동223-561	석남동223-561	공장	22면
석남2동-05	석남동223-569	호룡인천공장	공장	23면
석남2동-05	석남동223-50	H동	공장	30면
석남2동-05	석남동223-651		공장	22면
석남2동-05	석남동223-821	(주)엘케이푸드	공장	29면
석남2동-06	석남동537-1	인천대은교회	종교시설	29면
석남2동-06	석남동529-13	장미아파트	공동주택	26면
석남2동-06	석남동527-25	인천석남금호어울림	공동주택	98면
석남2동-06	석남동532	인천석남금호어울림	공동주택	808면
석남2동-06	석남동532	인천석남금호어울림	공동주택	114면
석남2동-06	석남동532	인천석남금호어울림	제2종근린생활시설	97면
석남2동-07	석남동540-29	신화매트로타운	교육연구시설	36면
석남2동-07	석남동542-20	선두교회	자동차관련시설	40면
석남2동-07	석남동539-9	우성빌딩	제2종근린생활시설	20면
석남2동-07	석남동546-3		종교시설	23면
석남2동-07	석남동540-25		제1종근린생활시설	22면
석남2동-08	석남동588	우림필유	공동주택	294면
석남2동-08	석남동588-14	효정아파트	공동주택	114면
석남2동-09	석남동575	석남동575	판매시설	32면
석남2동-09	석남동570-15	석남동570-15	방송통신시설	26면
석남2동-09	석남동574-4	동진아파트	공동주택	56면
석남2동-10	석남동581-14	석남동581-14	제2종근린생활시설	20면
석남2동-10	석남동593	석남동경남아너스빌	공동주택	476면
석남2동-10	석남동580	석남서초등학교	교육연구시설	45면
석남2동-11	석남동579-7	보보스타운	제1종근린생활시설	77면
석남2동-11	석남동579-2	동아아파트	공동주택	98면
석남3동-01	석남동472-3	동진아파트	공동주택	42면
석남3동-01	석남동472	나우아파트	공동주택	21면
석남3동-01	석남동485	신광아파트	제2종근린생활시설	63면

해당블럭	주소	건물명	주용도	주차대수
석남3동-01	석남동468-3	낙원아파트	공동주택	101면
석남3동-01	석남동471-2	덕산아파트	제2종근린생활시설	212면
석남3동-01	석남동486-1	신동아아파트	제1종근린생활시설	122면
석남3동-02	석남동115	인천가좌여자중학교	교육연구시설	36면
석남3동-02	석남동109-32	인천석남초등학교	교육연구시설	47면
석남3동-02	석남동112-2	길주하이츠빌	공동주택	29면
석남3동-02	석남동111-56	동진아파트	공동주택	127면
석남3동-02	석남동111-62	해오름빌리지	공동주택	22면
석남3동-02	석남동111-114		교육연구시설	51면
석남3동-02	석남동111-9	해뜨는마을	공동주택	24면
석남3동-03	석남동490-6	거보플러스아파트	공동주택	21면
석남3동-03	석남동488-2	파크원	업무시설	39면
석남3동-03	석남동488-7	해마루아파트	공동주택	38면
석남3동-03	석남동492	롯데우람아파트	공동주택	293면
석남3동-03	석남동491-1	인정재활원	노유자시설	25면
석남3동-03	석남동489	효정아파트	공동주택	161면
석남3동-03	석남동109-55	태화아파트	공동주택	128면
석남3동-03	석남동490	동진아파트	제1종근린생활시설	125면
석남3동-04	석남동552-18	효성아파트	공동주택	45면
석남3동-05	석남동560-18		공동주택	41면
석남3동-05	석남동559	경인아파트	공동주택	123면
석남3동-06	석남동329-7	석남중학교	교육연구시설	64면
석남3동-06	석남동329-10		노유자시설	42면
신현원창동-01	신현동304-2	루원시티루에블리	공동주택	689면
신현원창동-01	신현동304-1	루원시티대성베르힐	제2종근린생활시설	1,423면
신현원창동-02	신현동308-5	대한예수교장로회신정교회	자동차관련시설	94면
신현원창동-02	신현동307-8	유성프라자	제1종근린생활시설	32면
신현원창동-02	신현동212-21	인천신현여자중학교	교육연구시설	46면
신현원창동-03	신현동306-1	루원시티센트럴타운	제2종근린생활시설	818면
신현원창동-04	신현동305-4	가현초등학교	교육연구시설	44면
신현원창동-04	신현동305-1		교육연구시설	42면
신현원창동-04	신현동107-42	인천신현고등학교	교육연구시설	67면
신현원창동-05	신현동272-1	우리백화점	판매시설	90면
신현원창동-05	신현동303	금강아미움	판매시설	204면
신현원창동-05	신현동302-1	신현이편한세상하늘채	제2종근린생활시설	4,501면
신현원창동-06	신현동212-11	인천신현중학교	교육연구시설	28면
신현원창동-07	신현동107-7	은영아파트	공동주택	28면
신현원창동-07	신현동107-4	은영아파트	공동주택	42면
신현원창동-07	신현동85-1	인천신현북초등학교	교육연구시설	37면
신현원창동-08	신현동181-4	동진아파트	공동주택	274면

해당블럭	주소	건물명	주용도	주차대수
신현원창동-09	신현동283-16		종교시설	28면
신현원창동-09	신현동283-17		제1종근린생활시설	28면
신현원창동-10	신현동152-46		제2종근린생활시설	39면
신현원창동-10	신현동200-4	원흥아파트상가	공동주택	206면
신현원창동-10	신현동151-3	효성아파트상가	판매시설	480면
신현원창동-10	신현동156-1	가람	공동주택	24면
신현원창동-10	신현동149-37	원익아파트	공동주택	32면
신현원창동-11	신현동284-24	가온채	공동주택	20면
신현원창동-11	신현동294-1	인천화력사택한빛관B동	노유자시설	29면
신현원창동-11	신현동291		교육연구시설	28면
연희동-01	연희동734-2	서곶중학교	교육연구시설	45면
연희동-02	연희동728-1	청아아파트	공동주택	68면
연희동-02	연희동735-3	서광펠리스	공동주택	20면
연희동-02	연희동739-12	정원베스트빌8차	공동주택	20면
연희동-03	연희동686-4		제2종근린생활시설	37면
연희동-03	연희동683	연세병원	의료시설	56면
연희동-03	연희동682-14	한국아파트	공동주택	80면
연희동-03	연희동682	중앙공영아파트	공동주택	118면
연희동-03	연희동682-12	한국아파트	공동주택	314면
연희동-04	연희동710-12	휴안	공동주택	30면
연희동-04	연희동709	두호앤시티	공동주택	26면
연희동-04	연희동709-1		공동주택	20면
연희동-04	연희동710-4	대성빌리지	공동주택	36면
연희동-06	공촌동305-5	SI빌딩	업무시설	31면
연희동-06	공촌동301-1	골든타운	공동주택	29면
연희동-07	공촌동309-2	미우해드리움	공동주택	103면
연희동-07	공촌동315-1	경남아파트	공동주택	33면
연희동-07	공촌동314	경남아파트	공동주택	107면
연희동-08	연희동745-1	인천서곶초등학교	교육연구시설	21면
연희동-08	연희동744-1	인천디자인고등학교	교육연구시설	78면
연희동-09	연희동747-6	해송하이빌	공동주택	22면
연희동-09	연희동741-22	하나세인트빌	공동주택	22면
연희동-09	연희동747-2	디자인타운	공동주택	28면
연희동-10	연희동690	태영아파트	공동주택	398면
연희동-11	연희동712-18	연희동복지교회	종교시설	30면
연희동-11	연희동700	연희동700	운동시설	44면
연희동-11	연희동701-1	연희해드림아파트	제1종근린생활시설	258면
연희동-12	공촌동318-1	광명아파트	공동주택	323면
연희동-12	공촌동277-2	공촌초등학교	교육연구시설	56면
연희동-13	심곡동325-7	신동아홈타운	공동주택	46면

해당블럭	주소	건물명	주용도	주차대수
연희동-13	심곡동325-4		종교시설	20면
연희동-13	심곡동327-16	대송2차파인빌	공동주택	48면
연희동-14	심곡동238-4	블레싱하우스	공동주택	44면
연희동-14	심곡동238-3	21세기골프연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108면
연희동-14	심곡동239-9	공영주차장	자동차관련시설	351면
연희동-14	심곡동239	파인빌	공동주택	55면
연희동-14	심곡동238-1	태영아파트	공동주택	398면
연희동-14	심곡동240-18	숲예찬	공동주택	24면
연희동-14	심곡동240-17	숲예찬	공동주택	25면
연희동-15	심곡동243-18			52면
연희동-15	심곡동245	초이스관광호텔	숙박시설	23면
연희동-15	심곡동242-5	칠성썬스뷰	업무시설	20면
연희동-15	심곡동245-3	카네기관광호텔	숙박시설	32면
연희동-15	심곡동246-7	제스트프라자	제1종근린생활시설	30면
연희동-15	심곡동242-7	제스트빌	업무시설	49면
연희동-15	심곡동245-7		숙박시설	22면
연희동-15	심곡동242-3	청아프라자	제1종근린생활시설	87면
연희동-15	심곡동242-11		제2종근린생활시설	24면
연희동-15	심곡동246	우리타워	제1종근린생활시설	35면
연희동-15	심곡동247-10	SM스카이빌	업무시설	43면
연희동-15	심곡동245-6	태영프라자	제2종근린생활시설	49면
연희동-15	심곡동247-3		업무시설	111면
연희동-15	심곡동242-13	포시즌관광호텔	숙박시설	21면
연희동-15	심곡동245-5	심곡네오프라자	제2종근린생활시설	49면
연희동-15	심곡동246-1	서구보건소	업무시설	49면
연희동-15	심곡동244		제1종근린생활시설	132면
연희동-15				58면
연희동-15				30면
연희동-16	심곡동278-6		제2종근린생활시설	37면
연희동-16	심곡동280-1		제1종근린생활시설	23면
연희동-16	심곡동278-5	청담팰리스	공동주택	24면
연희동-16	심곡동281-2			206면
연희동-17	심곡동282	삼용타워아파트	공동주택	66면
연희동-17	심곡동283-5	메인프라자3차	제1종근린생활시설	21면
연희동-17	심곡동285	대동주택아파트	공동주택	1,059면
연희동-18	심곡동14-5	인천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노유자시설	22면
연희동-18	심곡동290-7		노유자시설	20면
연희동-18	심곡동290-3	신원아파트	공동주택	20면
연희동-18	심곡동287	동남아파트	공동주택	213면
연희동-18	심곡동288	은혜병원	창고시설	38면

해당블럭	주소	건물명	주용도	주차대수
연희동-18	심곡동14-7			92면
연희동-20	심곡동252-2	SG드림홈	공동주택	28면
연희동-20	심곡동252		방송통신시설	91면
연희동-20	심곡동252-6	녹성아파트	공동주택	63면
연희동-20	심곡동248-11		제1종근린생활시설	25면
연희동-20	심곡동251-18	(주)드림유통	판매시설	31면
연희동-20	심곡동254-9		노유자시설	22면
연희동-20	심곡동254-10		제2종근린생활시설	28면
연희동-21	심곡동257-16		제1종근린생활시설	42면
연희동-21	심곡동261-1	인천한신성결교회	제2종근린생활시설	32면
연희동-21	심곡동255-2	맥도날드인천연희점	제2종근린생활시설	33면
연희동-21	심곡동255-3		제2종근린생활시설	22면
연희동-22	심곡동303			30면
연희동-22	심곡동303-1		제2종근린생활시설	73면
연희동-22	심곡동301-5	국제	공동주택	20면
연희동-22	심곡동302	한국아파트	공동주택	318면
연희동-23	심곡동293-1	심곡동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	42면
연희동-23	심곡동291	국제성모병원	의료시설	863면
연희동-23	심곡동365	서구노인복지시설복지주택	노유자시설	466면
연희동-23	심곡동291-8	심곡초등학교	창고시설	47면
연희동-24	심곡동205-6			62면
원당동-04				948면
청라1동-01	청라동116-4	중흥에스-클래스	제2종근린생활시설	1,029면
청라1동-03	청라동130-2	청라웰카운티1차	제2종근린생활시설	885면
청라1동-04	청라동116-6	호반베르디움	공동주택	947면
청라1동-05	청라동125-6	인천청라초등학교	교육연구시설	69면
청라1동-05	청라동125-4	청라중학교	교육연구시설	57면
청라1동-06	청라동130-4	호반베르디움앤영무예다움	공동주택	1,356면
청라1동-07	청라동137-5	사랑의교회	종교시설	35면
청라1동-07	청라동137-6	청라국제도서관	교육연구시설	96면
청라1동-07	청라동137-2	인천청라고등학교	교육연구시설	63면
청라1동-08	청라동160-1	청라린스트라우스	업무시설	826면
청라1동-10	청라동166-1	청라웰카운티2차	제2종근린생활시설	877면
청라1동-11	청라동162-14	청라센트럴프라	업무시설	177면
청라1동-11	청라동162-4	반안프라자	제1종근린생활시설	60면
청라1동-11	청라동161-3	청라타워돔	자동차관련시설	378면
청라1동-11	청라동162-19		제2종근린생활시설	60면
청라1동-11	청라동162-7	청라프라자	제1종근린생활시설	57면
청라1동-11	청라동162-16	매그놀리아	업무시설	344면
청라1동-11	청라동162-6	마르씨엘	제1종근린생활시설	58면

해당블럭	주소	건물명	주용도	주차대수
청라1동-11	청라동162-22	청라에일린의뜰	업무시설	278면
청라1동-11	청라동163-1	쓰리엠타워	제1종근린생활시설	136면
청라1동-11	청라동162-9	라임타워	제2종근린생활시설	133면
청라1동-11	청라동161-1	지웰에스테이트	업무시설	260면
청라1동-11	청라동162-3	주식회사청라에스엔씨	의료시설	127면
청라1동-11	청라동163-2	청연프라자	제1종근린생활시설	120면
청라1동-11	청라동161-2	서후센타시아	업무시설	252면
청라1동-11	청라동162-2	마루힐프라자	제2종근린생활시설	138면
청라1동-11	청라동163-3	홍익파크	자동차관련시설	342면
청라1동-11	청라동162-21	영화블렌하임	업무시설	259면
청라1동-11	청라동162-15	청라비전프라자	제2종근린생활시설	183면
청라1동-11	청라동162-5	청라프라자2	제1종근린생활시설	61면
청라1동-11	청라동162-8	우리프라자	제2종근린생활시설	57면
청라1동-11	청라동162-10	진영메디피아	제2종근린생활시설	142면
청라1동-12	청라동165-3	청라천주교회	종교시설	45면
청라1동-12	청라동165-5	청라1동주민센터	업무시설	29면
청라1동-12	청라동165-11	커널에비뉴	제2종근린생활시설	265면
청라1동-12	청라동165-12	지젤엠청라	문화및집회시설	559면
청라1동-12	청라동165-2	청라메이루즈커널파크뷰	제2종근린생활시설	313면
청라1동-12	청라동165-13	중흥에스-클래스	제1종근린생활시설	394면
청라1동-13	청라동167-2	서인천농협종합시설	업무시설	32면
청라1동-13	청라동167-31	H빌딩	자동차관련시설	203면
청라1동-13	청라동167-7			63면
청라1동-13	청라동167-9	청라캐널큐브	제2종근린생활시설	59면
청라1동-13	청라동167-4	우성메디피아	제1종근린생활시설	140면
청라1동-13	청라동167-29	청라디오스텔	업무시설	240면
청라1동-13	청라동167-1	청라리치아노	업무시설	133면
청라1동-13	청라동167-13	서진프라자	제2종근린생활시설	37면
청라1동-13	청라동167-17	딜라이트타워2	업무시설	310면
청라1동-13	청라동167-16	딜라이트타워	업무시설	245면
청라1동-13	청라동167-10	미라클프라자	제1종근린생활시설	61면
청라1동-13	청라동167-5	(주)백양인천청라빌딩	제1종근린생활시설	140면
청라1동-13	청라동167-12	청라지구삼성빌딩	제1종근린생활시설	36면
청라1동-13	청라1동-13			144면
청라1동-14	청라동164-1	청라풍림엑슬루타워	업무시설	1,672면
청라1동-15	청라동165-10	서해그랑블	제1종근린생활시설	341면
청라1동-15	청라동165-7	청라골드클래스커널웨이	공동주택	350면
청라1동-16	청라동168-1	호반베르디움	제1종근린생활시설	930면
청라1동-17	청라동185-1	청라힐데스하임	제2종근린생활시설	1,516면
청라1동-18	청라동192-1	초은중학교	교육연구시설	60면

해당블럭	주소	건물명	주용도	주차대수
청라1동-18	청라동192-3	초은초등학교	교육연구시설	68면
청라1동-19	청라동193-2	인천초은고등학교	교육연구시설	65면
청라1동-19	청라동193-1	청라자이	제1종근린생활시설	1,547면
청라2동-01	청라동107-1	청라한라비발디	제2종근린생활시설	1,945면
청라2동-03	청라동9-92	인천청라영종지구홍보관및지원시설	문화및집회시설	83면
청라2동-03	청라동115-1	청라제일풍경채	제2종근린생활시설	1,982면
청라2동-04	청라동139-2	경명초등학교	교육연구시설	64면
청라2동-04	청라동139-1	청라한화꿈에그린	제2종근린생활시설	2,134면
청라2동-05	청라동140-4	초원교회	종교시설	28면
청라2동-05	청라동140-5	인천청람중학교	교육연구시설	49면
청라2동-06	청라동149-1	인천청람초등학교	교육연구시설	57면
청라2동-06	청라동149-2	청라제일풍경채2차에듀엔파크	제2종근린생활시설	2,261면
청라2동-07	청라동150-1	청라푸르지오아파트	제2종근린생활시설	1,270면
청라2동-10	청라동156-1	청라센트럴에일린의뜰	공동주택	1,594면
청라2동-11	청라동152-2	청라레이크뷰	업무시설	209면
청라2동-11	청라동152-19	청라더블유	제2종근린생활시설	65면
청라2동-11	청라동153-3	청라동153-3	청라동153-3	183면
청라2동-11	청라동152-15	레이크가든	제2종근린생활시설	55면
청라2동-11	청라동152-11	대우메디피아빌딩	제1종근린생활시설	43면
청라2동-11	청라동152-14	엘림존	제1종근린생활시설	143면
청라2동-11	청라동151-4	경연타워	자동차관련시설	398면
청라2동-11	청라동153-1	청라크리스탈뷰오피스텔	업무시설	183면
청라2동-11	청라동152-10	경연프라자	제1종근린생활시설	34면
청라2동-11	청라동152-1	호수공원프라자	제2종근린생활시설	150면
청라2동-11	청라동152-9	루비타워	제2종근린생활시설	87면
청라2동-11	청라동152-4	청라마르씨엘2	제1종근린생활시설	62면
청라2동-11	청라동152-23	월드프라자	제1종근린생활시설	76면
청라2동-12	청라동155-7	청라스퀘어7	판매시설	571면
청라2동-12	청라동155-2	청라하우스토리커널뷰	제2종근린생활시설	435면
청라2동-13	청라동155-13	세계비전교회	종교시설	56면
청라2동-13	청라동155-14	청라2동주민센터	업무시설	28면
청라2동-13	청라동155-17	청라힐스테이트커널뷰	제1종근린생활시설	437면
청라2동-14	청라동157-22	홈플러스인천청라점	판매시설	692면
청라2동-14	청라동157-19	청라에이스프라자	제1종근린생활시설	55면
청라2동-14	청라동157-14	청라중앙프라자	제2종근린생활시설	147면
청라2동-14	청라동157-2	키움프라자	자동차관련시설	327면
청라2동-14	청라동157-6	청라봄빌딩	업무시설	180면
청라2동-14	청라동157-18	반안프라자3차	제1종근린생활시설	57면
청라2동-14	청라동158-2	(주)청라스파렉스	자동차관련시설	333면
청라2동-14	청라동157-15	커널힐스빌	업무시설	139면

해당블럭	주소	건물명	주용도	주차대수
청라2동-14	청라동158-1	진성프라자	제2종근린생활시설	184면
청라2동-14	청라동157-17	퍼스트타워	업무시설	55면
청라2동-14	청라동157-4	한국전력공사서인천지사	업무시설	90면
청라2동-14	청라동157-16	반안프라자2차	제1종근린생활시설	49면
청라2동-14	청라동157-5	청라골든프라자	제1종근린생활시설	105면
청라2동-14	청라2동-14			765면
청라2동-14	청라2동-14			189면
청라2동-14	청라2동-14			1,129면
청라2동-15	청라동154-1	청라더샵레이크파크	제2종근린생활시설	1,270면
청라2동-16	청라동155-9	인천청라한일베라체	공동주택	479면
청라2동-17	청라동155-12	동양엔파트	공동주택	456면
청라2동-18	청라동159-1	청라롯데캐슬	업무시설	1,622면
청라2동-18	청라2동-18			735면
청라2동-19	청라동173-2	청일초등학교	교육연구시설	61면
청라2동-19	청라동173-1	청라29블럭호반베르디움	제1종근린생활시설	3,244면
청라2동-20	청라동178-8	도담초등학교	교육연구시설	60면
청라2동-20	청라동176-1	청라노블레스	자동차관련시설	45면
청라2동-21	청라동184-1	청라엘에이치	제2종근린생활시설	1,785면
청라3동-01	청라동102-2	청라한양수자인	제2종근린생활시설	1,082면
청라3동-02	청라동102-10	청라동문굿모닝힐	제2종근린생활시설	1,336면
청라3동-03	청라동103-3			70면
청라3동-03	청라동103-5	인천해원고등학교	교육연구시설	65면
청라3동-03	청라동103-2	청라골드클래스	공동주택	329면
청라3동-03	청라동103-6	청라우미린	제2종근린생활시설	302면
청라3동-04	청라동1-796			1,087면
청라3동-05	청라동102-3	청라동양엔파트	제1종근린생활시설	1,044면
청라3동-06	청라동102-16	청라반도유보라2.0	제2종근린생활시설	1,282면
청라3동-07	청라동103-25	인천해원중학교	교육연구시설	63면
청라3동-07	청라동103-26	청라반도유보라	제2종근린생활시설	324면
청라3동-07	청라동103-27	청라상록힐스테이트	제1종근린생활시설	294면
청라3동-08	청라동103-16	청라SKVIEW	제2종근린생활시설	1,776면
청라3동-09	청라동104-2	청라파크자이더테라스1블럭	공동주택	327면
청라3동-10	청라동104-13	청라파크자이더테라스2블럭	공동주택	459면
청라3동-11	청라동105-60	청라주차장	자동차관련시설	38면
청라3동-13	청라동104-171	윤정빌딩	자동차관련시설	118면
청라3동-18	청라동82-1	청라모아미래도	제2종근린생활시설	505면
청라3동-19	청라동83-1	센텀대광로제비앙	공동주택	923면
청라3동-20	청라동8-138	한양수자인레이크블루	공동주택	1,994면

